

발 간 등 록 번 호

11-1543000-100709-14

농업법인 업무안내서

농업법인 생애주기별 실무 가이드



CONTENTS

제1부 농업법인이란 무엇인가

제1장 농업법인 이해하기	2
1. 법인의 의의	2
2. 농업법인의 의의	4
3.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의 장·단점	7
4. 농업회사법인의 특징과 종류	8
5. 농업법인의 사업범위	16
제2장 농업법인 지원정책 및 실태조사	17
1. 재정사업 지원	17
2. 세제지원	24
3. 농업법인 실태조사	35

제2부 농업법인 업무안내

제1장 농업법인 설립과 등록	46
I. 농업법인 설립 절차 안내	46
1. 영농조합법인 설립 절차	47
2. 농업회사법인 설립 절차	48
II. 발기설립과 모집설립	49
1. 구분방법	49
2. 참고사항	50
3. 첨부서류	51

Ⅲ. 농업법인 설립과 등록 자세히 보기	57
1. 법인의 형태와 상호 결정	57
2. 정관 작성과 서명·공증	58
3. 설립신고를 위한 사전 준비	60
4. 자본금 출자	63
5. 설립 신고	64
6. 설립 등기 및 사업자등록 신청	65
Ⅳ. 농업경영체 등록 안내	66
1. 농업경영체 등록 이해하기	66
2. 농업경영체 등록 절차	67
제2장 농업법인 분야별 운영	79
I. 회계 분야	79
1. 회계기록의 목적과 필요성	79
2. 회계기록과 결산절차	80
3. 세무 신고	93
II. 인사·노무 분야	97
1. 근로계약서 작성	97
2. 외국인 근로자 고용	98
3. 임금·최저임금	107
4. 퇴직급여 제도	108
5. 근로시간·휴게·휴일	109
6. 휴가	112
7. 4대 보험	113
8. 해고의 제한	116
III. 법무 분야	118
1. 법인 경영자가 꼭 알아야 할 법무 정보	118
2. 농업법인의 조직변경·합병·분할	120

CONTENTS

제3장 농업법인 해산과 청산	123
I. 영농조합법인	123
1. 영농조합법인의 해산절차	123
2. 청산의 법적 요건	124
II. 농업회사법인	125
1. 해산 요건	125
2. 해산 및 청산 절차	125
3. 구비서류	126
III. 폐업 신고	128
1. 폐업 시의 세무종결 절차	128
2.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절차	128
3. 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 신청	129

제3부 농업법인 사업범위 호별 예시

1. 농업의 경영	138
2. 농산물 출하·유통·가공·판매 및 수출	146
3. 농작업 대행	149
4. 농어촌관광휴양사업	152
5. 농촌융복합산업	155
6.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 및 공급사업	159
7. 영농에 필요한 종자생산 및 종균배양사업	161
8. 농산물의 구매 및 비축사업	163
9. 농업기계나 그 밖의 장비의 임대·수리 및 보관 사업	165
10. 소규모 관개시설(灌溉施設)의 수탁 및 관리사업	167
11. 농업과 관련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운영	168

제4부 농업법인 분야별 민원 사례

제1장 농업법인 설립관련	172
1. 주소(소재지 및 관할)	172
2. 조합원(요건 및 자격)	176
3. 출자자(자본금 및 비농업인 참여)	183
4. 기타 사항	187
제2장 농업법인 변경관련	195
1. 법인 전환 및 조직변경	195
2. 변경신고 대상 및 판단 기준	201
3. 변경신고 행정 절차 및 요건	207
4. 해산 및 폐업	212
제3장 농업법인 운영관련	217
1. 출자	217
2. 양도양수	222
3. 인사/노무	226
4. 법무	233
5. 기타 사항	238
제4장 실태조사	243
제5장 후속조치	246
제6장 사업범위	252

CONTENTS

제5부 중대재해처벌법 바로 알기

1. 법의 목적	260
2. 중대산업재해의 정의	260
3. 적용범위 및 적용시기	261
4. 벌칙규정(제재규정)	262
5.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265
6. 고용노동부 등 안전보건 관련 자료 QR 코드	266
7. 중대재해처벌법 Q&A(50인 미만 기업)	267

별 첨 기타 주요 정보

1.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정관(예)	272
2. 농업법인 설립등기 신청(예)	273
3. 영농조합법인 설립·변경·해산신고 서식안내	310
4. 농업회사법인 설립·변경·해산신고 서식안내	314
5. 농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신청서 서식 안내	318
6. 농업인 확인서 발급 규정	343
7.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3단 비교표	349
8.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중 작물재배업 및 서비스업 기준	392

제1부

농업법인이란 무엇인가

제1장 농업법인 이해하기

제2장 농업법인 지원정책 및 실태조사

농업법인 이해하기

1. 법인의 의의

가. 법인이란

법인이란 권리능력의 주체라고 할 수 있는 자연인 이외의 인격체로서 법률에 따라 법인격이 인정된 사람 또는 재산의 단체를 의미합니다. 즉, 일정한 목적과 조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단체(사단 또는 조합)를 만들고, 어떤 목적을 위하여 조성된 재산(재단)도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재산상 법률관계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이나 ‘재산’의 결합체에 법률로 권리능력을 부여하고 이를 법인이라 부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각종 사회단체 및 노동조합, 학교 등은 대부분 법인입니다. 법인의 종류는 공법인과 사법인, 재단법인과 사단법인,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외국법인과 내국법인 등이 있습니다.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만 설립됩니다.

나. 법인 설립의 필요성과 장·단점

기업은 사업자등록의 간단한 절차를 거쳐 설립할 수 있는 개인기업에서 출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기업은 업무 확장이나 발전에 따라 인력의 보충, 자본조달 등의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에 법인기업으로 전환하여 사업을 계속 성장시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를 ‘법인 전환’이라고 합니다.

① 법인경영의 장점

ㄱ) 경영위험의 분산 및 차단

법인으로 운영할 때, 거래 행위로 인한 책임은 법인의 목적 범위 내에서 법인이 지며 경영인(대표이사, 임원 등)은 민사상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주주는 출자 범위 내에서 유한 책임을 지며 위험이 발생했을 경우 그 책임이 분산, 차단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 판례는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실제로 개인기업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경우, 법인격을 부인한 사례가 있어(2001.1.19. 97다21604), 개인적 불법이나 채무면탈을 목적으로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경우 개인 책임을 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ㄴ) 기업의 영속성 유지

법인은 경영과 소유가 분리되어 구성원(주주, 투자자, 경영인 등)의 변동이 있더라도 기업은 영속적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따라서 모집하거나 공동경영(동업)을 하면서 분쟁을 예방하며 법적 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ㄷ) 세제상 혜택

법인은 법인세법의 적용을 받으며 감면 규정에 따라 법인세의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의 감면, 부가가치세 면제, 지방세특례 제한법에 의한 감면, 면제, 농·임·어업용 유류 면세 등 다양한 감면 혜택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ㄹ) 신뢰성 확보

일반적으로 물건을 유통하는 거래처에 대한 신뢰가 개인보다 법인을 신뢰하고 선호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을 경영하게 되면 효율적인 시장 대응과 대형 유통업체와의 협상 등이 가능하게 됩니다.

② 법인 경영의 단점

ㄱ) 설립 절차의 복잡함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기본 자본금을 마련해야 하며, 설립에 필요한 준비 서류 등이 다양하여 설립 절차가 다소 복잡합니다.

ㄴ) 독점적 이윤 불가

출자지분에 따라 배당되므로 대표자의 독점적 이윤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ㄷ) 경영에 대한 각종 의무이행

법인 경영은 정관 등의 규정 및 절차를 기준으로 하여 운영해야 합니다. 이에 임원이나 주주 등의 생각이 일치하지 않을 때는 의사결정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각종 법과 관련한 의무와 평가 등이 개인기업에 비하여 많습니다.

2. 농업법인의 의의

농업법인은 농업의 경영 및 부대 사업과 농산물의 유통·가공·수출·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가능하며, 설립 요건, 운영 방식 등에 따라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으로 구분됩니다.

※ 농업법인 제도의 근거 법률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09년 제정)이며 설립목적, 조합원 자격, 사업범위,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가. 영농조합법인

영농조합법인은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 유통, 가공, 수출 및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가 농업인(농업생산자단체)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할 수 있습니다.

나. 농업회사법인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 가공, 판매를 기업적으로 하거나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거나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 단체가 총 출자금의 10% 이상 출자하여 설립할 수 있습니다.



농업, 농업인이란?

- 농업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라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 다음 각 호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 ① 농작물재배업 : 식량작물 재배업, 채소작물 재배업, 과실작물 재배업, 화훼작물 재배업, 특용작물 재배업, 약용작물 재배업, 사료작물 재배업, 풋거름작물 재배업, 버섯 재배업, 양잠업 및 종자·묘목 재배업(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은 제외한다)
 - ② 축산업 : 동물(수생동물은 제외한다)의 사육업·증식업·부화업 및 종축업(種畜業)
 - ③ 임업 : 영림업(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 및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과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 수목원 및 정원의 조성 관리·운영업을 포함한다) 및 임산물 생산·채취업
 - ※ 안전한 농수산물과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경쟁력 있는 농업경영체를 육성하려는 농업법인 제도 취지 상, 임업 중 농업법인의 사업 범위로 보는 것은 '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과 '임산물 생산·채취업'에 한하여 가능, 이에 '임업용 종자재배업' '임업용묘목재배업' '임산물생산업' '임산물채취업'이 농업법인의 사업범위에 해당하며, 임업용 종자·묘목 재배를 위한 임산물 생산·채취를 위한 조림, 육림에 대해서 한정적으로 가능 (사업 기재도 이에 준하여 명확히 하여야 함)
- 농업인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①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농어촌정비법」 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됩니다.)
 - ② 농업경영으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 ③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 ④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⑤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 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 농업인의 확인 방법, 세부 기준 등은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산자단체란?

- 생산자단체 : 농업 생산력의 증진과 농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 다음 각 호의 단체를 의미합니다.
 - ①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
 - ②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 ③ 「업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른 업연초생산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 ④ 농산물을 공동으로 생산하거나 농산물을 생산하여 공동으로 판매·가공 또는 수출하기 위하여 농업인 5명 이상이 모여 결성한 법인격이 있는 전문생산자 조직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단체

생산자단체의 범위는?

-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중 자본금 1억원 이상인 영농조합법인
 - ②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 중 농업인 5인 이상이 참여하고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인 농업회사법인
 - ③ 「농업협동조합법」 제112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설립 인가한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농업협동조합법」 제1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설립 인가한 품목조합연합회, 「산림조합법」 제86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청장이 설립 인가한 조합공동사업법인
 - ④ 「농수산물자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산물자조금을 조성·운영하는 자조금단체
 - ⑤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조활동자금을 조성·운영하는 축산단체
 - ⑥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중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5호에 따른 조직으로서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인 조합
 - ⑦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연합회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중 제6호에 해당되는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을 회원으로 하고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인 연합회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생산자단체 범위(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9-8호, 2019. 2. 8.)

3.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의 장·단점

가. 영농조합법인의 장·단점

① 영농조합법인의 장점

- ㄱ) 공동출자로 인해 개인보다 규모가 큰 영농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 ㄴ) 공동구입, 공동판매시설을 이용하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 ㄷ) 거래처에 대한 이익단체로서 기능할 수 있습니다.
- ㄹ) 조합원 및 준조합원은 납입한 출자액을 한도로 유한책임을 집니다.(2015.7.7. 이후 설립한 영농조합법인, 기존의 영농조합법인은 2015. 7. 7. 이후부터 부담하는 채무에 대하여 적용)

② 영농조합법인의 단점

- ㄱ) 사업이 약간이라도 불투명해지면 조합원들이 연이어 탈퇴할 수 있습니다.
- ㄴ) 조합원 사이에 반목이 생길 경우 경영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 ㄷ) 탈퇴 및 해산 시 잔여 재산의 공정하고 타당한 평가가 어려워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나. 주식회사형 농업회사법인의 장·단점

① 주식회사형 농업회사법인의 장점

- ㄱ) 도시 자본이 농촌으로 유입될 수 있습니다.
- ㄴ) 투자자인 주주는 주식투자액을 한도로 유한책임을 지면서 투자합니다.
- ㄷ) 비농업인도 투자 지분에 비례한 의결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 ㄹ) 주식을 발행하여 거대자본을 모아 농업을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 ㅁ) 투자와 경영이 분리되어 전문경영인이 효율적으로 경영할 수 있습니다.
- ㅂ) 거대한 자본금으로 대내외적인 신용도가 상승합니다.
- ㅅ) 자유로운 주식 양도로 주주의 투자자금 회수가 용이합니다.
- ㅇ) 주주가 경영에 신경 쓰지 않아도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 ㅈ) 각종 법령에 의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주식회사형 농업회사법인의 단점

- ㄱ) 농업 경영에 경험이 없는 전문경영인이 경영 판단을 그르칠 염려가 있습니다.
- ㄴ) 회사 경영 및 영농에 대한 애착이 적어 우수상품을 재배하기 곤란할 수 있습니다.
- ㄷ) 기술력을 습득한 직원들이 이직할 가능성이 상존합니다.

4. 농업회사법인의 특징과 종류

가. 회사란

법인은 ‘법이 인정한 사람’이란 의미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을 의미합니다. 영업은 각 개인의 힘으로도 경영할 수 있으나 그 능력에는 한도가 있습니다. 따라서 영업의 규모가 커지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필요한 노력을 보충하고 자본을 늘리며 또 손실 위험을 분산시켜서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조직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것을 공동기업 형태라고 합니다. 현대의 주요한 영업은 거의 전부가 회사 형태로서 경영되고 있습니다.

나. 농업회사법인의 5가지 종류

농업회사법인의 종류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가 있습니다. 회사 구분의 기준은 회사가 파산하였을 때, 사원이 제3자(채권자)에 대해 직접 책임을 지느냐, 아니면 출자금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 회사 채무에 대해 자신의 출자액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는 사원을 유한책임사원, 회사의 손실에 대해 자신의 개인 자산으로도 무한정 책임을 지는 사원을 무한책임사원이라고 합니다.

인적회사로 불리기도 하는 합명·합자회사는 주로 인적 신뢰 관계가 깊은 이들이 연대하여 공동체적 방식으로 운영하는 데 유리합니다. 반면,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는 회사의 자본과 재산 등 물적 요소를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이들 물적 성격의 회사는 사원의 책임이 유한하며, 특히 주식회사의 경우 법적 규제가 상대적으로 엄격하고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는 특징을 가집니다. 각 형태별 상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구분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사원의 책임	무한	무한·유한	유한	유한	유한
사원의 수	2인 이상	무한·유한 각 1인 이상	1인 이상	1인 이상	1인 이상
특징	인적회사	인적회사	물적+인적회사*	물적회사	물적회사

* 유한책임회사는 물적회사처럼 유한책임을 지지만, 내부 구조는 인적회사처럼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① 합명회사

합명회사는 모든 사원이 무한책임사원으로서 회사 채무에 대하여 직접·연대·무한의 책임을 지는 대표적인 인적회사입니다. 대외적으로 사원의 인적 신용이 회사의 신용과 직결되며, 내부적으로는 사원 상호 간의 강력한 신뢰 관계가 필수적입니다. 모든 사원이 원칙적으로 업무를 집행하고 회사를 대표할 권리를 가지기 때문에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공동 경영의 성격이 매우 강하게 나타납니다.

사원의 개성이 회사의 핵심 요소인 만큼 지위의 이전은 엄격히 제한됩니다. 지분을 양도하거나 새로운 사원을 입사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사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는 회사의 폐쇄적이고 독자적인 정체성을 유지하는 기반이 됩니다. 반면 사원에게는 자유로운 퇴사가 허용되며, 특정한 사유가 있을 때는 제명 제도를 통해 조직의 질서를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설립 절차 또한 주식회사와 달리 매우 간단하여 정관 작성 후 설립 등기만으로 성립하며, 출자에 있어서도 금전이나 부동산 같은 재산뿐만 아니라 노무나 신용과 같은 무형의 자산도 인정되는 유연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청산 과정에서도 법정 절차 외에 사원들이 자유롭게 정하는 임의 청산이 가능하며 기업의 종결이 비교적 자유로운 편입니다.

이처럼 합명회사는 자본적 결합보다는 가족적이고 인적인 유대를 중시하므로, 상호 신뢰가 확고한 소규모 인원으로 구성된 농업경영체나 전문직 동업 형태의 소규모 공동 기업에 가장 적합한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② 합자회사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이 공존하는 이원적(二元的) 조직의 회사로, 무한책임사원이 경영의 책임을 지는 점은 합명회사와 같으나, 출자액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는 유한책임사원이 함께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됩니다. 기업 경영의 실무와 대외적 대표권은 무한책임사원이 담당하며, 유한책임사원은 자본을 제공하고 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 분배에 참여하는 투자자로서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러한 구조 덕분에 경영 능력은 있으나 자산이 부족한 사람과 자본은 있으나 경영에 직접 참여하기 어려운 사람이 결합하여 시너지를 창출하기에 매우 적합한 형태입니다.

본질적으로 사원 간의 개인적 신뢰를 기초로 하는 인적회사에 속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조합과 유사한 성격을 띠니다. 따라서 상법에서도 유한책임사원의 특수성에서 비롯되는 예외 조항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합명회사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사원의 입사와 퇴사 절차 역시 합명회사의 사례와 비슷하지만, 투자자로서의 성격이 강한 유한책임사원에 대해서는 몇가지 유연한 법적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유한책임사원이 사망하더라도 그 지위는 상속인에게 승계될 수 있으며, 성년후견개시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퇴사 원인으로 보지 않아 지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해산이나 조직변경 절차는 유한책임사원의 존재 여부에 따라 합명회사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회사를 정리하는 청산 절차는 대동소이합니다. 요약하자면, 합자회사는 인적 결합의 폐쇄성을 유지하면서도 외부 자본을 유치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둔 합리적인 절충 모델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수의 인원이 모여 경영 노하우와 자본력을 결합해 운영하는 소규모 공동 농업경영체나 벤처 형태의 기업 모델이 최적화된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②의 2. 유한책임회사

유한책임회사는 내부적으로 동업 관계와 같은 조합의 성격(폭넓은 사적 자치)을 유지하면서도, 대외적으로는 사원 전원이 주식회사와 같은 유한책임(물적 요소)을 지는 하이브리드 형태의 회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합명회사의 운영 원리를 따르되, 예외적으로 주식회사의 강점을 결합하여 유연함과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한 것이 특징입니다.

이 회사가 주식회사의 요소를 반영한 구체적인 사례로는 자본금 제도를 두어 이를 등기하도록 한 점과 사원이 아닌 제3자를 업무집행자로 선임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또한 소수 사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대표소송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며, 1인 회사의 설립과 존속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주식회사와의 상호 조직 변경도 법적으로 허용됩니다. 특히, 채권자 보호를 위해 합명회사와 달리 사적 계약에 의한 임의청산을 배제하고 엄격한 법정청산 절차만을 밟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법상의 유한책임회사는 미국의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 LLC), 일본의 합동회사와 유사한 제도로, 인적 자산을 중시하는 최근의 지식기반형 산업 구조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사적 자치를 최대한 존중하며 사원들의 인적능력을 적절하게 평가하고 보상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어, 조합의 유연성과 주식회사의 장점을 모두 누릴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사나 감사를 반드시 설치할 의무가 없어 초기 비용과 행정적 부담이 적고, 사원들의 책임이 출자액으로 한정된다는 점이 이 제도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③ 주식회사

주식회사는 구성원인 주주의 출자를 바탕으로 설립되며, 전체 자본금이 주식이라는 일정한 단위로 분할된 형태를 갖습니다. 모든 주주는 자신이 인수한 주식의 가액을 한도로 출자 의무를 다할 뿐, 회사의 채무에 대해서는 개인 재산으로 직접 책임을 지지 않는 ‘주주 유한책임의 원칙’을 따릅니다. 따라서 자본금, 주식, 그리고 주주의 유한책임은 주식회사를 구성하는 가장 근본적인 특색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정관에 따라 보통주 외에도 우선주와 같은 다양한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으며, 각 주식은 종류에 따라 의결권이나 배당 등의 권리 내용이 다르게 설정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는 이윤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영리 사단법인이자, 자본을 기업의 핵심 구성 요소로 삼는 전형적인 물적회사입니다. 상법은 회사가 설립될 때뿐만 아니라 존속하는 동안에도 자본금 규모에 상응하는 실질적인 재산을 상시 보유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러한 법적 의지는 채권자 보호와 회사의 재무적 기초를 견고히 하기 위한 자본 확정, 자본 유지, 자본 감소 제한이라는 이른바 ‘자본의 3대 원칙’을 통해 구체화됩니다.

주식회사의 자본금은 모두 주식이라는 단위로 분할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각 주주는 자신이 보유한 주식 가액이 전체 자본에서 차지하는 비율, 즉 지분율에 따라 회사 경영에 참여하고 재산적 권리를 누리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주주가 회사에 대해 갖는 모든 권리와 의무는 개인의 자격이 아닌 주식을 단위로 결정됩니다. 또한, 1주의 금액은 균일하게 정해져야 하며, 이에 따라 모든 주식은 보유 수량에 비례하여 평등하게 대우 받는다는 ‘주주 평등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 주주는 자신이 인수한 주식의 가액을 한도로 회사에 대하여 출자 의무를 질 뿐, 그 이상의 어떠한 추가적인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이를 ‘주주 유한책임의 원칙’이라 하며, 주식회사의 물적 성격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특징입니다. 이에 따라 출자의 목적물은 금전이나 부동산 등 실질적인 재산에 국한되며, 인적회사와 달리 개인의 신용이나 노무를 통한 출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경영 측면에서는 주주가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함으로써 주요 의사결정에는 참여하지만, 실제 업무 집행에서는 분리되는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이루어집니다. 아울러 주식의 양도가 자유롭고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대규모 자본을 조달하기에 용이하므로, 거대 기업의 경영과 성장에 가장 적합한 제도적 틀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주식회사 설립 시에는 정관에 발행할 주식의 총수와 1주의 금액 등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며, 이후 주식 인수인을 확정하고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는 등 회사의 실체를 구성하는 법적 절차를 밟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은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명확히 하고, 경영과 감독을 담당할 기관을 구성함으로써
- 주식회사의 실체를 구성하는 절차에 따라 설립 방법은 크게 발기설립과 모집설립의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발기설립은 회사의 설립 주체인 발기인들이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 총수를 전부 인수하여 회사를 성립시키는 방식입니다. 반면, 모집설립은 발기인이 주식 총수의 일부만을 우선 인수하고, 나머지 주식에 대해서는 외부에서 일반 주주를 모집하여 자본을 충당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 주식회사는 상법에 의거하여 최고 의사결정기관인 주주총회, 실제 업무를 집행하고 회사를 대외적으로 대표하는 이사회와 대표이사, 그리고 경영 및 회계를 감독하는 감사라는 세 개의 핵심 기관을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이러한 지배구조는 각 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투명한 경영을 실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만, 상법상 자본금 규모에 따라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자본금 총액 10억원 미만의 소규모 회사에 대해서는 이사 선임 및 이사회 구성의 특례(상법 제383조), 감사 선임 의무의 면제(상법 제409조)와 같은 특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이사를 1명 또는 2명만 선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률상 이사회가 구성되지 않으므로 기존에 이사회의 결정사항은 주주총회 결의나 각 이사의 결정으로 대체됩니다.

※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감사를 별도로 선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를 두지 않을 경우 주주총회가 감사의 역할을 대신하거나, 주주가 직접 회사의 업무와 재산 상태를 조사할 권한을 갖게 됩니다.

- 주식회사가 해산 사유가 발생하여 소멸할 때는 반드시 법률이 정한 엄격한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합병이나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 청산 절차에 진입한 회사는 잔무 처리와 재산 분배 등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만 권리 능력을 가진 채 일정 기간 존속하게 됩니다.

이때 기존의 영업 집행 기관이었던 이사회는 사실상 해산되며, 이를 대신하여 청산인이 회사의 사무를 집행하고 대외적으로 대표하는 핵심 기관이 됩니다. 특히 주식회사는 다수의 채권자와 주주 등 이해관계자가 복잡하게 얽혀 있으므로, 합명회사와 같은 인적회사에서 허용되는 자율적인 ‘임의청산’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상법이 규정한 법정청산의 엄격한 절차를 거쳐 투명하게 기업을 정리해야 합니다.

④ 유한회사

유한회사는 주식회사의 주주와 마찬가지로 사원 전원이 출자액을 한도로 하는 ‘간접 유한책임’을 부담하는 회사입니다. 최소 1인 이상의 사원으로 구성되며, 주식회사의 유한책임 제도와 합명회사의 폐쇄적인 운영 방식을 절충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즉, 사원의 책임 범위 측면에서는 주식회사와 유사하지만, 지분의 양도가 상대적으로 제한되고 비공개적으로 운영된다는 점에서는 인적회사인 합명회사와 유사합니다.

지배구조는 이사, 감사, 사원총회로 구성됩니다. 사원은 1인 또는 그 이상의 이사를 임명할 수 있으며, 실무적으로는 사원 자신이 직접 이사가 되어 경영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이사의 권리와 의무는 주식회사의 이사와 유사한 수준의 책임을 갖습니다. 감사의 경우 주식회사와 달리 설치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임의기관이므로, 반드시 두지 않아도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최고의사결정기관인 사원총회는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의결권 행사는 사원의 인원수가 아닌 각 사원이 보유한 출자 지분에 비례하여 이루어 집니다. 이처럼 유한회사는 복잡한 공시 의무나 엄격한 지배구조에서 벗어나 유연하고 내실 있는 경영이 가능하므로, 대외적인 공개보다는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한 소규모 중소기업이나 가족 중심의 농업 경영체에 매우 적합한 모델입니다.



책임사원의 구분

- **무한책임사원** :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개인의 재산까지 동원하여 책임을 지는 사원입니다.
- **유한책임사원** : 출자가액을 한도로 회사의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점에서 출자가액과 관계없이 회사의 모든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지는 무한책임사원과 다릅니다. 보통 합자회사(무한책임사원과 이원적 운영), 주식회사의 주주와 유한회사의 사원도 유한책임사원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비록 이들이 모두 유한책임사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책임의 성질과 내용에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비교]

구 분	영농조합법인 (Farming association corporation)	농업회사법인(주식, 유한, 유한책임, 합자, 합명) (Agricultural corporation company)
관련 규정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설립 단체	■ 농업인 또는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가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설립 - 결원 시, 1년 이내에 총원(미충원 시 해산 사유)	■ 농업인 또는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가 설립
비농업인 참여	■ 비농업인은 의결권 없는 준조합원으로 참여 가능 - 단, 준조합원은 이사 총수의 1/3 미만에서 임원 선출 가능하고 이사회 의결권 허용 가능(총회 의결권은 없음)	■ 비농업인의 출자지분이 총출자액의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음 - 다만, 총 출자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총출자액에서 8억을 제외한 금액 한도 - 비농업인 출자제한 위반 후 1년 경과 해산 사유 - 비농업인 임원선출 가능하며 출자 지분에 따라 의사결정 참여 가능
사업	※ “농업법인”이란 법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하는 것으로 농업회사법인의 사업범위와 같음	■ 농업경영(생산),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수출 ■ 농작업 대행, 농어촌관광휴양사업 ■ 농촌융복합사업 ■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공급, ■ 영농에 필요한 종자생산 및 종균배양 사업 ■ 농산물의 구매·비축사업 ■ 농기계나 및 기타장비의 임대·수리·보관 ■ 소규모 관개시설의 수탁·관리 - 법 제19조의4 및 시행령 제20조의5
농지 소유	■ 소유 가능	■ 소유 가능(단,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의 1/3 이상이 농업인일 것) - 농지법 제2조 제3호
운영 현황 ('25년)	■ 운영법인 수 : 10,132개소 ■ 법인당 평균 매출(판매)액 : 1,306백만원 ■ 매출액 10억 이상 법인 수 : 2,153개소 ■ 법인당 평균 출자액 : 250백만원 - 출처 : 2023년 기준 농업법인조사 보고서 ('25. 5월)	■ 운영법인 수 : 16,367개소 ■ 법인당 평균 매출(판매)액 : 2,394백만원 ■ 매출액 10억 이상 법인 수 : 5,114개소 ■ 법인당 평균 출자액 : 330백만원 - 출처 : 2023년 기준 농업법인조사 보고서 ('25. 5월)
특례	■ (국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면제 및 감면 - 법인세의 경우 ①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재배업 소득 전액면제, ②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재배업 소득 외의 작물재배업소득은 조합원 당 수입금액 6억 이하의 소득분(영농조합법인), 연 수입금액 50억 이하의 소득분(농업회사법인)까지 감면 ③ 작물재배업 외의 대통령령이 정한 소득은 조합원 1인당 연 1,200만원(영농조합법인), 최초 소득발생연도와 그 다음 4년간 50%(농업회사법인) 감면 ■ (지방세) 부동산 취득등록세, 재산세 면제 및 감면 ■ (조합원) 양도소득세 면제 및 이월과세, 배당소득세 면제	

5. 농업법인의 사업범위

농업법인을 운영하실 때는 「농어업경영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범위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일반법인처럼 모든 사업을 자유롭게 할 수 없으며, 사업범위를 벗어난 사업을 지속하는 농업법인에 대해 시장·군수·구청장이 법원에 해산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 영위가 가능한 사업

농어업경영체법 시행령 제20조의5제1항에 따라 농업법인이 영위할 수 있는 사업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ㄱ) 농업의 경영
- ㄴ) 농산물의 출하·유통·가공·판매 및 수출
- ㄷ) 농작업의 대행
- ㄹ)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 ㅁ)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로서 수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ㅂ) 기타 부대 사업
 -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 및 공급사업
 - 영농에 필요한 종자생산 및 종균배양사업
 - 농산물의 구매 및 비축사업
 - 농업기계나 그 밖의 장비의 임대·수리 및 보관사업
 - 소규모 관개시설(灌溉施設)의 수탁 및 관리사업
 - 농업과 관련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운영

나. 영위가 불가능한 사업

농업법인은 농어업경영체법 제19조의5에 따라 농지를 활용 또는 전용하여 부동산업(동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제외)를 영위할 수 없습니다.

농업법인 지원정책 및 실태조사

1. 재정사업 지원

국가와 지자체는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기술개발, 경영규모의 확대 또는 전문인력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 및 컨설팅 등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기본적인 요건을 구비해야 합니다.

가. 지원을 받기 위한 준비

①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농촌에 관련된 용자·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농업법인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등록된 정보 중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수정·등록하여야 합니다.

※ 관련문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1644-8778) * 각 지역사무소 안내는 72p 참고

②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의 농업법인 지원요건 준수

- 농업법인 설립요건 충족
 - ※ 영농조합법인 :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 조합원 5인 이상
 - ※ 농업회사법인 :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의 출자지분이 전체의 1/10 이상
(다만, 총 출자금액이 80억 초과할 경우 비농업인은 8억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까지 출자가능)
- 총 출자금 5천만원 이상
- 운영 실적 1년 이상(개별사업시행 지침에서 정한 경우 그에 따름)
- 사업자부담금 이상의 자본금 확보

- 농어업경영체법상 사업범위 밖의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할 것
- 생산과 관련된 부대사업은 당해 법인의 생산과 연계된 경우에만 지원 가능
- 사업부지는 당해 법인의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어야 하며(단, 당해 법인 명의로 아니더라도 개별사업지침에서 정한 보조시설의 사후관리기간 이상으로 지상권 또는 전세권 등을 설정한 경우에는 가능), 담보제공 및 지상권 설정 등 재산권에 제약이 있어서는 안 됨(다만, 개별사업시행지침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름)

③ 개별사업 지침에서 정하는 선정 요건의 충족

- 지원사업의 내용 등에 따라 선정에 필요로 하는 추가적인 요건들을 충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 담당부서에서 안내받으십시오.

※ 사업대상, 지원요건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go.kr)」, 「농업e지(nongupez.go.kr)」, 「e나라도움 (www.gosims.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지원요건과 후순위 대상(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기본규정 제39조)

• 우선지원요건

- ▲ 동 기본규정 제73조에 따른 경영장부 또는 경영일지를 성실하게 기록한 자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농촌진흥청/산림청장이 개별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교육을 이수한 자,
- ▲ 농촌진흥청·산림청·국가데이터처에서 시행하는 농림통계조사의 표본농림어가로서 경영정보를 성실하게 제공한 자 ▲ 한국농수산대학 졸업생 및 2년 이상의 장기 농림축산식품교육(농업마이스터 대학 등)을 수료한 자 ▲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성실하게 등록 및 변경 등록한자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자 ▲ 농림축산관련 자조금 성실 납부자 ▲ 친환경 농업·축산 또는 GAP인증농가 ▲ 동물복지형 및 깨끗한 축산농장 ▲ 재해보험가입자 ▲ 생산자 단체 가입자 ▲ 계약재배사업 가입자 ▲ 공동경영주로 등록한 자 등

• 후순위 대상

- ▲ 가축질병 발생 농가, ▲ 인증제도 위반 농가 ▲ 무허가 축사 보유농가 ▲ 「축산법」상 교육 미이수 농가 ▲ 「가축전염병 예방법」상 방역·검역의무 미준수 농가 및 소독설비 미구비·소독 미실시 농가 ▲ 허용되지 않은 농약사용 또는 과다사용 ▲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성실하게 등록 및 변경하지 않은 경영체 등

나. 지원을 받은 이후

① 보조금 사후관리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사업시행기관은 민간 보조사업자를 선정할 때 농업경영체 등록·실태조사 결과, 중복·편중 지원 및 보조사업 수행배제·지원제외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② 사후관리 기준

- 법인경영체에 지원되는 시설물의 준공검사는 시·군 공무원이 담당합니다.
- 지원된 시설물이 완공된 경우, 당해 법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정산해야 합니다.
- 농업법인에 대한 지원이 있을 경우, 경영에 대한 지도·관리는 품목담당과에서 담당자 및 책임자를 지정해 운용합니다. 일반적인 운영상의 지도·감독(설립·출자 등)은 총괄 담당과에서 담당합니다.
- 부도 등으로 인한 잉여시설물의 제3자 인계를 원활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정부지원보조금의 제3자 인계는 보조금 교부결정자인 시·도지사가 판단하여 승인합니다(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6조).
- 정부지원 시설물이 농림축산식품사업 목적대로 사용되고 내용연수와 같은 기간 동안 관리되는지, 시·군의 품목담당과에서 적극 관여합니다.
- 사업부지는 당해 법인의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어야 하며, 담보제공 및 지상권 설정 등 재산권에 제약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하, 그렇군요!

- 모든 보조사업은 2017년 1월 개통한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 교부·집행·정산하는 전산시스템으로 관리됩니다. 또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거래증빙을 확인하므로 허위 또는 중복사용을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 모든 증빙서류는 전자세금계산서, 보조사업카드 영수증, 계좌이체 및 관련 서류로 제한됩니다. 즉, 간이·수기 영수증은 증빙이 불가합니다.
- 법인 설립시 출자금 5천만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법적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자본금이 굳이 5천만원 이상일 필요는 없지만, 정부 지원사업을 받고자 하는 경우 출자금 5천만원 이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업법인 주요 지원사업]

○ 창업·운영단계

(단위 : 백만 원)

분야 (소관)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사업주요내용	사업비* (‘26년)
생산 기반 (공통)	농지	맞춤형 농지지원	경영규모·연령별로 농가의 성장단계를 구분한 후 성장단계별로 맞춤형 농지지원을 통해 청년농·귀농인 등의 안정적 영농기반 구축 지원	1,807,690
농촌 공동체	농업·농촌교육 훈련지원	귀농귀촌교육	민간교육기관을 선정하고 이를 통해 귀농·귀촌 희망자 및 귀촌인에게 대상·유형·단계별 수요자 맞춤형 귀농귀촌 교육 제공	6,082
		농업 경영·기술 심층컨설팅	사전진단을 통한 경영·기술 분야 운영 효율화, 투자 타당성 분석 및 제언 등	385
식품	식품안전,환경,인증	GAP 및 이력추적관리	GAP인증 교육 및 홍보, 시료구입, 현장조사 여비 등 지원	393

※ 지원대상자에 농업법인이 포함된 사업이며, 사업비는 내역사업 총 예산

○ 생육·확장단계

(단위 : 백만 원)

분야 (소관)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사업주요내용	사업비 (‘26년)
식량	소득안정	농업자금이자보전사업	농업자금(정책자금, 부채대책자금) 저리 지원에 따른 금융기관의 이자차액을 보전	729,661
	농지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 (용자)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를 매입하고 장기임대하여 농업경영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	182,400
	농촌공동체, 환경	꾸러미사업지원	농촌마을 공동체 육성을 위한 꾸러미 사업 활성화 지원	164
	공동경영체	전략작물산업화 (가루쌀 교육컨설팅, 시설장비) 사업	(교육컨설팅)가루쌀 재배기술, 공동영농 및 공동경영체계 확립 등을 위한 교육·컨설팅 및 실태조사 등을 지원 (시설장비)가루쌀 공동영농 규모 확대를 위한 시설·장비 구입비 지원	1,350
		전략작물사업화 (밀교육·컨설팅지원) 사업	곡산 밀 전반에 걸친 생산·유통여건 개선을 위해 농가 인식전환을 유도하고 경영체의 내실있는 운영 등에 필요한 교육 및 컨설팅 비용 지원	3,225

* 지원대상자에 농업법인이 포함된 사업이며, 사업비는 내역사업 총 예산

분야 (소관)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사업주요내용	사업비 ('26년)
식량	전략작물산업화	시설장비	밀·콩·가루쌀 등 농타작물재배 및 발작물 연계를 위한 작부체계 전환 등 식량작물공동경영체 공동영농 생산과정에 필요한 시설·장비 구입 및 설치 지원	12,250
원예 작물 생산 유통	채소	고추비가림 재배시설지원	관수시설(점적관수, 스프링클러, 관정), 환경관리시설(자동개폐기, 차광망)을 포함한 고추비가림재배시설 지원	1,800
		채소가격안정지원	농업인의 강화된 수급조절 의무(사전 면적조절, 출하정지 등) 이행을 전제로 일정 수준의 소득을 보전(평균 가격의 80%)	22,201
		발작물공동경영체육성 지원 사업	발작물공동경영체 지원자격 요건을 갖춘 조직에 생산자 조직화·규모화를 위한 역량강화, 생산비 절감, 품질관리 등에 필요한 교육, 컨설팅, 농기계류, 시설·장비 등 맞춤형 지원	5,100
	과수, 화훼, 특작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	관수관비시설, 우량품종갱신 등 고품질 생산을 위한 시설 및 재해예방시설 지원	31,125
		과수분야 스마트팜확산	과수분야의 ICT 융복합 시설장비 및 정보시스템(시설 내 ICT 융복합 시설장비 정보시스템 포함) 등 지원	200
		과수 인공수분용 꽃가루 생산단지조성	꽃가루 채취단지 기반조성, 꽃가루 채취 및 발아율 검증 장비 구입, 관리시설 설치 등	-
		저온유통체계구축 (화훼류습식유통)	절화류 습식유통에 필요한 기자재 지원(습식물통, 습식대차, 수명연장제, 화훼포장망, 습식용기 전용 절화 결속기, 절화 포장용 필름)	60
		특용작물시설현대화 (인삼)	철재 해가림 및 하우스 등 인삼 내재해시설, 무인방제시설, 점적 관수시설, 방풍망 시설, 야생동물방지시설, 도난방지시설, 이식기, 파종기, 수확기, 비료살포기, 지주설치기 등 지원	1,100
		특용작물시설현대화 (버섯, 녹차, 약용 등) 사업	특용작물(버섯, 녹차, 약용 등)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재배시설 개·보수 및 생산기기 구입·교체 등 현대화 지원	3,372
		유통, 가공효율화	기존 APC 선별시설 등 증설 보완, 전처리·후처리 설비, 제함기 등 지원	1,100

* 지원대상자에 농업법인이 포함된 사업이며, 사업비는 내역사업 총 예산

제1부
농업법인이란 무엇인가제2부
농업법인의 업무인내제3부
농업법인의 사업범위 호별 예시제4부
농업법인의 분야별 민원 사례제5부
중대재해처벌법 바로 알기별첨
기타 주요 정보

분야 (소관)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사업주요내용	사업비 ('26년)
원예 작물 생산 유통	유통,가공효율화	채소류출하조정 시설지원	수급변동이 큰 주요 채소류(배추, 무, 건고추, 마늘, 양파)의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해 산지에서 상시 출하를 조절할 수 있는 저온저장 시설 및 가공시설 설치 지원	4,000
		공동선별비지원	공동선별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지원	12,911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 (산지저온시설 및 저온수송차량)	생산 및 가격 변동이 심한 채소류에 대해 저온저장 시설 등의 지원을 통한 수급 및 가격안정	1,865
		도매유통활성화지원 (화훼유통개선) 용자	화훼농가의 안정적인 생산·출하유도 및 유통종사자 운영자금 지원으로 공판장 출하 및 농가소득안정 유도	7,000
		온라인 직거래 기반 육성	농산물 온라인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기반 육성 지원	1,190
		물류기기공동이용 지원	농산물 출하시 수송용 팔렛, 플라스틱 상자, 다단식 목재상자 등 물류기기 임차비용 일부 지원	11,068
		도서지역 내륙거점 통합물류운영 지원	도서지역에서 생산되는 원예농산물을 온라인, 산지경매 등을 통합물류로 출하하는 경우 내륙거점 통합물류센터와 소비시간 지선 물류비 및 운영비 일부 지원	1,900
		인삼특용작물유통시설 지원	(유통시설현대화) 우량종자 생산시설, 선별기, 증삼기, 건조기, 세척기, 탈피기, 저온저장고 등 유통·가공시설 및 SW 부문 지원 (마케팅) 경영전략 컨설팅 : 브랜드 육성, 사업추진·운영 계획 수립, 수출 및 마케팅 전략 수립, 홍보 컨설팅 비용 지원	592
	수급안정 소비촉진	산지유통활성화지원 (용자)	산지유통조직의 원물확보자금 등 용자 지원 /농업자금(정책자금) 저리 지원에 따른 금융기관의 이자차액을 보전	28,654
	농산물가격안정 및 수급조절 (농안기금)	농산물생산유통조절 지원	채소가격안정지원·유통협약·명령지원	21,116
	농산물유통개선 (농안기금)	산지유통종합자금 (용자)	채소 및 과일수급안정지원·발식량작물수매지원·두류·맥류계약재배사업 용자지원 (무이자)을 통하여 소비기반 확대 및 농가경영안정화 도모	320,310
	농산물유통개선 (농안기금)	농산물산지유통 활성화지원	농산물산지유통센터지원, 인삼·특용작물 유통시설지원, 저온유통체계구축, 식품소재 및반가공산업육성, 산지조직지원	47,380

* 지원대상자에 농업법인이 포함된 사업이며, 사업비는 내역사업 총 예산

분야 (소관)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사업주요내용	사업비 ('26년)
축산	시설지원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축산농가 대상 스마트축산장비 등의 보급	53,425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보조/용자)	한-미, 한-EU, 영연방 FTA 체결 등 시장개방에 대응, 축사 및 축산시설 현대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 및 환경 개선	142,653
	축사환경개선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축산악취개선)	악취저감 및 가축분뇨 처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장비 등 지원(단년도)	26,460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공동자원화시설 신규)	퇴액비화 및 에너지화(바이오가스, 고체연료·바이오차 등)를 위한 시설·장비 등 지원	24,307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자연순환농업활성화)	자연순환농업 추진 전문경영체 대상 퇴액비 이용 활성화 자금 지원	11,025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공동자원화시설 마을형퇴비저장시설)	가축분 고체연료 또는 바이오차를 생산·저장할 수 있는 시설·장비 등 지원	24,307
	조사료 지원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	사일리지 제조비, 조사료용 종자구입비 및 전문단지 등 지원을 통해 부존자원 활용 및 양질의 조사료 생산·유통기반 확충 도모	89,161
식품	식품안전,환경,인증	GAP 위생시설 보완 지원사업	농산물의 수확 후 위생·안전 관리를 위한 농산물우수관리시설 보완 지원	1,119
탄소 중립 기후 변화	친환경농업	친환경농업 기반구축	생산자단체에 친환경농산물 생산·가공·유통 관련 시설·장비 등 지원	14,633
		농산물직거래 활성화지원(용자)	친환경농업인, 생산자단체 등이 생산한 농축산물 직거래 구매 자금	9,000
	저탄소농축산	저탄소농업프로그램 시범사업	2030 NDC 탄소감축 목표 달성을 위하여 농업인의 저탄소 영농활동 이행에 따른 추가 비용 등 보전	35,625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온실가스 배출 규제대상이 아닌 사업자(농업인)가 자발적으로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하면 정부가 감축량을 인증하여 톤당 1만 원의 인센티브 지급	485
	저탄소인증 지원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농산물 인증)	친환경(유기농, 무농약) 또는 GAP 인증을 받은 농산물을 대상으로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여 해당 품목의 인증배출량 기준보다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한 우리 농산물에 인증 부여	2,496

* 지원대상자에 농업법인이 포함된 사업이며, 사업비는 내역사업 총 예산, 농안사업은 aT자료 참조(www.at.or.kr, 고객지원)

2. 세제지원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세액 감면·공제 등 다양한 세제 감면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지원내용과 요건을 꼼꼼히 따져보고 세제 감면 혜택을 받으세요.

단, 세제감면 신청 시 농업경영체등록에 대한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하오니 사전에 미리 농업법인의 경영체 등록을 완료하여 혜택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없도록 유의하세요!

가. 설립 및 출자 시

① 농지·초지 출자 시 이월과세 적용(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7항, 제68조 제3항)

- 내용 : 농업인*이 2026. 12. 31. 이전에 농지**·초지를 농업법인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이월과세 적용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으로 현물출자하는 농지·초지 또는 부동산이 소재하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에 거주하면서, 4년 이상 직접 경작한 자

**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와 그 경작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로·수로 등에 사용되는 토지를 포함하며, 이때는 실질적으로 농지를 사용하였다는 사실 관계를 현물출자자가 증명하여야 함

- 사후관리 :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100분의50 이상을 출자일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 처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이월과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이자상당액을 가산합니다.

② 그 외 농업용부동산 출자 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7항, 제68조 제3항)

- 내용 : 농업인*이 2026. 12. 31. 이전에 농업법인에 농작물재배업·축산업 및 임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제4항에 따른 농지·초지 제외)을 현물 출자하는 경우 이월과세 적용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으로 현물출자하는 농지·초지 또는 부동산이 소재하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에 거주하면서, 4년 이상 직접 경작한 자

- 사후관리 : 이월과세를 적용 받은 농업인이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일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 처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이월과세액(해당 농업법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 제외)을 양도 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상당액을 가산합니다.

나. 운영 시

① 법인세 면제 및 감면(2026년 12월 31일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1항, 제68조 제1항)

※ 법인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농업경영체 등록을 해야 합니다.

[영농조합법인]

감면사항	대상	감면내역
곡물 및 기타식량작물 재배업 소득	곡물, 쌀, 보리, 콩, 옥수수, 감자 등	법인세 전액면제 (최저한세 적용 제외)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 소득	원예, 화훼, 특용, 과수, 시설작물재배 등	조합원 1인당 연간 수입금액 연간 6억원에 대하여 면제 (최저한세 적용 제외)
작물재배업 외의 소득	농어업경영체법 시행령 제20조의5 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조합원 당 연간 소득금액 1,200만원 면제 (최저한세 적용 제외)

※ 법으로 정한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소득은 법인세가 감면되지 않습니다.

[농업회사법인]

감면사항	대상	감면내역
곡물 및 기타식량작물 재배업 소득	곡물, 쌀, 보리, 콩, 옥수수, 감자 등	법인세 전액면제 (최저한세 적용 제외)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 소득	원예, 화훼, 특용, 과수, 시설작물재배 등	연간 수입금액 50억원에 해당하는 법인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최저한세 적용 제외)
작물재배업 외의 소득	농산물 유통·가공 판매 및 농작업대행, 농어업경영체법 시행령 제19조의 부대사업에 따른 사업소득	감면을 50% (단, 최초로 소득발생연도와 그 다음 4년간)(최저한세 적용)

※ 별첨 6.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중 작물재배업 기준(해당 페이지) 참조

② 취득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1항)

- 75% 감면 :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2026년 12월 31일까지)
 - * 다만, 청년농업법인(대표자가 설립 당시 40세 미만인 청년농업인이며,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 출자자인 경우)은 4년 이내 취득하는 부동산까지 적용
- 50% 감면 : 영농*·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2026년 12월 31일까지)
 - * 영농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은 설립일로부터 2년 이내(청년농업법인 4년 이내) 취득시에는 75% 감면, 2년 이후 취득분은 50% 감면
- 추정대상 : ▲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1년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5년 미만인 상태에서 법원의 해산명령을 받은 경우

③ 영농·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재산세 50% 감면

(2026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2항)

- 추정대상 : ▲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1년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5년 미만인 상태에서 법원의 해산명령을 받은 경우

④ 부가가치세 면제 등

- 면제 대상 : 농업경영 및 농작업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2026년 12월 31일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3호)
-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 농업용 파이프 등 69개 품목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제1항)
- 부가가치세 영세율 : 비료, 농약, 배합사료, 농업용기자재에 대한 영세율 적용(2028년 12월 31일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제6호)
- 면세유 : 농업용석유류에 대한 면세(2026년 12월 31일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항 제1호)

⑤ 담보물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50%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 중앙회, 농협은행의 영농자금, 축산자금, 영림자금을 융자하는 경우 및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융자의 경우로 한정한다(2028년 12월 31일까지)

⑥ 영농, 영림, 가축사육, 양식, 어획 등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소에 대해서는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 면제(2027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2항)

다. 배당시

① 영농조합

배당소득세 면제 및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2항, 제3항, 2026년 12월 31일까지)

- 요건 : 법인의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제출
- 면제대상 : 식량작물재배업 및 식량작물재배업을 제외한 작물재배업으로 법인세가 감면되는 소득에 대하여 전액면제
- 감면대상 : 위 면제대상을 제외한 소득에 대한 배당에 대하여 조합원 당 연간 1,200 만원에 대한 소득세 감면
- 감면초과금액은 5% 분리과세(금융소득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

② 농업회사법인

배당소득세 면제 및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4항, 2026년 12월 31일까지)

- 요건 : 법인의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제출
- 면제대상 :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재배업 소득
- 감면대상 :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재배업 소득을 제외한 법에서 정한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분리과세
- 기타소득 : 감면하지 않고 분리과세 제외

[농업법인 주요 감면 내용]

구분		내용
법인	법인세 조특법 제66조, 제68조 (2026. 12. 31)	①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재배업 : 전액면제 ②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재배업 외 작물재배업 : 감면 - 영농조합법인 : 조합원 1인당 연간 수입금액 6억에 해당하는 소득분 - 농업회사법인 : 연간 수입금액 50억 이하의 소득분 ③ 작물재배업 외 대통령이 정한 소득 : 감면 - 영농조합법인 : 조합원 1인당 연간 소득금액 1,200만원에 대한 법인세 감면 - 농업회사법인 : 최초 소득이 발생한 연도와 그 다음연도부터 4년간(50% 감면) (축산업, 임업, 농작업대행, 농산물유통, 농산물가공, 농어촌관광휴양사업 및 부대사업) [2014년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하면서 법인세가 감면소득에 대하여 지방소득세 과세]
	부가가치세 조특법 제105조, 제106조, 제106조의2	① 농업경영 및 농작업대행구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2026. 12. 31.) ② 농업용자재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2028. 12. 31.) ③ 농업용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후 환급 ④ 농업용석유류에 대한 면제(2026. 12. 31.)
	취득세 지방특례제한법 제11조 (2026. 12. 31)	① 영농에 사용하기 위해 설립일로부터 2년 이내(청년농업법인 4년 이내) 취득한 부동산 취득세 75% 감면 ② 영농, 유통, 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 취득세 50% 감면
	등록면허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조	① 담보물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50% 면제(2028. 12. 31.) ② 영농, 영림, 가축사육, 양식, 어획 등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소에 대해서는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조, (2027. 12. 31.))
	재산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2026. 12. 31)	과세기준일 현재, 영농, 유통, 가공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50% 감면
주주 (조합원)	양도소득세 조특법 제66조, 제68조 (2026. 12. 31)	① 대통령령으로 정한 농업인이 농지, 초지를 현물출자시 이월과세 적용 ② 대통령령이 정한 농업인이 작물재배업, 축산업 및 임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을 현물출자시 이월과세 적용(1항 적용 부동산은 제외)
	소득세 조특법 제66조, 제68조 (2026. 12. 31)	① 영농조합 - 식량작물재배업 및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소득 중 법인세가 전액 감면되는 소득에 대한 배당 : 배당소득세 전액면제 - 위 감면을 제외한 소득 : 조합원 1인당 연간 1,200만원 감면하고 1,200만원을 초과하는 배당에 대하여서는 5% 소득세과세(분리과세하며 초과되는 분에 대한 지방소득세는 10%과세된다. 따라서 1,200 초과금액은 5.5% 원천징수) ② 농업회사법인 - 식량작물재배업 : 전액면제 - 식량작물재배업을 제외한 작물재배업, 농산물유통, 가공, 및 부대사업: 종합소득에 합산제외(분리과세) - 기타소득 : 종합소득합산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구분	내용
면제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2026. 12. 31.)	■ 농업경영 및 농작업의 대행구역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합니다. ※ 농작업의 대행, 선별, 포장구역은 면제되지만 운반, 저온저장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사후환급 (조특법 제105조의2)	■ 농업인이 농업에 사용하는 농·축산업용 기자재의 부가가치세는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은 농업법인이 직접 작물을 재배하거나 축산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공동구매, 도·소매업의 경우 농업인이 직접 환급받아야 합니다.
영세율 적용 (조특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6호) (2028. 12. 31.)	■ 농기계 31종(콤바인, 파종기, 육묘상자 등), 축산용 기자재 42종(사료통, 사료 배합기, 축산분뇨제거기 등), 임업용기자재 15종(산불진화용 펌프, 톱밥제조기 등), 비료, 농약, 사료, 친환경 농자재 50종(키토산, 목초액, 천적 등)이 있습니다. ※ 위의 사항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아하, 그렇군요!

- 상기 법령으로 정한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소득은 법인세가 감면되지 않습니다. 영농 조합법인의 기타소득에 대하여서는 배당소득이 분리과세 되지만 농업회사법인의 경우에는 분리과세되지 않습니다.
- 기타소득은 농업법인의 유형자산처분이익 등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에는 법인세 감면 대상이 되지 않으며 납세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 조특법 시행령 제66조 제7항 및 제68조 제3항에 따라 현물 출자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농지는 전·답입니다.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와 그 경작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로·수로 등에 사용되는 토지 등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합니다. 단, 조특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각호의 농지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 세제에 대한 자세한 해석 등 내용은 국세(법인세, 부가가치세, 소득세)를 담당하는 재정경제부, 지방세(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임업용 기자재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제7조제1호 관련)

1. 농업·임업용 필름(비닐하우스용, 보온못자리용, 작물피복용, 과수 또는 수실류(樹實類) 재배용에 한정한다)과 그 부속자재(비닐 고정용 패드 및 클립, 파이프조리개, 고정구 및 연결핀, 파이프꽃이에 한정한다)
2. 농업·임업용 파이프(작물재배용 및 축산업용 비닐하우스와 과수 또는 수실류 재배용에 한정한다)
3. 농업·임업용 포장상자(종이재질의 농산물·임산물·축산물 포장용에 한정한다)
4. 농업·임업용 폴리프로필렌 포대(곡물 포장용에 한정한다)
5. 과일 봉지(과일의 병충해 방지 및 상품성 향상을 위해 열매에 씌우는 봉지에 한정한다)
6. 인삼재배용 지주목·광망·차광지 및 은박지
7. 차광망(연초·표고버섯 건조용 또는 과수·화훼·채소·야생화·산채 재배용에 한정한다)
8. 농업·임업용 부직포(작물·수실류 재배용 및 축산업용에 한정한다)
9. 농업·임업용 배지(양액·버섯 재배용에 한정한다) 및 양송이 재배용 복토
10. 축산업용 톱밥(「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사용기준을 충족한 것에 한정한다)
11. 이앙기용 멀칭종이(논농사 피복용에 한정한다)
12. 농업·임업용 방조망(防鳥網) 및 방풍망(과수·수실류·작물 재배용 및 축산업용에 한정한다)
13. 농업·임업용 양수기
14. 범씨발아기
15. 동력배토기
16. 동력예취기
17. 가축급여(家畜給與) 조사료(粗飼料) 생산용 필름
18. 화훼·야생화용 종자류
19. 채소봉지(애호박·오이용에 한정한다)
20. 버섯재배용기
21. 축산업용 차량방역기
22. 폐사축처리기
23. 축사세척기
24. 카우브러쉬
25. 축산 약취제거기
26. 「약사법」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
27. 작물 지주대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개정 2026. 2. 27)



아하, 그렇군요!

- | | |
|---|---|
| 28. 농업·임업용 무인헬리콥터 | 49. 축산 착유용 라이너 |
| 29. 농업·임업용 로더(2톤 미만) | 50. 축산용 분만실 깔판 |
| 30. 농업·임업용 굴삭기(1톤 미만) | 51. 축산용 대인소독기 |
| 31. 동력제초기 | 52. 축산용 방역복 |
| 32. 농업·임업용 고압세척기 | 53. 조사료 생산용 네트 |
| 33. 농산물 및 임산물 저온저장고(바닥면적이 17m ²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 54. 팽연왕겨 |
| 34. 농업·임업·축산용 환풍기(컨트롤러를 포함하며, 시설하우스용 또는 축사용에 한정한다) | 55. 탈봉기 |
| 35. 축산용 인공수정 주입기 | 56. 소문망 |
| 36. 축산용 인공수정 주입용기 | 57. 조사료 생산용 종자류 |
| 37. 축산용 정액 희석제 | 58. 점적(點滴)호스 (점적테이프 및 분수호스를 포함한다) |
| 38. 축산용 인큐베이터 | 59. 농업용수 처리기 |
| 39. 축산용 출하돈 선별기 | 60. 농업용 제습기 |
| 40. 축사용 보온등 컨트롤러 | 61. 농업용 건조기 |
| 41. 축사용 쿨링 패드 | 62. 농업용 선별기 및 정전기 |
| 42. 축사용 워터컵 | 63. 개량 물꼬(논물의 수위를 조절하는 장치를 말한다) |
| 43. 축사용 바닥재[철재(鐵材) 바닥재에 한정한다] | 64. 농업용 관비기 |
| 44. 농산물·임산물 수확용 상자 (플라스틱 재질에 한정한다) | 65. 농업용 양액기 |
| 45. 화훼·야생화 재배용 배지 | 66. 스마트팜용 센서류(온실이나 축사의 온도, 습도, 이산화탄소, 악취 등을 감지하여 환경을 조절하는 것을 말한다)·구동기류(驅動機類)·복합환경제어기 및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
| 46. 화훼·야생화 재배용 화분(폴리에틸렌, 플라스틱 및 고무 재질에 한정한다) | 67. 농업용 지게차 |
| 47. 유해동물(해충을 포함한다) 포획기 | 68. 콩나물 재배용기 |
| 48. 농업용 양파망·마늘망 | 69. 콩나물 두절기 |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개정 2026. 2. 27)

제1부
농업법인이란 무엇인가제2부
농업법인의 업무인내제3부
농업법인의 사업범위 호별 예시제4부
농업법인의 분야별 민원 사례제5부
종대제해처벌법 바로 알기별첨
기타 주요 정보



부가가치세 영세율 농기자재 품목

농업용 기자재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제3조제3항 관련)

- | | | |
|-----------------------|-------------------|-----------------------|
| 1. 경운기 및 부속작업기 | 12. 농업용 난방기 | 24. 동력가지절단기 및 파쇄기 |
| 2. 농용트랙터 및 부속작업기 | 13. 잎담배건조레이크이송기 | |
| 3. 관리기 및 부속작업기 | 14. 농업용 방제기 | 25. 동력수피기 및 파쇄기 |
| 4. 이앙기 및 부속작업기 | 15. 탈곡기 | 26. 동력비닐피복기 및 동력피복개폐기 |
| 5. 목책기(농작물 보호용만 해당한다) | 16. 동력휴립기 | 27. 육묘상자 |
| 6. 콤바인 | 17. 비료살포기 | 28. 파종기 |
| 7. 곡물건조기 | 18. 동력탈피기 및 박피기 | 29. 농업용 스프링클러 |
| 8. 동력중경제초기 | 19. 농산물 결속기 | 30. 버섯재배소독기 |
| 9. 동력수확기 | 20. 농산물 운반대 및 운반차 | |
| 10. 동력상토조제기 | 21. 농산물 세척기 | |
| 11. 정식기 | 22. 동력심경기 | |
| | 23. 동력구굴기 | |

축산업용 기자재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제3조제4항 관련)

- | | | |
|----------------------------------|---------------|--------------------------|
| 1. 육추기 | 15. 집란벨트 | 30. 축산분뇨살포기 |
| 2. 양계용케이지 | 16. 부화기 | 31. 축산분뇨저장탱크 |
| 3. 축산급이기 | 17. 착유기 | 32. 축산분뇨포장기 |
| 4. 자동급수기 | 18. 원유냉각기 | 33. 산란상 |
| 5. 니 플 | 19. 사료배합기 | 34. 난좌 |
| 6. 부리절단기 | 20. TMR배합기 | 35. 바닥재(플라스틱, 콘스라트재에 한함) |
| 7. 포유기 | 21. 사료절단기 | 36. 사료통 |
| 8. 양돈케이지 | 22. 싸이로 | 37. 벌통 |
| 9. 이표기 | 23. 사료저장탱크 | 38. 채밀기(採蜜器) |
| 10. 가축 생체정보 수집기
(임신진단기를 포함한다) | 24. 축산분뇨제거기 | 39. 소초(巢礎) |
| 11. 음수투약기 | 25. 축산용 정화조 | 40. 소광대 |
| 12. 목책기 | 26. 축산분뇨용 교반기 | 41. 사양기(飼養器) |
| 13. 집란기 | 27. 축산용 분뇨펌프 | 42. 격리판 |
| 14. 계란선별기 | 28. 축산분뇨고액분리기 | |
| | 29. 축산분뇨발효건조기 | |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개정 2026. 2. 27)



아하, 그렇군요!

부가가치세 영세율 농기자재 품목(계속)

임업용 기자재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제3조제5항 관련)

- 다만,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또는 중앙회의 장으로부터 영림업용 또는 별목업용으로 사용되는 것임을 확인받은 것에 한한다.

- | | | |
|---------------------------------|---------------------------|--------------------|
| 1. 임업용 동력천공기 | 5. 임업용 원치 | 10. 포워더(Forwarder) |
| 2. 임업용 약제주입기 | 6. 임업용 물받이형 미끄럼틀 | 11. 목재파쇄기 |
| 3. 산불진화용 펌프
(등짐펌프를 포함한다) | 7. 트랙터부착형 집재기 | 12. 톱밥제조기 |
| 4. 임업용 동력기계톱
(동력가지절단기를 포함한다) | 8. 굴삭기부착형 집재기 | 13. 동력임내차 |
| | 9. 타워야더
(Tower yarder) | 14. 밤수집기 |
| | | 15. 자동지타기 |

유기농어업자재 허용물질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제3조제6항제1호 관련)

- | | |
|-------------------------------------|--|
| 1. 키토산(Chitosan) | 16. 이탄(泥炭, Peat), 토탄(土炭, Peat moss) 및 토탄 추출물 |
| 2. 목초액 | 17. 사리염(황산마그네슘) 및 천연석(황산칼슘) |
| 3. 천적 | 18. 석회석 등 자연에서 유래한 탄산칼슘 |
| 4. 약초 등 천연식물에서 추출한 제재
(담배는 제외한다) | 19. 생석회(산화칼슘) 및 소석회(수산화칼슘) |
| 5. 허브식물 및 기피식물 | 20. 점토광물[벤토나이트·펠라이트 및 제올라이트·일라이트 등] |
| 6. 님(Neem)추출물 | 21. 붕소·철·망간·구리·몰리브덴 및 아연 등 미량원소 |
| 7. 데리스(Derris) 추출물 | 22. 맥반석 등 광물질 가루 |
| 8. 제충국 추출물 | 23. 자연암석분말·분쇄석 또는 그 용액 |
| 9. 담배잎차(순수니코틴은 제외한다) | 24. 석회질 마그네슘 암석 |
| 10. 해조류, 해조류 추출물 및 해조류 퇴적물 | 25. 마그네슘 암석 |
| 11. 버섯 추출액 | 26. 황산칼륨, 랑베나이트 (해수의 증발로 생성된 암염) 또는 광물염 |
| 12. 클로렐라(담수녹조) 및 그 추출물 | |
| 13. 규산염 및 벤토나이트(Bentonite) | |
| 14. 규산나트륨 | |
| 15. 규조토 | |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개정 2026. 2. 27)



아하, 그렇군요!

유기농어업자재 허용물질(계속)

- | | |
|--|--------------------|
| 27. 칼륨암석 및 채굴된 칼륨염 | 38. 황 |
| 28. 천연 인광석 및 인산알루미늄칼슘 | 39. 구리염 |
| 29. 미생물 및 미생물추출물 | 40. 산염화동 |
| 30. 혈분·육분·골분·깃털분 등 도축장과
수산물 가공공장에서 나온 동물부산물 | 41. 밀납 및 프로폴리스 |
| 31. 구아노(바닷새, 박쥐 등의 배설물) | 42. 중탄산나트륨 및 중탄산칼륨 |
| 32. 동·식물성 오일 | 43. 과망간산칼륨 |
| 33. 파라핀 오일 | 44. 식초 등 천연산 |
| 34. 식품 및 섬유공장의 유기적 부산물 | 45. 나무 숯 및 나뭇재 |
| 35. 제당산업의 부산물(당밀, 비나스, 식품등
급의 설탕 및 포도당을 포함한다) | 46. 에틸알콜 |
| 36. 유기농장 부산물로 만든 비료 | 47. 인산철 |
| 37. 유기농업에서 유래한 재료를 가공하는
산업의 부산물 | 48. 성 유인물질(페로몬) |
| | 49. 인지질(Lecithin) |
| | 50. 카세인(유단백질) |

3. 농업법인 실태조사

가. 조사 목적

본 조사는 농어업경영체법 제20조의2에 근거하여 농업법인의 법령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설립 요건 미충족, 목적 외 사업 영위 등 법령 위반 법인을 정비하여 농업법인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적 신뢰를 높이기 위해 시행됩니다. 2022년부터 농업법인에 대한 실태조사 주기를 1년에 1회 이상으로 강화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하, 그렇군요!

실태조사와 통계조사

-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실태조사와 통계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농업법인 실태조사) 농업법인의 설립요건, 사업범위 등의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건전한 농업법인의 운영을 도모하고자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는 행정조사입니다.
 - (농업법인 통계조사) 정책기초자료 마련 등을 목적으로 매년 농업법인의 매출액, 종사자 수 등 농업법인의 경영 현황을 분석하여 경영실태 결과를 작성·공표하는 통계조사입니다.
- 실태조사와 통계조사는 목적 및 조사항목 등이 다르므로 조사자들이 귀하의 농업법인을 방문 시 번거로우시더라도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나. 조사 방법

① 조사 주체 및 조사반 편성

농업법인 실태조사는 시·도 주관하에 시·군·구별로 조사반을 편성하여 실시합니다. 각 지자체는 점검일정과 장소, 점검반 편성, 점검사항 등을 포함한 월별 자체 조사계획(일정)을 수립하여 추진하며, 필요시 농촌관광 휴양사업, 농촌융복합산업 등 관련 부서와 합동 점검반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② 조사 대상

농식품부는 농업법인의 등기전산자료를 확보하여 법인 기본정보를 확인하고, 등기부 상으로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법인을 제외하여 조사대상을 선정합니다.

실태조사는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의 법인을 중점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여 우선적으로 조사합니다.

- 과거 점검시 위반업체, 위반사항 미이행 업체
- 부동산업 영위 및 사업범위 위반 우려 업체

③ 조사 방법

조사대상 법인에게 자료 제출(서면조사) 요구 후 조사원이 직접 방문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합니다. 조사 개시 7일 전까지 관련 사항을 서면 통지합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이나 조사에 불응할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업법인 실태조사 제출 자료]

조사항목	제출자료
설립요건	■ 조합원(준조합원 포함), 주주 또는 사원 명부 ■ 명부에 있는 각 구성원의 농업인·농업생산자단체 증빙서류 - (농업인) 농업인 확인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농업경영체 증명서 - (농업생산자단체) 법인등기부등본
사업범위	■ 법인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 표준재무제표증명 ■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명세서(해당 법인, 세무서 제출서류 사본)
1년 이상 미운영	■ 표준재무제표증명(법인세 신고내역을 입증하려는 법인만 해당) ■ 자경증명
유사 명칭 사용	■ 정관

* 실태조사 여건에 따라, 제출 자료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되는 제출 자료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농업법인 실태조사 제출 자료 인정 기준]

구분	자료 인정기준
조합원·주주·사원 명부	자료제출 요구일 이후에 작성된 자료
정관,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마지막 변경사항이 반영되어 있는 자료
농업인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자료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농업경영체 증명서 자경증명, 사업자등록증명	자료제출 요구일 이후에 발급된 자료
표준재무제표증명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명세서	조사 전년도 기준 법인세 신고자료 (단, 1년 이상 미운영 여부 확인을 위해서는 조사 전년도 이전 표준재무제표증명도 검토 필요)

다. 조사 내용

농업법인 설립요건, 사업범위, 1년이상 미운영, 유사명칭 사용 등 농어업경영체법 시행령 제5조~제20조의5에 따른 준수사항 등을 확인합니다.

① 설립요건 (농어업경영체법 제16조, 제19조)

- 영농조합법인은 농업인(생산자단체) 조합원 5인 이상,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출자 비율이 총출자액의 10% 이상(총출자액 80억원 초과시 8억원 이상)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설립요건 확인사항 및 방법]

확인사항	확인방법
농업인	• 명부, 증빙서류의 인적 사항 일치 여부 확인
농업생산자단체	• 법인 형태, 자본금 1억원 이상, 농업인 5인 이상 참여 여부 등 확인 (법인 형태별 요건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생산자단체 범위」 확인)

② 사업범위 (농어업경영체법 시행령 제20조의5)

- 농업법인의 목적 외 사업 영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표준재무제표증명 등 관련 서류를 확인합니다. 서류상 위반 가능성이 높거나 영업 상태 확인이 필요한 법인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합니다.
- 향후 임원 변경 신고 등 법인 등기사항 변경시 해당 부적합 사업범위를 반드시 함께 정비(삭제 또는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범위 관련 서류 확인사항]

구분	확인사항
법인등기부등본	• ‘목적’에 기재된 사업 확인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증명	• 업태, 종목 확인
표준재무제표증명	• 표준손익계산서 상 매출액, 영업 외 수익 확인
부동산 거래신고 정보	• 농업과 무관한 지목의 매수실적 확인 - 염전, 주유소용지, 양어장, 공원, 체육용지, 유원지 등

③ 미운영 법인

- 법인세 미신고 등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법인을 대상으로, 소유 농지의 실제 이용 여부에 대해 현장 조사를 실시합니다.

[사업범위 관련 서류 확인사항]

구분	확인사항
사업자등록	• 농업을 업종으로 법인세를 신고했던 내역이 있는 사업연도(농업법인 설립 후 현재까지)의 표준재무제표증명 확인
소유농지 자경	• 실태조사 행정자료(소유농지 현황)를 활용하되, 필요시 농지 소재 시·구·읍·면 장이 발급한 자경증명을 확인하고 농업법인 소유 농지의 실제 이용 현황 등을 현장조사하여 확인

④ 유사명칭 사용 법인

- 법인 명칭에 ‘농업법인’이 포함된 경우, 농업법인 표준정관례(명칭·목적·사업 등)의 준수 여부를 확인합니다. 특히 설립 요건과 사업 범위가 관련 법령에 따른 농업법인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합니다.

라. 실태조사 후속조치

실태조사 결과 법령 위반이 확인된 농업법인은 위반 사안의 경중에 따라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법원 해산명령 청구, 벌칙 부과 등 관련 법령에 의거한 엄격한 후속 조치 대상이 됩니다.

특히 장기 휴·폐업, 소재 불명, 일반 법인 전환 등이 확인된 법인은 보조금 및 융자 등 정책 지원 수혜를 차단하기 위해 농업경영체 등록 말소 대상이 됩니다.

또한, 설립 요건 미충족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법인은 요건 보완 후 반드시 경영체 등록 정보를 수정해야 하며, 농지를 활용해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등 목적 외 사업을 한 법인은 농지 처분 명령 등의 제재를 받게 되므로 운영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어업경영체법 개정(법률 제20081호)에 따라, 장기간 운영되지 않는 휴면 영농조합법인을 일괄 정비하기 위한 ‘해산간주제’가 2027년 1월 24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마지막 등기 후 5년이 경과한 법인은 법원으로부터 영업 지속 여부를 신고 하도록 공고 받게 되며,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해산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해산간주 후 3년 이내에는 계속 등기를 통해 법인을 살릴 수 있으나, 3년이 경과 하면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간주되어 법인이 완전히 소멸되므로 등기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위반법인 조치사항]

조치 대상	처분유형
설립요건(조합원 수, 비농업인 출자한도) 미충족후 1년 미만 * 농지를 활용 또는 전용하여 부동산업 영위 시(농지처분)	시정명령
- 설립요건 미충족 후 1년 경과 - 사업범위 위반(부동산업 금지위반 포함) 1년 이상의 휴업 - 시정명령 3회 이상 불응	해산명령청구
- 농지를 활용 또는 전용하여 부동산업 영위 - 부정한 방법으로 농업법인 설립(변경) 신고·등기	과징금·벌칙
- 농업법인 유사명칭 사용 - 실태조사 불응, 조사 방해 - 시정명령 2회 이상 불응	과태료

[실태조사 후속조치 개요]

위반 및 관련 사항	행정조치	근거법령
○ (영농조합) 조합원 5명 미만(1년 미만) ○ (농업회사) 비농업인 출자한도 초과(1년 미만) ○ 농지를 활용 또는 전용하여 부동산업 영위	▶ 시정명령 (지자체 → 법인) - 농지처분명령	- 농어업경영체법 §20조의2 ⑧ - 농지법 §11 ①
○ (영농조합) 조합원 5명 미만이 된 후 1년 경과 ○ (농업회사) 비농업인 출자한도 초과 후 1년 경과 ○ 사업범위 위반 - 농지를 활용 또는 전용하여 부동산업 영위 등 ○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미운영 ○ 시정명령 3회 이상 불응	▶ 해산명령청구 (지자체 → 법원)	- 농어업경영체법 §20조의3 ①, ② - 상법 §176 ①
○ 농업법인 유사명칭 사용 * (1회) 25만원, (2회) 50, (3회) 100 ○ 실태조사 불응 및 방해 * (1회) 100만원, (2회) 200, (3회) 300 ○ 시정명령 2회 이상 불응 * (1회) 300만원, (2회) 300, (3회) 300	▶ 과태료 부과 (지자체 → 법인)	농어업경영체법 §30, §33 ①, ②
○ 농지를 활용 또는 전용하여 부동산업 영위 *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 농지의 양도차액 상당 금액 * 부동산 임대업 : 농지의 임대료 상당 금액	▶ 과징금 부과 (지자체 → 법인)	농어업경영체법 §19조의5, §20조의4
○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변경) 신고·등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농지를 활용 또는 전용하여 부동산업 영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종업원 등이 부동산업 영위에 관여한 경우	▶ 벌칙 (지자체 → 수사기관)	- 농어업경영체법 §31조의2 - 농어업경영체법 §19조의5, §31, §32
○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종업원 등이 법인 또는 개인 업무에 관하여 부동산업 영위에 관여한 경우 *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 농지의 양도차액 상당 금액 * 부동산 임대업 : 농지의 임대료 상당 금액	▶ 과징금 부과 (지자체 → 법인)	농어업경영체법 §19조의5, §20조의4

< 농어업경영체법 개정안 시행('27.1.24.) >

○ 마지막 등기 후 5년 경과 + 영업을 폐지하지 않았다는 신고 미이행	▶ 해산간주 (법원 → 법인)	- 농어업경영체법 §18조의3 (신설) - 상법 §520조의2
○ 영업을 폐지하지 않았다는 신고 미이행 후 3년 경과	▶ 청산종결간주 (법원 → 법인)	- 농어업경영체법 §18조의3 (신설) - 상법 §520조의2

① 시정명령

실태조사를 통해 농업법인이 시정명령을 받는 경우는 ① 영농조합법인이 ‘조합원 5인 이상이 농업인’ 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② 농업회사법인이 ‘농업인의 출자비율 10% 이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비농업인이 보유한 출자지분이 출자한도를 초과한 경우)입니다. 시정명령에 대한 세부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정명령 절차]

절 차	내 용	주 체	근 거 법 률
사전통지	시정명령 통지	지자체 → 법인	행정절차법 §21
▼			
의견제출	시정명령 처분에 대한 의견제출	법인 → 지자체	행정절차법 §27
▼			
제출의견 검토 및 반영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반영	지자체	행정절차법 §27조의2
▼			
시정명령	시정기간 : 6개월 ※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한 차례만 3개월 범위에서 기간 연장 가능	지자체 → 법인	농어업경영체법 §20조의2
▼			
(2차)시정명령	1차 시정명령 불응시 시정명령 재처분	지자체 → 법인	농어업경영체법 §20조의2
▼			
(3차)시정명령 및 과태료	2차 시정명령 불응시 시정명령 재처분 시정명령에 2회 이상 불응시 과태료 부과	지자체 → 법인	농어업경영체법 §20조의2 농어업경영체법 §33
▼			
해산명령 청구	시정명령에 3회 이상 불응시 해산명령 청구	지자체 → 법원	농어업경영체법 §20조의3

② 해산명령 청구

실태조사를 통해 농업법인이 해산명령 청구를 받는 경우는 사업범위를 위반하였거나, 시정명령 3회 이상 불응, 1년 이상 장기 휴업, 영농조합법인 조합원 5명 미만이 된 후 1년 경과 및 농업회사법인 비농업인 출자한도 초과 후 1년이 경과된 경우입니다. 해산명령 청구에 대한 세부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산명령 청구 절차]

절 차	내 용	주 체	근 거 법 률
사전통지, 의견청취	해산명령 청구 통지 및 의견청취	지자체 → 법인	행정절차법 §21, §22
▼			
해산명령 청구	법원에 해산 청구	지자체 → 법원	농어업경영체법 §20조의3
▼			
관보 공고	해산명령 신청이 있는 경우 관보 공고	법원	비송사건절차법 §92
▼			
의견청취	이해관계인과 감사의 의견 청취	법원	비송사건절차법 §90②
▼			
해산을 명하는 재판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해산명령	법원	비송사건절차법 §90①
▼			
등기촉탁	해산재판 확정시 본점과 지점소재지 등 기소에 해산등기 촉탁	법원 → 등기소	비송사건절차법 §93
▼			
청산인 선임	법원이 청산인 선임, 보수액은 법원이 정하고 회사가 지급	법원	상법 §252 비송사건절차법 §123
▼			
청산인 등기	업무 해태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청산인	상법 §253, §635
▼			
청산 실시	업무 해태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청산인	상법 §254, §635
▼			
청산종결 등기	업무 해태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청산인	상법 §264, §635

③ 과징금

실태조사를 통해 농업법인이 농지를 활용 또는 전용하여 부동산업을 영위한 것이 확인 되면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게 됩니다. 농지를 활용하여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것은 과징금 처분 외 해산명령 청구 등 법적인 제재가 엄격히 뒤따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과징금 부과에 대한 세부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과징금 부과 절차]

절 차	내 용	주 체	근 거 법 률
사전통지	과징금 부과 통지	지자체 → 법인	행정절차법 §21
▼			
의견제출	의견 진술 및 필요한 자료 제출	법인 → 지자체	행정절차법 §27
▼			
제출의견 검토 및 반영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반영	지자체	행정절차법 §27조의2
▼			
과징금 부과 (불복 시)	과징금 부과 (행정심판)	지자체 → 법인	농어업경영체법 §20조의4
▼			
행정심판 청구	심판청구서 제출	법인 → 지자체 또는 위원회	행정심판법 §23
▼			
답변서 제출	답변서를 위원회에 제출	지자체 → 위원회	행정심판법 §24
▼			
심리	보정, 자료의 제출 요구, 증거조사 등	위원회	행정심판법 제5장
▼			
재결 (불복 시)	서면으로써 재결 (행정소송)	위원회	행정심판법 제6장
▼			
소의 제기	소장 제출	법인 → 법원	민사소송법 제2편 제1장
▼			
답변서 제출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	지자체 → 법원	민사소송법 제2편 제1장
▼			
변론준비 및 변론기일	준비서면 공방, 장점정리, 당사자신문 등	법원 → 법인, 지자체	민사소송법 제2편 제2장
▼			
판결선고	선고에 의해 판결의 효력 발생	법원	민사소송법 제1편 제4장 제5절

④ 과태료

실태조사 시 요청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 실태조사에 불응하거나 실태조사를 방해하면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게 됩니다. 또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농업법인이 2회 이상 불응하거나, 농업법인이 아니면서 유사 명칭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면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게 됩니다. 과태료 부과에 대한 세부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과태료 부과 절차]

절 차	내 용	주 체	근 거 법 률
사전통지	과태료 부과 통지	지자체 → 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16
▼			
의견제출	의견 진술 및 필요한 자료 제출	법인 → 지자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16
▼			
과태료 부과 (불복 시)	과태료 부과	지자체 → 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17
이의제기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	법인 → 지자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20
▼			
법원에의 통보	이의제기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	지자체 → 법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21
▼			
행정청 통보 사실의 통지	행정청의 통보사실을 검사에게 통지	법원 → 검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30
▼			
심문	당사자 진술 청취 및 검사 의견 진술	법원 → 법인, 검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31
▼			
조서의 작성	심문에 관하여 조서를 작성	법원 사무관 등	질서위반행위규제법 §35
▼			
재판	이유를 붙인 결정서로써 과태료 재판	법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36
▼			
결정의 고지	당사자와 검사에게 결정 고지	법원 → 법인, 검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37
▼			
과태료 재판의 집행	검사의 명령으로 집행하거나, 행정청에 과태료 재판의 집행을 위탁	검사 → 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42, §43

제2부

농업법인 업무안내

제1장 농업법인 설립과 등록

제2장 농업법인 분야별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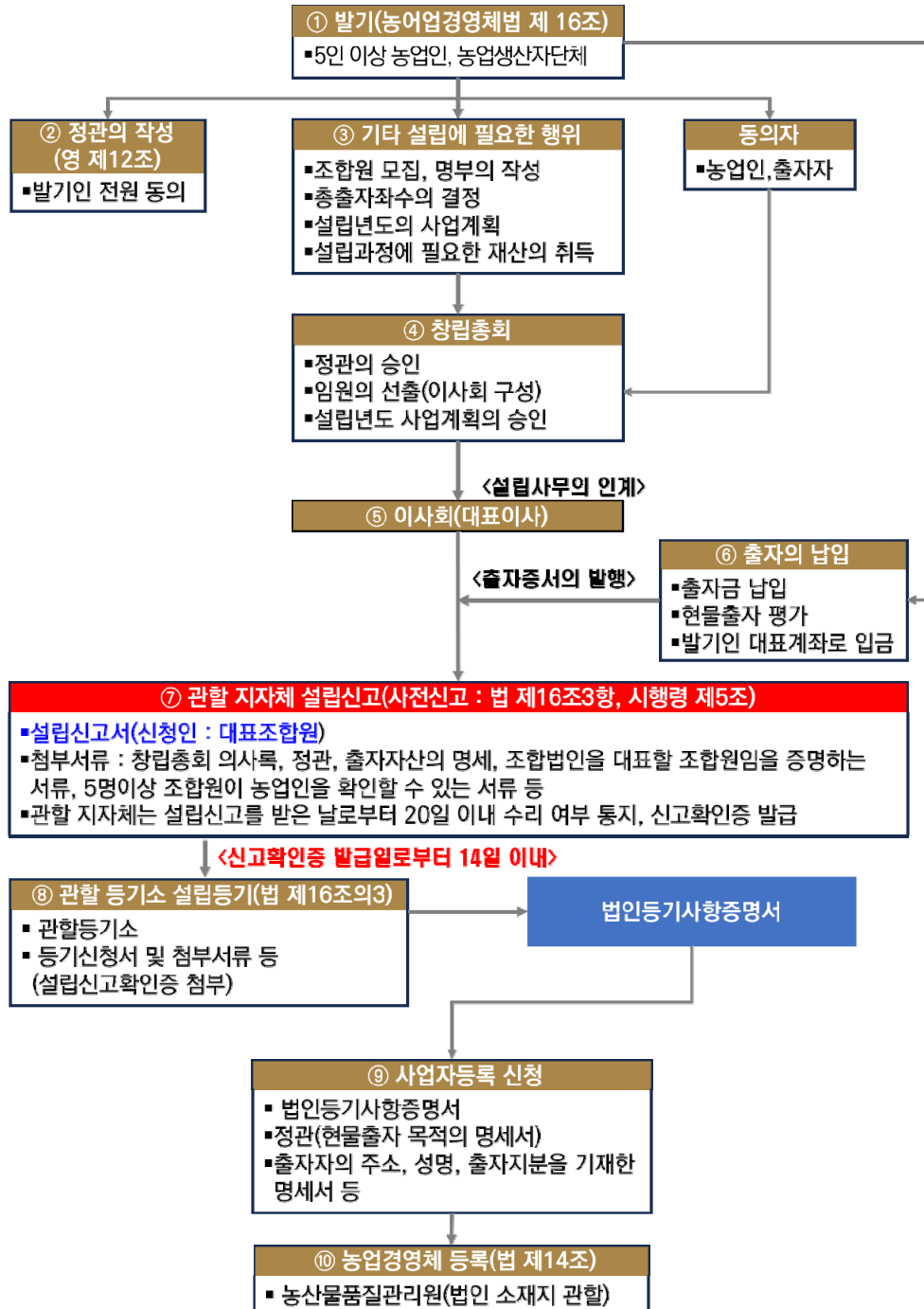
제3장 농업법인 해산과 청산

농업법인 설립과 등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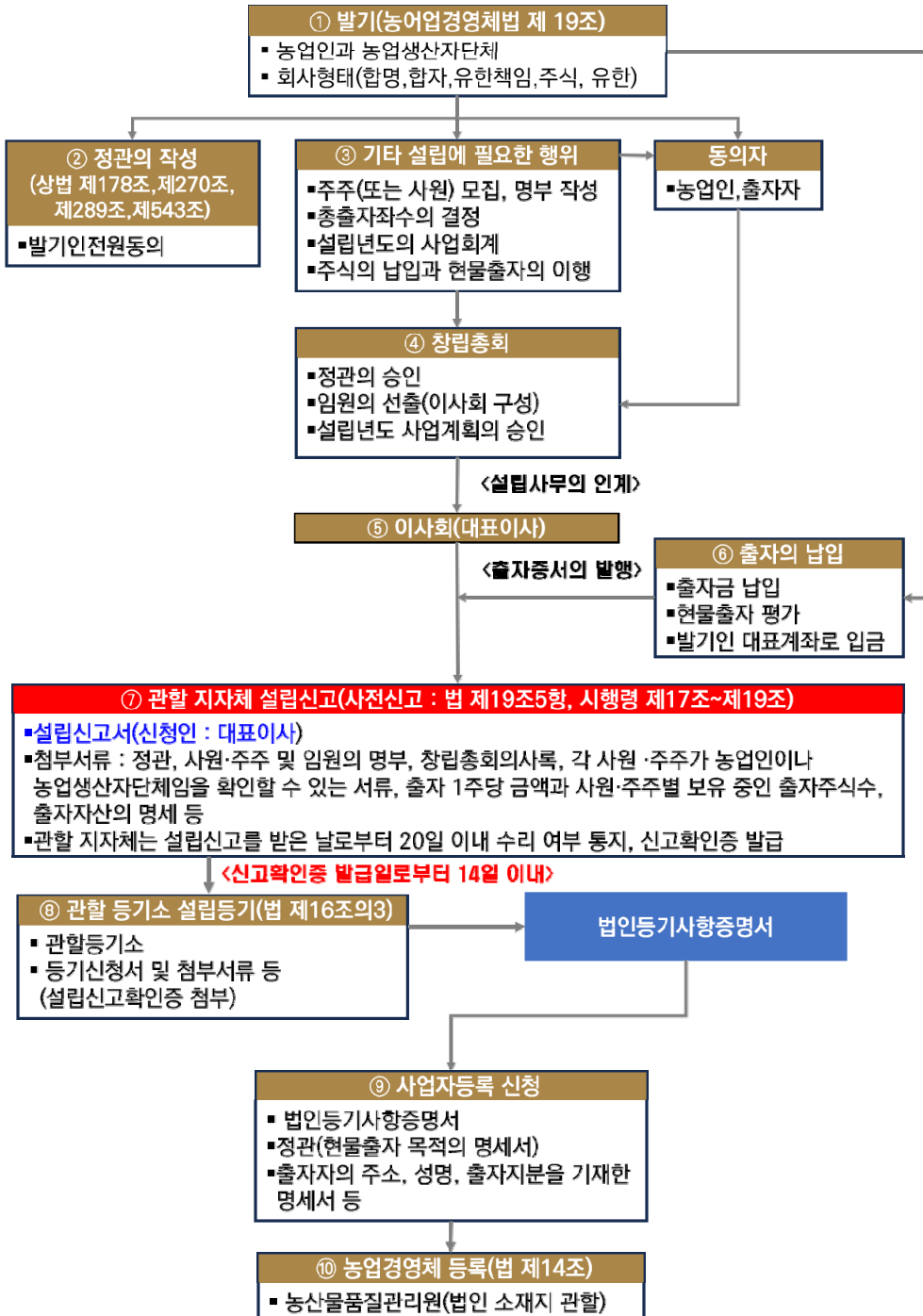
I 농업법인 설립 절차 안내



1. 영농조합법인 설립 절차



2. 농업회사법인 설립 절차



II 발기설립과 모집설립

1. 구분방법

주식회사 설립 시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을 인수하는 방법에 따라 발기설립과 모집설립으로 구분합니다.

가. 발기설립

회사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자본금)의 총수를 발기인이 전부 인수하여 설립하는 방식입니다. (즉, 발기인들이 자본금 전액을 스스로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합니다.)

- ① 발기인은 모두 농업인이어야 합니다.
- ② 법인 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자본금)은 모두 발기인(농업인)이 인수해야 합니다.
- ③ 따라서, 법인 설립 자본금은 모두 발기인(농업인)들이 출자해야 합니다.
- ④ 절차가 비교적 간소하여 소규모 회사의 설립에 적합합니다.
- ⑤ 이사, 감사 등 임원은 발기인 총회를 통해 선임합니다.
- ⑥ 자본금 10억 미만의 경우, 발기인이 정관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함으로써 정관의 효력이 발생하고, 자본금 10억원 이상의 경우,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정관으로서의 법적 효력 발생합니다.

나. 모집설립

회사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의 일부는 발기인이 인수하고, 나머지 주식에 대해서는 외부 주주를 모집하여 인수시키는 방법입니다. 발기인들이 자본 중 일부를 출자하고, 나머지 자본금은 외부 투자자(주주) 유치를 통해 확충하는 형태로 설립합니다.

- ① 발기인은 모두 농업인이어야 합니다.
- ② 모집주주는 농업인 및 비농업인 모두 가능합니다.

- ③ 단, 농업인의 출자액이 총 자본금(설립시 발행주식)의 10% 이상이어야 합니다.
(자본금 80억 이상의 경우, 8억원까지는 농업인이 출자해야 합니다.)
- ④ 대규모 회사의 설립에 적합합니다.
- ⑤ 이사, 감사 등 임원은 창립총회(발기인, 모집주주)결의로 선임을 합니다.
- ⑥ 정관의 효력 발생 시기는 자본금 규모에 상관없이 언제나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효력 발생합니다.

2. 참고사항

- ① 발기설립은 발기인(농업인)들의 의사합치에 따라 설립절차가 비교적 간단하며, 모집 설립은 발기인 외 모집 주주 등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있어 설립절차가 다소 엄격하고 복잡합니다.
- ② 실무에서는 주식회사 형태의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시, 농업인이 발기인이 되어 발기설립으로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간혹 비농업인(모집주주)의 자본 투자에 따라 모집설립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처음에 발기인(농업인)과 모집주주가 합의 하에, 우선 농업인(발기인)이 발기 설립 한 후 비농업인은 자본금 증자에 참여하는 식으로 자본 투자를 하기도 합니다.

※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의 설립 시

가. 유한회사

- ① 발기설립만 인정하고, 모집설립이 없습니다.
- ② 따라서 농업인이 발기인(사원)이 되어 유한회사를 설립할 수 있고, 비농업인은 회사 설립 시에는 참여하지 못하며, 설립 후 사원 지분을 양도받거나, 증자 등에 참여함으로써 사원이 될 수 있습니다.

나.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 ① 동업체적 성격의 인적회사입니다.(유한책임회사는 물적회사의 성격도 있습니다.)
- ② 농업인이 발기인(사원)이 되어 설립합니다.
- ③ 설립시 비농업인은 사원이 될 수 없으며, 회사 설립 후 사원 전원의 동의하에 지분을 양수하거나 추가 출자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원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3. 첨부서류

가. 영농조합법인 설립등기신청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

- ① 정관
- ② 창립총회의사록(공증인의 인증 요함)
※ 조합원이 농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농업인 확인서, 농업경영체등록증명서 또는 확인서)
- ③ 출자자산의 명세서(대표조합원이 작성함) 및 그 소명자료.
- ④ 임원(이사, 감사)의 취임승낙서(인감 날인),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등)본
- ⑤ 대표조합원의 취임승낙서(인감 날인), 법인인감 신고서
- ⑥ 등기신청수수료 납부확인서,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
- ⑦ 사전신고에 따른 설립신고확인증
- ⑧ 법인인감카드발급신청서(등기완료 후, 등기소에 발급 신청함)
※ 위 서류 중 ① 내지 ⑦의 서류를 설립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 관할 등기소에 제출

나. 농업회사법인 설립등기신청 시 첨부서류

(1)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을 “발기설립”할 경우

- ① 정관(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공증인의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 ② 발기인의 주식 인수증
- ③ 발기인의 주식발행사항 동의서
- ④ 설립경과에 관한 이사 또는 감사의 조사보고서
- ⑤ 발기인총회의사록(자본금 10억원 미만일 경우 공증인의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 ※ 단, 모집설립의 경우, 정관 및 창립총회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함
 - ※ 발기인이 농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농업인 확인서, 농업경영체등록증명서 또는 확인서)
- ⑥ 임원(이사, 감사)의 취임승낙서(인감 날인), 인감증명서
- ⑦ 대표자의 취임승낙서(인감 날인) 및 주민등록초(등)본, 법인인감 신고서
 - ※ 이사회 의사록(설립시 이사가 3인 미만일 경우, 첨부 생략)
 - ※ 자본금 10억 미만일 경우 이사회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 불요
- ⑧ 자본금(주금)의 납입증명서(자본금 10억원 이상일 경우 금융기관의 주금납입증명서, 10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잔고증명서 가능합니다)
- ⑨ 등기신청수수료 납부확인서,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
- ⑩ 사전신고에 따른 설립신고확인증
- ⑪ 법인인감카드발급신청서(법인설립등기 후, 등기소에 발급 신청합니다.)
 - ※ 위 서류 중 ① 내지 ⑩의 서류를 설립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 관할 등기소에 제출
 - ※ (참고)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을 “모집설립”할 경우 정관과 창립총회의사록을 공증받아야 하며, 주식 청약서와 창립총회기간 단축동의서 (기간단축시) 등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2) “유한회사”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경우

※ 유한회사 농업회사법인 : 발기설립만 인정, 모집설립은 없습니다.

- ① 정관 및 사원총회의사록(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공증인의 인증 불요)
 - ※ 사원이 농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농업인 확인서, 농업경영체등록증명서 또는 확인서)
- ② 출자금납입증명서(현물출자가 있을 경우, 소유권이전서류 등)
- ③ 임원(이사, 감사)의 취임승낙서(인감 날인), 인감증명서

- ④ 대표자의 취임승낙서(인감 날인) 및 주민등록초(등)본, 법인인감 신고서
※ 대표자 선출과 관련한 이사 과반의 동의서
- ⑤ 등기신청수수료 납부확인서,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
- ⑥ 사전신고에 따른 설립신고 확인증
- ⑦ 법인인감카드발급신청서(법인설립등기 후, 등기소에 발급신청 합니다)
※ 위 서류 중 ① 내지 ⑥의 서류를 설립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 관할 등기소에 제출

(3) “합명회사”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경우

※ 2인 이상의 무한책임사원이 설립

- ① 정관 및 총사원 동의서(공증인의 인증 불요)
※ 사원이 농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농업인 확인서, 농업경영체등록증명서 또는 확인서)
- ② 출자이행 증명서(현물출자가 있을 경우, 소유권이전서류 등)
- ③ 대표사원 취임승낙서(인감 날인),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등)본, 법인인감 신고서
- ④ 등기신청수수료 납부확인서,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
- ⑤ 사전신고에 따른 설립신고 확인증
- ⑥ 법인인감카드발급신청서(법인설립등기 후, 등기소에 발급신청 합니다.)
※ 위 서류 중 ① 내지 ⑤의 서류를 설립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 관할 등기소에 제출

(4) “합자회사”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경우

※ 1인 이상의 무한책임사원과 1인 이상의 유한책임사원이 설립

- ① 정관 및 총사원 동의서(공증인의 인증 불요)
※ 사원이 농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농업인 확인서, 농업경영체등록증명서 또는 확인서)
- ② 출자이행 증명서(현물출자가 있을 경우, 소유권이전서류 등)
- ③ 대표사원 취임승낙서(인감 날인),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등)본, 법인인감 신고서
- ④ 등기신청수수료 납부확인서, 등록면허세납부확인서
- ⑤ 사전신고에 따른 설립신고확인증
- ⑥ 법인인감카드발급신청서(법인설립등기 후, 등기소에 발급신청 합니다.)
※ 위 서류 중 ① 내지 ⑤의 서류를 설립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 관할 등기소에 제출

(5) “유한책임회사”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경우

※ 1인 이상의 무한책임사원과 1인 이상의 유한책임사원이 설립

- ① 정관 및 총사원 동의서(공증인의 인증불요)
※ 사원이 농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농업인 확인서, 농업경영체등록증명서 또는 확인서)
- ② 자본금에 관한 출자이행증명서(현물출자가 있을 경우, 소유권이전서류 등)
- ③ 대표사원 취임승낙서(인감 날인),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등)본, 법인인감 신고서
- ④ 등기신청수수료 납부확인서, 등록면허세납부확인서
- ⑤ 사전신고에 따른 설립신고확인증
- ⑥ 법인인감카드발급신청서(법인설립등기 후, 등기소에 발급 신청합니다.)
※ 위 서류 중 ① 내지 ⑤의 서류를 설립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 관할 등기소에 제출
※ 등기소마다 행정처리에 있어 관련서류 추가 요구 등 상이할 수 있으니 농업법인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방문 전에 추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영농조합법인 설립 후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그 변경등기신청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

- ① 정관사본(원본대조필 직인 및 법인인감 간인, 날인) * 필요한 경우 제출
- ② 총회 또는 이사회 의사록(변경사항에 대한 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 각각 공증인의 인증을 요함)
※ 예 : 주사무소 이전, 임원 변경, 출자금액 증액, 지점 설치 및 이전 등
- ③ 등기신청수수료 납부확인서
- ④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
- ⑤ 변경신고확인증
※ 등기목적(변경)에 따라 위 ① 내지 ④의 서류와 그 밖의 필요서류를 변경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 관할 등기소에 제출합니다.(예 : 임원 변경의 경우, 총회의사록과 신규 임원의 취임승낙서, 인감증명서, 주민초본 등이 필요할 수 있으며, 출자금액의 변경이라면 대표조합원이 작성한 출자자자산의 명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4. 농업회사법인의 설립 후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그 변경등기신청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

① 정관사본(원본대조필 직인 및 법인인감 간인, 날인)* 필요한 경우 제출

② 총회의사록 또는 이사회 의사록

※ 위 의사록은 변경사유에 따라 공증인의 인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주주 전원의 서면결의가 있을 경우, 공증인의 인증 불요

③ 등기신청수수료 납부확인서

④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

⑤ 변경신고확인증

※ 등기목적(변경)에 따라 위 ① 내지 ④의 서류와 그 밖의 필요서류를 변경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 관할 등기소에 제출합니다.(예 : 임원 변경의 경우,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의사록과 신규 임원의 취임승낙서, 인감증명서, 초본 등이 필요할 수 있으며, 자본금 또는 출자금 증자의 경우 잔고증명서 또는 주금납입증명서, 주식인수증, 청약증명서면, 출자이행서면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 등기소마다 행정처리에 있어 관련서류 추가 요구 등 상이할 수 있으니 농업법인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방문 전에 추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의 해산등기신청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

① 정관사본(원본대조필 직인 및 법인인감 간인, 날인)* 필요한 경우 제출

② 해산결의 총회의사록, 기타 해산을 증명할 서류(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판결, 존속기간 만료, 조직변경, 합병, 분할, 파산 등)

③ 등기신청수수료 납부확인서

④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

⑤ 해산신고확인증



농업법인의 정관 및 의사록에 대한 공증인의 인증과 관련하여

- 개설

농업법인에 대한 각종 등기시 첨부되는 정관과 의사록(총회, 이사회)은 결의절차와 내용의 진실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공증인의 인증을 요합니다. 그러나 공증인법 규정(제66조의2의 제1항)에 따라 일부 공증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증인법 제66조의 2(법인의사록의 인증)

① 법인 등기를 할 때 그 신청서류에 첨부되는 법인 총회 등의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상법」 제295조제1항에 따라 발기설립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인 경우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의결한 경우

-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설립등기 시

상법 제292조는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의 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 정관의 인증 (공증)의무를 면제하고 있으며, 발기인총회의사록과 이사회 의사록에 대하여도 공증의무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집설립”의 경우, 자본금 규모와 상관없이 정관 및 각종 의사록은 반드시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변경등기 시

설립시와 달리, 변경등기에 따른 총회의사록 및 이사회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공증인법 제66조의2 제1항 단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주주 전원의 서면결의가 있을 경우, 공증인의 인증을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영농조합법인 설립등기 시

영농조합법인의 설립 시 작성한 정관(원시정관)에 대하여는 공증의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창립총회의사록의 경우 위 공증인법 제66조의2 제1항 단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 영농조합법인 변경등기 시

공증인법 제66조의2 제1항 단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변경등기를 위한 조합원총회 의사록 또는 이사회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요합니다.

Ⅲ 농업법인 설립과 등록 자세히 보기

1. 법인의 형태와 상호 결정

가. 형태 결정

- ①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중 어떠한 형태의 농업경영을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 ② 법인 설립에 앞서 사업계획을 세우고, 사업을 위한 필요 정보와 지식을 충분히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다양한 유통경로의 확보와 판매를 위한 영업, 마케팅에 대한 계획을 꼼꼼히 세우고 시장조사를 충분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 ③ 법인 운영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구성원 간의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통한 결정은 구성원 간의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나. 상호 결정

- ① 농업 법인의 이름을 ‘상호’라고 합니다.
- ② 상호에는 회사의 형태를 의미하는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이 나타나야 하며 농업회사법인의 경우에는 ‘유한, 주식, 합명, 합자’라는 회사의 종류를 명확하게 포함해야 합니다. (예 : ○○영농조합법인, 영농조합법인△△ /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 ③ 상호는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게 되면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상법 제23조 제1항, 제4항). 또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호 등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도 하면 안 됩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④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내에서는 동종의 영업을 위하여 다른 사람이 등기한 상호와 동일한 상호를 등기할 수 없습니다(상업등기법 제29조).

⑤ 새로 설립한 농업법인의 상호가 이미 등기되어 있는지 알아보려면 대법원 홈페이지의 인터넷 등기소에서 검색이 가능합니다.

※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 → 인터넷등기소 → 등기지원 서비스 → 상호검색

다. 자본금의 범위

자본금에 대한 제한은 없으며, 구성원들이 자유롭게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2. 정관 작성과 서명·공증

※ 아래 내용은 주식회사 위주로 작성된 것입니다.

가. 정관의 정의

정관은 농업법인의 조직, 사업, 관리 등 법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자치규범으로 법인 설립 시에 발기인 전원의 합의(공동 작성)로 작성해야 합니다.

나. 절대적 기재 내용

정관은 법인 운영의 기준이 되므로 개별법인의 사업, 규모, 운영방식에 따라 적절히 규정하되, 다음 사항은 반드시 정관에 기재되어야 합니다.

- ① 명칭
- ② 목적
- ③ 사업
- ④ 사무소의 소재지
- ⑤ 조합원(준조합원 포함) 등의 자격에 관한 사항
- ⑥ 조합원 등의 가입·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 ⑦ 조합원 등의 탈퇴 및 제명 시 지분의 계산에 관한 사항

- ⑧ 출자액의 납입방법·산정방법과 조합원 등의 1인이 출자할 수 있는 출자액의 최고한도에 관한 사항
- ⑨ 이익금 및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 ⑩ 적립금의 비율과 그 적립방법에 관한 사항
- ⑪ 회계연도와 회계에 관한 사항
- ⑫ 총회 기타 의결기관과 임원의 정수·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⑬ 해산 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사유에 관한 사항

다. 상대적 기재사항과 변태설립사항

① 상대적 기재사항

상대적 기재사항은 정관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을 의미합니다.

② 변태설립사항(농업회사법인 중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할 경우에 적용)

상대적 기재사항 중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약화시킬 우려가 있는 사항을 의미합니다. 상법 제290조(변태설립사항)에는 “다음의 사항은 정관에 기재함으로써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 ㄱ) 발기인이 받을 특별이익과 이를 받을 자의 성명(특별이익)
- ㄴ)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현물출자)
- ㄷ) 회사설립 후에 양수할 것을 약정한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그 양도인의 성명(재산인수)
- ㄹ)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과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설립비용, 보수)

③ 변태설립사항은 법원이 선임한 감사인의 조사를 받고, 주식청약서에도 이를 기재해야 하는 등 더 엄격한 규제를 받게 됩니다.

라. 정관의 서명과 공증

발기인은 정관의 내용을 확인한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해 공증을 받아야만 법적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다만, 주식회사의 경우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에는 공증을 받지 않더라도 정관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한편 영농조합법인은 설립할 때 정관은 공증을 받지 않아도 되나 의사록(조합원 총회의사록, 이사회 의사록)은 모두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공증인법 제66조의 2에 규정된 바에 따르면 영농조합법인의 의사록은 공증 면제 대상이 아니므로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3. 설립신고를 위한 사전 준비

가. 기타 설립에 필요한 행위

정관을 작성한 후에는 다음과 같이 「기타 설립에 필요한 행위」를 합니다.

① 주주(또는 사원) 및 조합원 모집

정관과 설립 취지에 찬성하며 법인 가입을 희망하는 농업인, 농산물 생산자단체 및 비농업인(준조합원 등)을 대상으로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 참고: 농업회사법인은 주주(또는 사원), 영농조합법인은 조합원이라는 명칭을 주로 사용합니다.

② 주주(사원) 명부 또는 조합원의 명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③ 출자 1좌당 금액과 총 출자 좌수를 결정해야 합니다.

④ 설립 당해 연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⑤ 설립에 필요한 자산을 취득해야 합니다.

나. 정관 승인과 창립총회

① 창립총회의 구성

발기인 및 창립 당시의 주주(사원) 또는 조합원을 모집합니다.

② 창립총회에서 의결할 사항

- ㄱ) 정관의 승인
- ㄴ) 정관에서 정한 임원의 선임(이사회 구성)
- ㄷ) 출자 납입에 관한 사항
- ㄹ) 설립 당해 연도 사업계획의 승인 등

③ 창립총회 의사록 작성

- ㄱ) 창립총회의 의결은 법인 설립의 기본이 되는 중요사항이므로 회의결과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창립총회의사록」을 반드시 작성하고 참석자들이 기명날인하여 보관하여야 합니다.
- ㄴ) 창립총회의사록은 공증인법 제66조의2에 의하여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 설립등기 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 영농조합법인(민법) : 설립, 변경 시 의사록을 공증함으로 효력이 발생
 - 농업회사법인(상법)
 - 자본금 10억 미만(설립 시) : 서명 날인 효력이 발생(공증 안함)
 - ※ 모집설립을 하거나 10억원 이상의 발기설립일 경우에는 정관, 의사록을 모두 공증받아야 합니다.
유한회사로 설립시에도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정관은 공증을 안 해도 되지만
사원총회 의사록과 이사회 의사록은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 자본금 10억 미만(변경 시) : 공증함으로 효력이 발생
 - 자본금 10억 이상(설립·변경 시) : 공증함으로 효력이 발생

다. 대표이사과 이사회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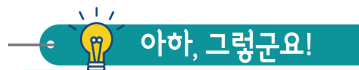
① 대표이사의 선임

- ㄱ) 대표이사는 설립등기 사항이므로 반드시 선임하여야 합니다. 이사가 3인 이상인 경우, 반드시 대표이사를 선임하여야 하고, 이사가 1인만 있을 때에는 그 1인이 회사를 대표합니다. 만일 이사가 2인인 경우 2인이 각각 회사를 대표할 수도 있고, 주주총회에서 1인(또는 2인)을 대표이사(공동대표 이사)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 ㄴ) 대표이사 선임 방법이나 절차에 관하여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고, 특별히 정관으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이사 과반수 출석과 출석한 이사의 과반수로 결의하여 선임합니다.
- ㄷ) 다만, 자본의 액면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로서 이사가 1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가 회사를 대표하므로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습니다.

② 이사와 감사의 선임

- ㄱ) 주식회사의 주요 업무를 처리하고 주식회사를 대표하는 대표이사가 될 자격을 지니는 사람을 '이사'라고 하며, 이사의 업무처리를 감시하는 사람을 '감사'라고 합니다.
- ㄴ) 발기인이 이사 또는 감사를 선택하거나 회사의 주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의결권'이라고 부르며, 발기인이 인수한 주식의 수만큼 의결권의 수가 정해집니다(상법 제296조 제2항).
- ㄷ) 주금납입과 현물출자가 완료된 후 발기인은 지체 없이 의결권의 과반수로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여야 합니다(상법 제296조 제1항).
- ㄹ) 주식회사의 이사는 반드시 3인 이상으로 선임하여야 하지만, 주식회사의 자본이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인 또는 2인으로도 가능합니다(상법 제383조 제1항). 또한,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감사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상법 제409조 제4항).
- ㅁ) 발기인도 이사 또는 감사로 선임될 수 있으므로, 4인의 발기인 중 3인이 이사가 되고 나머지 1인이 감사가 되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 ㅂ) 발기인은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합니다(상법 제297조).



정관이란?

- 정관(定款) : 회사 또는 법인의 자주적 법규. 실질적으로는 단체 또는 법인의 조직·활동을 정한 근본 규칙을 뜻하고, 형식적으로는 그 근본규칙을 기재한 서면을 의미합니다. 정관은 강행규정이나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한 회사 또는 법인의 구성원 내지 기관을 구속합니다.
- 정관의 제반 근거 : 영농조합법인은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등 적용, 농업회사법인은 「상법」상의 회사 설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므로, 정관 작성 시 관련 법령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자본금 출자

가. 출자의 유형 및 범위

- ① 출자의 이행 방법에는 주금납입과 현물출자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 ② 주금납입이란 발기인이 주식 인수를 한 후 인수할 주식금액을 은행에 입금하는 방법을 말합니다(은행에 입금한 후 은행으로부터 주금납입금 보관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다만,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주식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 주금납입금 보관증명서를 금융기관의 잔고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③ 현물출자란 돈이 아닌 사무실, 공장부지, 업무용차량 등을 제공하는 방법을 말합니다(현물출자를 하는 발기인은 납입기일에 지체 없이 출자의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 등록 기타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을 요할 경우에는 이에 관한 서류를 완비하여 교부하여야 합니다).
- ④ 법인에의 출자는 농지·현금·기타 현물로 출자할 수 있으며, 농업회사법인은 비농업인의 출자액이 총출자액의 90/10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총출자액이 80억 초과시 8억을 제외한 금액까지 출자 가능)

나. 출자의 납입 및 출자증서의 발행

- ① 조합원은 출자의 목적인 재산을 양도하고 등기, 등록 기타 권리의 설정이나 이전에 필요한 경우, 이에 관한 서류를 완비하여 교부하여야 합니다.
- ② 출자를 납입한 조합원 등에게 대표이사 명의로 출자증서를 발급하고 출자 증서에 출자좌수, 출자액, 출자재산의 표시(토지의 경우 지번, 지목, 면적을 기재) 등을 기재합니다.
- ③ 현물출자의 경우 출자액 산정방법, 출자최고한도, 출자액의 납입방법 등을 정관으로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5. 설립 신고

2022년 8월 18일 이전에는 농업법인 설립을 등기하고 설립사실을 30일 이내에 신고하였습니다. 하지만 2022년 8월 18일에 시행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법인 설립을 사전에 신고하고 등기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농업법인 설립 신고를 위해 필요한 서류는 각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농업법인 사전신고제가 시행된 이유는 농업법인 관리를 강화하고, 농업법인의 농지투기 등 불법행위를 차단하여 건전한 농업법인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

가. 영농조합법인 설립신고서 주요내용

- ① 사업내용(목적 및 사업, 주사업, 부대사업, 생산분야, 재배품목 및 축종)
- ② 임원 현황(임원의 직위와 성명)
- ③ 출자규모(조합원, 준조합원의 수와 출자액)
- ④ 출자관련 사항(총 출자좌수 및 출자 1좌의 금액, 납입방법, 산정방법, 조합원 1인당 출자한도)

나. 농업회사법인 설립신고서 주요내용

- ① 농업회사법인 형태(합명, 합자, 유한책임, 유한회사, 주식회사)
- ② 사업내용(목적 및 사업, 주사업, 부대사업, 생산분야, 재배품목 및 축종)
- ③ 임원 현황(임원의 직위와 성명)
- ④ 출자규모(농업인·농업생산자단체, 비농업인의 사원·주주 수와 출자액)
- ⑤ 출자관련 사항(총 출자좌수·출자주식수 및 출자 1좌·1주의 금액, 납입방법, 산정방법, 사원·주주 1인당 출자한도)

6. 설립 등기 및 사업자등록 신청

가. 영농조합법인 등기

- ① 창립총회의사록
- ② 정관
- ③ 출자자산의 명세를 적은 서류
- ④ 조합법인을 대표할 조합원임을 증명하는 서류
- ⑤ 5인 이상의 조합원이 농업인 또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4호에 따른 농업생산자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농업인 확인서 또는 농업경영체 증명서)
- ⑥ 설립신고확인증

나. 농업회사법인 등기

- ①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려는 자가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농업인 확인서 또는 농업경영체 증명서)
- ② 농업인의 출자한도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ㄱ) 주식회사의 형태로 설립하는 경우 : 각 주식인수인의 성명, 주소, 인수한 주식의 수 및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 해당 여부를 표시한 서류와 해당 주식 인수인이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ㄴ) 주식회사 외의 형태로 설립하는 경우 :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인 사원의 명단 및 해당 사원이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③ 설립신고확인증

다. 사업자등록

- ① 농업법인 설립 이후 20일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② 사업자등록증 발급 신청절차 안내와 서식제공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 → 국세정책/제도 → 사업자등록안내 → 제출서류 및 교부
→ 사업자등록신청 제출서류

IV 농업경영체 등록 안내

1. 농업경영체 등록 이해하기

가. 목적

농업정책 등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농업인·농업법인의 경영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기 위해서는 농업경영체 등록이 필요합니다.

- 수집 정보는 농업경영체 지원에 관한 정책 수립 및 현안 대응, 정책효과 검증, 신규사업 발굴 및 재정사업 투명성 제고 등에 널리 활용됩니다.

나. 법적근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25.10.1. 시행)에 근거한 제도입니다.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0조(농업경영체의 경영정보 등록)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 농업·농촌 관련 용자·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경영체는 경영정보를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사항 중 중요 사항이 변경된 경우도 변경등록을 해야 합니다.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등록정보의 확인 등)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등록정보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현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다. 등록대상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 모두 해당합니다.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라. 등록절차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접수 → 검토 및 확인 → 등록부 작성 순으로 등록합니다.

- 처리기관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농업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하 농관원) 지원 또는 사무소

등록절차	등록 방법
신청서 작성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서식에 따라 정보기재 ※ 신청서는 농관원 홈페이지(www.naqs.go.kr)나 농관원 지원·사무소를 방문하여 수령
신청서 제출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주소지 관할 농관원 지원·사무소에 제출
검토 및 확인	- 신청서 내용 확인, 증빙서류 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 후 농업경영체 고유등록번호 부여 및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관리시스템에 전산등록 ※ 제출서류 확인 및 필요시 신청사항에 관한 현지조사 등 병행
등록부 작성	서류검토 및 현지조사결과 등록기준에 적합한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부여 및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관리시스템에 전산등록

※ 관련문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경영체 콜센터(1644-8778)

2. 농업경영체 등록 절차

가. 신규등록

① 신청대상

농업·농촌에 관련된 용자·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신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대상입니다.

② 신청자격

- 농업인 : 경영 또는 경작농지가 1,000m² 이상 또는 농지·축사 등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생산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이 경우는 경영주 외 농업인 등록 자격에 해당)

ㄴ) 농업법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 등록항목 : 일반현황, 농지 및 농작물재배/보조금신청, 가축, 곤충 사육시설 및 사육규모, 농산물 생산·유통 및 가공(농업법인만 해당), 소득·자산·부채(농업법인만 해당), 확인서 연계정보(농업인 54개, 농업법인 64개 항목)

※ 생산수단 등 농지는 실제 농업에 이용되는 농지로 불법 점유 또는 불법 개간이 아님 등의 증명이 필요합니다.

- 제출서류 :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 및 증빙자료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서, 정관, 조합원(사원)별 출자내역, 법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또는 법인 명의 농자재구매영수증(농산물판매영수증), 농업인 확인 서류(농업경영체증명서 또는 농업인 확인서), 이사회(총회) 회의록 (변경신청시 조합원 변경 확인용)

※ 「농어업경영체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등록 정보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③ 등록대상 주요정보

ㄱ) 일반현황

- 농업인 : 농업인(경영주 및 경영주의 농업인) 성명 및 주소
- 농업법인 : 법인명·소재지, 대표자 인적사항, 구성원 및 출자규모

ㄴ) 농지정보(농지를 경작하는 경우 작성)

- 농지 소재지와 지목(공부·실제), 농지면적(공부·실제관리 및 휴·폐경), 시설 현황 (시설종류 및 면적), 경영형태(자경·임차)

ㄷ) 가축·곤충정보(가축이나 곤충을 사육하는 경우 작성)

- 가축·곤충 사육시설의 소재지·지목 및 면적, 경영형태(자영·수탁)

ㄹ) 농산물 유통 및 가공(유통법인, 가공법인의 경우 반드시 작성)

- 주요 품목에 대한 재배면적, 생산량, 판매량, 판매금액, 판매처별 비율
- 가공판매 품목 및 판매금액

ㅁ) 추정소득, 자산, 부채

- 농업소득, 농업 외 소득, 자산, 부채

④ 농업법인 등록 시 주요 확인 사항

ㄱ) 농업법인 설립 근거 및 목적

- 법인명칭 : 법인의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명칭 사용 여부
- 설립근거 : 정관에 농어업경영체법 제16조 또는 제19조에 따른 설립 근거 포함 여부

ㄴ) 사업범위 충족여부 확인

- 주사업 또는 부대사업 범위에 포함 여부

ㄷ) 농업인 기준 충족여부 확인

- 영농조합법인 : 대표자 포함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 5인 이상 여부
- 농업회사법인 :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 1인이 총출자액 10% 이상 출자 여부(단, 농업회사법인의 총출자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총출자액에서 8억 원까지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 출자할 경우 인정)

ㄹ) 법인 유지 여부

- 법인 등기 유효성을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아하, 그렇군요!

농업법인 필수 제출서류

•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확인 증빙서류

- ①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정관, 조합원(사원)별 출자내역, 법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또는 법인 명의의 농자재구매영수증(농산물판매영수증), 이사회(총회)회의록, 사업자등록증명서
- ② 조합원 및 출자자 농업인 확인 : 농업경영체증명서, 농업인확인서 중 택 1

나. 변경등록

① 변경대상

- ㄱ) 등록된 경영체 정보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유효기간 경과 전 농업경영정보를 갱신하는 것 포함)
- ㄴ) 등록기관(농관원)의 확인결과 등록내용이 사실과 달라 변경 등록요청을 받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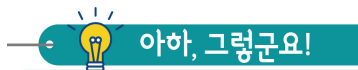
② 변경신청기간

- ㄱ) 자체적으로 변경하는 경우 : 등록된 내용이 변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 ㄴ) 등록기관으로부터 변경요청받은 경우 : 변경요청받은 때로부터 14일 이내

③ 변경등록 대상 중요정보

- ㄱ) 일반현황
 - 농업인 : 농업인(경영주 및 경영주의 농업인) 성명 및 주소
 - 농업법인 : 법인명·소재지, 대표자 인적사항, 구성원 및 출자규모
- ㄴ) 농지정보
 - 농지 소재지와 지목(공부·실제), 농지면적(공부·실제관리 및 휴·폐경), 시설현황(시설종류 및 면적), 경영형태(자경·임차)
- ㄷ) 가축·곤충정보
 - 가축·곤충 사육시설의 소재지·지목 및 면적, 경영형태(자영·수탁)
- ㄹ) 생산정보
 - 농지소재지별로 등록한 농작물 품목이 바뀌거나 등록한 품목의 재배면적이 10%를 초과하여 변경되는 경우. 단, 10%를 초과하지 않더라도 다음의 규모를 초과하여 변경된 경우는 변경등록을 해야 합니다.
 - 노지에서 재배되는 품목의 재배면적 : 660m²
 - 시설에서 재배되는 품목의 재배면적 : 330m²
 - ※ 품목별 변경된 재배면적이 100m² 이하로 변경된 경우에는 제외

- 가축 및 곤충의 종별 상시 사육규모가 10% 초과하여 변경되는 경우. 단, 가축 또는 곤충의 출하로 인해 일시적인 변경이 발생하거나 상시 사육규모의 변경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닭 : 1,000마리 이내
 - 오리 : 500마리 이내



농업경영체 증명서 및 확인서

- 농업경영체 등록을 증명하려면?
 - 농업법인이 농업경영체에 등록하게 되면, '농업경영체 증명서'와 '농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확인서'로 구분되어 경영체 등록을 확인받게 됩니다.
 - '농업경영체 증명서'는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를 증명하기 위한 서식으로 법인명, 대표자 성명, 주소 등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농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확인서'는 증명서 등록내용과 농지 및 가축사육 등 정보까지 포함되어 발급됩니다.
- 농업경영체 증명서 및 확인서를 발급하려면?
 - 법인의 대표가 본인임을 확인한 후 발급이 가능하며, 가까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방문하거나, 농업e지(www.nongupez.go.kr)와 정부24(www.gov.kr)에서 온라인으로 발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주소록

(농업경영체 등록 관할시군)

경기지원					
사무소명	일반전화	FAX	주소	우편번호	관할시군
경영직불팀	031) 470-2921	031) 443-4090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14 (안양6동 532-9)	14035	과천·의왕· 안양·군포· 광명·시흥시
서울사무소	02) 3484-3351	02) 2244-0223	서울특별시 송파구 총민로2길 12 (정자동 840-1)	05816	서울특별시
인천사무소	032) 310-3634	032) 819-7257	인천광역시 연수구 남말로47번길 30 (선학동 390-6)	21909	인천광역시 (강화군 제외)
수원사무소	031) 259-5131	031) 295-5896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호동로14번길 84 (서둔 동 27-59)	16619	수원시·안산시
화성·오산사무소	031) 538-1331	031) 898-6198	경기도 화성시 경기대로 1014 병점플라자 503호 (병점동 379-10)	18411	화성시·오산시
의정부·동두천· 양주사무소	031) 839-1831	031) 874-4130	경기도 의정부시 금오로 56 (금오동 140-1)	11754	의정부시· 동두천시·양주시
평택사무소	031) 550-4431	031) 657-6906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고덕순환대로 568 (여암리 4234-2)	18008	평택시
안성사무소	031) 8046-3731	031) 671-6066	경기도 안성시 석정1길 14 (석정동 265-2)	17578	안성시
구리·남양주 사무소	031) 560-4331	031) 557-6594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 82번안길 166-30 (다산동 6184-3)	12249	남양주시· 구리시
가평사무소	031) 589-3921	031) 582-7552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석봉로 200-21 (읍내리 616-7)	12413	가평군
광주·성남· 하남사무소	031) 538-6941	031) 765-9337	경기도 광주시 경충대로 1422번길 11-11(쌍령동 337-5)	12791	광주시·성남시 ·하남시
이천사무소	031) 770-5831	031) 638-5792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중부대로 1724 (신원리 647-18)	17318	이천시
용인사무소	031) 359-2632	031) 635-0308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08 라파엘메디빌 2층(삼가동 193-1)	17091	용인시
파주·고양사무소	031) 956-1741	031) 954-6094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개포래로 66 (문산리 10-102)	10823	파주시·고양시
포천·연천사무소	031) 540-4941	031) 535-6063	경기도 포천시 군내면 청군로 3384 (구읍리 571-6)	11153	포천시·연천군
여주사무소	031) 880-8031	031) 883-1320	경기도 여주시 세종대왕면 중부대로 2799-24 (왕대리 947-17)	12642	여주시
양평사무소	031) 770-7321	031) 774-3200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한빛길 38 (양근리 221-6)	12562	양평군
강화사무소	032) 320-3831	032) 934-2707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송악길 8 (관청리 889-2)	23032	인천광역시 강화군
김포사무소	031) 5186-4731	031) 986-2425	경기도 김포시 북변중로35-1 (북변동 409-7)	10106	김포시·부천시

강원자원					
사무소명	일반전화	FAX	주소	우편번호	관할시군
경영직불팀	033) 250-0941	033) 251-0205	강원도 춘천시 총열로 125 (우두동 429-5)	24226	춘천시
원주사무소	033) 815-8203	033) 743-6491	강원도 원주시 입춘로 50, 나라키움 원주청사 (반곡동 1858-5)	26460	원주시
횡성사무소	033) 815-8227	033) 344-5229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앞들동2로 38 (읍상리 195-4)	25230	횡성군
강릉사무소	033) 815-8266	033) 651-9764	강원도 강릉시 하평2길 31 (포남2동 1295-3)	25566	강릉시
삼척·동해사무소	033) 815-8278	033) 573-7831	강원도 삼척시 원당로 3 (원당동 7-3)	25918	삼척시·동해시
속초·양양사무소	033) 815-8303	033) 637-4151	강원도 속초시 온천로 136 (노학동 365)	24864	속초시·양양군
고성사무소	033) 815-8327	033) 681-6079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간성북로 103 (동호리 760-3)	24731	고성군
홍천사무소	033) 815-8356	033) 435-4334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홍천로 669 (결운리 467-1)	25126	홍천군
영월사무소	033) 815-8379	033) 373-7020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중앙로 229 (덕포리 614-1)	26231	영월군
평창사무소	033) 815-8403	033) 333-0628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중부로 52 (중부리 508-8)	25377	평창군
정선·태백사무소	033) 815-8427	033) 563-6069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녹송로 55-13 (봉양리 65-5)	26127	정선군·태백시
철원사무소	033) 815-8455	033) 452-1243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명성로 139번안길 15 (지포리 90-2)	24037	철원군
인제사무소	033) 815-8477	033) 461-9786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인제로 178번길 25 (상동리 268-1)	24634	인제군
양구사무소	033) 815-8491	033) 482-6062	강원도 양구군 국토정중앙면 정중앙로 606-36(청리 897-1)	24554	양구군
(화천분소)	033) 815-8463	033) 441-6062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상승로2길 25-10 (하리 97-1)	24121	화천군

충북자원					
사무소명	일반전화	FAX	주소	우편번호	관할시군
경영직불팀	043) 279-4144	043) 279-414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월명로 220번길 46 (봉명동 2451)	28462	청주시
충주사무소	043) 849-0411	043) 847-2421	충북 충주시 대흥4길 7 (교현동 1093)	27370	충주시
제천·단양사무소	043) 640-5311	043) 646-2733	충북 제천시 동명로 61 (명동 175-2)	27171	제천시·단양군
(단양분소)	043) 421-6065	043) 421-6066	충북 단양군 매포읍 우덕길 42, 단양군창업지원센터 1층 (우덕리 63)	27003	단양군
옥천사무소	043) 730-8711	043) 731-0255	충북 옥천군 옥천읍 옥천동이로 234-8 (매화리 33-1)	29043	옥천군
영동사무소	043) 740-1912	043) 744-4611	충북 영동군 영동읍 회동로 132 (회동리 54-3)	29141	영동군
괴산·증평사무소	043) 830-7511	043) 832-2047	충북 괴산군 괴산읍 읍내로 4길 39 (서부리 277-2)	28035	괴산군·증평군

농업법인 업무안내서

충북지원					
사무소명	일반전화	FAX	주소	우편번호	관할시군
보은사무소	043) 540-6011	043) 543-2046	충북 보은군 보은읍 군청길 110-27 (이평리 157-1)	28937	보은군
음성사무소	043) 870-4612	043)873-4060	충북 음성군 음성읍 설성로 57번길 15 (읍내리 469-1)	27704	음성군
진천사무소	043) 539-0213	043) 537-9954	충북 진천군 진천읍 덕금로 65 (성석리 326-2)	27844	진천군

충남지원					
사무소명	일반전화	FAX	주소	우편번호	관할시군
경영직불팀	042) 259-2924	042) 256-4277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327 (선화동 188-5)	34851	대전광역시
천안사무소	041) 599-6605	041) 555-8193	충남 천안시 동남구 중앙로 273-7 (신부동 873)	31117	천안시
아산사무소	041) 589-2506	041) 547-6084	충남 아산시 염치읍 염성길 70-26 (염성리 194-3)	31445	아산시
공주사무소	041) 850-4606	041) 856-4487	충남 공주시 전막1길 6-11 (신관동 591-6)	32573	공주시
세종사무소	044) 589-2120	044) 867-7096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서북부2로 3 (봉산리 387)	30015	세종시
서산·태안사무소	041) 671-3031	041) 663-5191	충남 서산시 수석산업로 25 (수석동 1-76)	32010	서산시·태안군
(태안분소)	041) 671-3701	041) 675-8403	충남 태안군 태안읍 후곡로 116 (동문리 894-2)	32144	태안군
논산사무소	041) 731-2819	041) 736-9030	충남 논산시 체육로 78 (취암동 51-8)	32993	논산시·계룡시
금산사무소	041) 750-4705	041) 754-4979	충남 금산군 금산읍 용머리길 28 (아인리 81-4)	32742	금산군
부여사무소	041) 830-3402	041) 836-3301	충남 부여군 규암면 홍수로 551 (합송리 1120)	33120	부여군
보령사무소	041) 939-7901	041) 934-0756	충남 보령시 체육관길 16 (죽정동 418-10)	33441	보령시
서천사무소	041) 950-7802	041) 952-1524	충남 서천군 서천읍 서문로 126 (화금리 624)	33633	서천군
홍성사무소	041) 940-3907	041) 631-7294	충남 홍성군 홍성읍 조양로 200 (고암리 548-5)	32232	홍성군
청양사무소	041) 940-5001	041) 942-9688	충남 청양군 청양읍 충절로 1163 (송방리 201-1)	33338	청양군
예산사무소	041) 330-4801	041) 331-2540	충남 예산군 예산읍 충령사로 36 (향전리 295-55)	32433	예산군

전북지원					
사무소명	일반전화	FAX	주소	우편번호	관할시군
경영직불팀	063) 230-3134	063) 243-9531	전북 전주시 덕진구 운암로 31 (팔복동2가 834-2)	54853	전주시·완주군
익산사무소	063) 839-0861	063) 835-3094	전북 익산시 무왕로 1646 (덕기동 381-2)	54570	익산시
군산사무소	063) 440-7311	063) 452-5071	전북 군산시 조촌5길 59 (조촌동 856-9)	54076	군산시
남원사무소	063) 620-8111	063) 635-6064	전북 남원시 충정로 252 (월락동 497)	55736	남원시
순창사무소	063) 650-6411	063) 653-4276	전북 순창군 순창읍 순창로 264 (남계리 277)	56034	순창군
임실사무소	063) 640-8211	063) 644-6066	전북 임실군 임실읍 호국로 1556-10 (오정리 133-2)	55930	임실군
정읍사무소	063) 570-6224	063) 533-1662	전북 정읍시 서부산업도로 396 (농소동 91-14)	56176	정읍시
김제사무소	063) 219-1962	063) 219-1999	전북 김제시 벽골제로 819 (입석동 408-1)	54416	김제시
부안사무소	063) 580-1111	063) 581-3448	전북 부안군 부안읍 오리정로 21-6 (서외리 455-43)	56311	부안군
진안사무소	063) 430-6511	063) 433-0606	전북 진안군 진안읍 대광길 11 (군하리 295-1)	55435	진안군
장수사무소	063) 350-3611	063) 351-3390	전북 장수군 장수읍 남동셋길 14-1 (장수리 653-1)	55637	장수군
무주사무소	063) 320-6411	063) 322-6070	전북 무주군 무주읍 향학로 90 (읍내리 401-1)	55520	무주군
고창사무소	063) 560-7151	063) 561-0437	전북 고창군 고창읍 녹두로 1264 (덕산리 866)	56443	고창군

전남지원					
사무소명	일반전화	FAX	주소	우편번호	관할시군
경영직불팀	062) 970-6238	062) 970-6280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800 (월계동 868-5)	62276	광주광역시
목포·신안사무소	061) 240-0431	061) 242-9423	전남 목포시 호남로64번길 19 (대안동 5)	58723	목포시·신안군
무안사무소	061) 450-8404	061) 453-8273	전남 무안군 무안읍 무안로 474 (성남리 189-1)	58531	무안군
여수사무소	061) 650-0403	061) 651-5148	전남 여수시 문수로 129 (문수동 111)	59700	여수시

전남지원					
사무소명	일반전화	FAX	주소	우편번호	관할시군
순천·광양사무소	061) 740-1740	061) 742-4706	전남 순천시 지현길 100 (덕월동 412-2)	57997	순천시·광양시
(광양분소)	061) 761-6061	061) 761-6065	전남 광양시 인덕로 1100 광양시청 제2청사 1층(칠성리 70)	57741	순천시·광양시
나주사무소	061) 330-5510	061) 333-2137	전남 나주시 송월4길 1 (송월동 1355)	58261	나주시
화순사무소	061) 379-6530	061) 373-6665	전남 화순군 화순읍 서양로 374-2 (일심리 533)	58105	화순군
담양사무소	061) 380-2310	061) 383-7791	전남 담양군 담양읍 천변5길 49 (천변리 391-7)	57348	담양군
장성사무소	061) 399-0952	061) 392-3662	전남 장성군 장성읍 역전로 167-6 (영천리 1478-14)	57220	장성군
곡성·구례사무소	061) 360-5803	061) 363-9326	전남 곡성군 곡성읍 읍내1길 6 (읍내리 778)	57537	곡성군·구례군
(구례분소)	061) 781-6061	061) 781-6063	전남 구례군 구례읍 동산1길 32 구례군농업기술센터 1층, (봉서리 891-5)	57660	구례군
고흥사무소	061) 830-2407	061) 834-3931	전남 고흥군 고흥읍 봉황길 11 (옥하리 213-1)	59538	고흥군
보성사무소	061) 850-2630	061) 853-6050	전남 보성군 보성읍 동암1길 220 (우산리 325-1)	59463	보성군
장흥사무소	061) 860-3517	061) 864-6065	전남 장흥군 장흥읍 문림로 10 (간산리 466-2)	59324	장흥군
강진사무소	061) 430-8720	061) 434-4411	전남 강진군 강진읍 목리길 17 (동성리 66-8)	59240	강진군
완도사무소	061) 550-8310	061) 553-6060	전남 완도군 완도읍 농공단지길 3 (죽청리 529-3)	59108	완도군
해남사무소	061) 530-0630	061) 536-9639	전남 해남군 해남읍 교육청길 35 (해리 221-1)	59038	해남군
진도사무소	061) 540-9552	061) 544-0534	전남 진도군 진도읍 공설운동장길 14-12 (동외리 1080-2)	58927	진도군
영암사무소	061) 470-3020	061) 473-5495	전남 영암군 영암읍 낭주로 195 (역리 168-2)	58414	영암군
영광사무소	061) 350-0520	061) 353-3739	전남 영광군 영광읍 천년로 1430 (녹사리 65-18)	57049	영광군
함평사무소	061) 320-4023	061) 324-5424	전남 함평군 함평읍 신기산길 16 (기각리 912-1)	57147	함평군

경북지원					
사무소명	일반전화	FAX	주소	우편번호	관할시군
경영직불팀	053) 320-5351	053) 327-0733	대구광역시 북구 동암로 76 (동천동 892-1)	41423	대구광역시
포항·울릉사무소	054) 250-3911	054) 254-6062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합기술로 55번길 10 (이인리 994, 995)	37563	포항시·울릉군
경주사무소	054) 750-1321	054) 774-6861	경북 경주시 현곡면 용담로 490 (하구리 1004-4)	38048	경주시
김천사무소	054) 429-0621	054) 433-0189	경북 김천시 혁신로 316-11 (율곡동 915)	39660	김천시
안동사무소	054) 820-4011	054) 841-4887	경북 안동시 제비원로 367 (안기동 285-3)	36626	안동시
구미·칠곡사무소	054) 440-0821	054) 453-3100	경북 구미시 송원동로 14-5 (송정동 68)	39280	구미시·칠곡군
(칠곡분소)	054) 977-6061	054) 977-6065	경북 칠곡군 왜관읍 중앙로 184 (왜관리 227-8)	39890	칠곡군
영주사무소	054) 630-3511	054) 635-5248	경북 영주시 영주로 86번길 30 (가흥동 1516)	36134	영주시
영천사무소	054) 339-0320	054) 334-2041	경북 영천시 어봉길 78 (대전동 348-1)	38821	영천시
상주사무소	054) 536-6060	054) 534-2170	경북 상주시 영남제일로 1154 (한신동 214)	37240	상주시
문경사무소	054) 559-8711	054) 553-3063	경북 문경시 남부4길 26 (모전동 63-3)	36950	문경시
경산사무소	053) 819-7911	053) 815-0347	경북 경산시 자인면 한장군로 242 (북사리 520-4)	38549	경산시
의성·군위사무소	054) 380-4111	054) 834-6649	경북 의성군 봉양면 경북대로 5223 (분도리 922-3)	37360	의성군·군위군
(군위분소)	054) 383-6060	054) 383-1189	대구시 군위군 군위읍 동서길 29 (서부리 386)	43115	군위군
청송·영양사무소	054) 870-1422	054) 872-7792	경북 청송군 진보면 진보로 215 (각산리 503-37)	37405	청송군·영양군
(영양분소)	054) 680-1201	054) 680-1299	경북 영양군 영양읍 중앙로 55 (서부리 521-2)	36539	영양군
영덕사무소	054) 730-0521	054) 734-0940	경북 영덕군 영덕읍 군청길 129 (남석리 230-1)	36433	영덕군
청도사무소	054) 370-2921	054) 371-6064	경북 청도군 화양읍 화양로 77 (합천리 384-3)	38333	청도군
고령사무소	054) 950-1130	054) 955-9236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장기공단 1길 11 (고아리 112-1)	40141	고령군
성주사무소	054) 979-2820	054) 933-2022	경북 성주군 선남면 성주로 3757-11 (관화리 1091-3)	40045	성주군
예천사무소	054) 650-0721	054) 655-6061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204 (서본리 224-1)	36826	예천군
봉화사무소	054) 679-1936	054) 672-1186	경북 봉화군 봉화읍 봉화로 1079 (해저리 101-2)	36236	봉화군
울진사무소	054) 782-6060	054) 780-1612	경북 울진군 울진읍 대흥신림로 1404 (읍내리 230-2)	36326	울진군

농업법인 업무안내서

경남지원					
사무소명	일반전화	FAX	주소	우편번호	관할시군
경영직불팀	055) 230-0856	055) 275-2824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49번길 16 (용호동8-5)	51430	창원시
부산사무소	051) 604-8410	051) 864-7376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대로 222, 2층 (거제동 501)	47537	부산시
울산사무소	052) 265-6060	052) 260-3931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언양로 436 (반송리 425-1)	44936	울산시
진주사무소	055) 216-0218	055) 759-6031	경남 진주시 솔밭로 80번길 16 (상평동 221-5)	52805	진주시
사천사무소	055) 830-1410	055) 855-2815	경남 사천시 용현면 진삼로 900 (신복리 500-6)	52538	사천시
통영·거제사무소	055) 650-7104	055) 649-1215	경남 통영시 광도면 향교옆길 86 (죽림리 379-5)	53021	통영시·거제시
고성사무소	055) 670-1911	055) 673-6046	경남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 24-61 (교사리 119-1)	52932	고성군
밀양사무소	055) 350-2015	055) 356-3909	경남 밀양시 중앙로 128 (가곡동 656-3)	50444	밀양시
김해·양산사무소	055) 310-4911	055) 336-3044	경남 김해시 전하로 63번길 8-9 (홍동 42-8)	50965	김해시·양산시
함안사무소	055) 580-7903	055) 583-2603	경남 함안군 가야읍 말산3길 29 (말산리 186)	52046	함안군
의령사무소	055) 570-6202	055) 572-8168	경남 의령군 의령읍 의합대로 44-6 (무전리 173)	52129	의령군
창녕사무소	055) 530-3803	055) 532-7895	경남 창녕군 창녕읍 여초길 104 (여초리 213)	50334	창녕군
하동사무소	055) 880-5610	055) 883-1990	경남 하동군 하동읍 경서대로 75 (광평리 427)	52328	하동군
남해사무소	055) 860-5704	055) 864-7883	경남 남해군 고현면 탑동로 37 (대사리 684)	52404	남해군
함양사무소	055) 960-3902	055) 964-0332	경남 함양군 함양읍 영림서길 32 (백연리 67-1)	50044	함양군
산청사무소	055) 970-1612	055) 972-2123	경남 산청군 산청읍 중앙로 26 (산청리 239)	52224	산청군
합천사무소	055) 930-1834	055) 932-0818	경남 합천군 합천읍 핫들1로 50 (합천리 1636)	50231	합천군
거창사무소	055) 940-4603	055) 944-0630	경남 거창군 거창읍 수남로 2119 (정장리 967-53)	50147	거창군

제주지원					
사무소명	일반전화	FAX	주소	우편번호	관할시군
경영직불팀	064) 728-5261	064) 728-5214	제주시 청사로 59 제주지방합동청사 5층 540호(도남동 662)	63219	제주시
서귀포사무소	064) 735-4911	064) 735-4902	제주도 서귀포시 신효중앙로 17 (신효동 633-2)	63606	서귀포시

제 2 장

농업법인 분야별 운영

I 회계 분야

1. 회계기록의 목적과 필요성

가. 회계기록의 목적

- ① 법인경영체의 손익이 얼마인지, 경영결과 이익이 발생한 것인지 손실이 발생한 것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자료가 있어야 경영자는 정확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효율적인 경영관리를 위한 경영성과분석, 경영진단, 경영개선 및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정보로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 ② 농업법인의 외부 이해관계자인 정부, 투자자, 금융기관, 세무서, 주주(조합원)의 경제적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나. 회계기록의 필요성

- ① 회계기록은 객관적인 자료기록을 통하여 법인경영의 성과 및 재산상태를 파악하고 향후 개선방향 등 경영의사결정을 위한 기본 자료를 위하여 필요합니다.
- ② 금융기관의 대출시 신용평가, 투자자의 모집, 외상거래 등을 위하여서는 은행 등에 신용평가를 위한 재무제표 등 회계자료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③ 농업법인은 법인세법상 영리법인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농업법인은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으며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기장하여야 하며, 장부와 관계 있는 중요한 증명서류를 비치·보존하여야 합니다. 법인세신고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 처분 (결손금)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회계기록과 결산절차

가. 전표와 분개장

분개를 기록하는 서식으로는 전표와 분개장이 있으며,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전표를 주로 사용합니다. 최근에는 회계 시스템이 전산화되어 있어 거래가 발생하면 해당 부서에서 직접 전표를 작성하고 이를 컴퓨터에 입력합니다. 이렇게 입력된 전표와 관련 증빙 서류를 경리부에 제출하면, 경리부에서는 이를 총괄 집계하여 각종 회계 보고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전산 시스템이 아닌 수기로 작성할 경우에는 전표 입력의 편의를 위해 입금전표, 출금전표, 대체전표로 구분하여 사용합니다.

나. 계정기입 : 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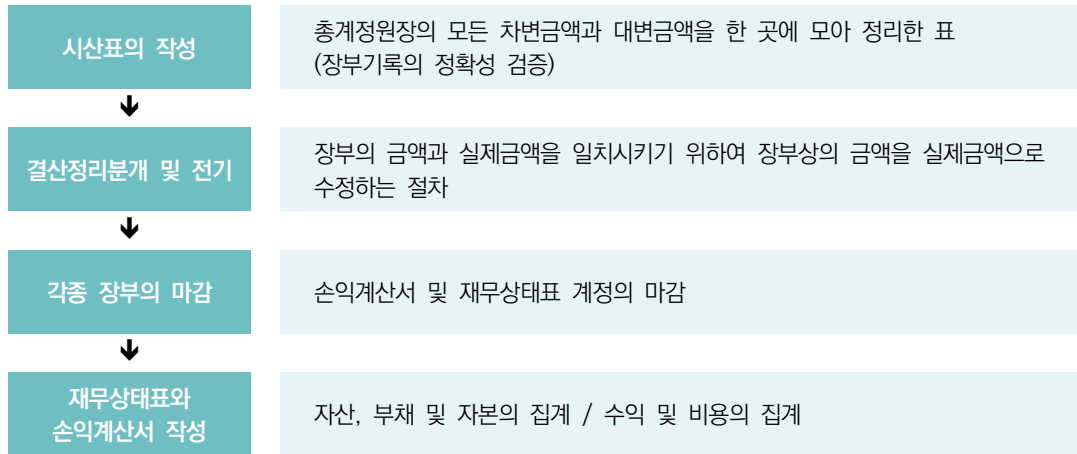
거래가 발생하면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 분개하고, 그 발생 순서대로 전표에 기록합니다. 하지만 하나의 거래 단위로 작성되는 전표만으로는 특정 시점의 전체적인 재산 상태나 영업 성과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표에 기록된 거래를 각 계정과목별 해당 계정에 옮겨 적는데, 이를 ‘전기’라고 합니다.

다. 총계정원장

법인의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상의 모든 계정을 한데 모아놓은 장부가 바로 총계정원장입니다. 총계정원장에는 모든 거래가 계정과목별로 분류·정리되어 있어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의 증감 변화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총계정원장을 정확하게 관리하면 언제든지 필요한 계정과목의 변동 사항을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회계 기말에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작성하는 데 필수적인 기초 자료가 됩니다.

라. 결산절차



① 자산표의 작성

회계에서는 모든 거래를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 기록하는 ‘복식부기’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하게 분개했다면 차변금액과 대변금액은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총계정원장에서 회계기간 중의 모든 거래가 분개를 통해 전기 되고 해당 계정과목의 차변과 대변에 기록되기 때문에 모든 계정과목의 차변금액의 합계액과 대변금액의 합계액은 일치한다. 이를 회계에서는 대차평균의 원리라 합니다.

이 원리에 따라 총계정원장의 모든 계정을 한 곳에 모아 정리하면 모든 계정의 차변금액 합계와 대변금액의 합계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 모든 거래의 분개와 전기가 올바르게 이루어졌는지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총계정원장에 있는 모든 계정의 차변금액과 대변금액을 한 곳에 모아 정리한 표를 자산표라 합니다. 본격적인 결산을 하기 이전단계에서 그동안 장부기록이 정확한 지를 점검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표입니다.

자산표를 작성하면 장부기록의 정확성을 점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계정이 하나의 표에 요약되어 집계되므로 기업의 재산상태 및 영업성과를 개괄적으로 알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② 결산정리분개

실제로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분개를 하고 전기를 해서 장부의 기록을 정확히 한다고 해도 회계기간 중에 기록하지 못한 재산의 변동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제품 및 상품이 손상되든가 아니면 도난당하든가, 그리고 수익과 비용 중에서도 미리 지급하거나 수령하여 장부상의 기록과 실제 당기에 발생한 수익이나 비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부상의 금액과 실제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모두 조사해서 장부상의 금액을 실제금액으로 수정하는 절차가 필요한데 이를 결산정리(또는 수정) 분개라고 합니다.

결산정리를 하게 되면 장부상의 기록이 비로소 법인의 실제 재산상태 및 영업 성과를 나타내게 되어 정확한 법인의 실상을 나타내는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가 작성될 수 있는 것입니다.

법인에서 공통적으로 수행되는 결산정리사항의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 수익, 비용 계정의 정리 - 미수이자, 미수임대료, 선급비용 등
- ㉡ 대손상각, 감가상각비 및 퇴직급여
- ㉢ 상품 및 제품계정의 정리 - 상품 및 제품의 기말재고의 평가 및 매출원가의 인식

③ 정산표의 작성

결산절차는 합계잔액시산표의 작성으로부터 시작하여 결산정리를 행하고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작성함으로써 마감됩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결산절차를 보다 간편하고 정확하게 행하기 위해 결산절차를 요약하여 하나의 표에 집약시킨 것을 정산표라고 합니다.

실무에서는 합계잔액시산표를 작성하고 결산정리분개를 한 후 정산표를 작성하여 오류가 없는지를 확인한 후 이를 근거로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를 작성합니다.

④ 각종 장부의 마감과 이월

손익계산서 계정인 수익과 비용을 마감하고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잔액을 재무상태표의 이익잉여금 계정 대체하여 손익 계정을 마감한 후, 이어서 재무상태표 계정을 마감합니다. 재무상태표 계정의 잔액은 차기의 영업개시일에 원래 잔액이 생긴 번에 전기이월이라 표시하고 동일한 금액을 기재하게 됩니다.

⑤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작성

총계정원장을 비롯하여 모든 장부의 마감이 끝나면 다음으로 결산절차의 마지막 단계이자 회계기록의 목적인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재무상태표는 결산정리가 끝난 총계정원장의 계정 중 재산을 나타내는 자산, 부채, 자본계정을 하나의 표에 집약시킴으로 작성됩니다. 정산표의 재무상태표란에는 모든 자산, 부채, 자본계정의 잔액이 나와 있으므로 이것을 기준으로 자산계정의 잔액은 차변에, 부채와 자본계정의 잔액은 대변에 집합시키면 됩니다.
- 손익계산서는 일정기간 동안 얼마나 벌었는지를 나타내는 영업성과를 밝히는 표로서, 일정기간 동안의 수익과 비용을 집계하여 그 차액인 당기순이익을 산출하는 표입니다.

손익계산서는 결산정리가 끝난 총계정원장의 계정 중 수익과 비용계정을 하나의 표에 집약시킴으로써 작성됩니다. 정산표상의 수익과 비용계정란에 모든 잔액이 나와 있으므로 이것을 기준으로 수익계정의 잔액은 대변에 비용계정의 잔액은 차변에 집합시키면 됩니다.

⑥ 전산화 환경에서 결산절차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회계기록을 하는 경우에는 전산에 분개를 등록하면 그 다음 단계는 전산이 자동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결산시 법인회계담당은 합계잔액시산표를 조회하여 결산조정분개를 등록하고 최종적으로 장부마감과 이월이라는 회계시스템의 명령을 수행함으로써 자동적으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의 회계기록의 절차를 설명한 것은 전산화된 환경하에서도 회계기록이 이루어지는 절차를 이해함으로써 전산프로그램을 능숙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마. 재무상태표(구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의 이해

① 재무상태표

특정시점에 있어서 법인이 자금을 어디에서 얼마큼 조달하여 이러한 자금을 어떠한 자산에 얼마나 투자하였는지를 보여주는 보고서입니다. 법인이 영업활동을 하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어느 정도인지(총자산의 규모), 자산의 유형별로는 어떠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얼마나 쉽게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지, 이러한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얼마의 자금을 빌렸는지(총 차입금의 규모),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주주들이 투자를 얼마나 했는지(자본금의 규모) 및 그 동안 기업이 영업활동을 통하여 창출한 이익을 얼마나 유보하고 있는지 등을 보여주는 법인의 재무상태입니다.

[재무상태표의 일반적 형태]

차변			대변		
계정과목		금액	계정과목		금액
유동자산	당좌자산	3,000,000	부채	유동부채	120,000,000
	재고자산	25,000,000		비유동부채	80,000,000
비유동자산	투자자산	5,000,000	자본	자본금	100,000,000
	유형자산	300,000,000		자본잉여금	
	무형자산	25,000,000		이익잉여금	70,000,000
	기타비유동자산	12,000,000			
합계		370,000,000	합계		370,000,000
영업을 하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현황 및 자금운영 파악			자금을 어떻게 조달하였는지를 파악		

ㄱ) 자산

자산이란 용어는 우리가 흔히 쓰는 ‘재산’이라는 말과 비슷합니다. 현금, 토지, 건물, 자동차와 같이 금전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물건 및 법적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처럼 농업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은 회계상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하며, 분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동자산 : 결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을 말합니다. 유동자산은 별도의 판매 과정 없이도 현금화가 빠른 당좌자산과, 생산이나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 중인 재고자산으로 구분됩니다.
- 비유동자산 : 판매 목적이 아니라 영업 활동을 위해 장기간 보유하는 자산입니다. 일반적으로 현금화하는 데 시간이 걸리며, 성격에 따라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비유동자산으로 구분됩니다.

ㄴ) 부채

부채란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현재 타인에게 지급해야 할 의무(빚)를 말합니다. 즉, 다른 법인이나 개인에게 돈을 빌린 경우(차입금), 물건을 외상으로 구입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외상매입금), 또는 남에게 줄 돈을 임시로 받아 보관하고 있는 경우(예수금) 등이 해당합니다.

농업법인이 농작물 재배를 위해 농협에서 자금을 빌리면 부채가 되며, 국가 보조사업 등으로 정부 자금을 지원받을 때도 상환 의무가 있다면 부채로 처리합니다. 반면, 상환 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시설 등)의 구입 가격에서 정부보조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장부에 기록하게 됩니다.

부채는 유동부채와 장기부채로 구분되며 다음과 같습니다.

- 유동부채 : 재무상태표 작성의 기준일이 되는 날로부터(일반적으로 사업연도 종료일을 말함) 1년 이내에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비유동부채 : 재무상태표 작성의 기준일이 되는 날로부터 1년 이후에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부채를 말합니다.

ㄷ) 자본

불황기에는 자본이 부족하면 버티기가 어렵습니다. 여기서 자본이란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투자한 자금 및 경영 활동의 결과물을 말합니다. 자본은 주주나 출자자가 최초로 투자한 금액뿐만 아니라, 사업 결과 발생한 이익 중 사내에 적립된 이익잉여금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자본이란 총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나머지로써 자기자본 또는 순자산이라고 합니다. 즉 자본이란 법인을 그만 둘 경우에 출자자나 주주들에게 돌아가는 몫을 말합니다.

- 자본금(출자금) : 출자자, 주주, 개별농가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투자한 금액
- 자본잉여금 :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으로 주식발행초과금, 감자차익 등
- 이익잉여금 : 영업결과 발생한 이익으로서 출자자나 주주에게 배당하지 않고 법인의 내부에 유보하고 있는 잉여금

② 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는 일정기간(사업연도)동안 발생한 수익과 수익을 얻기 위하여 발생한 비용을 대응시킴으로써 일정기간 동안의 이익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한 보고서입니다. 손익계산서는 매출액에서 순차적으로 해당 비용을 차감하여 당기순이익을 산출하고 있으며, 기업의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당기순이익 외에도 단계별로 매출총이익, 영업이익, 경상이익 등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각 이익들은 중요한 경영상의 지표로 사용됩니다.

$$\text{당기순이익} = \text{총수익} - \text{비용}$$

[손익계산서 형태]

비용		수익	
매출원가	매출액에 직접 대응되는 비용으로 제품 매출원가, 상품매출원가로 구분기재	매출액	법인의 정관상 목적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으로 제품매출, 상품매출, 수수료수입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제품이나 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을 위하여 발생한 관리 및 판매비용		
영업 외 비용	이자비용, 유형자산 처분손실 등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 일반관리비에 포함되지 않는 비용		
법인세 비용	법인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지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등	영업 외 수익	이자수익, 유형자산처분이익과 같이 목적사업 외에서 발생한 수익
당기순 이익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잔액		

보고식 손익계산서의 형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고식 손익계산서 양식]

계정과목	금액	
I. 매출액	.	2,120,000,000
제품매출	1,520,000,000	.
상품매출	600,000,000	.
II. 매출원가	.	1,256,000,000
제품매출원가	836,000,000	.
상품매출원가	420,000,000	.
III. 매출총이익	.	864,000,000
IV. 판매비와일반관리비	.	691,200,000
V. 영업이익	.	172,800,000
VI. 영업외수익	.	28,500,000
VII. 영업외비용	.	87,500,000
VIII.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113,800,000
IX. 법인세비용	.	5,690,000
X. 당기순이익	.	108,110,000

바. 거래의 의미와 거래의 8 요소

- ① 거래란 물건을 구입하고 판매하면서 그 대금을 주고 받는 행위를 일반적으로 의미합니다. 상거래 행위의 거래도 회계상 거래에 포함되나 화제가 발생하여 건물이 소실되어 건물과 건물에 있는 제품이 소실된 경우에도 회계상 거래에 포함됩니다.
- ② 회계상 거래가 되어 장부에 기록하기 위하여서는 다음의 조건이 충족하여야 합니다.
 - 재산의 증감변화를 초래하고
 - 그것을 금액으로 측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금액으로 측정할 수 없는 것은 거래가 될 수 없습니다.
- ③ 거래란 재무상태표를 구성하는 자산, 부채, 자본과 손익계산서의 구성항목인 수익, 비용의 증감변화를 초래하는 것을 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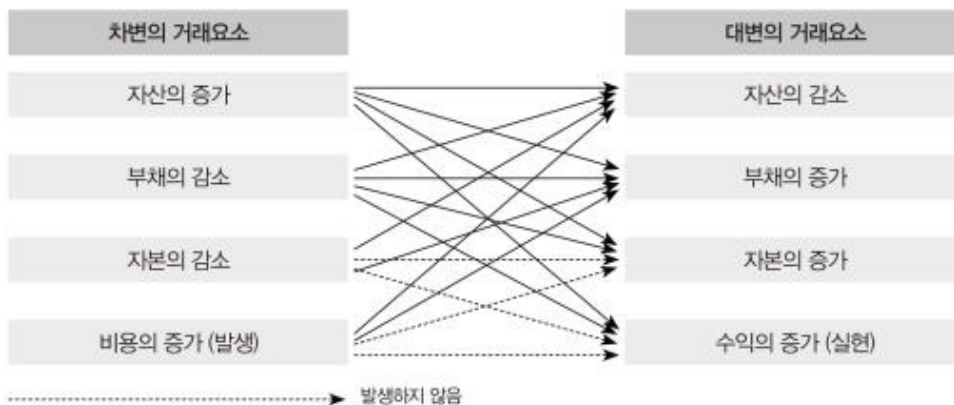
④ 거래의 8요소

재무상태표의 구성요소인 자산, 부채, 자본은 그 금액이 증가하거나 감소하지만, 손익계산서의 구성요소인 수익과 비용은 발생하거나 실현되는 특징을 가집니다.

예를 들어, 법인이 컴퓨터를 구입하면 자산(비품)은 증가하고 자산(보통예금)은 감소합니다. 종업원에게 식사를 제공할 경우 비용(복리후생비)이 발생하고 자산(현금)은 감소하며, 사과를 판매할 경우 수익(제품매출)이 실현됨과 동시에 판매대금으로 받은 자산(현금)이 증가합니다.

이처럼 모든 거래는 차변(왼쪽)과 대변(오른쪽)의 요소가 서로 결합하여 발생합니다. 차변과 대변에 각각 4개씩, 총 8개의 요소가 상호 원인과 결과가 되어 결합하는 것을 거래의 8요소라고 하며, 이를 통해 회계상의 모든 경제적 사건을 기록하게 됩니다.

[거래의 결합형태]



⑤ 거래의 이중성

복식부기에서는 거래의 기입을 차변과 대변의 양변에 기록합니다. 차변에 어떠한 원인이 발생하면 대변에 그 결과 동일한 금액 변화를 초래하는 것을 거래의 이중성이라고 합니다.

법인이 영업사원의 업무용 컴퓨터를 1,500,000원에 구입하고 카드로 결제한 경우 아래와 같이 차변과 대변에 기록을 합니다.

(차변) 집기와비품	1,500,000원	(대변) 미지급금	1,500,000원
------------	------------	-----------	------------

위의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차변에 자산의 요소인 집기와비품이 증가하였으며 대변에 부채요소인 미지급금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⑥ 계정과목

유사한 성격의 거래를 묶어서 처리하기 위하여 설정한 계정의 성격을 나타내는 이름을 계정과목이라 합니다. 예를 들어 직원에게 경조사비로 100,000원과 150,000원에 해당하는 화환을 보낸 경우라면 직원의 복리후생과 관련된 비용으로 보아 복리후생 비계정으로 아래와 같이 처리합니다.

(차변) 복리후생비	250,000원	(대변) 현금	250,000원
------------	----------	---------	----------

직원에게 경조사비, 작업복지원, 식사제공 등을 하나의 계정이 아니라 경조사비, 작업복비, 식대 등 거래건 별로 계정을 사용하면 계정이 너무 복잡해질 수 있어 유사한 성격의 비용을 묶어서 처리합니다.

⑦ 분개 및 분개의 사례

분개란 회계상의 거래를 인식하여 어떤 계정과목을 어느 변(차변 또는 대변)에, 얼마의 금액으로 기록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회계의 기초인 ‘거래의 8요소’는 일대일, 일대다, 또는 다대다의 결합을 통해 발생합니다. 이론적으로는 차변 요소 4개와 대변 요소 4개가 결합하여 총 16가지의 결합 형태가 가능하지만, 실무 및 이론상 거의 발생하지 않는 4가지 조합을 제외한 12가지 거래 형태가 일반적입니다.

최근의 전산화된 회계시스템에서는 분개만 정확하게 입력하면 장부 전기와 재무제표 생성까지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분개에 대한 정확한 개념과 재무제표에 대한 이해도만 갖춘다면, 자체적인 회계장부 정리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각 거래 요소의 결합 형태에 따른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산의 증가와 자산의 감소

냉장고 1대를 2,000,000원에 구입하고 거래처에 무통장입금

(차변) 집기비품	2,000,000원	(대변) 보통예금	2,000,000원
-----------	------------	-----------	------------

• 자산의 증가와 부채의 증가

냉장고 1대 2,000,000원에 구입하고 법인카드로 결제하였다.

(차변) 집기비품	2,000,000원	(대변) 미지급금	2,000,000원
-----------	------------	-----------	------------

(카드대금은 다음 달 청구되어 납부하게 됩니다)

• 자산의 증가와 자본의 증가

영농조합법인의 신규조합원 5명을 모집하고 출자금으로 10,000,000원이 법인의 통장에 입금

(차변) 보통예금	10,000,000원	자본금(혹은 출자금)	10,000,000원
-----------	-------------	-------------	-------------

• 자산의 증가와 수익의 증가(실현)

법인의 제품재고인 사과를 5,000,000원에 외상판매

(차변) 외상매출금	5,000,000원	(대변) 제품매출	5,000,000원
------------	------------	-----------	------------

• 부채의 감소와 자산의 감소

만기가 도래하는 농협의 차입금 30,000,000원을 보통예금통장에서 이체상환

(차변) 단기차입금	30,000,000원	(대변) 보통예금	30,000,000원
------------	-------------	-----------	-------------

• 부채의 감소와 부채의 증가

만기가 도래한 농협의 차입금 30,000,000원을 5년 만기 장기차입금으로 대환

(차변) 단기차입금	30,000,000원	(대변) 장기차입금	30,000,000원
------------	-------------	------------	-------------

• 부채의 감소와 자본의 증가

영농조합법인이 차입한 차입금 중 김갑동씨가 농업인의 조건에 충족하여 차입금을 출자금으로 대체하여 조합원가입을 요청함에 따라 조합총회에서 심의한 결과 조합원으로 가입을 승인하였으며 차입금액은 5,000,000원임

(차변) 단기차입금	5,000,000원	(대변) 자본금(출자금)	5,000,000원
------------	------------	---------------	------------

- 부채의 감소와 수익의 증가(실현)

법인의 임원의 단기차입금 10,000,000원에 대하여 채무상환을 면제함

(차변) 단기차입금	10,000,000원	(대변) 채무면제이익	10,000,000원
------------	-------------	-------------	-------------

- 자본의 감소와 자산의 감소

법인의 조합원이 탈퇴하여 출자금 5,000,000원을 예금으로 반환함

(차변) 출자금	5,000,000원	(대변) 보통예금	5,000,000원
----------	------------	-----------	------------

- 자본의 감소와 부채의 증가

법인의 정기총회에서 배당금 3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결의함

(차변) 이익잉여금	30,000,000원	(대변) 미지급배당금	30,000,000원
------------	-------------	-------------	-------------

(이익잉여금도 자본에 해당합니다)

- 자본의 감소와 자본의 증가

거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자본의 감소와 수익의 증가(실현)

거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비용의 증가와 자산의 감소

차량의 타이어를 교체하고 현금 200,000원을 지급함

(차변) 차량유지비	200,000원	(대변) 현금	200,000원
------------	----------	---------	----------

- 비용의 증가와 부채의 증가

차량의 타이어를 교체하고 200,000원을 카드 결제함

(차변) 차량유지비	200,000원	(대변) 미지급금	200,000원
------------	----------	-----------	----------

- 비용의 증가와 자본의 증가

거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비용의 증가와 수익의 증가(실현)
거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손익계산서 - 재무상태표 - 합계시산표

- 손익계산서는 경영분석 혹은 경영진단에서 판매분석, 비용분석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비용분석에서 얻은 자료는 경영비 절감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재무상태표는 자산의 변동상태를 일목요연하게 표시하고 있으므로 재무상태표를 연도별로 비교하면 자산의 변동상태를 비교분석할 수 있으며 경영체의 안정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 합계시산표는 원장 계정의 차변과 대변의 금액을 합계해서 작성하는 표이고, 잔액시산표는 각각 계정의 차변에 차변 잔액을, 대변에 대변 잔액을 모아서 작성한 표입니다. 이 둘을 하나의 표에 모아서 작성한 것이 합계잔액시산표입니다.
일정 기간 동안 발생한 모든 계정과목의 합계와 잔액을 나타낸 표이기 때문에 모든 계정과목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한 중요자료입니다.

3. 세무 신고

농업법인은 농업소득에 대해 법인세 면제 혜택을 받기도 하지만, 신고 의무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면제 대상 소득이라 하더라도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위에서 언급한 ‘수입금액 기준 가산세(무신고 시 수입금액의 0.07%)’ 등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가. 주요 세목별 신고 일정 및 제출 서류

농업법인은 일반 영리법인과 동일한 납세의무를 지며, 각 세목별로 정해진 기한 내에 정확한 근거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① 법인세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ㄱ) 신고 대상

법인의 소득(수익-비용)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12월 결산법인은 매년 3월 31일 까지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2026년부터는 개정된 법인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ㄴ) 필수 첨부 서류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와 함께 농업법인 특유의 혜택을 받기 위한 ‘세액감면신청서’ 및 ‘면제세액계산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ㄷ) 감면 증빙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업 소득 감면을 적용받으려는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이 필수입니다. 법인세 신고 시 등록 상태가 유효해야 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경영체 등록 확인서 등의 보조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② 부가가치세 (분기별 신고 및 사업장 현황신고)

ㄱ) 과세/면세 구분

미가공 농산물 판매 등 면세 사업만 운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는 없으나, 매년 2월 10일까지 전년도 매출 실적을 보고하는 '사업장 현황신고'를 수행해야 합니다.

ㄴ) 과세 사업 겸업

농산물 가공·유통 등 과세 사업을 겸업하는 경우 1월과 7월에 확정신고를 진행하며, 예정신고 기간(4월, 10월)에도 해당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ㄷ) 영세율 및 사후환급

농기계, 비료 등 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사후환급 특례는 최근 법 개정을 통해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관련 세금계산서를 철저히 관리하여 매입세액 환급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③ 원천세 (매월 10일)

ㄱ) 신고 대상

상시 근로자 및 일용직 근로자의 급여, 외부 전문가 용역비 지급 시 발생하는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합니다.

ㄴ) 제출 서류

매월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며,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법정 기한 내에 제출하여 가산세 발생을 방지해야 합니다.

나. 농업법인 세제 혜택과 경영체 등록

농업법인의 핵심 세제 혜택은 농업경영체 등록을 전제로 하며, 일몰 기한이 연장된 항목들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① 법인세 면제 및 감면

-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 :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모두 소득에 대해 100% 면제됩니다.
- 그 외 작물재배업 : 영농조합법인은 조합원 1인당 연간 6억 원에 해당하는 소득금액 면제, 농업회사법인은 5년간 50% 감면 혜택이 유지됩니다.
- 축산업·임업·농산물 유통·가공 등 : 농업회사법인은 5개 과세연도 50% 감면(최저한세 적용)

② 지방세 감면 (일몰 기한 유의)

농업법인이 영농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50~75%) 및 재산세(50%) 감면 혜택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일부 항목 2027년까지). 취득 후 일정 기간 내에 해당 목적 사업에 사용하지 않거나 매각할 경우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으므로 사후관리가 중요합니다.

다. 적격증빙의 수집 및 사후관리 유의사항

법인의 모든 지출은 세법에서 인정하는 적격증빙을 갖추어야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① 적격증빙의 종류 및 용어 변경

-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 과세물품은 세금계산서, 면세물품은 계산서를 수취합니다.
-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 법인 명의의 카드를 사용하여 지출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 기업업무추진비 : 기존의 '접대비' 명칭이 '기업업무추진비'로 변경되었습니다. 명칭은 바뀌었으나 증빙 요건은 동일하게 엄격하므로, 건당 3만 원(경조사비 20만 원) 초과 시 반드시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② 증빙 불비 시 불이익

- 증빙불비 가산세 :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3만 원 초과 거래에 대해 거래 금액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특히 기업업무추진비의 경우 적격증빙이 없으면 전액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손금불산입).
- 소득세 귀속 문제 : 증빙 없는 지출은 법인세 증가뿐만 아니라, 해당 금액이 대표자나 임직원의 개인 소득으로 간주되어 추가적인 소득세(인정상여) 부담을 안길 수 있습니다.
- 보존 의무 : 모든 장부와 증빙서류는 결산 확정일로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최근 국세청의 디지털 세정 강화로 인해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수기 증빙 자료 관리에 더욱 주의가 요구됩니다.

II 인사·노무 분야

1. 근로계약서 작성

- ① 근로자를 채용할 때는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② 근로계약서에는 임금(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근로시간, 휴일, 휴가, 취업의 장소 및 종사하여야 할 업무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해야 합니다.
- ③ 근로계약서는 2부를 작성해서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해야 합니다.
- ④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은 근로조건에 최저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조건은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미달할 수 없습니다. 노사 합의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법에서 정한 최저기준에 미달된다면 그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 ⑤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위약 예정의 금지, 전차금 상계의 금지, 강제 저금의 금지 등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 ㄱ) 위약 예정의 금지 :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체결은 금지됩니다.
 - ㄴ) 전차금 상계의 금지 : 취업 후 임금에서 변제할 것을 예정하여 금전을 대부하는 계약체결은 금지됩니다.
 - ㄷ) 강제 저금의 금지 : 근로계약의 체결 또는 존속조건으로 강제저축 또는 저축금의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체결은 금지됩니다.

2. 외국인 근로자 고용

가. 일반 고용허가제와 일반 외국인 근로자 고용

- ① 내국인의 고용기회를 보호하기 위해 외국인을 채용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우선 고용센터에 내국인 구인신청을 하여 구인노력(7일 ~ 14일)을 해야 합니다.
- ② 내국인 구인노력에도 불구하고 내국인을 고용하지 못한 경우 고용센터에 외국인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외국인 고용허용업종 및 고용 가능한 사업, 사업장이어야 함). 이때 고용센터는 사업주에게 외국인 근로자를 알선하고, 사업주는 알선 받은 외국인근로자 중 적격자를 선택하여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습니다.
- ③ 근로계약 체결은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해 서면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계약서에는 임금·근로시간·휴일·주요 업무내용 등 근로조건 및 계약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 ④ 근로계약이 체결되면 사용자는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해당근로자에 대한 사증 발급인정서를 신청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 제출서류 : 사증발급인정신청서, 고용허가서 사본,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등 사업장관련 입증서류 사본, 신원보증서 등
- ⑤ 외국인근로자는 재외공관에서 취업사증(E-9)을 발급받아 국내에 입국한 뒤 업무를 시작하기 전(입국 후 15일 이내) 취업 교육(16시간 이상)을 이수해야 하며, 사업주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허가서를 최초로 발급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6시간 사업주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나. 특례고용허가제(외국국적 동포)

① 내국인 구인노력

외국 국적의 동포를 채용하고자 하는 사용자도 일반 외국인근로자(E-9)를 고용할 때와 같이 고용센터를 통해 구인노력(7 ~ 14일)을 해야 합니다.

② 특례고용가능확인서 신청 및 발급

내국인을 고용하지 못한 경우, 동포를 채용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관할 고용센터에 특례 고용가능확인서 발급을 신청하여 승인받아야 합니다.

※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업주는 허용 인원 범위 내에서 외국인 구직명부에 등록된 외국국적 동포를 고용할 수 있습니다.

③ 근로계약 체결

ㄱ) 사업주와 외국국적 동포는 고용센터의 알선을 받거나 자율 구직(구인)이 가능합니다.

※ 단, 민간 알선기관의 유료 직업소개는 금지되며,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에 구직등록을 마친 동포(구직등록 필증 소지자)에 한하여 고용해야 합니다.

ㄴ) 사업주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 서면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서에는 임금·근로시간·휴일·주요 업무내용 등 근로조건 및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④ 근로개시 신고 및 취업신고

사업주는 동포가 근로를 시작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에 근로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동포는 취업 후 15일 이내에 법무부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취업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표준근로계약서(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_____(이하 “사업주”라 함)과(와) _____(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계약서일 : 년 월 일부터
2. 근무장소 :
3. 업무의 내용 :
4. 소정근로시간 : __시__분 ~ __시__분 (휴게 : 시 분 ~ 시 분) (1일 시간, 1주 시간)
5. 근무일/휴일 : 매주 __일 근무(필요시, 근무요일 _____), 주휴일 매주 __요일
-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함
6. 임금
- 월(일, 시간)급 : _____원
- 상여금 : 있음 () _____원, 없음 ()
- 그 밖의 수당(약정수당) : 있음 [], 없음 []
 : _____원, _____원
 : _____원, _____원
- 임금지급일 : 매월(매주 또는 매일) _____일(휴일의 경우는 전날 지급)
- 지급방법 : 근로자에게 직접(현금)지급 [], 근로자 명의 계좌에 입금 []
7. 연차유급휴가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8. 사회보험 적용여부
- 4대 사회보험(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적용(가입)을 원칙으로 함
※ (참고) 적용(가입)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 사항 및 사유를 기재
(예외 사유 해당 여부는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참조)
9. 근로계약서 교부
-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 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함(근로기준법 제17조 이행)
10.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의 성실한 이행의무
- 사업주와 근로자는 각자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을 지키고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11. 그 밖의 사항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관계법령에 따름

년 월 일

(사업주) 사업체명 : (전화 :)
 주 소 :
 대 표 자 : (서명)
 (근로자) 주 소 :
 연 락 처 :
 성 명 : (서명)

표준근로계약서(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_____(이하 “사업주”라 함)과(와) _____(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2. 근무장소 :
3. 업무의 내용 :
4. 소정근로시간 : __시__분 ~ __시__분 (휴게 : 시 분 ~ 시 분) (1일 시간, 1주 시간)
5. 근무일/휴일 : 매주 __일 근무(필요시, 근무요일 _____), 주휴일 매주 __요일
-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함
6. 임금
- 월(일, 시간)급 : _____ 원
- 상여금 : 있음 () _____ 원, 없음 ()
- 그 밖의 수당(약정수당) : 있음 [], 없음 []
- _____ 원, _____ 원
- _____ 원, _____ 원
- 임금지급일 : 매월(매주 또는 매일) _____ 일(휴일의 경우는 전날 지급)
- 지급방법 : 근로자에게 직접(현금)지급 [], 근로자 명의 계좌에 입금 []
7. 연차유급휴가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8. 사회보험 적용여부
- 4대 사회보험(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적용(가입)을 원칙으로 함
- ※ (참고) 적용(가입)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가입) 항목 등을 명확히 기재
(예외 사유 해당 여부는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참조)
9. 근로계약서 교부
-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
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함(근로기준법 제17조 이행)
10.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의 성실한 이행의무
- 사업주와 근로자는 각자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함
11. 그 밖의 사항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관계법령에 따름

년 월 일
 (사업주) 사업체명 : (전화 :)
 주소 :
 대표자 : (서명)
 (근로자) 주소 :
 주연락처 :
 성명 : (서명)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과 _____(이하 “사업주”라 함)과(와) _____(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
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2. 근무 장 소 :
3. 업무의 내용(직종) :
4. 소정근로시간 : __시__분 ~ __시__분 (1일 시간, 1주 시간)
- 휴게시간: 시 분~ 시 분, 시 분~ 시 분, 시 분~ 시 분
5. 근무일/휴일 : 매주 __일 근무(필요시, 근무요일), 주휴일 매주 __요일(해당자에 한정함)
-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함
※ 주휴일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로한 경우에 주당 1일을 유급으로 부여
6. 임 금
- 일(월, 시간)급 : _____원
- 상여금 : 있음 () _____원, 없음 ()
- 그 밖의 수당(약정수당) : 있음 [], 없음 []
. _____원,
. _____원, _____원
- 임금지급일 : 매월(매주 또는 매일) _____일(휴일의 경우는 전날 지급)
- 지급방법 : 근로자에게 직접(현금)지급 [], 근로자 명의 계좌에 입금 []
7. 연차유급휴가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8. 사회보험 적용여부
- 4대 사회보험(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적용(가입)을 원칙으로 함
※ (참고) 적용(가입)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가입) 항목 등을 명확히 기재
(예외 사유 해당 여부는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참조)
9. 근로계약서 교부
-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 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함(근로기준법 제17조 이행)
10.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의 성실한 이행의무
- 사업주와 근로자는 각자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을 지키고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11. 그 밖의 사항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관계법령에 의함

년 월 일

(사업주) 사업체명 : (전화 :)
주 소 :
대 표 자 : (서명)

(근로자) 주 소 :
연 락 처 :
성 명 : (서명)

단시간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이하 “사업주”라 함)과(와) _____(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개시일 : 년 월 일부터

※ 근로계약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등으로 기재

2. 근무장소 :

3. 업무의 내용 :

4.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요일	()요일	()요일	()요일	()요일	()요일
근로시간	시간	시간	시간	시간	시간	시간
업무 시작	시 분	시 분	시 분	시 분	시 분	시 분
업무 종료	시 분	시 분	시 분	시 분	시 분	시 분
휴게 시간	~ 시 분	~ 시 분	~ 시 분	~ 시 분	~ 시 분	~ 시 분

○ 주휴일 : 매주 요일

○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함

5. 임금

- 시간(일, 월)급 : 원

- 상여금 : 있음 () 원, 없음 ()

- 그 밖의 수당(약정수당) : 있음 [], 없음 []

· 원, 원
· 원, 원

- 초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률 : %

※ 단시간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면 법정 근로 시간 내라도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의 가산임금 지급('14.9.19. 시행)

- 임금지급일 : 매월(매주 또는 매일) 일(휴일의 경우는 전날 지급)

- 지급방법 : 근로자에게 직접(현금)지급 [], 근로자 명의 계좌에 입금 []

6. 연차유급휴가: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유급휴가 부여

7. 사회보험 적용여부

- 4대 사회보험(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적용(가입)을 원칙으로 함

※ (참고) 적용(가입)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가입) 항목 등을 명확히 기재
(예외 사유 해당 여부는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참조)

8. 근로계약서 교부

-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 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함(근로기준법 제17조 이행)

9.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의 성실한 이행의무

- 사업주와 근로자는 각자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함

10. 그 밖의 사항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관계법령에 따름

(사업주) 사업체명 : 년 월 일 (전화 :)

주 소 : (서명)

대 표 자 : (서명)

(근로자) 주 소 : (서명)

영 락 처 명 : (서명)

◁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다양한 사례가 있을 수 있어, 몇 가지 유형을 예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예시①) 주 5일, 일 6시간(근로일별 근로시간 같음)

- 근로일 : 주 5일, 근로시간 : 매 근로일 6시간, 근무요일 : 월, 화, 수, 목, 금
- 업무 시작 시각 : 09시 00분, 업무 종료 시각 : 16시 00분
- 휴게 시간 : 12시 00분부터 13시 00분까지
- 주휴일 : 일요일
-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함

○ (예시②) 주 2일, 일 4시간(근로일별 근로시간 같음)

- 근로일 : 주 2일, 근로시간 : 매 근로일 4시간, 근무요일 : 토, 일
- 업무 시작 시각 : 20시 00분, 업무 종료 시각 : 다음 날 0시 30분
- 휴게 시간 : 22시 00분부터 22시 30분까지
- 주휴일 : 해당 없음
-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함

○ (예시③) 주 5일, 근로일별 근로시간이 다름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근로시간	6시간	3시간	6시간	3시간	6시간
업무 시작	09시 00분	09시 00분	09시 00분	09시 00분	09시 00분
업무 종료	16시 00분	12시 00분	16시 00분	12시 00분	16시 00분
휴게 시간	12시 00분 ~ 13시 00분	-	12시 00분 ~ 13시 00분	-	12시 00분 ~ 13시 00분

- 주휴일 : 일요일
-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함

○ (예시④) 주 3일, 근로일별 근로시간이 다름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근로시간	4시간	-	6시간	-	5시간
업무 시작	14시 00분	-	10시 00분	-	14시 00분
업무 종료	18시 30분	-	17시 00분	-	20시 00분
휴게 시간	16시 00분 ~ 16시 30분	-	13시 00분 ~ 14시 00분	-	18시 00분 ~ 19시 00분

- 주휴일 : 일요일
-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함

※ 주의사항

- 기간제·단시간근로자 주요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 위반 적발 시 과태료 부과 (인당 500만원 이하)
- 사용자가 업무량 변동 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조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려면 근로자합의 책의가 있어야 함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0. 1. 10.>

표준근로계약서 Standard Labor Contract

(앞쪽)

아래 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한다.

The following parties to the contract agree to fully comply with the terms of the contract stated hereinafter.

사용자 Employer	업체명 Name of the enterprise	전화번호 Phone number
	소재지 Location of the enterprise	
	성명 Name of the employer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Identification number
근로자 Employee	성명 Name of the employee	생년월일 Birthdate
	본국주소 Address(Home Country)	
1. 근로계약기간	- 신규 또는 재입국자: () 개월 - 사업장변경자: 년 월 일 ~ 년 월 일 * 수습기간: [] 활용(입국일부터 [] 1개월 [] 2개월 [] 3개월 [] 개월) [] 미활용 ※ 신규 또는 재입국자의 근로계약기간은 입국일부터 기산함(다만,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제1항에 따라 재입국(성실재입국)한 경우는 입국하여 근로를 시작한 날부터 기산함).	
1. Term of Labor contract	- Newcomer or Re-entering employee: () month(s) - Employee who changed workplace: from (YY/MM/DD) to (YY/MM/DD) * Probation period: [] Included (for [] 1 month [] 2 months [] 3 months from entry date - or specify other: _____), [] Not included ※ The employment term for newcomers and re-entering employees will begin on their date of arrival in Korea, while the employment of those who re-entered through the committed worker's system will commence on their first day of work as stipulated in Article 18-4 (1) of Act on Foreign Workers' Employment, etc.	
2. 근로장소	※ 근로자를 이 계약서에서 정한 장소 외에서 근로하게 해서는 안 됨.	
2. Place of employment	※ The undersigned employee is not allowed to work apart from the contract enterprise.	
3. 업무내용	- 업종: - 사업내용: - 직무내용: ※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수행할 구체적인 업무를 반드시 기재	
3. Description of work	- Industry: - Business description: - Job description: ※ Detailed duties and responsibilities of the employee must be stated	
4. 근로시간	시 분 ~ 시 분 - 1일 평균 시간외 근로시간: 시간 (사업장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시간 이내) - 교대제 ([] 2조2교대, [] 3조3교대, [] 4조3교대, [] 기타)	※ 가사사용인, 개인간병인의 경우에는 기재를 생략할 수 있음. ※ Employers of workers in domestic help, nursing can omit the working hours.
4. Working hours	from () to () - average daily over time: hours (changeable depending on the condition of a company): up to hour(s) - shift system ([] 2groups 2shifts, [] 3groups 3shifts, [] 4groups 3shifts, [] etc.)	
5. 휴게시간	1일 분	
5. Rest hours	() minutes per day	
6. 휴일	[] 일요일 [] 공휴일([] 유급 [] 무급) [] 매주 토요일 [] 격주 토요일, [] 기타()	
6. Holidays	[] Sunday [] Legal holiday([] Paid [] Unpaid) [] Every saturday [] Every other Saturday [] etc.()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7. 임금	1) 월 통상임금 ()원 - 기본급[(월, 시간, 일, 주)급] ()원 - 고정적 수당: ()원, ()원 수당: ()원 - 상여금 ()원 * 수습기간 중 임금 ()원, 수습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 근무기간 ()원 2)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수당 지급(상시 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에는 해당되지 않음)
7. Payment	1) Monthly Normal wages ()won - Basic pay[(Monthly, hourly, daily, weekly) wage] ()won - Fixed benefits: () benefits : ()won, () benefits : ()won - Bonus: ()won * Wage during probation () won, but for up to the first 3 months of probation period: () won 2) Overtime, night shift or holiday will be paid 50% more than the employee's regular rate of pay(This is not applicable to business with 4 or less employees).
8. 임금지급일	매월 ()일 또는 매주 ()요일. 다만, 임금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전날에 지급함.
8. Payment date	Every ()th day of the month or every () day) of the week. If the payment date falls on a holiday, the payment will be made on the day before the holiday.
9. 지급방법	[] 직접 지급, [] 통장 입금 * 사용자는 근로자 명의로 된 예금통장 및 도장을 관리해서는 안 됨.
9. Payment methods	[] In person, [] By direct deposit transfer into the employee's account * The employer must not keep the bankbook and the seal of the employee.
10. 숙식제공	1) 숙박시설 제공 - 숙박시설 제공 여부: [] 제공 [] 미제공 - 제공 시, 숙박시설의 유형([] 주택, [] 고시원, [] 오피스텔, [] 숙박시설(여관, 호텔, 펜션 등), [] 컨테이너, [] 조립식 패널, [] 사업장 건물, 기타 주택형태 시설()) - 숙박시설 제공 시 근로자 부담금액: 매월 ()원 2) 식사 제공 - 식사 제공 여부: 제공([] 조식, [] 중식, [] 석식) [] 미제공 - 식사 제공 시 근로자 부담금액: 매월 ()원 * 근로자의 비용 부담 수준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 협의(신규 또는 재입국자의 경우 입국 이후)에 따라 별도로 결정.
10. Accommodations and Meals	1) Provision of accommodations - Provision of accommodations: [] Provided, [] Not provided (If provided, accommodation types: [] Detached houses, [] Goshiwans, [] Studio - flat s, [] Lodging facilities(such as motels, hostels and pension hotels, etc.), [] Container boxes, [] SIP panel constructions, [] Rooms within the business building - or specify other housing or boarding facilities _____.) - Cost of accommodation paid by employee: () won/month 2) Provision of meals - Provision of meals: [] Provided([] breakfast, [] lunch, [] dinner), [] Not provided - Cost of meals paid by employee: () won/month * The amount of costs paid by employee, will be determined by mutual consultation between the employer and employee (Newcomers and re-entering employees will consult with their employers after arrival in Korea).
11. 사용자와 근로자는 각자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11. Both employees and employers shall comply with collective agreements, rules of employment, and terms of labor contracts and be obliged to fulfill them in good faith.	
12.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가사서비스업 및 개인간병인에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 휴일·휴가, 그 밖에 모든 근로조건에 대해 사용자와 자유롭게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12. Other matters not regulated in this contract will follow provisions of the Labor Standards Act. *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labor contract for employees in domestic help and nursing can be freely decided through the agreement between an employer and an employee.	
년 월 일 (YY/MM/DD)	
사용자: (서명 또는 인) Employer: (signature)	
근로자: (서명 또는 인) Employee: (signature)	

3. 임금·최저임금

가. 임금 지급의 방법

- ①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 ② 임금 전부가 통화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 ㄱ)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 ㄴ)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장기요양보험료 및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임금에서 원천징수할 수 있습니다.
 - ㄷ) 임금을 근로자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하는 것은 '직접 지급'의 원칙에 부합하여 가능합니다.
- ③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임시로 지급되는 임금·수당 등은 예외적으로 정기 지급일 외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나. 최저임금의 준수

- ①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반드시 해당연도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ㄱ) 수습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3개월 이내인 자는 최저임금액의 10% 감액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단,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단순노무업무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적용불가).

※ 농업 단순 종사원은 단순노무업무에 해당하여 최저임금 감액이 불가합니다.
 - ㄴ) 최저임금액은 매년 달라지므로 해당 연도의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 ② 근로계약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정한 경우, 그 부분은 무효가 되며 최저임금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

※ 최저임금 산입 범위: 2024년부터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과 식비·숙박비 등 현금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는 전액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됩니다.(단,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및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등은 여전히 최저임금 계산 시 제외됩니다.)

4. 퇴직급여 제도

가. 퇴직금 제도

- ① 사업주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퇴직하기 전이라도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전세보증금 부담, 6개월 이상 요양 등 법령이 정한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 한해 중간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산 이후의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합니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합의했더라도 퇴직금을 매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며, 이는 퇴직금 지급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 ②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급여제도 적용이 제외됩니다.

나. 퇴직연금 제도

- ①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사업주가 퇴직급여 재원을 사회 금융기관에 적립하여 운용하는 제도입니다.

ㄱ) 확정급여형(DB형) :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입니다. 사업주는 퇴직연금 부담금을 적립하여 자기의 책임으로 운용합니다.

ㄴ) 확정기여형(DC형) : 사업주가 납입할 부담금이 매년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로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입니다. 근로자는 직접 자신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하여 적립금과 운용수익을 퇴직급여로 지급받습니다.

ㄷ)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 근로자가 직장을 옮기거나 퇴직하면서 지급받은 퇴직급여를 한 계좌로 모아 노후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퇴직연금 통산 장치(전용계좌) 제도입니다.

※ 2022. 4. 14.부터 퇴직금은 반드시 근로자의 IRP 계좌로 지급해야 합니다. (단, 만 55세 이후 퇴직, 퇴직금 300만 원 이하 등 예외 사유 제외)

- ② 기존의 퇴직금 제도보다 퇴직연금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유리합니다.
- ㄱ)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면 부담금 납입액이 손금으로 인정되어 법인세 절감효과가 있으므로 사업주에게 유리합니다.
 - ㄴ) 직장을 옮겨도 계속 적립이 가능하고 기업이 도산해도 적립된 급여를 받을 수 있으므로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 ③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려는 사업주는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퇴직연금 규약을 작성하고,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를 선정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5. 근로시간·휴게·휴일

가. 전체 근로자에 대한 적용 기준

- ① 근로시간 : 1주간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 ㄱ) 휴게 : 사업주는 근로시간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근로자는 이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 ㄴ) 휴일 :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주1회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일)을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2026년부터 5월 1일 노동절은 법정 공휴일로 지정되어 유급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 ② 다만, 사업주와 근로자가 합의하는 경우에는 1주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단, 농업법인의 주된 사업이 농림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소속 근로자에게는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시간을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 ③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도중에 일정한 휴게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4시간 근로하는 경우에는 30분, 8시간 근로하는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 ※ 단, 농업법인의 주된 사업이 농림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소속 근로자에게는 휴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휴게시간을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 ④ 사업주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 ㄱ) 근로계약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동의해야 체결할 수 있기 때문에 휴일에 대해서 명확하게 협의해야 합니다.
 - ㄴ) 유급휴일이 반드시 주말일 필요는 없으며, 유급휴일을 평일에 주더라도 근로 기준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 ※ 단, 농업법인의 주된 사업이 농림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소속 근로자에게는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휴일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⑤ 사업주는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해서 통상임금의 50%(단,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는 100%)를 가산 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ㄱ) 연장근로는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 및 1주 40시간(단, 단시간근로자는 해당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의미합니다.
 - ㄴ)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근로를 의미합니다.
 - ㄷ) 휴일근로는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일(주휴일 등), 약정휴일, 또는 노동절에 하는 근로를 의미합니다.
- ※ 단, 농업법인의 주된 사업이 농림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소속 근로자에게는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ㄹ) 야간근로(22:00~06:00)에 대해서는 다른 업종의 근로자와 같이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통상임금의 50% 가산).
 - ㅁ) 근로자에게 기본임금만 받고 연장 및 휴일근로를 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연장 및 휴일근로를 위해서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합의해야 합니다.
- ⑥ 근로시간이란 근로를 시작한 시업시각부터 근로를 끝낸 종업시각까지의 총 시간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을 말하는 것으로, 이때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하는 시간으로 식사시간이나 낮잠을 자는 시간 등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록 아침 8시부터 저녁 7시까지 11시간을 일한다고 하더라도 일하는 도중에 참 먹는 시간(오전 30분, 오후 30분)과 점심 먹는 시간(1시간), 낮잠 자는 시간(1시간)이 있다면, 동 시간들은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휴게시간 3시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8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농업분야의 경우 휴게시간이 적용되지 않아 휴게를 부여치 않을 수도 있으나 사실상 휴게시간(점심시간, 참시간 등)이 부여되는 것이 통상인 바, 해당 시간에 대해 근로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나. 연장근로가산수당 기준

고용노동부의 표준근로계약서(2018) 등을 참고하여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에 대해 명확히 정하시기 바랍니다. 농림사업이 아닌 보통의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대부분 연장근로에 대한 추가적인 수당을 지급받습니다.

하지만, 농림 사업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라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법적으로는 연장 및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이 규정이 가산수당 지급을 금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 계약 시 연장·휴일근로에 대해 가산수당을 주기로 결정했다면 법적 예외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상의 의무에 따라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연장근로에 대해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명시적으로 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근로시간·휴게·휴일 적용 주요 내용 비교]

구분	농업	다른 업종
근로 시간	■ 제한 없음	■ 1일 8시간, 1주 40시간만 근로 가능 ■ 1주에 12시간까지만 근로시간 연장 가능
휴게	■ 제한 없음	■ 근로시간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근로시간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 휴게시간 부여
휴일	■ 제한 없음	■ 1주 동안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1회 이상의 유급휴일 부여
연소자의 근로시간	■ 18세 미만자는 야간에 근로할 수 없음 (근로자 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 받으면 근로 가능)	■ 15세 이상 18세 미만자는 1일 7시간, 1주 35시간만 근로 가능(1일 1시간, 1주 5시간 연장 가능) ■ 18세 미만자는 야간 및 휴일에 근로할 수 없음 (근로자 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 받으면 근로 가능)
여성의 근로시간	■ 18세 이상의 여성을 야간에 근로시키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	■ 18세 이상의 여성을 야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
임산부의 근로시간	■ 임산부는 야간에 근로할 수 없음 (임산부의 동의·청구와 고용노동부장관 인가 받으면 근로가능)	■ 임산부는 야간 및 휴일에 근로할 수 없음 (임산부의 동의·청구와 고용노동부장관 인가 받으면 근로가능) ■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의 시간외근로는 1일에 2시간, 1주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지 못함
기타	■ 근로시간·휴게·휴일 외의 노동관계 법령을 모두 준수하여야 함	

6. 휴가

가. 연차유급휴가

- ①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 ③ 삭제 <2017. 11. 28.>
-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 ② 연차유급휴가는 사용할 수 있는 기간(1년)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 사용자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나. 출산전후휴가

-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②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③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법에서 정한 유사산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다. 생리휴가

- ①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 월 1일의 생리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 ② 생리휴가는 무급이 원칙입니다.

7. 4대 보험

가. 산재보험

- ① 농림사업을 하는 법인사업주 및 5명 이상 사업장의 개인사업주는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 ②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고용한 모든 사업장은 산재보험 가입대상입니다.
 - ㄱ)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도 가입대상입니다.
 - ㄴ) 농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은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가입대상이 아니더라도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 임의가입이 가능합니다.
 - ㄷ)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의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사업주는 요양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산재보험에 가입하여 위험에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③ 사업주가 근로자의 임금총액에 산재보험료를 곱한 금액을 전액 납부해야 합니다.
 - ㄱ) 사업주는 산재보험료를 근로자에게 부담시켜서는 안 됩니다.
 - ㄴ) 산재보험 가입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체납보험료 외에 가산금과 연체금을 추가로 부과합니다.
- ④ 사업장에서 재해가 발생하면 근로자 스스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여 산업재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산재신청을 위해 사업주에게 산재보상처리를 부탁할 필요는 없습니다.

※ 2018. 1. 1.부터 사업주의 확인제도가 폐지되어 사업주의 확인 없이 '요양신청서' 또는 '유족급여청구서'를 제출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업주의 의견을 확인 후 결정하게 됩니다.
- ⑤ 산재보험에 미가입한 사업장의 근로자라 할지라도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산재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의 근로자가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보험급여의 1/2을 징수합니다(미가입기간 산재보험료의 최대 5배까지).



- 보험(연금) 미가입시 불이익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가입대상이었던 기간 동안 납부하여야 하는 보험료와 이에 대한 연체금 및 가산금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① 과태료

-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 최대 300만원
- 건강보험 : 최대 500만원
- 국민연금 : 최대 50만원

② 연체금 및 가산금

- 체납보험료 외에 기간별 연체금 및 가산금 추가 부과

- 근로자와 사업주는 각각 기준소득월액의 4.75%(2025년 7월 기준)를 국민연금에 납부해야 합니다.
- 4대 보험 관련 정보는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https://www.4insure.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4대 보험 모의 계산 서비스를 통해 예상 보험료를 산출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미가입 사업장은 국민연금법 제14조 제3항에 의해 직권가입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연체된 국민연금보험료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경과 후 첫 달에 2%의 연체금이 부과되며, 이후 매월 0.5%씩 가산되어 최대 5%까지 연체금이 부과됩니다.

나. 고용보험

- ① 농림사업을 하는 법인사업주 및 4인 초과 사업장의 개인사업주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제1항)
- ②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고용한 모든 사업장은 고용보험 가입대상입니다.
 - ㄱ) 외국인 근로자는 체류자격(비자)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거나, 본인의 희망에 따라 임의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 ㄴ) 농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은 고용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ㄷ) 단, 사업장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65세 이후에 고용된 근로자의 경우에는 고용보험 중 구직급여는 가입대상이 아니나 고용안정과 직업능력 개발 사업은 적용됩니다.
- ③ 근로자와 사업자는 각각 임금총액에 고용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고용보험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④ 고용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급여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가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안정지원금,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등은 사업주가 신청하고,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은 근로자가 신청합니다.
- ⑤ 고용보험 가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미신고 및 허위신고에 대해서는 가산금이, 납부기한 내에 보험료를 내지 않은 경우에는 연체금이 부과됩니다.
- ⑥ 사업주와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 또는 급여를 받은자와 공모한 사업주는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 또는 급여를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 건강보험

- ① 근로자(외국인 근로자 포함)를 1인 이상 고용한 사업장은 모두 건강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및 제7조).
- ②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도 가입대상이며, 근로자가 건강보험 가입을 원치 않는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③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미납입한 건강보험료를 소급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 연체된 건강보험료에 대해서는 2020. 1. 부터는 납부기한 경과 후 첫 달에는 2%, 연체기간이 증가됨에 따라 최대 5%의 연체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라. 국민연금

- ① 근로자(외국인 근로자 포함)를 1인 이상 고용한 사업장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합니다(국민연금법 제8조).
- ②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과 마찬가지로 체류자격, 국적에 따라 적용여부가 다르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가입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국민연금 가입을 원치 않는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8. 해고의 제한

가. 해고의 제한

- ①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 ②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출산전후휴가기간과 그 후 30일, 산재요양기간과 그 후 30일, 육아휴직 기간은 절대해고 금지 기간이므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해고 예고

- ①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 ②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즉시 해고하는 경우 또는 해고 예고일이 30일에 미달하는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③ 다만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및 기타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 해고 서면통보

-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해고시기와 해고 사유가 명확하게 기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 ② 사용자가 구두, 문자 등 서면이 아닌 수단을 이용해 해고 통지를 하면 해고 절차상 하자로 부당해고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Ⅲ 법무 분야

1. 법인 경영자가 꼭 알아야 할 법무 정보

가. 영농조합법인

(1) 영농조합법인의 출자

- ① 농업인과 농업생산자단체는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비농업인은 의결권이 없는 준조합원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 ②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 현금 및 그 밖의 현물로 출자할 수 있습니다. 현행 법령상 준조합원의 출자 한도에 대한 별도의 제한 규정은 없으며, 구체적인 출자 범위는 해당 법인의 정관으로 정하게 됩니다. 농지가 아닌 토지를 현물 출자할 수 있으며, 등기원인을 현물출자로 하여 영농조합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신청도 가능합니다.
- ③ 한편 영농조합법인이 농업생산자단체의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영농조합법인이 가입 가능한 농업생산자단체는 농업협동조합·산림조합 및 읍면초생산협동조합입니다(농어업경영체법 제17조 4항, 동법 시행령 제15조).

(2) 영농조합법인의 채권·채무

- ① 과거 영농조합법인 조합원의 채권·채무에 대한 책임은 무한책임이었으나, '15년 7월 7일 농어업경영체법 개정·시행으로 현재는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액 한도 내에서 유한책임을 지게 됩니다.
- ② 다만, 채권자 보호를 위해 '15년 7월 7일 법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는 무한책임을 집니다. 또한 이익과 손실 등의 책임성에 대해 별도의 약정서가 존재할 경우에는 정관과 해당 약정에 따르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농업회사법인

(1) 농업회사법인의 경영관리

- ① 농업회사법인은 기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생산된 농산물을 유통·가공·판매함으로써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며, 노동력의 부족 등으로 농업 경영이 곤란한 농업인의 농작업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여 영농의 편의를 꾀하기 위해 설립하는 법인입니다.
- ② 농업회사법인은 기업적 경영체의 특성을 갖고 있는 영리법인으로서 농업경영 체법상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상법상 회사의 관련한 규정을 적용합니다. 농지 및 초지를 현물출자할 경우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출자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 이월과세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2) 농업회사법인의 출자

- ①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임원 구성은 상법상 회사 형태에 따릅니다. 주식회사의 경우 이사와 감사를 두는 것이 원칙이나,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사를 1명 또는 2명만 둘 수 있으며 감사는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② 법인 설립 신청 시 총 출자액이 80억원을 넘는 경우에는 8억원을 제한 나머지 금액을 비농업인의 출자지분 한도로 정하고 있지만, 이 외에는 비농업인의 출자지분이 90%를 넘길 수 없습니다.
- ③ 사업 범위는 농업경영,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 및 농작업 대행 등 법령에서 정한 범위로 제한됩니다.

(3) 농업회사법인의 채권·채무

농업회사법인은 상법상 5종(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의 형태 중 하나로 설립되므로 그 회사의 유형에 따라 채권·채무에 대한 책임 규정이 다릅니다. 따라서 각 회사 형태별 상법상 책임 규정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농업법인의 조직변경·합병·분할

가. 영농조합법인의 조직변경

영농조합법인은 총 조합원의 일치로 총회의 결의를 거쳐 농업회사법인 중 합명, 합자, 유한, 유한책임, 주식회사의 어느 형태로 조직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총회소집공고 안내(7일 전)	총조합원 일치로 총회 결의를 거쳐야 하므로 전조합원 사전확인 필요
임시총회	조직변경 결의(전원 일치)
	농업회사법인 정관의 승인 ① 합자회사로 조직 변경 : 조합원의 일부를 유한책임사원으로 하거나 유한책임사원을 새로 가입시켜야 함 ② 유한책임회사 및 유한회사로 조직 변경 : 조합원 전원을 유한책임사원으로 하여야 함 ③ 주식회사로 조직 변경 : 주식 발행가액의 총액은 조합법에 현존하는 순재산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순재산액이 자본총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조직변경에 따른 결의 당시의 조합원이 연대하여 그 부족액을 지급하여야 함 ※ 규정에 따라 유한책임사원 또는 주주가 된 자는 법제18조제9항에 따라, 본점 등기 전에 발생한 영농조합법인의 채무에 대하여 등기 후 2년까지 영농조합법인 조합원으로서 책임을 져야 함
	임원의 선임
채권자 보호절차	신문 공고(1개월 이상),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별도 통지
지자체 사전신고	본점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해산/설립신고 후 확인증 발급 - 영농조합법인 : 해산신고, 농업회사법인 : 설립신고
조직변경 법원등기	본점 소재지 2주 이내
	영농조합법인의 해산등기
	농업회사법인의 설립등기
사업자등록 정정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이후
	사업자등록 정정(사업자 동일성 유지)
	부동산 등기명义的 표시변경등기(법인소유부동산에 관한 표시변경등기)

※ 법률에 의한 조직변경으로 사업연도는 영농조합법인 사업연도가 계속되며, 청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나. 영농조합법인의 합병

영농조합법인은 총 합병계약을 작성한 후 총 조합원의 일치로 총회의 결의를 거쳐 합병할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총회소집공고 안내(7일 전)	총조합원 일치로 총회 결의를 거쳐야 하므로 전조합원 사전확인 필요
총회	합병계약서 작성 및 합병계약서 승인(총회 결의)
	합병의 조건 및 신설 조합의 정관 승인
	임원의 선임
채권자 보호절차	신문공고(1개월 이상),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별도 통지
합병총회(신설합병 창립총회)	흡수합병의 합병총회에서 합병보고, 신설합병 창립총회 개최
지자체 사전신고	본점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변경/설립/해산신고 후 확인증 발급
합병등기	본점 소재지 2주 이내
	흡수합병 : 변경등기
	피합병 조합 : 해산등기
	신설합병 : 설립등기

다. 영농조합법인의 분할

영농조합법인은 총 분할계약을 작성 후 총 조합원의 일치로 총회의 결의를 거쳐 분할할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총회소집공고 안내(7일 전)	총조합원 일치로 총회 결의를 거쳐야 하므로 전조합원 사전확인 필요
총회	분할결의
	분할조합의 정관 승인
채권자 보호절차	신문공고(1개월 이상),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별도 통지
지자체 사전신고	본점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변경/설립/해산신고 후 확인증 발급
분할등기	본점 소재지 2주 이내
	분할법인 사업자등록신청(등기 이후)
	등기등록을 요하는 자산의 분할 법인으로 등기이전

※ 채권자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의 상환 및 담보제공 등의 절차를 이행

라. 농업회사법인의 조직변경 및 분할, 합병

농업회사법인의 조직변경과 분할, 합병에 관한 사항은 상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서는 영농조합법인의 조직변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아래와 같이 농업회사법인으로 조직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제18조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조직변경)
 - ①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은 총조합원의 일치로 총회의 결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형태인 농업회사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으로 조직을 변경할 수 있다.
 1. 합명회사
 2. 합자회사
 - 2의2. 유한책임회사
 3. 유한회사
 4. 주식회사
 - ② 제1항 제2호에 따라 조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일부를 유한책임사원으로 하거나 유한책임사원을 새로 가입시켜야 한다.
 - ③ 3항 제1항 제2호의 2 또는 제3호에 따라 조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전원을 유한책임사원으로 하여야 한다.
 - ④ 제1항 제4호에 따라 조직을 변경할 때 발행하는 주식의 발행가액의 총액은 조합법인에 현존하는 순재산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순재산액이 자본총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결의 당시의 조합원이 연대하여 그 부족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⑤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이 제1항에 따라 조직변경의 결의를 한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날부터 2주 내에, 조합 채권자에 대하여 조직변경에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개월 이상 공고하고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따로 공고 내용을 알려야 한다.
 - ⑥ 채권자가 제5항에 따른 일정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이 채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조직변경의 결의는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 ⑦ 채권자가 제5항의 기간 내에 조직변경의 결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직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 ⑧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이 제1항의 조직변경을 한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은 해산등기를, 농업회사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은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 ⑨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으로서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유한 책임사원 또는 주주가 된 자는 제8항에 따른 본점 등기를 하기 전에 생긴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의 채무에 대하여 등기 후 2년이 될 때까지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으로서 책임을 진다.

농업법인 해산과 청산

I 영농조합법인

영농조합법인은 조합원과의 갈등, 영업적자 지속, 경영의 부실이 장기화 될 경우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해산을 결정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농업법인 실태조사를 통해 설립요건을 위배하였거나, 목적 외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확인된 경우 행정청은 법원에 해당 법인의 해산명령 청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인을 운영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농업법인의 해산 및 청산 절차를 거쳐, 법인의 권리·의무 및 법인격을 최종적으로 소멸시켜야 합니다.

1. 영농조합법인의 해산절차

영농조합법인의 해산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는 게 일반적입니다.

① 해산결의

조합원 총회에서 해산을 결의합니다.

② 청산인선임

파산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산인은 대표조합원이 합니다. 다만, 총회에서 다른 조합원을 청산인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③ 청산인의 직무

- 청산인은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고 재산처분의 방법을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관할 지자체에 해산신고를 합니다.
- 청산인은 해산신고확인증의 발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해산등기 및 청산인 선임 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④ 청산재산의 처리

조합의 재산은 채무를 완제하고 잔여가 있는 경우 정관의 규정에 따르거나 청산총회에서 정한 바에 따라 조합원과 준조합원에게 분배할 수 있습니다.

2. 청산의 법적 요건

- ① 청산이란, 해산한 법인이 잔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정리하여 법인격을 소멸시키는 절차를 말합니다. 청산법인은 해산된 법인의 재산정리를 위한 목적범위 내에서만 권리능력을 갖습니다.
- ② 영농조합법인이 해산하게 되면 보통 대표조합원이 청산인이 됩니다. 경우에 따라 법원은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이나 감사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 ③ 청산인은 청산법인의 집행기관으로서 계속 중인 사무를 끝내게 하고, 채권을 회수하고 채무를 변제하며 그 결과 잔여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한 바에 따르거나 조합원에게 분배합니다.
- ④ 만일 영농조합법인이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때에는 파산선고를 신청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합니다. 영농조합법인을 해산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해산등기를 하고 청산업무가 종료되면 청산종결의 등기를 해야 합니다.

II 농업회사법인

사업의 중단 등의 사유로 법인을 운영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농업회사법인의 해산 및 청산 절차를 거치어 법인의 권리·의무를 최종적으로 소멸시켜야 합니다.

1. 해산 요건

농업회사법인 해산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존립기간의 만료
- ② 합병
- ③ 파산
- ④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 ⑤ 주주총회의 결의

2. 해산 및 청산 절차

- 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의 해산결의는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의 출석과 그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으로 결정합니다.
- ② 회사가 해산한 때에는 대표이사는 주주에게 통지하고, 회사가 합병을 함에는 합병 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 ③ 해산 및 청산을 하는 경우 대표이사가 해산결의를 공증받아 이를 해산등기 신청서에 첨부하여 등기소에 해산등기를 신청합니다.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해산 결의 및 청산인 선임 → 관할 지자체 해산신고 → 해산 및 청산인 선임등기 → 법원에 해산 신고(해산사유, 연월일, 청산인 등) 및 채권자 보호절차(취입 후 2개월내 2개월 이상 기간을 정함) →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 작성, 주주총회에 제출 → 주주총회 결의 후 법원 제출 → 주주총회(청산종결 결의) → 청산종결등기

3. 구비서류

해산등기 및 청산인 선임등기가 필요합니다.

- ① 법인등기부등본 1부
- ② 법인인감증명서 1부
- ③ 법인인감 도장
- ④ 주주 주식 수 과반수 이상 주주의 개인인감증명서 1부 및 인감도장
- ⑤ 이사, 감사의 도장(인감도장이 아니라도 무방함)
- ⑥ 주주명부 1부
- ⑦ 청산으로 인하여 사임하는 이사
 - 사임서 각 1부(개인인감 날인)
 - 인감증명서 각 1부
- ⑧ 청산인으로 선임된 청산인
 - 취임승낙서 1부(개인인감 날인)
 - 인감신고서 1부(개인인감 날인)
 - 인감증명서 각 1부
 - 주민등록등본 각 1부
- ⑨ 청산인이 다수인 경우
 - 청산인 과반수 이상 청산인의 인감증명서 1부 및 인감도장
- ⑩ 해산신고확인증



주식회사 청산 절차 참고

- 주의할 점

주식회사에서는 대주주의 횡포를 막기 위해 법정청산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청산을 위해서는 청산회사가 설립되는데 이 회사는 오로지 청산 관련 업무만 맡게 됩니다. 기업이 해산한 후 재산관계에 따른 민감한 사안이 많기 때문에 완전한 소멸까지 엄격한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 청산인이 선임되면 그 취임한 날로부터 본점 소재지에서는 2주간 내에 관할법원에 ① 해산의 사유와 그 연월일 ② 청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신고해야 합니다.
- 청산인은 취임한 후 지체없이 회사의 재산상황을 조사하여 재산목록, 대차대조표를 작성하고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아 이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 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2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채권자에게 채권을 신고할 것과 신고하지 않으면 청산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으로 2회 이상 신문에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각각 채권의 신고를 최고하여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회사에 채권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하여도 반드시 공고해야 합니다.

Ⅲ 폐업 신고

1. 폐업 시의 세무종결 절차

사업을 시작할 때 사업자등록증 신청을 하는 등 각종 신고를 하였듯이 사업을 그만두는 경우에도 그 종결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를 간과할 경우 세금 폭탄을 맞는다거나 그 밖의 커다란 손실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폐업 신고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으십시오.

- ① 사업을 폐업하면서 지체 없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비치된 폐업신고서 1부를 작성하여 사업자등록증 원본과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등과 함께 관할 세무서에 제출합니다(폐업신고서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도 있습니다).
- ② 폐업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동시에 하는 것이 편리합니다(법적 신고 기간은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입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는 폐업 년·월·일 및 사유를 기재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 ③ 폐업 사업장에 대한 소득세를 조속히 종결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와 함께 소득세 수시 부과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도 동일함)

2.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절차

- ① 폐업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개시일(1월 1일 또는 7월 1일)로부터 폐업일까지입니다.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이 기간의 영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절차를 이행하고 이에 대한 세금을 내면 됩니다.
- ② 법정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 다음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 미납세액 × 100분의3 (1회성 가산세)
 - ㉡ 미납세액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일수 × 1일 22/100,000 (연 약8.0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

※ 다만,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 그 기간은 5년을 한도로 합니다.

※ 체납된 국세의 납부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1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③ 세무관서에서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15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 세금납부를 독촉하고 독촉장을 받고도 세금을 내지 않는 경우에는 압류한 재산을 공매 등에 의하여 처분하고 세금으로 충당하게 됩니다.

3. 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 신청

세금을 내지 못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납부기한 연장이나 징수유예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별한 사유는 구체적인 첨부서류를 제출해 증빙해야 합니다.

- ① 납부기한 연장 가능 사유(국세징수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 납세자가 재난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 납세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 또는 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또는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 그 밖에 납세자가 국세를 납부기한 등까지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② 납부고지의 유예 사유(국세징수법 제13조·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 재해나 도난으로 재산에 손실을 받았을 때
 - 사업이 중대한 위기 또는 현저한 손실을 입었을 때
 -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를 요할 때
 -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이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및 이에 준하는 경우
 - 한국은행, 우체국·체신관서에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보처리장치나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가동시킬 수 없는 경우
 - 금융회사등·체신관서의 휴무,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국제 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납세자의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화재, 전파(戰禍),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해당 납세자의 장부를 도난당한 경우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 3. 21.>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 뒤쪽의 신고안내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① 사업자등록번호					② 법인등록번호					
③ 법인명					④ 전화번호					
⑤ 대표자성명					⑥ 전자우편주소					
⑦ 소재지										
⑧ 업태					⑨ 종목	⑩ 주업종코드				
⑪ 사업연도					⑫ 수시부과기간					
⑬ 법인 구분	1. 내국 2. 외국 3. 외투(비율 %)				⑭ 조정구분	1. 외무 2. 자기				
⑮ 종류별 구분	중소기업	일반기업	중견기업	신용보증기금기업	그외기업	당첨기업	⑯ 외부감사대상			
영리법인	상장법인	11	71	81	91		1. 해당 2. 미해당			
	코스닥상장법인	21	72	82	92		1. 정기신고			
	기타법인	30	73	83	93		2. 수정신고(가. 서면분석, 나. 기타)			
비영리법인		60	74	84	94	50	3. 기한후 신고			
							4. 중도폐업신고			
							5. 경정청구			
⑰ 법인유형별 구분					코드	⑱ 결산확정일				
⑲ 신고일					⑳ 납부일					
㉑ 신고기한 연장승인	1. 신청일				2. 연장기한					
구분	해당		미해당		구분	해당				
㉒ 주식변동	1		2		㉓ 장부전산화	1				
㉔ 사업연도의제	1		2		㉕ 결손금소급공제 법인세환급신청	1				
㉖ 감가상각방법(내용연수)신고서 제출	1		2		㉗ 재고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 제출	1				
㉘ 기능통화 채택 재무제표 작성	1		2		㉙ 과세표준 환산시 적용환율					
㉚ 동업기업의 출자자(동업자)	1		2		㉛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적용	1				
㉜ 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 계산방법	1		2		㉝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1				
㉞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1		2		㉟ 부동산임대업 주업법인	1				
구분	법인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			
㊱ 수입금액	()		()		()					
㊲ 과세표준										
㊳ 산출세액										
㊴ 총부담세액										
㊵ 기납부세액										
㊶ 차감납부할세액										
㊷ 분납할세액										
㊸ 차감납부세액										
㊹ 조정반번호					㊺ 조정자	성명				
㊻ 조정자관리번호					㊼ 조정자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국세환급금 계좌신고	㊽ 예입처			은행 (본)지점						
	㊾ 예금종류			예금						
	㊿ 계좌번호									
신고인은 「법인세법」 제60조 및 「국세기본법」 제45조·제45조의2·제45조의3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법 인) (인)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table border="1"> <tr> <td>첨부서류</td> <td>1. 재무상태표 2. 포괄손익계산서 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4. 현금흐름표(「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법인인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5. 세무조정계산서</td> <td>수수료 없음</td> </tr> </table>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첨부서류	1. 재무상태표 2. 포괄손익계산서 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4. 현금흐름표(「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법인인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5. 세무조정계산서	수수료 없음
첨부서류	1. 재무상태표 2. 포괄손익계산서 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4. 현금흐름표(「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법인인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5. 세무조정계산서	수수료 없음								

(뒤쪽)

신 고 안 내

1.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법인세액의 환급을 받으려는 법인은 소급공제법인세액환급신청서(별지 제68호서식)를 제출해야 합니다.
2.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도 사업연도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해당 시·군·구청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작성 방법

1. ① 사업자등록번호란, ② 법인등록번호란, ③ 법인명란, ④ 전화번호란, ⑤ 대표자성명란, ⑥ 전자우편주소란 및 ⑦ 소재지란: 신고일 현재의 상황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2. ⑧ 업태란 · ⑨ 종목란 · ⑩ 주업종코드란: 주된 업태 · 종목 · 주업종코드["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별지 제17호서식)"의 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태 · 종목을 말합니다]를 적습니다.
3. ⑪ 사업연도란 · ⑫ 수시부과기간란
 - 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신고사업연도를 적고 수시부과기간란에는 적지 않습니다.
 - 나. 휴 · 폐업 등으로 수시부과기간에 해당하는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사업연도란에 정상적인 사업연도를 적고, 수시부과기간란에 사업연도 개시일과 수시부과사유발생일까지의 기간을 적습니다(반드시 신고구분의 중도폐업신고란에 "○" 표시를 해야 합니다).
4. ⑬ 법인구분란 · ⑭ 조정구분란 · ⑮ 외부감사대상란 · ⑯ 신고구분란 · ⑰ 주식비동란 · ⑱ 장부전산화 여부란 · ⑳ 사업연도의제 여부란: 각각 해당란에 "○" 표시를 합니다.
5. ㉑ 종류별구분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은 중소기업 등 기준검도표(별지 제51호서식)상 적합 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으로 각각 해당하는 란에 "○" 표시를 합니다. 「법인세법」 제75조의12에 따른 법인과세 실태재산은 기타법인의 그 외기업(93)란에 "○" 표시를 합니다.
6. ㉒ 법인유형별 구분란: 아래의 표를 참고하여 법인유형의 명칭과 코드란에는 () 안의 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아래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기타법인으로 적고, 코드란에는 "100"을 적습니다.

금융기관	은행(101), 증권(102), 생명보험(103), 손해보험(104), 금융지주회사(105), 상호저축은행(106), 신탁회사(107), 종합금융회사(108), 신용회사(109), 신기술금융회사(110), 신용카드사(111), 재보험사(112), 투자자문회사(113), 시설대외회사(리스회사포함)(114), 할부금융회사(115), 기타금융회사(119)
투자회사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	유동화전문회사(20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등(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 제외)(202),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207),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203),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204), 선박투 자회사(20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특수목적법인(208),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209),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210), 기타 특수 목적의 명목회사(206)
비영리 조합 등	정비사업조합(301), 농협(302), 수협(303), 신용협동조합(304), 새마을금고(305), 영농조합(306), 영아조합(307), 학교법인(308), 의료법인(309), 산학협력단(310), 산림조합(311), 인산협동조합(312), 소비자생활협동조합(313), 기타 조합법인(399)
공기업 등	정부투자기관(401), 정부출자기관(402), 지방공기업(투자)(403), 지방공기업(출자)(404), 그 밖의 공기업(499)
일반 지주회사	위 금융기관, 투자회사, 비영리조합 등, 공기업 등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으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지주회사(501),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 공공연구기관첨단 기술지주회사(502),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503)

7. ㉓ 신고기한 연장승인란: 법인세신고기한 연장승인을 받은 경우 신청일 및 승인된 연장기한을 적습니다.
8. ㉔ 주식비동 여부란: 주식 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주식 등 변동사항명세서를 반드시 붙임 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9. ㉕ 장부전산화 여부란: 국세청의 「전자기록의 보전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장부와 증명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 · 보존하는 경우에 "해당"란에 "○"표시를 하고 전산조직운영명세서를 붙임 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10. ㉖ 사업연도의제 여부란: 해산 · 합병 · 분할 등으로 사업연도가 의제된 경우 "해당"란에 "○"표시를 합니다.
11. ㉗ 결손금소급공제법인세환급신청란 ~ ㉙ 재고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 제출란: 해당 신청(신고서) 등을 제출한 경우 "해당"란에 "○" 표시를 합니다.
12. ㉚ 기능통화채택 재무제표 작성란: 원화 외의 통화를 기능통화로 채택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법인의 경우 "해당"란에 "○"표시를 합니다.
13. ㉛ 과세표준 환산시 적용환율란: 「법인세법」 제53조의2(제53조의3)제1항제2호의 방법으로 과세표준계산방법 적용을 신고한 법인은 "과세표준계산방법신고(변경신청)서(별지 제64호의5서식)"에 신고한 적용환율의 해당 사업연도 환율을 적습니다(단위: 원, 소수점 이하 2자리까지 표시).
14. ㉜ 동업기업의 출자자(동업자)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4제2호에 따른 동업자인 경우 "해당"란에 "○" 표시를 합니다.
15. ㉝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적용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하는 법인인 경우 "해당"에 "○" 표시를 합니다.
16. ㉞ 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 계산방법란: 과세표준계산방법이 「법인세법」 제5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방법(원화 재무제표 기준)인 경우 "1",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방법(기능통화 표시 재무제표 기준)인 경우 "2",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방법(자산, 부채 및 거래손익의 원화환산액 기준)인 경우 "3"을 적습니다.
17. ㉟ 부동산임대업 주업법인 여부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해당"란에 "○" 표시를 합니다.
18. ㊱ 수입금액란: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별지 제17호서식)상의 ㉟합계란 중 ㉠계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19. ㊲ 산출세액란: 법인세란에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의 ㉡란의 금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란에는 ㉢란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20. ㊳ 총부담세액란: 법인세란에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의 ㉡란과 ㉢란을 합한 금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란에는 같은 서식의 ㉣란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21. ㊴ 조정반환호란: 외부조정법인은 외부조정자의 조정반환호를 적습니다.
22. ㊵ 조정자관리번호란 및 ㊶ 조정자란: 세무조정조정반의 구성원 중 실제로 세무조정한 조정자의 것을 적습니다.
23. 「법인세법」 제60조제5항 단서에 따른 비영리법인인 재무상태표 등의 붙임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으며,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수입명세서(별지 제57호서식)를 첨부해야 합니다.
24. 음영(■)으로 표시된 란은 적지 않습니다.
25.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법인이 「국세기본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전자 신고를 통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대표자가 서명하고 날인한 신고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24. 3. 22.>

납부기한등 연장 신청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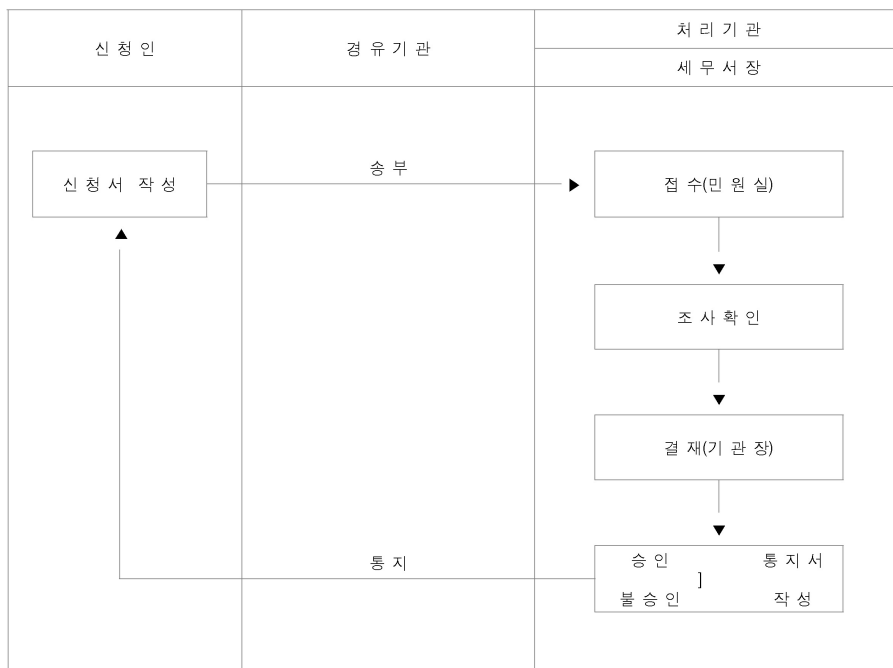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납 세 자	성명(상호)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신 청 내 용							
납 부 할 국 세 의 내 용						납부기한등 연장을 받으려는 금액	
신	과세기간(연도)	세 목		납부기한	금 액		금 액
고							
분							
고	과세기간(연도)	세목	발행번호	납부기한 (독촉기한)	국세	가산금	국세
지							가산금
분							
납부기한등 연장을 받으려는 사유		[] 납세자가 재난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 납세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 또는 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또는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 그 밖에 납세자가 국세를 납부기한등까지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1조 각 호 중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기한등 연장을 받으려는 기간		년 월 일		일부터 일까지		(일간)	
분 납 금 액 및 납 부 기 한							
회 수	세 목	납 부 기 한		분 납 금 액		국 세	가 산 금
1 회							
2 회							
3 회							
「국세징수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납부기한등 연장을 받기 위해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1. 납부기한등의 연장을 받으려는 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2. 납세담보제공서(「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수수료 없 음
유의사항							
1. 납부기한 등 연장을 받으려는 사유 중 해당하는 란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국세징수법」 제15조에 따라 신청 금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뒤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23. 3. 20.>

납부고지 유예 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	-----	---------

납 세 자	성명(상호)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신 청 내 용

납부할 국세의 내용						납부고지 유예를 받으려는 국세		
연도	세목	발행번호	납부기한	국세	가산금	계	국세	가산금

납부고지 유예를 받으려는 사유	
납부고지 유예를 받으려는 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분납금액 및 납부기한						
횟수	연도	세목	납부기한	분납금액	국세	가산금
1회						
2회						
3회						

「국세징수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납부고지의 유예를 받기 위해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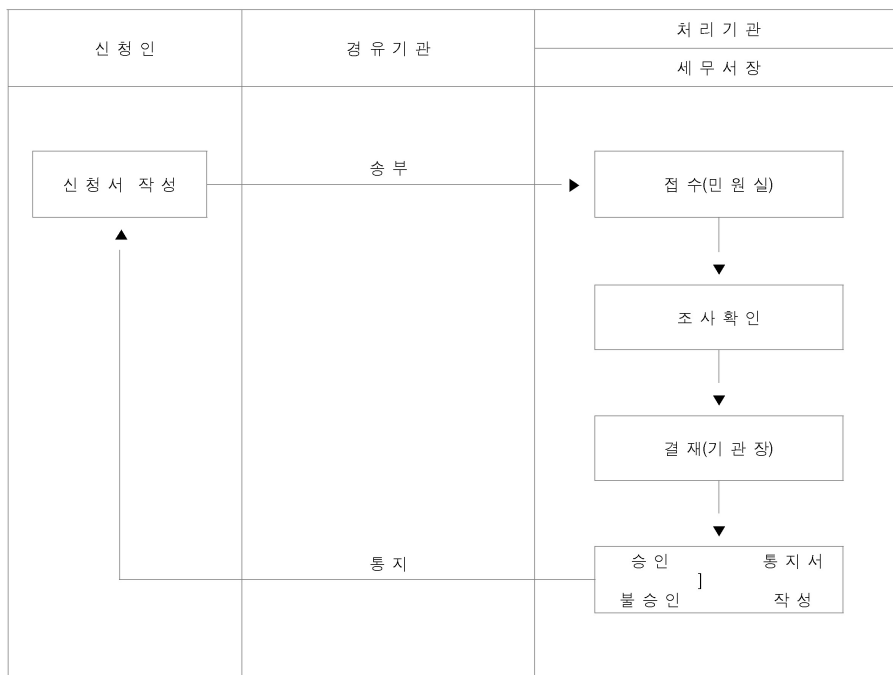
첨부서류	1. 납부고지의 유예를 받으려는 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수수료
	2. 담보제공서(「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 서식)	없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제3부

농업법인 사업범위 호별 예시

1. 농업의 경영
2. 농산물 출하·유통·가공·판매 및 수출
3. 농작업 대행
4. 농어촌관광휴양사업
5. 농촌융복합산업
6.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 및 공급사업
7. 영농에 필요한 종자생산 및 종균배양사업
8. 농산물의 구매 및 비축사업
9. 농업기계나 그 밖의 장비의 임대·수리 및 보관 사업
10. 소규모 관개시설(灌漑施設)의 수탁 및 관리사업
11. 농업과 관련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운영

1. 농업의 경영

가. 농업의 경영이란

농업의 경영이란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서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을 영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농업의 경영과 관련된 제도적 정의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정의)
 -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시행 2026. 1. 23.] [법률 제20999호, 2025. 7. 22., 일부개정]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농업의 범위)
 - 1. 농작물 재배업 : 식량작물 재배업, 채소작물 재배업, 과실작물 재배업, 화훼작물 재배업, 특용작물 재배업, 약용작물 재배업, 사료작물 재배업, 풋거름작물 재배업, 버섯 재배업, 양잠업 및 종자·묘목 재배업(임업용 종자·묘목재배업은 제외한다)
 - 2. 축산업 : 동물(수생동물은 제외한다)의 사육업·증식업·부화업 및 종축업(種畜業)
 - 3. 임업 : 영림업(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 및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과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 수목원 및 정원의 조성 또는 관리·운영업을 포함한다) 및 임산물 생산·채취업
 - [시행 2026. 1. 23.] [대통령령 제36049호, 2026. 1. 20., 일부개정]
 - ※ 안전한 농수산물과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경쟁력 있는 농업경영체를 육성하려는 농업법인 제도 취지 상, 임업 중 농업법인의 사업 범위로 보는 것은 ‘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과 ‘임산물 생산·채취업’에 한하여 가능, 이에 ‘임업용 종자재배업’ ‘임업용묘목재배업’ ‘임산물생산업’ ‘임산물채취업’이 농업법인의 사업범위에 해당하며, 임업용 종자·묘목 재배를 위한 임산물 생산·채취를 위한 조림, 육림에 대해서 한정적으로 가능(사업 기재도 이에 준하여 명확히 하여야 함)
- 「농지법」 제2조(정의)
 -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 [시행 2025. 1. 24.] [법률 제20083호, 2024. 1. 23., 일부개정]

나. 기본원칙

농업의 경영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에 대해서 영위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으므로, 각각의 업종에 대해서 구체적인 범위와 종류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농업법인이 할 수 있는 농작물재배업과 관련된 사업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농업의 범위)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작물 재배업과 같습니다.

축산업의 경우, 농업법인이 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는 「축산법」에 따른 축산업만 해당합니다. 「축산법」에서는 종축업·부화업·정액등처리업 및 가축사육업을 축산업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가축의 범위는 「축산법」, 「축산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고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업은 영림업과 임산물 생산·채취업만 포함이 되며, 별목업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임산물의 종류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에 종류와 품목명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축산업의 범위

- 「축산법」 제2조(정의)
 - 1. “가축”이란 사육하는 소·말·면양·염소[유산양(乳山羊: 젖을 생산하기 위해 사육하는 염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돼지·사슴·닭·오리·거위·칠면조·메추리·타조·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動物) 등을 말한다.
 - 4. “축산업”이란 종축업·부화업·정액등처리업 및 가축사육업을 말한다.
 - 5. “종축업”이란 종축을 사육하고, 그 종축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번식용 가축 또는 씨알을 생산하여 판매(다른 사람에게 사육을 위탁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업을 말한다.
 - 6. “부화업”이란 닭, 오리 또는 메추리의 알을 인공부화 시설로 부화시켜 판매(다른 사람에게 사육을 위탁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업을 말한다.
 - 7. “정액등처리업”이란 종축에서 정액·난자 또는 수정란을 채취·처리하여 판매하는 업을 말한다.
 - 8. “가축사육업”이란 판매할 목적으로 가축을 사육하거나 젖·알·꿀을 생산하는 업을 말한다.
- [시행 2026. 1. 23.] [법률 제20998호, 2025. 7. 22., 타법개정]



가축의 범위

- 「축산법」 제2조(정의)
 - 1. “가축”이란 사육하는 소·말·면양·염소[유산양(乳山羊: 젖을 생산하기 위해 사육하는 염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돼지·사슴·닭·오리·거위·칠면조·메추리·타조·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動物) 등을 말한다.
[시행 2026. 1. 23.] [법률 제20998호, 2025. 7. 22., 타법개정]
- 「축산법 시행령」 제2조(가축의 종류)
 - 「축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動物) 등”이란 다음 각 호의 동물을 말한다.
 - 1. 기러기
 - 2. 노새·당나귀·토기 및 개
 - 3. 꿀벌
 - 4. 그 밖에 사육이 가능하며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동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동물
[시행 2026. 1. 2.] [법률 제20083호, 2024. 1. 23., 일부개정]
- 「농림축산식품부 고시(가축으로 정하는 기타 동물)」 제2조(기타 동물의 종류)
 - 「축산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동물”이란 다음 각 호의 동물을 말한다.
 - 1. 짐승(1종) : 오소리
 - 2. 관상용 조류(15종) : 십자매, 금화조, 문조, 호금조, 금정조, 소문조, 남양청홍조, 붉은머리청홍조, 카나리아, 앵무, 비둘기, 금계, 은계, 백한, 공작
 - 3. 곤충(16종) : 갈색거저리, 넓적사슴벌레, 누에, 늦반딧불이, 머리불가위벌, 방울벌레, 벼메뚜기, 아메리카동애등애, 왕귀뚜라미, 왕지네, 여치, 애반딧불이, 장수풍뎅이, 톱사슴벌레, 호박벌, 흰점박이꽃무지
 - 4. 기타(1종) : 지렁이
 - ※ 농림축산식품부 고시에 따라, 가축으로 분류되는 곤충 16종 이외의 곤충은 가축사육업이 될 수 없습니다.
[시행 2023. 9. 5.]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3-58호, 2023. 9. 5., 일부개정]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18. 8. 2.>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제7조제1항 관련)

종류	품목명
수실류	밤, 감, 잣, 호두, 대추, 은행, 도토리, 개암, 머루, 다래, 복분자딸기, 산딸기, 석류, 돌배
버섯류	표고, 송이, 목이, 석이, 능이, 싸리, 꽃송이버섯, 복령
산나물류	더덕, 고사리, 도라지, 취나물, 참나물, 두릅, 원추리, 산마늘, 고려엉겅퀴(곤드레), 고비, 어수리, 눈개승마(삼나물)
약초류	삼지구엽초, 삼주, 참쑥, 시호, 작약, 천마, 산양삼, 결명자, 구절초, 약모밀, 당귀, 천궁, 하수오, 감초, 독활, 잔대, 백운풀, 마
약용류	오미자, 오갈피나무, 산수유나무, 구기자나무, 두충나무, 헛개나무, 음나무, 참죽나무, 산초나무, 초피나무, 율나무, 골담초, 산겨릅나무, 산사나무, 느릅나무, 황칠나무, 꾸지뽕나무, 마가목, 화살나무, 목단
수목부산물류	수액(樹液), 나뭇잎, 나뭇가지, 나무껍질, 나무뿌리, 나무순 등 나무(대나무류를 포함한다)에서 나오는 모든 부산물
관상산림식물류	야생화, 자생란, 조경수, 분재, 잔디, 이끼류
그 밖의 임산물	위 품목 외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임산물로서 목재(목재제품을 포함한다)와 토석을 제외한 품목

다. 사업 예시

① 가능사업 예시

ㄱ) 식물공장 형태의 농작물 재배업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2024년 「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의 세부 내용 및 운영 규정」을 제정하였습니다.
- 「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의 세부 내용 및 운영 규정」에서는 “수직농장”을 건축물 또는 컨테이너에서 인공광원, 환경제어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생육환경을 최적 제어하는 다단식 작물 재배시설이라 정의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식물공장(수직농장) 형태의 농작물 재배업은 사업이 가능합니다.

ㄴ) 동충하초 재배와 생산, 가공 및 도소매업

- 동충하초는 농작물재배업 가운데 버섯재배업으로 분류할 수 있으므로 농업의 범위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동충하초를 재배(생산)하거나 이를 활용한 가공 및 도소매업도 가능합니다.

ㄷ) 새싹 및 두채류의 재배 및 판매사업

- 농작물재배업 범위에 새싹, 두채류(콩나물, 숙주나물 등)도 포함되므로, 이를 재배하거나 판매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ㄹ) 해외에서 도입된 농작물(예: 토디팜, 야콘 등) 재배 및 유통사업

- 해외에서 도입된 농작물이라도 농작물에 해당할 경우, 농작물재배업으로 볼 수 있으므로 가능합니다.

ㅁ) 법인이 소유한 가축을 외부에 위탁하여 사육하는 사업

- 가축을 외부에 위탁하여 사육하는 사업도 농업의 경영에 포함되므로 사업이 가능합니다.
- 단, 이 경우, 위탁계약은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축산계열화사업자”로 등록된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ㄴ) 육질 및 품질 개선을 위한 가축개량 사업

- 축산업의 범위에 가축개량 사업도 포함이 되므로 가축개량 사업이 가능합니다.

ㄷ) 비육마의 생산, 육성, 유통 및 판매사업

- 가축의 범위에 말이 포함되어 있지만, 경주마(승용마)는 「한국마사회법」에 따라서 규정되고 있기 때문에 「축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축과는 구별됩니다.
- 따라서, 경주마(승용마)를 생산하거나 육성하는 것은 가축사육업이 될 수 없으며, 비육마는 가축의 범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가축사육업 등으로 사업이 가능합니다.

ㄹ) 곤충 사육, 유통 및 판매사업

- 가축의 범위에 16종의 곤충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곤충의 사육, 유통 및 판매 사업은 가능합니다.
- 하지만, 가축의 범위에 규정된 16종의 곤충 이외 사업은 불가능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ㄺ) 법인 소유 산림에서 생산된 산림부산물(예: 벌채산물) 판매사업

- 농업법인이 소유한 산림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벌채산물은 정상적 임산물의 생산·채취 활동이므로 이 과정에서 생산된 산림부산물을 판매하는 판매 사업은 가능합니다.

② 불가능사업 예시

ㄱ) 담수 양어장 운영 및 수산물 판매사업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농업법인과 어업법인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으며, 법인 구분에 따라서 각 법인의 사업의 범위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 농업법인이 어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어업법인 설립이 필요하며, 농업법인 정관상 사업범위에 어업 관련 사업을 포함할 수 없습니다.
- 물고기 양식업과 농업이 결합한 형태의 '아쿠아포닉스(Aquaponics)'는 농업에 해당하는 부분만 농업법인의 사업범위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ㄴ) 숲가꾸기, 산림병해충 예방 및 방제, 산불예방, 산림복원 등 임업관련 서비스 제공 사업

- 농업의 경영에서 임업의 범위는 영림업과 임산물의 생산·채취업만 포함하고 있으므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림 사업”은 농업법인의 사업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산림사업”에 해당하는 활동 중에서 병해충 예방 및 방제, 조림, 벌채 등 영림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사업이 아님)은 농업법인의 정상적 경영활동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영림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 아닌, 타인의 산림을 대상으로 ‘서비스 상품’ 등의 형태로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사업은 불가능합니다.

ㄷ) 곤충을 이용한 표본제작 및 유통, 곤충관련 용품 생산·유통, 전시장, 박람회장, 체험학습장 조성 및 운영사업

- 곤충을 이용한 표본제작 및 유통, 곤충관련 용품 생산·유통, 전시장, 박람회장, 체험 학습장 조성 및 운영 등 사업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업법인의 사업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곤충사육업이 축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가축의 범위에 해당하는 16종 곤충만 가능합니다.

ㄹ) 공원·식물원 관리업

- 공원 및 식물원 관리업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업법인의 사업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불가능합니다.

[농업의 경영 사업예시]

구분	가능한 사업	불가능한 사업
농업의 경영	■ 식물공장 형태의 농작물 재배업 ■ 동충하초 재배와 생산, 가공 및 도소매업 ■ 새싹 및 두채류의 재배 및 판매 사업 ■ 해외에서 도입된 농작물의 재배 및 유통사업 ■ 법인이 소유한 가축을 외부에 위탁하여 사육하는 사업 ■ 육질 및 품질 개선을 위한 가축개량 사업 ■ 비육마의 생산, 육성, 유통 및 판매사업 ■ 곤충 사육, 유통 및 판매사업	■ 담수 양어장 운영 및 수산물 판매사업 ■ ‘아쿠아포닉스(Aquaponics)’의 경우, 어업에 해당하는 사업 ■ 숲가꾸기, 산림병해충 예방 및 방제, 산불예방, 산림복원 등 임업관련 서비스 제공 사업 ■ 곤충을 이용한 표본제작 및 유통, 곤충관련 용품 생산·유통, 전시장, 박람회장, 체험학습장 조성 및 운영사업 ■ 공원·식물원 관리업



아쿠아포닉스(Aquaponics)란?

- 아쿠아포닉스(Aquaponics)=어류양식(Aquaculture)+수경재배(Hydroponics)
 - 아쿠아포닉스는 어류양식과 수경재배를 합친 말로, 물고기의 분비물을 이용하여 식물을 키우는 수경재배 형식의 지속가능한 농법(Sustainable Farming)입니다. 이는 양식과정에서 사육수 내에 발생한 암모니아 등 오염물질들을 자연적인 박테리아의 탈질화과정(denitrification)을 통해 식물이 흡수하고, 여과된 사육수를 다시 어류 양식에 활용하는 순환 여과식 유기 식량 생산 방법입니다.

[출처 : Aquaponics Korea(<https://aquaponickorea.co.kr/>)]

2. 농산물 출하·유통·가공·판매 및 수출

가. 농산물 출하·유통·가공·판매 및 수출 이란

농산물 유통이란 ‘농산물이 생산자의 손에 의해 수확된 이후 최종소비자에게 도달할 때까지 관여되는 모든 영업활동’을 의미합니다. 유통은 단계에 따라 산지, 도매, 소비자 유통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기능적 측면에서 상적유통(商流)과 물적유통(物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상적유통은 생산자로부터 소비자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으로 매매 거래 중심의 유통활동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거래촉진 활동, 신상품 개발, 유통경로 개발, 거래처 발굴 및 육성, 판매촉진 활동’ 등이 상적유통에 포함됩니다. 물적유통은 농산물의 물리적 이동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을 의미하며, 농산물의 보관, 포장, 출하, 운송, 하역 활동 등이 물적유통에 포함됩니다. 농산물 유통을 넓은 의미에서 해석하면, 농산물 출하, 가공, 판매, 수출 모두가 농산물 유통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농산물 출하(出荷)는 ‘생산자가 농산물을 시장에 내어 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통상적으로 도매시장이나 기타 거래처에 포장된 농산물을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보내는 것으로, 물적유통에 포함됩니다. 반면 농산물 판매(販賣)는 거래 상대방에게 정해진 조건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며, 상적유통에 해당합니다. 농산물 판매는 거래 상대가 최종소비자인 경우 소매, 거래 상대가 소매업자나 원료구입자인 경우 도매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나. 기본원칙

농산물 출하·유통·가공·판매 및 수출 기본원칙은 “농업법인”이 직접 생산하거나 계약 재배한 농산물에 한해서 가능합니다. 농업법인의 사업범위에 농산물 공동 출하·유통·판매 및 수출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개별 농가로는 부족한 시장교섭력을 확보하여 수취 가격을 높이고 물량규모화를 통해 유통 효율성을 달성하여 유통비용을 최소화함으로써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함입니다. 또한 가공을 통해 생산된 원료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제고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함이 주된 취지라 할 수 있습니다.

불특정 농산물을 단순히 중개하는 사업(경매 포함)이나 수입농산물 유통,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은 농업법인의 설립 취지와 부합하지 않습니다. 다만, 농업법인이 농산물을 출하·유통하기 위해 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 사업 예시

① 가능사업 예시

ㄱ) 농축산물 관련 산지유통시설(미곡종합처리장, 축산물종합처리장,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의 설치 및 운영 사업

- 산지유통시설은 농업인이 생산한 농축산물을 수집, 저장, 가공, 선별, 포장 하여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시설이므로, 농업법인이 설치·운영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또한 산지유통시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운송 업무는 직접 소유한 화물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ㄴ) 농산물 소분업 및 포장업

- 농산물의 소분, 포장업은 농산물 유통활동을 위해 이루어지므로 농업법인의 사업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ㄷ) 농업법인이 생산한 농축산물(가공품 포함)을 농협이나 타 법인 등을 통해 위탁 판매하는 사업

- 농업법인이 생산한 농축산물을 농협이나 타 법인에 위탁하여 판매하더라도, 이는 유통·판매에 해당하므로 가능합니다.

ㄹ) 식육을 원료로 포장육을 만들어 판매하는 식육포장처리업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정의) 규정에 따라 식육을 목적으로 하는 가축의 지육, 정육, 내장 등을 원료로 절단(세절 또는 분쇄를 포함)하여 포장한 상태로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을 판매하는 사업은 축산물 가공 사업이므로 가능합니다.

ㅁ) 계란의 공동 집하, 출하 및 가공을 위한 계란유통센터(GP, grading&packing center)의 설치·운영

- 농업인이 생산한 계란의 유통 효율화와 규모화를 위해 설치하는 계란유통센터는 유통활동에 포함되므로 사업이 가능합니다.

ㄴ) 농특산물의 판매 전시장 운영

- 농특산물의 판매 전시장은 상적유통에 해당하므로 사업이 가능합니다.

② 불가능사업 예시

ㄱ)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농산물의 유상으로 운송하는 운송사업

- 농업법인이 농축산물 유통을 위해 소유하고 있는 화물자동차를 이용하는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운송사업에 해당 하므로 불가능합니다.

ㄴ) 수입된 농산물을 원료로 구매하여 가공식품으로 판매하는 사업

- 해외에서 도입된 농작물이라도 농업법인이 직접 재배하거나 유통하는 것은 농업의 경영에 해당하지만, 수입된 농산물 원료를 가공하여 식품으로 판매하는 것은 농업 법인의 설립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불가능합니다.

ㄷ) 가축시장 운영, 나무 시장 운영, 단순 농산물 중개업

- 농산물 유통에 해당하지 않는 단순히 농산물의 거래를 중개하는 형태의 사업은 불가능합니다.

ㄹ) 농산물을 원료로 음식을 판매하는 음식점업

- 농업법인이 재배한 농산물을 원료로 사용하더라도 이를 음식으로 만들어 판매 하면, 음식점업이 되므로 농업법인 사업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다만, 농어촌관광휴양사업자로 지정받을 경우, 사업의 일환으로 제한적 범위에서 가능합니다.

ㅁ) 타인이 생산한 가공품이나 전통주 등을 판매하기 위해 전시판매장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사업

- 농업법인이 직접 제조하지 않은 가공품 등을 단순 판매하는 사업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업법인의 사업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불가능합니다.

- ㄴ) 식품이 아닌 가공품(화장품, 의약품, 의류, 벽지 등 제조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사업
- 제조하는 품목의 원료가 자가 생산 또는 생산자 구매라 하더라도 식품이 아닌 기타 공산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것은 농업법인의 사업범위를 벗어나므로 불가능합니다.

ㅇ) 담배의 제조 및 판매업

- 담뱃잎을 생산하는 것은 농업의 경영에 포함되나, 담뱃잎을 가공한 담배는 식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업이 불가능합니다.

[농산물 출하·유통·가공·판매 및 수출 사업예시]

구분	가능한 사업	불가능한 사업
농산물 출하·유통· 가공·판매 및 수출	■ 농축산물 관련 산지유통시설의 설치 및 운영 사업 ■ 농산물 소분업 및 포장업 ■ 농업법인이 생산한 농축산물을 농협이나 타 법인 등을 통해 위탁 판매하는 사업 ■ 식육을 원료로 포장육을 만들어 판매하는 식육포장처리업 ■ 계란의 공동 집하, 출하 및 가공을 위한 계란유통센터 설치·운영 ■ 농특산물의 판매 전시장 운영	■ 화물차를 이용하는 농산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운송사업 ■ 수입된 농산물을 원료로 구매하여 식품으로 가공하여 판매하는 사업 ■ 가축시장 운영, 나무 시장 운영, 단순 농산물 중개업 ■ 농산물을 원료로 음식을 판매하는 음식점업 ■ 타인이 생산한 가공품, 전통주 등을 판매하기 위해 전시판매장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사업 ■ 식품이 아닌 가공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사업(보류) ■ 담배의 제조 및 판매업

3. 농작업 대행

가. 농작업 대행이란

농작업 대행이란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육묘, 발갈기, 밭 고르기, 작물심기, 모내기, 농약 뿌리기, 가지치기, 작물 수확, 수확된 작물 선별·건조 등 농사 준비부터 작물재배, 출하 이전까지 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신 수행하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또한 운전자와 함께 농업용 기계 및 장비를 제공하는 활동도 농작업 대행에 포함됩니다.

나. 농작업의 범위

농작업 대행은 2009년 폐지된 「농어촌발전특별법 시행령」 제12조(조합법인의 사업)에 규정되어 있었으며, 현재에는 「농지법」 제2조(정의)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경”과 “위탁 경영”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농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작업은 농지를 기반으로 하는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와 관련한 활동이며, 위탁경영은 이러한 농작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는 것을 농업경영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농작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받아 사업을 대행하는 것이 농작업 대행의 범위입니다.



농작업 대행 연원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2조(조합법인의 사업)
 - 1.농림어업의 경영 및 그 부대사업
 - 2.농림어업에 관련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
 - 3.농림수산물의 공동출하·가공 및 수출
 - 4.농작업의 대행
 - 5.기타 조합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 [시행 1999. 5. 24.] [대통령령 제16326호, 1999. 5. 24., 타법개정]
-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시행령」에서 관련 규정은 2000년 이후 삭제되었으며, 2009년에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이 폐지되었습니다.



농작업의 범위

- 「농지법」 제2조(정의)
 - 5.“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6.“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
- [시행 2025. 1. 24.] [법률 제20083호, 2024. 1. 23., 일부개정]

다. 사업 예시

① 가능사업 예시

ㄱ) 농기계를 갖추고 있으나, 노동력 부족으로 영농이 어려운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신하는 농작업 대행 서비스 사업

- 농작업 효율화와 생산성 향상 도모라는 농업법인의 설립취지에 부합하므로 사업이 가능합니다.

ㄴ) 채소, 벼 육묘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사업

- 육묘도 농작업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사업은 가능합니다.

ㄷ) 농산물 건조, 선별 등 수확된 농산물 관리를 위탁받는 사업

- 농작업에는 경작을 위한 준비 작업부터 수확 이후 시장 출하 이전까지의 모든 영농 활동이 포함되므로, 수확된 농산물 관리를 위탁받는 사업도 농업법인의 사업 범위에 포함되므로 가능합니다.

② 불가능사업 예시

ㄱ) 축산 관련 임신 진단, 거세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 축산 관련 임신 진단, 거세, 질병 예방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은 「수의사법」에 따른 동물진료업에 해당하며, 이러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은 '수의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는 농업법인 사업범위를 벗어난 사업이므로 불가능합니다.

[농작업 대행 사업예시]

구분	가능한 사업	불가능한 사업
농작업 대행	■ 농기계를 갖추고 있으나, 노동력 부족으로 영농이 어려운 농업인에게 농작업을 대신해주는 농작업 대행 서비스업 ■ 채소, 벼 육묘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사업 ■ 농산물 건조, 선별 등 수확된 농산물 관리를 위탁받는 사업	■ 축산 관련 임신진단, 거세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4. 농어촌관광휴양사업

가. 농어촌관광휴양사업 이란

농어촌관광휴양산업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농어촌정비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 관광농원사업, 주말농원사업을 의미합니다. 다만,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또는 관광농원의 개발사업 시행자가 토지와 시설을 분양하는 사업은 제외됩니다.



농어촌관광휴양사업 정의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 8.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이란 「농어촌정비법」제2조제16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업을 말한다 (다만, 같은 법 제84조에 따른 토지와 시설의 분양은 제외한다).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 「농어촌정비법」제2조(정의)
 - 16. “농어촌 관광휴양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 가.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 : 농어촌의 쾌적한 자연환경과 농어촌 특산물 등을 활용하여 전시관, 학습관, 지역 특산물 판매시설, 체육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휴양시설 등을 갖추고 이용하게 하거나 휴양 콘도미니엄 등 숙박시설과 음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
 - 나. 관광농원사업 : 농어촌의 자연자원과 농림수산 생산기반을 이용하여 지역특산물 판매시설, 영농 체험시설, 체육시설, 휴양시설, 숙박시설, 음식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이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사업
 - 다. 주말농원사업 : 주말영농과 체험영농을 하려는 이용객에게 농지를 임대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밖에 이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사업
- 「농어촌정비법」제84조(토지 및 시설의 분양)
 -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또는 관광농원(이하 “농어촌관광휴양지”라 한다)의 개발사업 시행자가 제114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은 때에는 토지와 시설을 분양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시행 2026. 1. 2.]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나. 기본원칙

농업법인이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또는 관광농원으로 농어촌관광휴양사업을 하려는 경우,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농어촌관광휴양사업에 대한 사업규모 및 시설의 기준은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별표3]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광진흥법 시행령」[별표1]에 따른 관광사업의 등록기준에서도 농어촌휴양시설에 대해서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또는 관광농원의 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으므로, 관광사업자 등록과 농어촌관광휴양지 사업자 신고는 별개의 사안입니다.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제47조 관련)]

구분	사업	내용
사업의 규모	■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	■ 1만5천제곱미터 이상
	■ 관광농원사업	■ 10만제곱미터 미만
시설기준	■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	■ 농어업전시관(기본시설) : 농기구 등 농어업 관련 장비와 사진 등을 전시하기에 적합한 시설로서 면적이 60제곱미터 이상일 것 ■ 학습관(기본시설) : 학습에 필요한 책상과 의자 등을 갖춘 시설로서 면적이 60제곱미터 이상일 것. 다만, 농어업전시관이 학습관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학습관을 따로 두지 아니할 수 있다.
	■ 관광농원사업	■ 영농체험시설(기본시설) : 식량작물·특용작물·약용작물·채소·과수·화훼·유실수·버섯 등이 입식된 농장, 저수지·조류사육장·초지·축사·양어장·유리하우스(비닐하우스를 포함한다)·분재원 등 농수산물 생산을 위한 토지와 시설(자연림·자연초지 또는 야생화 등의 자생지는 제외한다) 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면서 관광농원 개발 승인 면적의 100분의 20 이상일 것



농어촌관광휴양사업 기본원칙

- 「농어촌정비법」 제85조(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의 신고 등)
 - ①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자가 경영할 수 있고, 관광농원사업은 제83조제1항에 따른 자 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자가 경영할 수 있다.

- ② 시장·군수·구청장 외의 자가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을 경영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내용을 변경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농어촌정비법」 제89조(사업장 폐쇄 등)

-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나 농어촌 민박사업자가 다음 각 호(제8호는 농어촌 민박사업자만 해당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업장의 폐쇄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7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의 폐쇄명령을 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사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2. 관광농원과 주말농원에 재배작물을 1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
3. 제81조제2항에 따른 규모나 시설 기준을 위반한 경우

-이하 생략-

[시행 2026. 1. 2.] [법률 제21065호, 2025. 10. 1.,타법개정]

다. 사업 예시

① 가능사업 예시

- ㄱ) 관광농원에서 농축산물을 이용한 체험, 관광, 외식 등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경우
 -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로 신고한 관광농원은 농업법인의 사업범위에 포함되므로 가능합니다. 다만, 관광농원이라도 재배작물 경작은 필수 요건입니다.

② 불가능사업 예시

- ㄱ)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사업자로 등록하고 야영장 운영
 - 「관광진흥법」에 따른 야영장(캠핑장)사업자는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와 별개의 사안이므로 불가능합니다.

[농어촌관광휴양사업 예시]

구분	가능한 사업	불가능한 사업
농어촌관광 휴양사업	■ 관광농원에서 농축산물을 이용한 체험, 관광, 외식 등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경우	■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사업자로 등록하고 야영장 운영 ※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사업자와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는 별도로 구분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5. 농촌융복합산업

가. 농촌융복합산업이란

농촌융복합산업이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농업인 또는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농촌지역의 농산물·자연·문화 등 유형·무형의 자원을 이용하여 식품가공 등 제조업, 유통·관광 등 서비스업 및 이와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복합적으로 결합하여 제공함으로써 부가가치를 창출하거나 높이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나. 농촌융복합산업 범위

농촌융복합산업의 범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①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여 식품 또는 가공품을 제조하는 산업, ②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이나 ①에서 생산된 식품 또는 가공품을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산업, ③농촌 자원을 활용한 서비스업을 제공하는 사업, ④ ①~③까지 중 둘 이상이 혼합된 산업입니다.



농촌융복합산업 범위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농촌융복합산업의 범위)
 - 1.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자가생산 또는 계약재배를 통하여 생산되는 농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여 식품 또는 가공품을 제조하는 사업
 - 2. 해당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이나 제1호의 산업에서 생산된 식품 또는 가공품을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산업
 - 3. 농촌지역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하여 체험·관광·외식 등 서비스업을 제공하는 산업
 - 4. 제1호에서 제3호까지 중 둘 이상이 혼합된 산업

[시행 2024. 11. 5.] [대통령령 제34986호, 2024. 11. 5., 타법개정]

다.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정의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란 ‘농촌융복합산업을 경영하고자 관련규정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평가를 거쳐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농업법인이 사업자로 인증 받으려는 경우, 사업장이 농촌에 소재하고 농촌지역의 농산물·자연·문화 등 유형·무형 자원을 이용하여 사업하는 농업법인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정의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4.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란 농촌융복합산업을 경영하고자 제8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를 말한다.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인등의 신청을 받아 농촌융복합 사업자로 인증할 수 있다. 다만, 지역의 대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등 대통령령으로 필요하다고 정하는 경우에는 농업인등을 포함하여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 사업의 명칭
 2. 사업자의 명칭 및 주소
 3. 사업의 기본방향 및 체계
 4. 사업의 개요 및 세부계획
 5. 추진사업의 대상 위치 및 그 면적
 6. 추진사업의 실시 예정 시기 및 기간
 7. 재원조달계획 및 연차별 투자계획
 8. 그 밖에 농촌융복합산업 추진에 필요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토하고 평가한 후 사업자 인증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시행 2024. 7. 24.] [대통령령 제34986호, 2024. 1. 23., 일부개정]



농업법인의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요건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농업인등의 범위)
 - 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법인”이란 주된 사업장이 농촌에 소재하고 농촌지역의 농산물·자연·문화 등 유형·무형 자원(이하 “유·무형 자원”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농업법인을 말한다.
[시행 2024. 11. 5.] [대통령령 제34986호, 2024. 11. 5., 타법개정]

라. 기본원칙

농촌융복합산업 중 ‘농촌지역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하여 체험·관광·외식 등 서비스업을 제공하는 사업’은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로 인증 받은 경우에 한해서 농업법인이 사업이 가능합니다.

농업법인이 식품의 가공·판매사업을 하려는 때에는 그 원료가 되는 농산물은 법인 소재하고 있는 해당 지자체에서 직접 생산하거나 계약재배를 통해 조달해야 합니다.

마. 사업 예시

① 가능사업 예시

ㄱ) 농축산물 브랜드 개발, 홍보, 마케팅 사업 및 농축산물을 이용한 체험·관광·외식 등 서비스업

- 농업법인 생산한 농축산물을 판매하기 위한 브랜드 개발, 홍보, 마케팅은 가능합니다. 다만, 브랜드 개발, 홍보, 마케팅이 별도의 매출과 수익이 발생하는 업(業)으로 수행되는 것이 아닌 경우에 한정됩니다. 또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촌융복합산업으로 인증을 받고, 승인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농촌융복합시설로 체험·관광·외식 등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것은 농촌융복합산업의 일환으로 가능합니다.

ㄴ) 농업법인이 생산하는 농산물을 활용한 만들기 체험 운영, 식품이 아닌 형태의 가공품을 제작·판매하는 사업

- 농촌융복합사업 사업자로 인증받은 경우, 농업법인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활용한 가공체험 및 판매사업은 농촌융복합사업에 해당하므로 가능합니다.

② 불가능사업 예시

- ㄱ) 농업법인이 아닌 법인 대표나 임원 개인이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을 받고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 농업법인이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로 인증받지 않고, 소속 구성원 개인이 받은 인증은 농업법인과 무관하므로 사업이 불가능합니다.
- ㄴ) 마을개발 관련한 마을 콘텐츠 개발, 인쇄 및 출판, 주민 대상 교육, 농촌 컨설팅, 이벤트 기획·운영, 관광상품 제작 및 판매 등의 사업
-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로 인증을 받았다 하더라도 해당 사업은 농촌융복합 사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불가능합니다.
- ㄷ)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가운데, 농어촌민박사업을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을 받고 운영하려는 경우
-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로 인증을 받더라도 농어촌민박사업은 「농어촌정비법」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라 농업법인의 사업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사업이 불가능합니다.
- ㄹ) 일반 곤충의 반려동물 체험학습
- 가축으로 지정된 곤충을 사육하여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을 받은 후 해당 곤충에 대한 체험관광 사업은 가능하나, 일반 곤충의 체험관광 사업은 불가능합니다.

[농촌융복합산업 예시]

구분	가능한 사업	불가능한 사업
농촌융복합 산업	■ 농축산물 브랜드 개발, 홍보, 마케팅 사업 및 농축산물을 이용한 체험·관광·외식 등 서비스업 ■ 농업법인이 생산하는 농산물을 활용한 만들기 체험 운영, 식품이 아닌 가공품을 제작·판매하는 사업	■ 농업법인이 아닌 법인 대표나 임원 개인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을 받고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 마을개발 관련한 마을 콘텐츠 개발, 인쇄 및 출판, 주민 대상 교육, 농촌 컨설팅, 이벤트 기획·운영, 관광상품 제작 및 판매 등의 사업 ■ 외식 창업 교육 및 인력 파견업, 외식업체 운영 및 프랜차이즈업 ■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가운데, 농어촌민박사업을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을 받고 운영하려는 경우 ■ 일반 곤충의 반려동물 체험학습 사업

6.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 및 공급사업

가.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 및 공급사업 이란

영농에 필요한 자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지만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른 자재(資材)는 ‘무엇을 만들기 위한 기본적인 재료’로 정의 되고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용·축산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를 규정하면서 비료, 농약과 농업용 기계를 분리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 및 공급사업 이란 내구성과 지속성을 가진 기계 및 장비와 구별되는 최종 농업 생산물의 일부가 되거나 제품생산 과정에서 소멸·흡수되는 재료를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사업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재는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기농업자재 등이 있습니다.

나. 기본원칙

농업법인 직접 생산한 비료, 농약, 사료, 유기농업자재 등을 공급하는 것만 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며, 제3자가 생산한 자재(수입된 자재 포함)를 단순 중개하거나 유통하는 것은 제외됩니다.

다. 사업 예시

① 가능사업 예시

- ㄱ) 살균, 살충용 생물 농약 제조 및 판매 사업
 - 농약은 영농에 필요한 자재에 포함되므로 사업이 가능합니다.
- ㄴ) 축산분뇨를 원료로 이용하여 퇴비를 생산 및 판매하는 사업
 - 퇴비는 영농에 필요한 자재에 포함되므로 사업이 가능합니다.
- ㄷ) 조사료, TMR 사료의 생산 및 공급사업
 - 사료는 영농에 필요한 자재에 포함되므로 사업이 가능합니다.

② 불가능사업 예시

ㄱ) 비료 제조에 필요한 원료로서 광물을 채굴하는 사업

- 비료 생산은 영농에 필요한 자재 범위에 포함되나, 그 원료가 되는 광물을 채굴하는 사업은 ‘광업’에 해당하므로 사업이 불가능합니다.

ㄴ) 사료, 비료, 퇴비 생산 및 공급을 위한 종합폐기물 수집 운반업

- 사료, 비료, 퇴비 생산을 위해 부수적으로 동식물성 잔재물, 유기성 오니, 폐식용유, 음식물류 폐기물 등의 수집 운반업을 영위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법인이 원료의 조달 차원이 아닌 제3자에게 공급하기 위한 별도의 수집운반업은 사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불가능합니다.

ㄷ) 농업용 부직포, 반사 필름, 과일·채소용 세척제, 포장용 아이스팩, 화훼용 화분 등의 생산 공급

- 최종 상품인 농축산물의 생산과정과의 연관성이 부족하며, 제품의 성격상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사업이 불가능합니다.

ㄹ) 법인이 생산하지 않은 사료·비료를 위탁판매하거나 대리점을 운영하는 사업

- 농업법인이 직접 생산한 자재만 가능하므로 직접 생산하지 않은 자재는 사업이 불가능합니다.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 및 공급사업 예시]

구분	가능한 사업	불가능한 사업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 및 공급사업	■ 살균, 살충용 생물 농약 제조 및 판매 사업 ■ 축산분뇨를 원료로 이용하여 퇴비를 생산 및 판매하는 사업 ■ 조사료, TMR 사료의 생산 및 공급사업	■ 비료 제조에 필요한 원료로서 광물을 채굴하는 사업 ■ 사료, 비료, 퇴비 생산 및 공급을 위한 종합폐기물 수집 운반업 ■ 농업용 부직포, 반사 필름, 과일·채소용 세척제, 포장용 아이스팩, 화훼용 화분등의 생산 공급 ■ 법인이 생산하지 않은 사료·비료를 위탁판매하거나 대리점을 운영하는 사업

7. 영농에 필요한 종자생산 및 종균배양사업

가. 영농에 필요한 종자생산 및 종균배양사업 이란

영농에 필요한 종자생산 및 종균배양사업이란 「종자산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자를 생산하거나 종균을 배양하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종자산업법」에서는 종자에 버섯 종균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종자의 정의

- 「종자산업법」 제2조(정의)
 - 1. “종자”란 증식용 또는 재배용으로 쓰이는 씨앗, 버섯 종균(種菌), 묘목(苗木), 포자(孢子) 또는 영양체(營養體)인 잎·줄기·뿌리 등을 말한다.
 - 1의2. “묘(苗)”란 재배용으로 쓰이는 씨앗을 뿌려 발아시킨 어린식물체와 그 어린식물체를 서로 접목(接木)시킨 어린식물체를 말한다.
- [시행 2024. 6. 28.] [법률 제19119호, 2022. 12. 27., 일부개정]

나. 기본원칙

농업법인이 종자업, 육묘업을 하기 위해서는 「종자산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종자의 생산 및 종균배양은 농업법인 사업범위에 포함되나, 농업법인이 종자를 생산하지 않고 가공하거나 재포장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농업법인의 사업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종자업 및 육묘업 등록

- 「종자산업법」 제37조(종자업의 등록 등)
 - ① 종자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9조의3제1항에 따라 종자의 생산 이력을 기록·보관하여야 하는 자의 등록 사항에는 종자의 생산장소(과수 묘목의 경우 접수 및 대목의 생산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포함되어야 한다

- ② 종자업을 하려는 자는 종자관리사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물의 종자를 생산·판매하려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농업단체등이 종자의 증식·생산·판매·보급·수출 또는 수입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종자업의 등록 및 등록 사항의 변경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종자산업법」 제37조의2(육묘업의 등록 등)

- ① 육묘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② 육묘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농업단체등이 묘의 생산·판매·보급·수출 또는 수입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육묘업의 등록 및 등록 사항의 변경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4. 6. 28.] [법률 제191196호, 2022. 12. 27., 일부개정]

다. 사업 예시

① 가능사업 예시

ㄱ) 종자, 묘목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사업

- 종자, 묘목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사업이 가능합니다.

ㄴ) 버섯 종균을 배양하여 판매하는 사업

- 종자에 버섯 종균이 포함되어 있으며, 버섯 종균을 배양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사업이 가능합니다.

② 불가능사업 예시

ㄱ) 제3자가 생산한 종자·묘목·종균을 유통하는 사업

- 직접 생산하지 않고 단순히 유통만 하는 사업은 농업법인 사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사업이 불가능합니다.

[영농에 필요한 종자생산 및 종균배양사업 예시]

구분	가능한 사업	불가능한 사업
영농에 필요한 종자생산 및 종균배양사업	■ 종자, 묘목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사업 ■ 버섯 종균을 배양하여 판매하는 사업	■ 제3자가 생산한 종자·묘목·종균을 유통하는 사업

8. 농산물의 구매 및 비축사업

가. 농산물의 구매 및 비축사업 이란

양곡의 경우, 2005년부터 공공비축제가 운영되고 있으며, 미곡종합처리장(RPC), 벼건조저장시설(DSC)사업자는 공공비축용 양곡의 매입 및 보관을 ‘대행’하는 역할만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양곡을 제외한 일반 농산물의 경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비축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관련 사업은 농협중앙회 또는 농식품유통공사를 통해서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산물의 구매 및 비축사업이란 농업법인이 자기의 책임으로 원료 농산물을 매입하여 보관하고, 시장가격의 추이에 따라 유리한 시점에 농산물의 판매하는 ‘농산물의 일반적 산지유통’사업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비축사업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13조(비축사업 등)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쌀과 보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54조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농산물을 비축하거나 농산물의 출하를 약정하는 생산자에게 그 대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하여 출하를 조절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비축용 농산물은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로부터 구매하여야 한다. 다만, 가격안정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에서 구매하거나 수입할 수 있다.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 단서에 따라 비축용 농산물을 수입하는 경우 국제가격의 급격한 변동에 대비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물거래(先物去來)를 할 수 있다.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농협중앙회 또는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비축용 농산물의 구매·수입·관리 및 판매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 1. 2.]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비축사업(개정예정)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3조(비축사업 등)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쌀과 보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2에서 같다)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54조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농산물을 비축하거나 농산물의 출하를 약정하는 생산자에게 그 대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하여 출하를 조절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비축용 농산물은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로부터 구매하여야 한다. 다만, 가격안정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에서 구매하거나 수입할 수 있다.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 단서에 따라 비축용 농산물을 수입하는 경우 국제가격의 급격한 변동에 대비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물거래(先物去來)를 할 수 있다.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농협중앙회 또는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비축용 농산물의 구매·수입·관리 및 판매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비축사업의 관리)[신설]
 - ① 제13조제4항에 따라 비축사업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사업자”라 한다)는 농산물의 비축을 위한 사전검토 사항, 농산물의 비축·판매 계획 및 농산물 비축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해당 연도 비축용 농산물의 관리 및 운용에 대한 계획(이하 “비축용농산물관리운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3월 말까지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수탁사업자로부터 비축용 농산물을 공급받은 자는 해당 연도 비축용 농산물의 판매실적을 다음 연도 1월 말까지 수탁사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수탁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보고받은 판매실적을 토대로 물가안정 등 사업의 효과성 및 배분의 적절성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연도 비축용 농산물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성과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분석·평가하여 다음 연도 비축용농산물관리운용계획 수립 시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비축용농산물관리운용계획의 수립, 판매실적의 보고, 성과점검 및 의견수렴 등의 기준·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시행 2026. 8. 27.]

나. 기본원칙

농업법인의 농산물의 구매 및 비축사업은 농산물의 유통과정의 일환으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산물의 출하·유통·가공·판매 및 수출’에 적용 되는 원칙을 그대로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농업법인이 직접 생산 또는 계약재배를 통해 구매한 농산물에 한정하여 비축사업이 가능합니다.

9. 농업기계나 그 밖의 장비의 임대·수리 및 보관 사업

가. 농업기계나 그 밖의 장비의 임대·수리 및 보관 사업 이란

농업기계나 그 밖의 장비의 임대·수리 및 보관사업은 농림축산물의 생산, 농림축산물과 그 부산물의 생산 후 처리작업, 생산시설의 환경 제어와 자동화 등에 사용되는 기계·설비 및 그 부속 기자재를 임대·수리 및 보관하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아하, 그렇군요!

농업기계 정의

-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정의)
 - 가. 농림축산물의 생산에 사용되는 기계·설비 및 그 부속 기자재
 - 나. 농림축산물과 그 부산물의 생산 후 처리작업에 사용되는 기계·설비 및 그 부속 기자재
 - 다. 농림축산물과 생산시설의 환경 제어와 자동화에 사용되는 기계·설비 및 그 부속 기자재
 - 라. 그 밖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식품산업(농림축산물을 보관, 수송 및 판매하는 산업은 제외한다)에 사용되는 기계·설비 및 그 부속 기자재

[시행 2024. 6. 21.] [법률 제194855호, 2023. 6. 20., 타법개정]

나. 농업기계의 범위

농업기계의 범위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동을 목적으로 하는 자동차와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건설기계는 제외됩니다.



아하, 그렇군요!

농업기계 범위

-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1조의2(농업기계의 범위)
 - 「농업기계화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기계는 별표1과 같다.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 기계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시행 2025. 5. 7.]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17호, 2025. 5. 7., 일부개정]

[농업기계의 범위(제1조의2 관련)]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별표1]		
1. 농업용 트랙터	15. 곡물건조기	29. 동력수확기
2. 농업용 트랙터 보호구조물	16. 농업용 고소작업차	30. 경운기
3. 콤바인	17. 농업용 방제기	31. 사료배합기
4. 이앙기	18. 농업용 파쇄기	32. 동력파종기
5. 정식기	19. 농업용 톱밥제조기	33. 사료공급기
6. 농업용 난방기	20. 농산물세척기	34. 농산물제피기
7. 농산물 건조기	21. 예취기	35. 탈곡기
8. 농산물 저온저장고	22. 동력제초기	36. 농산물선별기
9. 가정용 도정기	23. 농업용 리프트	37. 부속작업기
10. 농업용 동력 운반차	24. 트레일러	38. 농업용 무인 항공기
11. 농업용 로더	25. 농업용 베일러	39. 농축산물 생산 환경조절장치
12. 농업용 굴착기	26. 농산물 결속기	40. 농산물 포장기
13. 관리기	27. 농업용 절단기	41. 농업용 지게차
14. 비료살포기	28. 베일피복기	42. 그 밖의 농업기계

다. 기본 원칙

농업기계나 그 밖의 장비의 임대·수리·보관사업에 국한되며, 이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농업법인 사업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동을 목적으로 하는 자동차,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건설기계, 농산물 가공설비 및 제조시설도 농업기계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라. 사업 예시

① 가능사업 예시

- ㄱ) 농업법인이 농업기계를 보유하고, 농기계 미보유 농업인에게 일정한 댓가를 받고 임대하는 사업
 - 농업법인 보유한 농업기계를 농업기계가 없는 농업인에게 댓가를 받고 임대하는 것은 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가능합니다.

② 불가능사업 예시

ㄱ) 분뇨수거 살포 차량의 임대 사업

- 분뇨수거 살포 차량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로 분류되어 있어 농업기계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사업이 불가능 합니다.

ㄴ) 농산물 가공 설비 및 제조장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사업

- 농산물 가공 설비 및 제조장은 농업기계 가운데 그 밖의 장비에 포함되지 않으며, 제조장 임대는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사업이 불가능 합니다.

ㄷ) 농기계 수입, 판매사업

- 농업법인의 경영을 위해 수입농기계를 구입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제3자에게 판매하기 위한 수입업은 사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사업이 불가능 합니다.

[농업기계나 그 밖의 장비 임대·수리 및 보관사업 예시]

구분	가능한 사업	불가능한 사업
농업기계나 그 밖의 장비 임대·수리 및 보관사업	■ 농업법인이 농업기계를 보유하고, 농기계 미보유 농업인에게 일정한 댓가를 받고 임대하는 사업	■ 분뇨수거 살포 차량의 임대 사업 ■ 농산물 가공 설비 및 제조장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사업 ■ 농기계 수입, 판매사업

10. 소규모 관개시설(灌漑施設)의 수탁 및 관리사업

관개(灌漑)는 ‘농사를 짓기 위해 농경지에 물을 공급하는 것’을 의미하고, 관개시설에는 관개를 하기 위해 설치하는 수공원(저수지, 양수장, 취입보, 집수암거, 관정 시설)과 용수원(用水源)에서 확보된 물을 농경지까지 보내기 위한 용수로 시설이 해당됩니다.

관개시설을 포함한 농업생산기반시설 전체를 한국농어촌공사나 해당 시군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소규모 관개시설의 수탁 및 관리사업이란 농업법인이 소규모 관개시설을 한국농어촌공사나 해당 시군에 수탁·관리하는 사업이라 이해할 수 있습니다.

11. 농업과 관련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운영

가. 농업과 관련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운영 이란

농업과 관련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운영이란 농업법인 소속된 농업인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부수적으로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 사용료 등을 받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나. 공동이용시설의 범위

공동이용시설은 「농지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농자재 보관창고, 농산물 보관창고(저온창고 포함), 농기계 보관 및 수리시설, 농작업장, 퇴비장, 농산물 집하·선별장 등이 있습니다.



농업과 관련된 공동이용시설 범위

- 「농지법 시행령」 제29조(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 ③ 법 제3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의 시설 및 이용시설”이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농업인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사용하는 창고·작업장·농기계수리시설·퇴비장
 2. 경로당, 어린이집, 유치원, 정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응급의료 목적에 이용되는 항공기의 이착륙장 및 「민방위기본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비상대피시설
 3. 농업인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사용하는 일반목욕장·화장실·구판장·운동시설·마을공동주차장 및 마을공동취수장
 4.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농업생산단체가 농업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일반목욕장, 화장실, 운동시설, 구판장, 농기계 보관시설, 농업인 복지회관 및 폭염·한파 쉼터
- [시행 2026. 1. 29.] [대통령령 제36061호, 2026. 1. 27., 일부개정]

나. 기본 원칙

농업법인이 소속 농업인이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한 농업 관련 시설에 한정되며, 소속 농업인의 실질적인 이용과 무관한 농업법인의 고유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수수료를 받고 제3자에 대한 이용을 허용하는 것이 주가 될 경우,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 사업 예시

① 가능사업 예시

ㄱ) 공동육묘장 설치 및 운영 사업

- 공동으로 이용할 것을 전제로 한 육묘장 시설은 농업작업장이므로 사업의 범위에 포함되어 사업이 가능합니다.

② 불가능사업 예시

ㄱ) 농산물 가공식품 제조, 유통·판매와 관련된 공동이용 시설의 설치 및 운영

- 공동이용 시설의 설치 및 운영은 농업과 관련된 공동이용시설에만 해당되며, 농산물 가공식품 제조, 유통·판매관련 공동이용 시설의 설치하는 사업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사업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농업과 관련된 공동이용시설 규정에는 포함되지 않더라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산물의 출하·유통·가공·판매 및 수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유통·판매 관련 공동이용 설치는 가능합니다.

ㄴ) ‘농산물 보관업 및 저온 창고업’을 위한 시설 설치 및 운영

- 보관업, 저온창고업이 제3자에게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운영된다면 농업법인 구성원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사업이 불가능 합니다.

ㄷ) 퇴비생산 공장 설치 및 운영

- 공동이용시설에 포함되는 것은 공동이용을 위한 ‘퇴비장’이므로, 퇴비공장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사업이 불가능 합니다.

ㄹ) 양돈 액비 저장고 설치 및 운영

- 양돈 액비를 비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농자재로 간주하면 양돈 액비 저장고는 농자재 창고 이므로 사업범위에 포함된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이는 ‘공동 이용’시설에 포함시키기에는 부적절하므로 사업이 불가능합니다.

[농업과 관련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운영 예시]

구분	가능한 사업	불가능한 사업
농업과 관련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운영	■ 공동육묘장 설치 및 운영 사업	■ 농산물 가공식품 제조, 유통·판매와 관련된 공동이용 시설의 설치 및 운영 ■ ‘농산물 보관업 및 저온창고업’을 위한 시설 설치 및 운영 ■ 퇴비생산 공장 설치 및 운영 ■ 양돈 액비 저장고 설치 및 운영

제4부

농업법인 분야별 민원 사례

제1장 농업법인 설립관련

제2장 농업법인 변경관련

제3장 농업법인 운영관련

제4장 실태조사

제5장 후속조치

제6장 사업범위

농업법인 설립관련

1. 주소(소재지 및 관할)

[사례 1] 법인 설립 시 주택(아파트 등)을 주된 사무소로 등록 가능 여부

① 쟁점 사례

법인 설립 시 전세로 거주 중인 아파트나 개인 주택을 사무소 주소로 등록할 수 있는지와
설립 시 전세를 준 주택 주소를 사무소 주소로 등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② 관련 규정 및 원칙

법인 설립등기 단계에서 주소지 형태(주거용, 상업용 등)에 대한 명시적인 제한이
없습니다.

③ 실무 가이드

지자체 농업법인 설립 신고나 법원 등기소 설립 등기를 할 때 주택을 주소지로 등록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법인의 업종이나
사업 목적이 주거용 건물에서 수행하기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주택 주소 기재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등록 등을 위해서는 법인 명의의 부동산 소유 증빙
서류 또는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자체는 농업법인 실태조사를 통해 해당 주소지에 실제 사업장이 존재하는지,
법인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합니다.

[사례 2] 건물 없는 농지(나대지)를 주된 사무소로 등록 가능 여부

① 쟁점 사례

설립 신고 시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로 건물이 없는 농지이거나 향후 건축 예정인 부지가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

② 관련 규정 및 원칙

민법상 법인의 주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며, 주된 사무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해지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민법 제36조(법인의 주소) 법인의 주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조(사무소 등의 범위) 영 제27조제3항 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란 「법인세법」 제111조·「부가가치세법」 제8조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등록대상 사업장(「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 대상 사업장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의 종된 사업장을 포함한다)으로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장소는 제외한다.

1. 영업행위가 없는 단순한 제조·가공장소
2. 물품의 보관만을 하는 보관창고
3. 물품의 적재와 반출만을 하는 하차장

③ 실무 가이드

실무적으로 법인 운영에 필요한 우편물 수령 등이 가능해야 하므로, 건물이 없는 빈 농지나 향후 건축 예정인 곳은 주된 사무소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법인 설립 신고 시 기재하는 주소는 매입, 현물출자, 임대차 등 실질적으로 사무 공간을 마련할 예정인 주소를 기재해야 합니다.

컨테이너 등 가설건축물을 주된 사무소로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이 관할 지자체에 적법하게 신고된 건축물이어야 합니다.(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으로 확인 가능)

[사례 3] 한 주소지에 중복으로 농업법인 설립 가능 여부

① 쟁점 사례

동일한 소재지에 복수의 농업법인 중복 신고가 가능한지 여부와 특정 주소지에 다수의 법인이 설립된 사례가 법적으로 정상적인 행위인지에 대한 질의

② 관련 규정 및 원칙

법인 설립등기 단계에서 주소지 형태에 대한 명시적인 제한이 없습니다. 법적으로 동일한 주소지에 복수의 법인을 설립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농업법인은 농어업경영체법 제19조 등에 따라 농업 경영이나 유통, 가공 등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실체를 갖추어야 합니다.

③ 실무 가이드

ㄱ) 실체가 있는 법인의 합법적 운영

주소가 동일하더라도, 각 법인이 독립적인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목적 사업(농업 경영, 유통 등)을 실질적으로 영위하고 있다면 중복 설립 및 운영에 문제가 없습니다.

ㄴ) 실체가 불분명한 법인 설립 및 양도

단순히 서류상으로 본점 주소를 빌리거나, 영업 실체 없이 다수의 법인을 설립해 타인에게 양도(분양)하는 경우는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는 범위에 해당합니다.

ㄷ) 후속 조치

지자체는 특정 주소지에 법인이 다수 설립된 경우, 서류상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실제 사무소가 부재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실제 운영 사무소로 주소 이전을 유도하는 행정지도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아울러 인적·물적 시설 및 정상 운영 여부를 면밀히 점검하고, 실체가 없는 법인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해산명령 청구 등 단계적인 정비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사례 4] 관외 거주자(타 지역 거주자)의 법인 설립 가능 여부

① 쟁점 사례

법인을 설립하려는 자가 본점 소재지 관내에 거주하지 않거나 해당 지역에 소유한 농지가 없는 경우 법인 설립 신고 대상이 되는지와 농업법인 주소, 농지 소재지, 대표자 거주지가 모두 일치해야 되는지에 대한 질의

② 관련 규정 및 원칙

설립자의 지역 거주 사실이나 관내 농지 소유 여부는 법인 설립을 위한 필수 법적 요건이 아닙니다.

③ 실무 가이드

해당 지자체에 거주하지 않고 소유한 농지가 없더라도, 농업인 확인서 등을 통해 설립 요건만 충족한다면 해당 지역에 적법하게 농업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농업법인의 주소(주된 사무소), 농업인(대표)의 개인 거주지, 농지의 소재지는 각각 달라도 법적으로 무방합니다. 농업법인의 설립 신고 시 법인 주소는 우편물 수령 및 납세지가 되는 '주된 사무소의 주소'를 의미하며, 해당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신고하면 됩니다.

제1부
농업법인이란 무엇인가제2부
농업법인의 업무인내제3부
농업법인의 사업범위 호별 예시제4부
농업법인의 분야별 민원 사례제5부
중대제해처벌법 바로 알기별첨
기타 주요 정보

2. 조합원(요건 및 자격)

[사례 1] 가족 단위의 영농조합법인 설립(5인 구성)

① 쟁점 사례

영농조합법인 설립을 위한 최소 인원인 5명의 조합원이 모두 부, 모, 자녀 등 일가족으로만 구성되어도 법인 설립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

② 관련 규정 및 원칙

영농조합법인은 농업인 또는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가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할 수 있으며, 가족 관계에 대한 제한 규정은 없습니다.

③ 실무 가이드

가족 모두가 개별적으로 '농업인' 자격을 갖추고 있다면 전원 가족으로 구성된 영농조합법인 설립이 적법하게 가능합니다. 단, 구성원 각자가 농업인임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농업인 확인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등)를 반드시 개별 제출하여 자격을 입증해야 합니다.

[사례 2] 외국인 및 미성년자의 영농조합법인 조합원·준조합원 가입

① 쟁점 사례

외국인이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으로 가입하거나, 미성년자가 정관에 별도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② 관련 규정 및 원칙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은 반드시 ‘농업인’ 자격을 충족해야 합니다. 준조합원은 농업인이 아닌 자로서 법인에 자재 공급, 농지 임대, 농산물 구입, 단순 출자 등을 하는 자로 규정됩니다.

농업경영체법 제16조(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신고 등) ①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유통·가공·수출 및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이하 “농업생산자단체”라 한다)는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영농조합법인(營農組合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동법 제17조(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 등) ① 영농조합법인은 농업인과 농업생산자단체 중 정관으로 정하는 자를 조합원으로 한다.

② 농업인이 아닌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농조합법인에 출자하고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총회에서 의결권은 행사하지 못한다.

동법 시행령 제14조(준조합원의 자격)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영농조합법인에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농조합법인에 생산자재를 공급하거나 생산기술을 제공하는 자
2. 영농조합법인에 농지를 임대하거나 농지의 경영을 위탁하는 자
3. 영농조합법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구입·유통·가공 또는 수출하는 자
4. 그 밖에 농업인이 아닌 자로서 영농조합법인의 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영농조합법인에 출자를 하는 자

③ 실무 가이드

ㄱ) 외국인의 가입

외국인이라도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거나 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농업인 확인서’를 발급받아 농업인 자격을 갖추었다면 영농조합법인의 정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ㄴ) 미성년자의 준조합원 가입

법령상 준조합원 가입에 대한 연령 제한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라도 출자 등의 법적 요건을 충족한다면 준조합원 가입이 가능합니다.

[사례 3] 영농조합법인 임원의 조합원 산정 및 비농업인 임원 선출 조건

① 쟁점 사례

영농조합법인의 감사를 맡고 있는 자가 설립 요건인 ‘조합원 5인’ 산정에 포함되는지와 비농업인(준조합원)을 대표조합원이나 이사로 선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② 관련 규정 및 원칙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 5인 요건은 임원 여부와 관계없이 ‘농업인 여부’로만 판단합니다. 또한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조합원 및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은 반드시 ‘조합원’ 중에서 선출해야 합니다

농업경영체법 제16조(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신고 등) ①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유통·가공·수출 및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이하 “농업생산자단체”라 한다)는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영농조합법인(營農組合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동법 제17조의2(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임원 등) ①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의 임원은 총회의 의결로 조합원과 준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되, 대표조합원 및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실무 가이드

ㄱ) 감사의 조합원 산정

감사를 맡은 자라도 농업인 자격이 있다면 당연히 설립 요건인 조합원 5인 중 1명으로 인정됩니다.

ㄴ) 농업인이 아닌 자의 임원 제한

2024년 1월 23일부터 비농업인(준조합원)도 이사 등 임원으로 선출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되었으나, 대표조합원은 여전히 농업인이어야 합니다. 농업인이 아닌 자를 임원으로 선출하더라도, 대표조합원 및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은 조합원(농업인) 중에서 선출해야 합니다.

[사례 4] 기존 농업법인의 타 농업법인 조합원(발기인) 참여

① 쟁점 사례

이미 설립되어 운영 중인 영농조합법인이 신규로 설립되는 다른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의 주주 또는 발기인으로 가입하여 출자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

② 관련 규정 및 원칙

농업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주체는 ‘농업인’과 ‘농업생산자단체’이며, 특정 요건을 갖춘 농업법인은 생산자단체로 인정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생산자단체 범위(농식품부고시 제2019-8호)

1.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중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인 영농조합법인
2.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 중 농업인 5인이상이 참여하고 자본금이 1억원이상인 농업회사법인

③ 실무 가이드

ㄱ) 자본금 요건 확인

영농조합법인은 자본금 1억 원 이상,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5인 이상 참여 및 자본금 1억원 이상인 경우 농식품부 고시에 따른 ‘농업생산자단체’의 지위를 가지므로, 타 농업법인의 발기인(조합원)으로 적법하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ㄴ) 정관 상 제한 확인

단, 가입 주체가 되는 기존 농업법인의 정관에 “다른 농업법인의 가입 금지 또는 제한”하는 내부 규정이 있다면 가입이 불가하므로 정관 확인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사례 5] 동일 농업인의 다수 법인 가입 및 임원 겸직

① 쟁점 사례

한 명의 농업인(예: 법인 A의 임원)이 동시에 다른 법인 B의 대표조합원이나 발기인으로 중복 가입하여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② 관련 규정 및 원칙

농어업경영체법상 동일 농업인의 다수 농업법인 가입이나 임원 겸직을 직접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③ 실무 가이드

ㄱ) 행정상 설립 가능

한 명의 농업인이 여러 법인의 조합원, 주주, 임원이 되는 것은 행정 절차상 반려 사유가 되지 않으므로 가능합니다.

ㄴ) 내부 충돌 주의

단, 임원으로 속한 각 법인이 동종 영업(경쟁) 관계에 있을 경우, 타 법인의 임원을 겸직하는 것이 「상법」 및 표준정관상 본래 법인에 대한 ‘경업금지 의무’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조합에 손해를 끼치는 경우 내부적인 분쟁 소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ㄷ) 보조금 중복 지원 문제

정부보조금 지원의 경우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지원사업별로 제한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례 6] 대표조합원 이외 임원이 없어도 영농조합법인 설립 가능

① 쟁점 사례

영농조합법인 설립 시 대표조합원을 제외한 이사, 감사 등의 임원이 없어도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

② 관련 규정 및 원칙

농어업경영체법상 임원의 수를 정하는 조항은 없으므로, 법인 정관에서 규정하는 이사 및 감사 등 임원 수에 따라야 합니다.

③ 실무 가이드

법인 정관에서 “이사 1인 이상으로 둔다”라고 되어 있고, 창립총회에서 이사 1인만 선출했다면 그가 대표조합원으로 업무를 집행할 것입니다. 한편, 정관에 ‘감사는 1인을 둔다’고 되어 있으면 반드시 1인 이상의 감사를 두어야 하고, “감사는 1인 이상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면 두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관 규정에 따라 대표조합원 1인만 두고 이사, 감사 없이 설립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영농조합법인 설립을 위한 요건(조합원 5인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사례 7] 개인 농지 처분 후 법인 농지에서만 영농하는 조합원의 자격 유지

① 쟁점 사례

영농조합법인 설립 시 농업인으로 확인받아 조합원으로 가입하였으나, 개인 소유의 농지를 매각하고, 현재는 영농조합법인 소유의 농지에서만 협업 영농을 하는 경우 농업인 자격을 어떻게 유지하는지 여부

② 관련 규정 및 원칙

농업법인은 부동산업이 금지되므로 소유 농지를 조합원에게 임대(사용대차 포함)할 수 없으며, 농업인의 기준은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을 따릅니다.

농업경영체법 제19조의5(부동산업의 금지) 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은 농지를 활용 또는 전용하여 「통계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부동산업(단, 이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영위할 수 없다.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6-40호, 2026. 3. 30., 일부개정)

제4조(농업인 확인 기준) 이 고시에 따라 농업인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농업인 확인을 신청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4.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농업인 기준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충족한 경우
 - 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업 생산 및 농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고용된 사람이 1년 이상(계속 종사를 말한다)의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서면 계약서를 제출한 사람
 - 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업 생산 및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활동에 고용된 사람이 1년 이상(계속 종사를 말한다)의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서면 계약서를 제출한 사람. 다만, 법인의 대표와 등기이사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③ 실무 가이드

법인 소유 농지를 조합원 개인에게 임대하는 행위는 법령상 허용된 사업범위를 위반할 소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조합원으로서 농업인 요건을 갖추고자 할 경우에는 법인과외 임대차 계약이 아닌, 법인 경영체에 소속되어 실제 영농에 종사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방식(급여 명세서, 고용계약서 등)을 통해 농업인 확인서를 발급받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출자자(자본금 및 비농업인 참여)

[사례 1] 일반법인의 농업회사법인 발기인(설립) 참여 제한

① 쟁점 사례

일반 주식회사가 농업회사법인의 지분을 50% 이상 인수하여 자회사로 두거나, 발기인으로 참여하여 90% 지분으로 농업회사법인을 단독 설립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② 관련 규정 및 원칙

농업회사법인을 설립(발기)할 수 있는 자는 ‘농업인’과 ‘농업생산자단체’에 한정되며, 일반법인(비농업인)은 발기인이 될 수 없습니다.

단, 설립 과정에서 비농업인도 총출자액의 90% 한도 내에서 출자할 수는 있습니다. (총출자액 80억 원 초과 시 8억 원을 제외한 금액)

농업경영체법 제19조(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 등)

②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자는 농업인과 농업생산자단체로 하되, 농업인이나 농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의 범위에서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동법 시행령 제18조(농업인 등이 아닌 자의 출자한도)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가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회사법인의 총출자액이 80억원 이하인 경우: 총출자액의 100분의 90
2. 농업회사법인의 총출자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총출자액에서 8억원을 제외한 금액

③ 실무 가이드

ㄱ) 발기설립 불가, 모집설립 가능

일반법인이 주도하여 발기인으로서 직접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는 것은 법적 제약이 있으나, 농업인 등이 발기인이 되어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일반법인이 주식을 인수하는 ‘모집설립’ 방식은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농업인 발기인이 최소 10% 이상의 지분을 확보하는 등 출자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ㄴ) 증자를 통한 자회사 편입

이미 농업인이 설립한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일반법인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등에 참여하여 지분을 확보하는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비농업인의 출자한도를 준수해야 합니다.

[사례 2] 농업법인 및 농협의 신규 농업회사법인 100% 출자 가능 여부

① 쟁점 사례

기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또는 농업협동조합 등이 새로운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때 비농업인 출자 한도(90%) 적용을 받는지, 아니면 100% 단독 출자가 가능한지 여부

② 관련 규정 및 원칙

출자 주체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등에 따른 ‘농업생산자단체’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비농업인 출자 한도 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생산자단체의 범위) 법 제3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
2.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3. 「업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른 업연초생산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4. 삭제
5. 농산물을 공동으로 생산하거나 농산물을 생산하여 공동으로 판매·가공 또는 수출하기 위하여 농업인 5명 이상이 모여 결성한 법인격이 있는 전문생산자 조직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단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생산자단체 범위(농식품부고시 제2019-8호)

1.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중 자본금이 1억원이상인 영농조합법인
2.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 중 농업인 5인이상이 참여하고 자본금이 1억원이상인 농업회사법인
3. 「농업협동조합법」 제112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설립인가한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농업협동조합법」 제1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설립인가한 품목조합연합회, 「산림조합법」 제86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청장이 설립인가한 조합공동사업법인
4. 「농수산 자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산자조금을 조성·운영하는 자조금단체
5.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조활동자금을 조성·운영하는 축산단체
6.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중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5호에 따른 조직으로서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인 조합
7.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연합회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중 제6호에 해당되는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을 회원으로 하고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인 연합회

③ 실무 가이드

‘농업생산자단체’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새로운 농업회사법인의 단독 발기인이 되어 100% 출자(단독 자회사 설립)이 가능합니다.

[사례 3] '농업생산자단체' 인정을 위한 자본금 증빙 및 농업인 참여 기준

① 쟁점 사례

농업생산자단체 요건 충족 여부 판단 시, '자본금 1억 원의 증빙방법'과 '농업인 5인 이상 참여'의 실질적인 의미(근로 여부 등)에 대한 질의

② 관련 규정 및 원칙

농림축산식품부 고시에 따른 생산자단체 범위는 공적 장부상 기재 사항과 농업인의 실제 지분 참여를 기준으로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생산자단체 범위(농식품부고시 제2019-8호)

1.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중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인 영농조합법인
2.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 중 농업인 5인이상이 참여하고 자본금이 1억원이상인 농업회사법인

③ 실무 가이드

ㄱ) 자본금 1억 원 기준

법인의 실제 현금 보유액이나 재무제표상 자산 규모와 관계없이, 생산자단체 요건 확인 시에는 법인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자본금(출자금)'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등기부상 자본금이 1억 원 미만인 법인은 자산 상태와 별개로 증자 등기를 통해 공적 장부상의 요건을 먼저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ㄴ) 농업인 참여 기준

농업인 5명 이상이 참여한다는 것은 해당 농업인이 법인에 근로자로서 근무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법인에 실제로 출자하여 주식(지분)을 보유한 주주(사원)로서 농업인이 5명 이상 존재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사례 4] 사업범위 우회를 위한 농업법인의 일반법인 출자

① 쟁점 사례

농업법인이 법령상 제한된 사업범위 제한을 우회할 목적으로, 자산의 상당 부분을 일반 법인에 현물출자하거나 주식을 대량 취득하여 실질적으로 타 사업을 영위하는 행위의 적정성

② 관련 규정 및 원칙

농어업경영체법상 농업법인이 다른 법인에 출자하는 행위를 직접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은 없으나, 출자로 인해 본연의 농업경영 목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③ 실무 가이드

농업법인이 경영상 잉여 자금을 활용하여 일부 금융상품(주식 등)을 취득하는 것과 타 법인의 사업 영위를 위해 자본을 출연하는 출자는 그 성격이 다릅니다.

만약 허용된 사업범위를 우회할 목적으로 농업법인 재산의 상당 부분을 일반법인에 현물출자하여, 농업법인 본연의 경영 목적이 실질적으로 형해화(形骸化) 되는 수준에 이를 경우,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 위반 등 경영진의 법적 책임 문제가 제기될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의 ‘법인격 부인론’ 등이 적용될 경우, 농업법인과 출자 대상인 일반법인을 동일체로 간주하여 법적 책임을 공유하게 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4. 기타 사항

[사례 1] 도시농업 영위 목적의 농업법인 설립

① 쟁점 사례

옥상 텃밭, 주말농장 등 도시농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농업법인의 설립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

② 관련 규정 및 원칙

도시농업은 도시지역 내 다양한 공간을 활용하여 취미, 여가, 학습 또는 체험을 목적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동물을 사육하는 행위로 정의됩니다.

도시농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농업”이란 도시지역에 있는 토지, 건축물 또는 다양한 생활공간을 활용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농작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행위

나. 수목 또는 화초를 재배하는 행위

다.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곤충을 사육(양봉을 포함한다)하는 행위

동법 시행령 제2조(도시농업의 범위)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취미, 여가, 학습 또는 체험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말한다.

③ 실무 가이드

농업법인은 협업적 농업경영 또는 기업적 농업경영(농산물의 유통, 가공,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하는 것이 제도적 취지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체험이나 취미 중심의 도시농업만을 영위하기 위해 농업법인을 설립하는 것은 제도 본연의 취지와 상충할 우려가 있습니다.

[사례 2] 지자체 설립·변경 신고 시 정관 등 서류의 공증 의무

① 쟁점 사례

농업법인을 설립하거나 변경 신고할 때, 지자체에 제출하는 첨부서류(정관, 총회의사록 등)를 등기소 제출용과 동일하게 공증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② 관련 규정 및 원칙

상법 및 공증인법에 따라 법인登記 신청 시 첨부되는 정관과 총회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단, 자본금 10억 미만 발기설립 등 예외 존재)

상법 제292조(정관의 효력발생)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제295조제1항에 따라 발기설립(發起設立)하는 경우에는 제289조제1항에 따라 각 발기인이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공증인법 제66조의2(법인의사록의 인증) ①법인 등록을 할 때 그 신청서류에 첨부되는 법인 총회 등의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상법」 제295조제1항에 따라 발기설립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인 경우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의결한 경우

③ 실무 가이드

법인登記 절차와 달리, 지자체에 행하는 설립·변경 신고는 해당 법인이 법령상 요건을 갖추었는지 사전에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서류 사본에 법인인감(또는 발기인 도장)으로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서류의 진위 확인이 모호하거나 특이 사항이 있는 경우 지자체에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므로 제출 전 관할 지자체의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례 3] 정관상 임의 자격 규정에 대한 행정청의 확인 의무

① 쟁점 사례

제출된 정관에 “이사는 농업인으로 한다”와 같이 법령보다 엄격한 내부 자격 규정이 명시된 경우, 지자체 담당자가 해당 규정의 준수 여부까지 확인한 후 신고를 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② 관련 규정 및 원칙

지자체 담당자의 사전신고 확인 업무는 해당 법인의 설립 또는 변경 사항이 관련 법령상의 강행 규정을 위반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점검하는 것입니다.

③ 실무 가이드

법인이 자율적으로 정관에 법령보다 강화된 임원 자격 요건을 두었더라도, 이는 법인 내부의 의사결정에 따른 자치 영역으로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지자체 담당자는 우선적으로 법령에서 정한 농업법인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합니다. 정관상의 개별적인 임의 요건 준수 여부까지 행정청의 필수적인 확인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제1부
농업법인이란 무엇인가제2부
농업법인의 업무인내제3부
농업법인의 사업범위 호별 예시제4부
농업법인의 분야별 민원 사례제5부
중대제해처벌법 바로 알기별첨
기타 주요 정보

[사례 4] 영농영어조합법인 명칭을 사용한 겸영 설립

① 쟁점 사례

농업과 어업을 동시에 수행하기 위해 ‘영농영어조합법인’이라는 통합된 명칭으로 설립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

② 관련 규정 및 원칙

농어업경영체법에서는 영농조합법인과 영어조합법인을 분리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③ 실무 가이드

두 법인격을 한 번에 같은 법인격으로 겸영하여 설립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따라서 법인이 현재 영위 중인 주 사업의 성격에 맞추어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 중 하나를 택일하여 명칭과 목적을 변경해야 합니다.

[사례 5] 위장전입(타 법령 위반)자의 법인 설립신고 수리 여부

① 쟁점 사례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려는 대표이사 등이 실제 거주지가 아닌 곳으로 위장전입(주민등록법 위반)을 한 상태에서 법인 설립신고를 한 경우, 지자체가 이를 근거로 반려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② 관련 규정 및 원칙

농업법인 설립신고 반려 사유는 해당법인의 설립절차, 정관의 내용, 신고서의 기재 사항 등이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자체는 신고 서류상에 나타난 요건의 충족 여부를 중심으로 심사합니다.

농어업경영체법 시행령 제5조(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신고 등)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고서를 반려할 수 있다.

1. 조합법인의 설립·변경 또는 해산 절차가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2. 정관 또는 신고서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3. 제4항에 따른 보완 요구를 받고 정해진 기간에 신고서를 보완하지 않은 경우

동시행령 제19조(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 등)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고서를 반려할 수 있다.

1.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이하 “회사법인”이라 한다)의 설립·변경 또는 해산 절차가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2. 정관 또는 신고서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3. 제4항에 따른 보완 요구를 받고 정해진 기간에 신고서를 보완하지 않은 경우

③ 실무 가이드

농업법인 사원 개인의 주소지 관련 사안(위장전입 등)은 일차적으로 주민등록법에 해당하며,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설립 신고의 직접적인 반려 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지자체 담당자가 설립 요건 외의 타 법령 위반 여부까지 모두 확인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농업법인이 사무소 주소지를 실제 사용하지 않는 허위 주소로 기재하였다면 신고서의 보완을 요청하거나 수리를 반려할 수 있습니다.

[사례 6] 설립 시 사업목적의 포괄적 기재 제한

① 쟁점 사례

정관에 농업 관련 목적사업을 열거한 후, 마지막 항목으로 “위 각 호에 부대하는 사업일체”라고 포괄적으로 기재하여 설립신고 및 등기가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

② 관련 규정 및 원칙

농업법인은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설립 및 운영하며 농업 관련 사업만을 영위할 수 있는 특수법인으로 법령에 규정된 사업범위 내에서만 사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농어업경영체법 19조의4(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의 사업범위) ① 농업법인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농업의 경영, 농산물의 공동 출하·유통·가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동법 시행령 제20조의5(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의 사업범위) ① 법 제19조의4제1항에서 “농업의 경영, 농산물의 공동 출하·유통·가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농업의 경영
2. 농산물의 출하·유통·가공·판매 및 수출
3. 농작업의 대행
4. 농어촌관광휴양사업
5.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로서 수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다음 각 목의 부대 사업
 - 가.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 및 공급사업
 - 나. 영농에 필요한 종자생산 및 종균배양사업
 - 다. 농산물의 구매 및 비축사업
 - 라. 농업기계나 그 밖의 장비의 임대·수리 및 보관사업
 - 마. 소규모 관개시설(灌漑施設)의 수탁 및 관리사업
 - 바. 농업과 관련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운영

③ 실무 가이드

“기타 농업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이나 “위 각 호에 부대되는 사업 일체”와 같은 포괄적인 표현은 사업 내용을 명확히 알 수 없으므로 농업법인이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사례 7]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등의 명칭 사용 기준

① 쟁점 사례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라는 명칭을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것이 법적 의무 사항인지에 대한 질의

② 관련 규정 및 원칙

농림식품부 고시 「농업법인 정관례」에 따라 상호에는 반드시 ‘농업회사법인’과 ‘주식회사’라는 명칭이 포함되어야 하는 점 이외에는 별다른 제한은 없습니다.

농업법인 정관례(농식품부고시 제2019-25호)

5.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의 정관례

제1조(명칭) 본 회사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그 명칭은 농업회사법인 OO주식회사라 칭한다

〈유의사항〉

- 상호에는 반드시 「농업회사법인」과 「주식회사」라는 명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주식회사의 상호 중에는 “농업회사법인”과 “주식회사”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하는 점 이외에는 별다른 제한이 없으나, 동일한 시·군내에서 동종영업을 위하여 타인이 등기한 상호나 어느 회사의 지점이나 출장소 등과 같이 회사의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고 그 일부임을 표시하는 듯한 상호로는 등기할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한다.

③ 실무 가이드

다만,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농업회사법인 OOOO주식회사’와 같은 형태로 등기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일한 시·군내에서 동종영업을 위하여 타인이 등기한 상호 나 어느 회사의 지점이나 출장소 등과 같이 회사의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고 그 일부임을 표시하는 듯한 상호로는 등기할 수 없습니다.

[사례 8] 농업법인 설립신고 업무의 행정사 대리 가능 여부

① 쟁점 사례

행정사가 농어업경영체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설립신고 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② 관련 규정 및 원칙

행정사법 제2조에 따라 행정기관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신고하는 일의 대리는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합니다.

행정사법 제2조(업무) ①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

1.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2.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3.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代行)
5. 인가·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代理)
6. 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7.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 조사 및 확인

③ 실무 가이드

농업법인 설립신고 서류를 작성하여 주된 사무소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는 행위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및 제출 대행에 해당하므로 행정사가 대리하여 수행할 수 있습니다.

농업법인 변경관련

1. 법인 전환 및 조직변경

[사례 1] 일반 주식회사에서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 절차 및 신고

① 쟁점 사례

일반 주식회사가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하려 할 때, 최초 설립이 아니므로 창립총회 서류 제출이 생략 가능한지와 지자체 신고 시 ‘변경신고’와 ‘설립신고’ 중 어느 절차를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② 관련 규정 및 원칙

일반법인에서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농업인 출자비율이 총출자액의 10% 이상이어야 하며,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상호와 사업 목적을 관련 법령에 적합하게 변경해야 합니다.

③ 실무 가이드

일반법인의 농업회사법인 전환은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농업법인으로서의 요건을 처음으로 갖추어 지위를 획득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지자체에는 변경신고가 아닌 설립신고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다만, 기존 법인의 조직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창립총회의사록 대신 농업회사법인으로의 상호 및 목적 변경을 의결한 주주총회의사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농업인 지분을 확인할 수 있는 주주명부와 농업인 확인 서류 등을 통해 법적 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례 2] 농업법인에서 일반법인으로 전환 시 소유 농지 처분 의무

① 쟁점 사례

농업회사법인이 사업 확장을 위해 일반 주식회사로 조직을 변경(전환)하고자 할 때, 법인이 소유하고 있던 농지를 반드시 사전 처분해야 하는지, 처분 유예가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

② 관련 규정 및 원칙

「농지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므로, 일반법인으로 전환되어 농업법인 지위를 상실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없습니다.

농지법 제6조(농지 소유 제한) ①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다만, 소유 농지는 농업경영에 이용되도록 하여야 한다(제2호 및 제3호는 제외한다).

③ 실무 가이드

일반법인은 농지를 소유할 수 없으므로, 조직 변경 신고를 하시기 전에 소유 농지를 먼저 처분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자체에서는 변경신고를 수리하기 전 농지정보 시스템 등을 통해 농지 보유 현황을 확인하며, 농지가 처분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원칙적으로 신고 수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농지가 ‘일반공업지역’에 위치하는 등 일반법인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법상 예외 조항(농지법 제6조 제2항)에 해당함을 소명한 경우에 한하여, 농지 담당 부서의 협조를 거쳐 예외적으로 변경신고 수리가 가능합니다.

일반법인 전환 시, 농업법인 지위에서 받았던 취득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의 소급 취소 여부는 관할 세무서 등 소관 부서의 규정에 따릅니다.

[사례 3] 행정처분 회피 목적의 일반법인 전환 및 위반행위 승계

① 쟁점 사례

부동산업 영위 등 목적 외 사업으로 적발되어 해산명령 청구를 앞둔 농업법인이, 제재를 피하고자 일반 주식회사로 변경신고를 낸 경우 이를 수리하여야 하는지 및 과거 위반 행위의 처리 방향

② 관련 규정 및 원칙

사업범위 위반에 따른 해산명령 청구 등 행정상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일반법인으로 전환하려는 것은 법질서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농어업경영체법 시행령 제5조(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신고 등)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고서를 반려할 수 있다.

1. 조합법인의 설립·변경 또는 해산 절차가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2. 정관 또는 신고서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3. 제4항에 따른 보완 요구를 받고 정해진 기간에 신고서를 보완하지 않은 경우

동시행령 제19조(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 등)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고서를 반려할 수 있다.

1.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이하 “회사법인”이라 한다)의 설립·변경 또는 해산 절차가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2. 정관 또는 신고서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3. 제4항에 따른 보완 요구를 받고 정해진 기간에 신고서를 보완하지 않은 경우

③ 실무 가이드

농업법인이 일반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해 변경신고를 한 경우, 관할 지자체에서는 관계 법령상 반려 사유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여 수리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정관이나 신고서에 부동산업 영위 등의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 신고서를 반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법인으로 전환하더라도 해당 법인의 법인격은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과거 농업법인이 사업범위를 위반한 사항에 대해 관할 지자체는 해산명령 청구 등 행정조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례 4] 영농조합법인에서 농업회사법인으로의 조직변경 절차 및 서류

① 쟁점 사례

영농조합법인이 농업회사법인으로 조직을 변경하려 할 때, 해산등기와 설립등기를 병행해야 하는 절차적 부담 및 조직변경 시 창립총회의사록 제출 여부에 대한 민원

② 관련 규정 및 원칙

농어업경영체법 제18조에 따라 영농조합법인은 총조합원의 일치된 총회 결의를 거쳐 농업회사법인으로 조직변경이 가능합니다.

농어업경영체법 제18조(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조직변경) ①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은 총조합원의 일치로 총회의 결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형태인 농업회사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으로 조직을 변경할 수 있다.

1. 합명회사

2. 합자회사

2의2. 유한책임회사

3. 유한회사

4. 주식회사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조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일부를 유한책임사원으로 하거나 유한책임사원을 새로 가입시켜야 한다.

③ 제1항제2호의2 또는 제3호에 따라 조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전원을 유한책임사원으로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4호에 따라 조직을 변경할 때 발행하는 주식의 발행가액의 총액은 조합법인에 현존하는 순재산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순재산액이 자본총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결의 당시의 조합원이 연대하여 그 부족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⑤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이 제1항에 따라 조직변경의 결의를 한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날부터 2주 내에, 조합 채권자에 대하여 조직변경에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개월 이상 공고하고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따로 공고 내용을 알려야 한다.

⑥ 채권자가 제5항에 따른 일정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이 채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조직변경의 결의는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⑦ 채권자가 제5항의 기간 내에 조직변경의 결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직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⑧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이 제1항의 조직변경을 한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은 해산등기를, 농업회사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은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⑨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으로서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유한책임사원 또는 주주가 된 자는 제8항에 따른 본점 등기를 하기 전에 생긴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의 채무에 대하여 등기 후 2년이 될 때까지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으로서 책임을 진다.

③ 실무 가이드

조직변경은 법인격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형태만 바꾸는 것이나, 현행법 체계상 영농조합법인의 해산 신고 및 등기와 농업회사법인의 설립 신고 및 등기를 동시에 일원화되어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신고 시, 신규 창립이 아니므로 ‘창립(발기인)총회의사록’은 제출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대신, 농업회사법인으로의 변경 내용, 정관 승인, 주식 배정 등이 포함된 ‘조직변경을 의결한 총회의사록’을 지자체에 제출하면 됩니다.

조직변경 후에도 기존 법인의 재무제표 및 법인격의 동일성이 유지되므로 기존 사업자등록번호는 변동 없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세무서에 기존 사업자를 폐업하지 않고, 법인명과 법인등록번호 등을 수정하는 사업자등록 정정(변경) 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제1부
농업법인이란 무엇인가제2부
농업법인의 업무인내제3부
농업법인의 사업범위 호명 예시제4부
농업법인 분야별 민원 사례제5부
중대제재처벌법 바로 알기별첨
기타 주요 정보

[사례 5] 농업회사법인에서 어업회사법인으로의 명칭 및 목적 변경

① 쟁점 사례

기존에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을 어업회사법인으로 명칭과 목적을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② 관련 규정 및 원칙

농업회사법인과 어업회사법인은 농어업경영체법에 설립 근거를 두고 있으나, 근본적인 형태는 상법상의 회사이므로 상호 및 목적 변경 절차를 거쳐 전환이 가능합니다.

③ 실무 가이드

법인을 새로 설립할 필요 없이 주주총회를 열어 상호, 목적, 사업을 어업회사법인 설립 요건에 맞게 변경 결의하고, 어업인 출자비율 10% 이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관할 지자체의 농업법인 담당 부서는 명칭·목적 변경신고를 수리하고, 어업법인 담당 부서에서는 어업회사법인 설립신고를 수리하는 방식으로 행정 처리를 진행해야 합니다.

2. 변경신고 대상 및 판단 기준

[사례 1] 임원 중임(연임) 시 지자체 변경신고 및 확인증 발급 의무

① 쟁점 사례

유한회사나 주식회사 형태의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에서 기존 대표이사나 이사가 임기 만료 후 그대로 연임(중임)하기로 결의한 경우, 지자체에 변경신고를 하고 확인증을 발급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민원

② 관련 규정 및 원칙

지자체 변경신고 대상은 법령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될 때이며, 임원과 관련해서는 ‘임원의 성명’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농어업경영체법 제16조(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신고 등) ③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의 경우 특별자치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또는 해산하는 경우에도 같은 방법으로 변경신고 또는 해산신고를 하여야 한다.

동법 제19조(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 등) ⑤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또는 해산하는 경우에도 같은 방법으로 변경신고 또는 해산신고를 하여야 한다.

동법 시행령 제5조(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신고 등) ② 법 제16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명칭 2. 목적 3. 사업 4. 사무소의 소재지
5.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이하 “조합법인”이라 한다)을 대표할 조합원 및 임원(이사와 감사를 두는 조합법인만 해당한다)의 성명
6.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총출자액
7. 출자액의 납입방법·산정방법과 조합원 1명이 출자할 수 있는 출자액의 최고한도에 관한 사항
8. 해산 사유(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만 해당한다)

동법 시행령 제19조(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 등) ② 법 제19조제5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명칭 2. 목적 3. 사업 4. 사무소의 소재지 5. 임원의 성명
6. 출자 총좌수·총주식수, 납입한 총출자액
7. 출자액의 납입방법·산정방법과 사원·주주 1명이 출자할 수 있는 출자액의 최고한도에 관한 사항
8. 해산 사유(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만 해당한다)

③ 실무 가이드

임원의 성명 변경이란 신규 취임, 퇴임 등으로 실질적인 임원이 변경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대법원 상법등기선례(제202306-2호)에 따르면, 동일 임원이 자격을 유지하며 임기를 연장하는 ‘중임’은 성명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변경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등기소 중임 등기 신청 시에도 변경신고확인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법등기선례 제202306-2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임원의 중임등기신청 시 변경신고확인증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1.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임원의 성명이 변경된 경우 시장 등에게 변경신고해야 하고, 변경신고확인증을 발급받아 14일 이내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2. 여기서, 임원의 성명이 변경된 경우란 임원의 취임, 퇴임 등으로 임원이 변경된 경우(동일한 임원이 취임, 퇴임한 경우도 포함)를 의미하고, 임원의 중임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임원의 중임등기신청 시 변경신고 확인증을 첨부할 필요는 없다.

(2023.06.27. 사법등기심의관-3326 질의회답)

[사례 2] 출자자 간 단순 지분 양도양수 및 일반 정관 조항의 변경신고 의무

① 쟁점 사례

총 출자금이나 주주 변동 없이 기존 주주(조합원)들 사이에서 지분만 주고받은 경우, 또는 명칭·목적·주소 등 중요 사항 외의 일반 정관 조항을 변경할 때 변경신고 대상인지 여부

② 관련 규정 및 원칙

「농어업경영체법 시행령」에 규정된 중요 변경신고 대상은 명칭, 목적, 사업, 소재지, 임원의 성명, 출자 총좌수·총출자액, 납입방법 등에 한정됩니다.

동법 시행령 제5조(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신고 등) ② 법 제16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명칭 2. 목적 3. 사업 4. 사무소의 소재지
5.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이하 “조합법인”이라 한다)을 대표할 조합원 및 임원(이사와 감사를 두는 조합법인만 해당한다)의 성명
6.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총출자액
7. 출자액의 납입방법·산정방법과 조합원 1명이 출자할 수 있는 출자액의 최고한도에 관한 사항
8. 해산 사유(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만 해당한다)

동법 시행령 제19조(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 등) ② 법 제19조제5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명칭 2. 목적 3. 사업 4. 사무소의 소재지 5. 임원의 성명
6. 출자 총좌수·총주식수, 납입한 총출자액
7. 출자액의 납입방법·산정방법과 사원·주주 1명이 출자할 수 있는 출자액의 최고한도에 관한 사항
8. 해산 사유(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만 해당한다)

③ 실무 가이드

총출자금액의 변동 없이 출자자들 사이의 단순 출자좌 및 주식 양도만 이루어진 경우는 지자체 변경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법령에서 정한 중요 사항이 아닌 정관 변경사항은 변경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사례 3] 임원이 아닌 단순 주주(출자자) 사망 시 변경신고 의무

① 쟁점 사례

등기 이사가 업무집행권자가 아닌, 단순히 출자 지분만 보유하고 있던 농업인 주주가 사망하여 상속 등으로 지분이 변동될 경우 지자체에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지 여부

② 관련 규정 및 원칙

「농어업경영체법 시행령」에 규정된 중요 변경신고 대상은 명칭, 목적, 사업, 소재지, 임원의 성명, 출자 총좌수·총출자액, 납입방법 등에 한정됩니다.

동법 시행령 제5조(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신고 등) ② 법 제16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명칭 2. 목적 3. 사업 4. 사무소의 소재지
5.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이하 “조합법인”이라 한다)을 대표할 조합원 및 임원(이사와 감사를 두는 조합법인만 해당한다)의 성명
6.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총출자액
7. 출자액의 납입방법·산정방법과 조합원 1명이 출자할 수 있는 출자액의 최고한도에 관한 사항
8. 해산 사유(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만 해당한다)

동법 시행령 제19조(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 등) ② 법 제19조제5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명칭 2. 목적 3. 사업 4. 사무소의 소재지 5. 임원의 성명
6. 출자 총좌수·총주식수, 납입한 총출자액
7. 출자액의 납입방법·산정방법과 사원·주주 1명이 출자할 수 있는 출자액의 최고한도에 관한 사항
8. 해산 사유(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만 해당한다)

③ 실무 가이드

지자체 필수 변경신고 대상은 대표자나 이사 등 ‘임원’의 변동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임원이 아닌 일반 출자 주주가 사망하여 지분권자가 바뀌는 사항은 지자체 변경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단, 주주 사망으로 인해 총출자액이 변동되는 경우는 변경신고 대상입니다.

또한 주주 사망으로 비농업인 지분 한도가 90%를 초과하게 되거나 농업인 출자 요건 등에 미달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사례 4] 등기부상 주소와 실제 운영 주소의 불일치

① 쟁점 사례

같은 시·군(관내) 안에서 실제 법인의 영업장이나 사무소를 이전하였으나, 등기부 등본상의 본점 주소는 예전 주소로 방치해 둔 경우의 조치 방법

② 관련 규정 및 원칙

「농어업경영체법 시행령」에 규정된 중요 변경신고 대상은 명칭, 목적, 사업, 소재지, 임원의 성명, 출자 총좌수·총출자액, 납입방법 등에 한정됩니다.

동법 시행령 제5조(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신고 등) ② 법 제16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명칭 2. 목적 3. 사업 4. 사무소의 소재지
5.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이하 “조합법인”이라 한다)을 대표할 조합원 및 임원(이사와 감사를 두는 조합법인만 해당한다)의 성명
6.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총출자액
7. 출자액의 납입방법·산정방법과 조합원 1명이 출자할 수 있는 출자액의 최고한도에 관한 사항
8. 해산 사유(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만 해당한다)

동법 시행령 제19조(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 등) ② 법 제19조제5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명칭 2. 목적 3. 사업 4. 사무소의 소재지 5. 임원의 성명
6. 출자 총좌수·총주식수, 납입한 총출자액
7. 출자액의 납입방법·산정방법과 사원·주주 1명이 출자할 수 있는 출자액의 최고한도에 관한 사항
8. 해산 사유(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만 해당한다)

③ 실무 가이드

법인의 본점 주소지는 등기부에 정확히 기재되어야 할 필수 사항입니다. 따라서, 관할 지자체가 바뀌는 관외 이전뿐만 아니라 같은 지자체 내에서 주소가 바뀌는 관내 이전도 변경신고와 주소 변경등기를 적기에 이행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사업장 주소와 등기부상 주소가 일치하지 않는 것이 확인된다면, 지자체는 실제 주소에 맞게 변경신고 및 등기 절차를 마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사례 5] 조합원 가입 및 탈퇴에 따른 총출자액 변동 시 변경신고

① 쟁점 사례

영농조합법인에서 기존 조합원의 탈퇴 또는 신규 조합원의 가입이 발생하여 법인의 총출자액 및 출자 총좌수가 변동된 경우의 신고 의무

② 관련 규정 및 원칙

「농어업경영체법 시행령」에 규정된 중요 변경신고 대상은 명칭, 목적, 사업, 소재지, 임원의 성명, 출자 총좌수·총출자액, 납입방법 등에 한정됩니다.

동법 시행령 제5조(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신고 등) ② 법 제16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명칭 2. 목적 3. 사업 4. 사무소의 소재지
5.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이하 “조합법인”이라 한다)을 대표할 조합원 및 임원(이사와 감사를 두는 조합법인만 해당한다)의 성명
6.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총출자액
7. 출자액의 납입방법·산정방법과 조합원 1명이 출자할 수 있는 출자액의 최고한도에 관한 사항
8. 해산 사유(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만 해당한다)

동법 시행령 제19조(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 등) ② 법 제19조제5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명칭 2. 목적 3. 사업 4. 사무소의 소재지 5. 임원의 성명
6. 출자 총좌수·총주식수, 납입한 총출자액
7. 출자액의 납입방법·산정방법과 사원·주주 1명이 출자할 수 있는 출자액의 최고한도에 관한 사항
8. 해산 사유(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만 해당한다)

③ 실무 가이드

기존 조합원 간에 금액 변동 없이 지분만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변경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조합원의 탈퇴나 신규 가입 등으로 인해 법인 전체의 출자 총좌수와 총출자액에 변동이 생겼다면 반드시 지자체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법인은 지자체로부터 변경신고 확인증을 발급받은 후, 이를 첨부하여 관할 등기소에 변경등기를 신청함으로써 등기부상 자본금(출자금)을 최신화해야 합니다.

3. 변경신고 행정 절차 및 요건

[사례 1] 설립요건 미충족(농업인 부재 등) 법인의 타 변경신고 수리 여부

① 쟁점 사례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이 5인 미만이거나 농업회사법인의 농업인 출자지분이 10% 미만인 상태에서 주소지 이전 또는 사업 범위 변경 등의 신고가 접수된 경우, 이를 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아울러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사유로 비농업인 출자비율 90% 초과 상태에서 변경신고 수리를 요구할 수 있는지

② 관련 규정 및 원칙

농어업경영체법 시행령 제5조 및 제19조에 따라 조합법인 및 회사법인의 변경 절차나 정관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서를 반려할 수 있습니다.

농어업경영체법 시행령 제5조(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신고 등)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고서를 반려할 수 있다.

1. 조합법인의 설립·변경 또는 해산 절차가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2. 정관 또는 신고서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3. 제4항에 따른 보완 요구를 받고 정해진 기간에 신고서를 보완하지 않은 경우

동시행령 제19조(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 등)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고서를 반려할 수 있다.

1.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이하 “회사법인”이라 한다)의 설립·변경 또는 해산 절차가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2. 정관 또는 신고서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3. 제4항에 따른 보완 요구를 받고 정해진 기간에 신고서를 보완하지 않은 경우

③ 실무 가이드

조합원 5인 미만 또는 농업인 출자비율 10% 미만 등 설립 요건을 상실한 상태라면, 변경신고를 수리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해당 법인에게 10% 이상 출자 지분을 가질 수 있는 농업인 출자자나 신규 조합원을 먼저 모집·가입시켜 설립 요건을 충족하도록 지도한 후 반려해야 합니다.

법원이 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라도 출자비율 요건 등 법정 요건은 준수해야 하므로, 위반 시 동일하게 반려 대상이 됩니다.

[사례 2] 임원 전원 교체 시 신고 주체 및 회생절차 중 자체 임원 변경

① 쟁점 사례

임원(대표자 등) 전원이 교체될 때 변경신고 주체가 기존 임원인지 신규 임원인지에 대한 혼선, 그리고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법인이 자체적인 결정에 따라 임원 변경신고를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

② 관련 규정 및 원칙

「상법」상 법인의 이사 선임 결의와 피선임자의 취임 승낙이 있었다면, 별도의 등기를 마치기 전이라도 해당 이사는 법률상의 지위를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상업등기선례 제201907-1호)

다만,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 인가를 받은 법인의 경우에는 임원 변경 절차가 일반적인 경우와 다릅니다. 이 경우 임원 변경은 법원의 결정에 따른 촉탁 등기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므로, 해당 법인이 자체적으로 변경 절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 상업등기선례 제201907-1호 >

“법인에서 대표자의 지위를 취득하는 시기”

1. 법인과 그 기관인 이사와의 관계는 위임자와 수임자의 법률관계와 같은 것으로서 위임과 유사한 계약에 해당한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다37206 판결 참고). 따라서 법인의 사원총회 등의 이사선임행위는 위임과 유사한 계약의 청약이며 선임된 이사의 승낙은 청약에 대한 승낙에 해당하므로 선임결의뿐만이 아니라 선임된 이사가 취임승낙을 하여야 이사의 지위를 취득하고, 이는 대표권 있는 이사 등의 경우에도 선임기관이 사원총회 등이라면 동일하다.
2. 또한, 사원총회 등의 선임결의와 피선임자의 승낙만 있으면 피선임자는 법인의 대표권 있는 자와의 별도의 임용계약을 체결하였는지와 관계없이 법인의 이사 등의 지위를 취득한다(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6다 251215 전원합의체 판결, 상업등기선례 제201708-1호 참고).
3. 한편 법인의 임원변경등기는 설립등기와 달리 대항요건에 불과하기 때문에(상법 제37조, 민법 제54조) 변경등기 전이라도 선임결의와 피선임자의 승낙이 있다면 대표권 있는 이사 등의 지위를 취득한다. (2019. 7. 16. 사법등기심의관 - 2568 질의회답)

③ 실무 가이드

총회 결의와 취임 승낙을 통해 임원 전원이 교체되었다면, 등기 전이라도 대표권을 가진 이사로서의 지위를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지자체 변경신고는 새롭게 선임된 신입 대표자가 신청 주체가 되어 진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회생계획 인가를 받은 법인은 일반적인 임원 변경 절차를 따를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이사는 회생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선임된 후 법원의 촉탁에 의해 등기되며, 감사 또한 법원의 허가를 얻어 선임된 후 법원 촉탁으로 등기됩니다. 따라서 법원의 등기 촉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법인이 임의로 임원 변경신고를 제출한다면, 이는 변경 절차가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 해당되어 절차 위반으로 반려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제1부
농업법인이란 무엇인가제2부
농업법인의 업무인내제3부
농업법인의 사업범위 호별 예시제4부
농업법인의 분야별 민원 사례제5부
중대재해처벌법 바로 알기별첨
기타 주요 정보

[사례 3] 이사회 미구성(이사 2인 이하) 법인의 관외 본점 이전 절차

① 쟁점 사례

사내이사가 2인 이하로 이사회를 구성할 수 없는 농업회사법인이 타 지자체(관외)로 본점을 이전하고자 할 때, 이사회 의사록을 대신하여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② 관련 규정 및 원칙

상법 제383조에 따라 자본금 10억 미만인 회사가 이사를 2인 이하로 두는 경우 이사회를 구성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사회의 권한은 '각 이사(대표이사)' 또는 '주주총회'가 행사합니다.

본점 소재지는 정관 기재 사항이므로, 관외(타 시·군)로 이전하는 경우 정관의 소재지 규정을 수정하기 위한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상법 제383조(원수, 임기) ① 이사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다.
②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실무 가이드

관내 이전은 정관을 변경할 필요가 없으므로 이사회에서 본점 이전을 결정하면 됩니다. 이사가 3명 미만으로 구성되지 않는 경우, 대표이사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 결정서는 이사회 의사록과 달리 공증의무가 없기 때문에 비교적 쉽게 등기가 가능합니다.

관외 이전인 경우 먼저 본점 소재지에 관한 정관 내용을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해 변경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정관 변경 후 대표이사가 단독으로 본점 이전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례 4] 지자체 변경신고 처리 기한과 법원 등기 기한의 기산점 충돌

① 쟁점 사례

법원 변경등기는 ‘14일 이내’에 해야 하는데, 지자체의 변경신고 수리 및 확인증 발급 업무 처리 기간이 ‘20일 이내’라 자칫 등기 기한을 넘겨 과태료를 물 수 있다는 민원

② 관련 규정 및 원칙

농어업경영체상 지자체장은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통지해야 하며, 농업법인은 ‘신고확인증의 발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등기소에 변경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농어업경영체법 제16조(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신고 등)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설립신고, 변경신고 또는 해산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설립신고수리, 변경신고수리 또는 해산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동법 제16조의3(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등기 등) ①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은 법인으로 하며,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확인증의 발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동법 제19조(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 등) ⑥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항에 따른 설립신고, 변경신고 또는 해산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설립신고수리, 변경신고수리, 해산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동법 제19조의3(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등기 등) ①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은 법인으로 하며,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확인증의 발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실무 가이드

변경등기 신청 기한인 14일의 기산점은 지자체에 서류를 ‘접수한 날’이 아닙니다.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지자체의 심사를 거쳐 ‘신고확인증을 실제로 발급받은 날’이 기산점이 됩니다. 따라서 확인증 발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등기를 신청한다면 등기 지기(기한 초과)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 해산 및 폐업

[사례 1] 장기 미운영(사업자 미등록) 법인의 폐업 인정 여부 및 정비

① 쟁점 사례

법인 등기는 살아있으나 처음부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운영 실적이 없는 법인의 대표가 “사실상 폐업 상태”라고 주장하는 경우의 행정 처리 방법

② 관련 규정 및 원칙

농업법인의 폐업 여부는 국세청 발급 ‘폐업사실증명원’으로 객관적 확인이 필요하며, 상법 제17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 후 1년 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는 해산명령 청구 사유에 해당합니다.

- 농어업경영체법 제20조의3(해산명령)** ①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의 해산명령에 관하여는 「상법」 제176조에 따른 회사의 해산명령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회사”는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으로 본다.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에 대하여 법원에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
1. 조합원이 5명 미만인 후 1년 이내에 5명 이상이 되지 아니한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
 2. 총 출자액 중 비농업인 또는 비어업인이 보유한 출자지분이 제19조제2항 또는 제4항에서 정한 출자한도를 초과한 후 1년 이상 경과한 농업회사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
 3.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사업범위에서 벗어난 사업을 하는 농업법인
 4. 제19조의4제2항에 따른 사업범위에서 벗어난 사업을 하는 어업법인
 5.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상법」 제17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
 6. 제20조의2제8항에 따른 시장·군수·구청장의 시정명령에 3회 이상 불응한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
- 상법 제176조(회사의 해산명령)** ①법원은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이나 감사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회사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1. 회사의 설립목적이 불법한 것인 때
 2. 회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설립후 1년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영업을 휴지하는 때
 3. 이사 또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여 회사의 존속을 허용할 수 없는 행위를 한 때

③ 실무 가이드

농업법인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이 필수이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금융기관의 법인계좌 개설이 불가하므로 법인 설립 후 사업을 영위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자체는 정당한 사유(자금 부족 소명 등)가 있는지 조사 후 법원에 해산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식회사 형태의 농업회사법인은 마지막 등기 후 5년이 경과하면 법원이 일괄 정비하는 ‘해산간주제도’가 있으므로,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해 이를 활용하도록 지도할 수 있습니다.

※ 참고 : 2027년 1월 24일부터는 시행되는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장기 미운영 영농조합법인에 대해서도 휴면 법인 해산간주 규정이 도입 및 시행됩니다.

농어업경영체법 제18조의3(휴면 조합법인의 해산) ① 법원행정처장은 마지막 등기 후 5년이 경과한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을 대상으로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아직 영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의 신고를 할 것을 관보로써 공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의 내용·방법 등은 「상법」 제520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한 날에 이미 마지막 등기 후 5년이 경과되고, 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은 그 신고기간이 만료된 때에 해산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신고기간 내에 등기를 한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공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해당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에 대하여 그 공고가 있었다는 뜻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본문에 따라 해산한 것으로 본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은 그 후 3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총회 결의에 의하여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을 계속할 수 있다.

1. 조합원이 출자좌수에 관계없이 1인당 1개의 의결권을 가지는 경우: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수로써 하는 결의
2. 조합원이 출자좌수에 비례하여 의결권을 가지는 경우: 출석한 조합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출자 총좌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는 결의

⑤ 제2항 본문에 따라 해산한 것으로 본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이 제4항에 따라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을 계속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산한 것으로 본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본다.

⑥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의 해산등기와 청산종결등기에 관하여는 「상업등기법」 제7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상법」 제520조의2제1항”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제2항”으로, “「상법」 제520조의2제4항”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제5항”으로 본다.

[사례 2] 요건 미달 법인의 조직변경 목적 자진 해산신고 수리 여부

① 쟁점 사례

농업인 조합원 수가 5인 미만으로 설립 요건을 유지하지 못한 영농조합법인이 농업회사법인으로 조직을 변경하고자 지자체에 해산신고를 접수한 경우 이를 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② 관련 규정 및 원칙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 5인 미만이 된 후 1년 이내에 충원하지 않으면 법적 해산 사유에 해당하며, 지자체의 해산명령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직변경은 법인격의 동일성을 유지한 채 형태만 바꾸는 절차입니다.

③ 실무 가이드

영농조합법인이 탈퇴, 사망, 농업인 자격상실 등으로 조합원이 5인 미만이 된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신규 조합원을 충원하여 5인 이상 조합원을 갖추어야 합니다. 조합원이 5인 미만이 된 후 1년이 경과한 경우 관할 지자체의 해산명령 청구 대상이 됩니다.

만일 조합원 요건을 갖추지 못한 영농조합법인이 농업회사법인으로 조직변경을 위해 해산신고 신청을 한 경우, 관할 지자체는 해당 영농조합법인에 대해 실태조사, 의견청취 등을 통해 조합원 충원이 어려운 사유, 사업을 계속할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산신고 수리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영농조합법인이 사업범위 위반 등에 따른 행정적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인지를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조직변경이란 영농조합법인이 법인격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농업회사법인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사업범위 위반에 대한 해산명령청구를 동일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례 3] 일부 조합원(또는 대주주)의 일방적 해산 요구 시 대처

① 쟁점 사례

조합원 간의 심각한 갈등이나 매년 적자 발생을 이유로 일부 탈퇴 조합원이나 70% 지분을 가진 대주주가 법인 해산을 강력히 요구하는 경우의 처리 절차

② 관련 규정 및 원칙

법인 해산을 위해서는 정관에 규정된 사유가 발생하거나, 영농조합법인은 총회 결의,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은 주주총회 특별결의(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2/3 이상, 발행 주주총수의 1/3 이상 찬성)가 필수적입니다.

농어업경영체법 시행령 제13조(조합법인의 해산) 조합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산한다.

1. 총회에서 의결한 경우
2. 조합법인이 합병된 경우
3. 조합법인이 파산한 경우
4. 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상법」 제176조에 따른 법원의 해산명령을 받은 경우
5. 조합원이 5명 미만이 된 후 1년 이내에 5명 이상이 되지 아니한 경우(협동양식업면허를 취득한 영어조합법인은 제외한다)
6. 그 밖에 정관에서 정한 해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상법 제434조(정관변경의 특별결의) 제433조제1항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동법 제518조(해산의 결의) 해산의 결의는 제434조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③ 실무 가이드

ㄱ) 영농조합법인

일부가 해산을 요구한다고 자동 해산되지 않습니다. 총회 부결 시, 해산을 원하는 탈퇴 조합원에게 출자 지분만 환급해주고 남은 조합원들이 계속 운영할 수 있습니다.

ㄴ) 농업회사법인

70%의 지분을 가진 대주주라면 스스로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여 요건(2/3 찬성)을 갖춰 해산을 적법하게 결의할 수 있으며, 이후 청산 절차를 통해 투자금을 회수(잔여 재산 배분)할 수 있습니다.

[사례 4] 법인인감 등 분실에 따른 해산·청산 절차 진행 방법

① 쟁점 사례

법인 해산 절차를 밟고자 하나, 법인 인감도장을 분실하거나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한 보안카드(또는 비밀번호)를 분실하여 서류 준비가 불가능한 경우의 조치 방법에 대한 질의

② 관련 규정 및 원칙

지자체 해산 신고 및 관할 등기소의 해산 등기 신청 시에는 서류의 진위 확인을 위해 반드시 법인 인감증명서 첨부과 인감 날인이 필요합니다.

③ 실무 가이드

인감도장 등을 분실하여 해산 신고 및 등기를 진행할 수 없다면, 새로운 법인 인감도장을 제작하여 관할 등기소에 인감·개인(변경) 신고를 한 뒤 신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해산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농업법인 운영관련

1. 출자

[사례 1] 조합원 가입 시 출자 의무 및 현물출자 평가 방법

① 쟁점 사례

영농조합법인 가입 시 반드시 출자를 해야 하는지 여부와 부동산 등 현물로 출자할 때 가액 평가는 누가 어떻게 정하는지에 대한 질의

② 관련 규정 및 원칙

영농조합법인에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으로 가입하려면 출자를 해야 합니다.

농어업경영체법 제17조(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 등) ① 영농조합법인은 농업인과 농업생산자단체 중 정관으로 정하는 자를 조합원으로 한다.
 ② 농업인이 아닌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농조합법인에 출자하고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총회에서 의결권은 행사하지 못한다.
 ③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 및 준조합원의 책임은 납입한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③ 실무 가이드

주식회사형 농업회사법인은 현물출자 시 법원 인가 등 엄격한 절차가 필수이나, 영농조합법인은 총회 결의로 출자 가액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무상 출자 가액은 원칙적으로 '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합의된 가액이 시가와 현격히 차이 날 경우,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부인 등 조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26년부터 농지 등의 현물출자 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므로, 추후 법인의 세무 리스크 방지를 위해 감정평가법인의 객관적인 감정을 거쳐 가액을 산정할 것을 권장합니다.

[사례 2] 출자금(자본금) 명부와 실제 법인 통장 잔고의 불일치

① 쟁점 사례

조합원 명부 및 법인등기부등본상 명시된 총 출자금액이 실제 법인의 예금 통장 잔액과 반드시 일치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② 관련 규정 및 원칙

출자 총좌수와 총출자액 등은 정관, 조합원 명부, 법인등기부등본에 확정 기재되는 고정된 자본금 성격을 가집니다.

③ 실무 가이드

조합원의 신규 가입이나 탈퇴가 발생하여 출자금 규모가 변동될 경우에는 변동된 사항을 반영하여 법인등기부등본상 자본금(총출자액)을 수정하는 변경 등기 및 신고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법인이 설립된 이후 실질적인 영업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는 각종 수입과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므로, 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 총액'과 현재의 '법인 계좌 잔액'이 일치하지 않는 것은 회계상 지극히 정상적인 결과입니다.

[사례 3] 최소 자본금(출자금) 제한 및 무상증자의 출자금 인정 여부

① 쟁점 사례

농업법인 설립 시 갖추어야 할 자본금 하한선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법인의 이익잉여금을 자본금으로 돌리는 무상증자를 단행했을 때 이를 정부 지원 요건상 ‘출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② 관련 규정 및 원칙

법인 설립 자체에는 법령상 별도의 최소 자본금 제한 규정이 없으나, 정부 보조금이나 농림사업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총출자금이 5천만 원 이상 등 개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③ 실무 가이드

소액(예: 500만 원)을 출자액으로 하더라도 농업법인을 적법하게 설립할 수는 있으나, 자본금이 적을 경우 대외 신용도 저하 및 정부 지원 사업 배제 등의 실질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조사업 등 지원 요건 충족을 위해 무상증자를 통해 이익잉여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한 경우, 이는 주주가 자본으로 납입한 성격으로 인정되므로 출자금으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제1부
농업법인이란 무엇인가제2부
농업법인의 업무인내제3부
농업법인의 사업범위 호별 예시제4부
농업법인의 분야별 민원 사례제5부
중대제해처벌법 바로 알기별첨
기타 주요 정보

[사례 4] 농업인 출자자의 자격 상실에 따른 비농업인 지분 한도 초과

① 쟁점 사례

농업인 주주(지분 10% 보유)가 농지 처분 등으로 농업인 자격을 상실하여 비농업인으로 전환됨에 따라, 법인의 비농업인 출자 지분이 법정 한도인 90%를 초과하게 된 경우의 대응 방법에 대한 질의

② 관련 규정 및 원칙

농업회사법인의 비농업인의 출자 지분은 9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만약 비농업인 지분 한도 초과 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될 경우, 관할 지자체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법원에 해당법인의 해산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실무 가이드

농업인 주주가 비농업인이 전환되었다고 해서 해당 법인이 즉시 일반법인으로 자동 간주되거나 강제 해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초과 기간이 1년 미만일 때 관할 지자체는 해당 법인이 법정 요건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1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지자체는 실태조사 및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 해산명령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사례 5] 유상증자 결의 후 변경등기 누락에 따른 외부 법적 효력

① 쟁점 사례

영농조합법인이 총회 결의를 통해 유상증자를 실시하고 출자금 납입받았으나, 지자체 변경신고 및 관할 등기소의 변경등기를 누락한 경우 해당 증자의 법적 효력을 대외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② 관련 규정 및 원칙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총출자액은 변경신고 등의 대상에 해당하므로, 관할 지자체에 변경신고를 하고, 신고확인증 발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변경등기를 완료해야 합니다.

농어업경영체법 제16조의3(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등기 등) ②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은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의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거나 해산한 경우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확인증의 발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변경등기 또는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동법 시행령 제5조(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신고 등) ② 법 제16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명칭 2. 목적 3. 사업 4. 사무소의 소재지
5.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이하 “조합법인”이라 한다)을 대표할 조합원 및 임원(이사와 감사를 두는 조합법인만 해당한다)의 성명
6.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총출자액
7. 출자액의 납입방법·산정방법과 조합원 1명이 출자할 수 있는 출자액의 최고한도에 관한 사항
8. 해산 사유(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만 해당한다)

③ 실무 가이드

법인 내부적으로 적법한 총회 결의와 출자금 납입이 완료되었다면 법인과 출자자 사이의 권리 관계는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 등기사항인 ‘출자액’을 등기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변동 사실을 제3자에게 주장(대항)하기 어렵습니다.

변경등기가 누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자본금을 신뢰한 제3자와의 관계에서 증자 사실을 입증하는 데 법적 한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양도양수

[사례 1] 농업회사법인 포괄 양도양수(인수) 시 필수 확인 요건

① 쟁점 사례

제3자가 기존에 설립되어 운영 중인 주식회사 형태의 농업회사법인을 양도양수(인수)하여 운영하고자 할 때, 사전에 점검해야 할 법적 제한 요건에 대한 질의

② 관련 규정 및 원칙

농업회사법인은 비농업인 출자 한도, 농지 소유 임원 요건, 국고보조금 사후관리 규정 등 법적 제약이 따르므로 인수 시 이를 승계 및 충족해야 합니다.

③ 실무 가이드

농업회사법인 양도양수 시 다음 세 가지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ㄱ) 출자비율 준수

양수 이후에도 농업인(또는 생산자단체)의 출자비율이 총출자액의 10% 이상 유지되는지(비농업인 90% 이하) 확인해야 합니다.

ㄴ) 농지 소유 요건 준수

법인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할 예정이라면, 양수 후 새롭게 구성된 업무집행권자(등기이사)의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ㄷ) 보조금 사후관리

법인이 국고보조금 시설을 보유하고 있다면, 양도양수로 인해 대주주가 변경되는 것이 국고보조금 회수 조치 대상에 해당하는지 해당 보조사업 담당 부서에 사전에 문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문의 예시 : 양도양수로 인해 대부분의 주주가 변경되는 경우 국고보조금 회수조치 대상이 되는지?

[사례 2] 비농업인 지분 한도 초과를 유발하는 지분 양도 및 상속

① 쟁점 사례

기존 주주(사원)가 지분을 양도하거나 상속받을 때, 그 결과로 비농업인의 지분이 법적 한도(90%)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의 효력 및 처리 방법에 대한 질의

② 관련 규정 및 원칙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비농업인의 출자한도는 농어업경영체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비농업인의 출자한도를 초과한 후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관할 지자체는 법원에 해산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농어업경영체법 제19조(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 등) ②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자는 농업인과 농업생산자단체로 하되, 농업인이나 농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의 범위에서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동법 제20조의3(해산명령) ①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의 해산명령에 관하여는 「상법」 제176조에 따른 회사의 해산명령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회사”는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으로 본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에 대하여 법원에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

1. 조합원이 5명 미만이 된 후 1년 이내에 5명 이상이 되지 아니한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
2. 총 출자액 중 비농업인 또는 비어업인이 보유한 출자지분이 제19조제2항 또는 제4항에서 정한 출자한도를 초과한 후 1년 이상 경과한 농업회사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

③ 실무 가이드

비농업인의 출자 한도 초과는 농업법인의 해산명령 청구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법령상 위반 상태를 1년 이상 지속하면 행정 조치가 취해지므로, 그 이전에 지체 없이 다른 농업인에게 재양도하거나 증자를 통해 법적 출자 요건을 복구해야 합니다.

[사례 3] 지분 양수(추가 인수)를 통한 과점주주 성립과 취득세 부과

① 쟁점 사례

영농조합법인의 지분 40%를 보유하던 조합원이 다른 조합원의 지분 20%를 추가로 양수(인수)하여 총 60%를 보유한 과점주주가 된 경우의 세금 문제에 대한 질의

② 관련 규정 및 원칙

지방세법에 따라 법인의 지분을 취득하여 ‘과점주주(지분 50% 초과)’가 되었을 때는 해당 법인이 보유한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설립 시 취득은 제외되나, 설립 이후 지분 양수로 최초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해당 지분 전체가 과세 대상이 됩니다.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6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등을 포함한다)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를 준용한다.

③ 실무 가이드

지분 양수를 통해 최초로 과점주주(60%)가 된 경우, 법인 자산에 대한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세금은 과점주주가 된 시점의 법인 자산 중 취득세 과세대상(토지, 건물 등)의 장부가액에 전체 지분율(60%)을 곱하여 산출하며, 이때 세율은 2%가 적용됩니다.

과점주주는 성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지자체에 자진 신고·납부해야 하므로 양수 전 세금 부담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사례 4] 출자지분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

① 쟁점 사례

영농조합법인 등에 출자한 지분(예: 20%)을 총회의 승인을 받아 새로운 농업인 등 제3자에게 유상으로 양도하여 차익이 발생한 경우

② 관련 규정 및 원칙

비상장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비상장주식은 상장주식과 달리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신고·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중소기업 소액주주의 장외거래 면제 등 예외 조항이 있으나, 농업법인에서는 드뭅니다.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나.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식등. 다만,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비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행하는 같은 법 제28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장외매매거래에 의하여 양도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장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주식등은 제외한다.

③ 실무 가이드

농업법인 지분 양도는 비상장주식 거래에 해당하며, 지분율이나 시가총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세법상 대주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세액은 양도차익에서 기본공제(연 250만 원)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특히 대주주에 해당할 경우, 일반 주주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되거나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분을 양도하기 전, 본인의 대주주 해당 여부와 그에 따른 예상 세액을 세무 전문가를 통해 미리 확인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3. 인사/노무

[사례 1] 농업 분야의 근로시간·휴일 적용 예외 및 가산수당 지급

① 쟁점 사례

농업법인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 주 40시간 초과 근무나 휴일 근무를 지시할 때, 일반 기업처럼 연장·휴일근로 가산수당(1.5배 등)을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② 관련 규정 및 원칙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라 주된 사업이 '농림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소속 근로자에게는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 의무는 제외되나, 야간근로(22:00~06:00)에 대한 가산수당은 면제대상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토지의 경작·개간, 식물의 식재(植栽)·재배·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취·포획·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③ 실무 가이드

토지 경작, 식물 재배, 가축 사육 등 농림업 생산 현장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법적으로 연장 및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 경우 연장·휴일 근로에 대해서는 실제 일한 시간만큼의 기본 시급(1.0배)만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위의 예외 규정에도 불구하고, 야간근로(22:00~06:00) 가산수당(50%)은 업종에 관계 없이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시간의 양이 아닌 근로자의 신체적 건강 보호를 위한 강행 규정이기 때문입니다.

농업법인 소속이라 하더라도 생산 현장이 아닌 사무직, 판매직, 유통가공업에만 전적으로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일반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일반 기업과 동일하게 연장·휴일·야간근로 가산수당을 모두 지급해야 함에 유의해야 합니다. 법적 지급 의무가 없는 현장 근로자라 하더라도, 노사 간 합의를 통해 근로계약서에 '가산수당을 지급하기로 명시'했다면 계약상의 의무가 우선합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 시 수당 지급 여부와 산정 방식을 명확히 기재하여 분쟁을 예방해야 합니다.

제1부
농업법인이란 무엇인가제2부
농업법인의 업무인내제3부
농업법의 사업범위 호별 예시제4부
농업법인 분야별 민원 사례제5부
중대재해처벌법 바로 알기별첨
기타 주요 정보

[사례 2] 단순노무 종사자(수습)의 최저임금 감액 불가

① 쟁점 사례

농업법인이 현장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면서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3개월의 수습 기간을 설정한 경우, 해당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10%를 감액(90%만 지급)하여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② 관련 규정 및 원칙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습 3개월 이내에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할 수 있으나, ‘단순노무업무’ 직종 종사자에게는 감액이 전면 금지됩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③ 실무 가이드

수확, 파종, 제초 등 농업 현장의 단순 종사원은 고용노동부 고시(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단순노무직종 근로자 지정 고시, 2018-23호)에 따른 ‘단순노무 종사자’에 해당하므로 최저임금 감액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농업 현장 단순노무 종사자는 수습 기간이나 근로계약 기간(1년 이상 여부)과 관계없이 반드시 당해연도 법정 최저임금의 100% 이상을 전액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6조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단순노무가 아닌 농업기계 운전원이나 사무직, 전문 연구직 등의 경우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수습 3개월간 10% 감액 적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용 시 근로계약서상 ‘직무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례 3] 근로자의 4대 보험 가입 거부 시 사업주 의무

① 쟁점 사례

농업회사법인에 입사한 직원이 가족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거나 보험료 납부가 부담된다는 이유로 4대 보험 가입을 거부(가입 제외 요청)할 경우 처리 방법

② 관련 규정 및 원칙

4대 보험 가입은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법적 강제 규정입니다.

농업법인은 근로자 1인 이상 고용 시 원칙적으로 당연 가입 대상이 되며, 이는 노사 간의 합의나 근로자의 거부 의사보다 법적 의무가 우선합니다.

③ 실무 가이드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4대 보험 가입을 누락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큼니다. 가입 대상임에도 누락된 사실이 적발되면 미납된 보험료는 물론 가산금 및 연체료까지 소급하여 법인이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개인적 사정과 무관하게 관계 법령에 따른 가입 신고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장기적인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바람직합니다.

[사례 4] 직업소개소를 통한 단기 인력 고용 및 불법체류자 임금

① 쟁점 사례

농번기에 직업소개소를 통해 다수의 인력을 공급받을 때 임금 지급 방식과 채용된 외국인의 체류 자격에 문제가 있을 경우 임금 지급 의무에 대한 질의

② 관련 규정 및 원칙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전액 지급해야 하며(직접지급 원칙), 불법체류자라 하더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 채권은 보호받은 판례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누12067 판결 요지

취업 자격이 없는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도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여 산재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판시한 중요 판례입니다. 불법 체류라 하더라도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면 보호 대상입니다

③ 실무 가이드

ㄱ) 직업소개소 고용

직업소개소 소장에게 근로자들의 인건비를 일괄 입금하고 소개소가 근로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방식은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차후 근로자가 “돈을 못 받았다”고 주장할 경우, 사업주가 임금 지급의 책무를 이중으로 질 위험이 있으므로, 소개 수수료는 별도로 정산하되, 인건비는 가급적 근로자 본인의 계좌로 직접 송금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ㄴ) 불법체류자 고용 시 처벌 및 임금 지급

불법체류자를 고용할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엄격한 벌칙이나 외국인 근로자 배정 제한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근로가 이루어졌다면 신분과 관계없이

임금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를 이유로 임금을 미지급하거나 임의로 삭감할 경우 임금체불로 인한 별도의 사법 처리 대상이 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ㄷ) 채용 전 신분 확인 절차

외국인 채용 시에는 반드시 외국인등록증 원본을 대조하여 농업 분야 취업 가능 코드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하이코리아(Hi-Korea) 홈페이지 등을 통해 등록증의 유효 여부를 실시간으로 검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제1부
농업법인이란 무엇인가제2부
농업법인의 업무인내제3부
농업법인의 사업범위 호별 예시제4부
농업법인의 분기별 만원 사례제5부
중대재해처벌법 바로 알기별첨
기타 주요 정보

[사례 5] 서면 해고 통지 의무 및 구두(문자) 해고의 효력

① 쟁점 사례

근로자에게 구두나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으로 당일 해고를 통보할 경우의 법적 문제 및 해고 절차에 대한 질의

② 관련 규정 및 원칙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③ 실무 가이드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농업법인의 경우, 사업주가 구두,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의 수단으로 해고를 통보하면 내용의 정당성과 무관하게 절차상 하자로 간주하여 '부당해고'로 판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해고 시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해야 하며, 즉시 해고하거나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단,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 예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나 서면 통지 의무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30일 전 해고 예고 의무는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갑작스러운 해고 시 수당 발생 여부를 사전에 면밀히 검토할 것을 권장합니다.

4. 법무

[사례 1] 다수 조합원 법인의 '대의원제'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

① 쟁점 사례

조합원이 300명이 넘는 영농조합법인이 총회 운영의 어려움으로 인해, 정부의 '표준정관례'와 달리 대의원제를 도입하여 정관을 개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

② 관련 규정 및 원칙

영농조합법인은 「농어업경영체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민법」상 조합 규정을 준용하며, 회의 운영 등 내부 규범은 조합원의 합의(정관)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③ 실무 가이드

정부의 '표준정관례'는 참고용 가이드라인이므로, 법인은 이를 기본으로 하되 각 법인의 규모나 특성에 맞춰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내부 규정을 자율적으로 보완하거나 수정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제1부
농업법인이란 무엇인가제2부
농업법인의 업무인내제3부
농업법인의 사업범위 호별 예시제4부
농업법인의 분야별 민원 사례제5부
중대제해처벌법 바로 알기별첨
기타 주요 정보

[사례 2] 준조합원 사망 시 상속인의 지분 환급 청구 대처

① 쟁점 사례

영농조합법인의 준조합원이 사망하여 상속인들이 지분 환급을 요구하는 경우의 법인 대처 방안에 대한 질의

② 관련 규정 및 원칙

준조합원 상속인의 지분 승계 여부 및 지분 환급의 방법·절차·시기는 정관 규정을 최우선으로 적용합니다.

〈농업법인 정관례(농림축산식품부고지 제2019-25호)〉

영농조합법인 정관례 제23조(지분의 상속) ①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분환급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한 상속인이 즉시 조합원에 가입을 신청하고 조합법인이 이를 승인한 경우에는 상속인은 사망한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의 지분을 승계한다.

제26조(탈퇴시의 지분환급) ①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이 탈퇴하는 경우에는 그 조합원의 지분을 현금 또는 현물로 환급한다. 단, 농지의 경우 농지법상 이를 취득가능한 자에게만 환급할 수 있다.

⑤ 지분의 환급은 당해 회계연도 말에 한다.

③ 실무 가이드

일반적인 표준정관례는 상속인의 지분 승계를 인정하고 있으며, 지분 환급은 당해 연도 결산 후에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현물 출자분에 대해서도 금전으로 환산하여 환급할 수 있는 규정을 두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법인은 정관 등에 명시된 절차와 시기에 맞춰 합법적으로 지분을 환급하면 됩니다.

[사례 3] 농업회사법인 일반 채무에 대한 임원(이사)의 연대 책임

① 쟁점 사례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이 부채를 갚지 못하는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대표이사나 등기이사 개인이 이를 변제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

② 관련 규정 및 원칙

주식회사는 구성원과 독립된 법인격을 가진 주체입니다. 「상법」상 주주와 임원은 본인이 인수한 주식의 금액 또는 부여된 직무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며, 회사의 일반적인 채무에 대해 개인 자격으로 당연히 연대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③ 실무 가이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는 이사 개인과 구별되는 독립된 법인격을 가지므로, 법인의 경영이나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일반 채무는 원칙적으로 법인 자체의 자산으로 해결해야 하며 이사나 대표이사 개인이 이를 변제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직무를 소홀히 하여 회사나 제3자에게 실질적인 손해를 입힌 경우 「상법」 제399조 및 제401조에 의거하여 예외적으로 개인적인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 법인의 대출이나 거래 계약 시 이사가 개인 자격으로 연대보증을 섰다면, 이는 별도의 계약상 책임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경영 위기 시 법인격의 분리만을 근거로 책임을 회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법 제399조(회사에 대한 책임) ①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전항의 행위가 이사회 결의에 의한 것인 때에는 그 결의에 찬성한 이사회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③ 전항의 결의에 참가한 이사로서 이익을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자는 그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한다.

동법 제401조(제3자에 대한 책임) ①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그 이사는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제399조제2항, 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사례 4] 자본잠식(부채 초과) 상태 영농조합법인 조합원의 지분 정산

① 쟁점 사례

재무 상태가 악화되어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영농조합법인에서 조합원이 탈퇴하며 본인의 출자금 전액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 대한 질의

② 관련 규정 및 원칙

조합원의 지분 정산은 '당초 납입한 출자금' 기준이 아니라 '탈퇴 당시 조합의 실질적인 재산 상태'를 평가하여 계산합니다.

민법 제711조(손익분배의 비율) ① 당사자가 손익분배의 비율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이를 정한다.

② 이익 또는 손실에 대하여 분배의 비율을 정한 때에는 그 비율은 이익과 손실에 공통된 것으로 추정한다.

영농조합법인 정관례 제22조(지분의 계산) 본 조합법인의 재산에 대한 조합원과 준조합원의 지분은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계산한다.

1. 납입출자금에 대하여는 납입한 출자액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이를 계산한다. 다만, 그 재산이 납입출자액의 총액보다 감소되었을 경우에는 각 조합원과 준조합원의 출자액에 따라 감액하여 계산한다.

③ 실무 가이드

조합원의 지분은 법인의 순자산 내에서 본인의 지분율만큼 인정되므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상태라면 정산할 지분 가액이 없어 출자금 환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법인 대표자는 환급 불가를 통보하고 정산 결과를 근거로 반환 청구를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사례 5] 영농조합법인의 지배인(상업사용인) 선임 및 등기 가능 여부

① 쟁점 사례

영농조합법인이 지점장 등 포괄적 대리권을 가진 ‘지배인’을 선임하여 관할 등기소에 지배인 선임 등기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② 관련 규정 및 원칙

지배인 제도는 「상법」상 회사에 적용되는 규정이며, 영농조합법인은 「민법」상 조합 규정을 준용하며, 원칙적으로 조합원 중 선임된 대표자가 업무를 집행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③ 실무 가이드

상법상 회사인 농업회사법인과 달리, 영농조합법인은 민법상 조합의 성격을 지니므로 조합원 중 선임된 업무집행자(대표조합원)가 운영을 주도하는 구조입니다. 현행 민법 및 관련 법령에는 지배인 선임에 관한 명시적 근거가 부재하므로, 영농조합법인이 지배인 선임 등기를 통해 포괄적 대리권을 공시하는 것은 현행 제도상 제한될 소지가 큼니다.

제1부
농업법인이란 무엇인가제2부
농업법인의 업무인내제3부
농업법인의 사업범위 호별 예시제4부
농업법인의 분야별 민원 사례제5부
중대재해처벌법 바로 알기별첨
기타 주요 정보

5. 기타 사항

[사례 1] 개인사업(용자/국고보조 등)의 1인 법인 위탁 경영 및 분리

① 쟁점 사례

개인이 정부 지원(용자 등)을 받아 조성한 사업장을 본인이 100% 출자하여 설립한 1인 농업회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② 관련 규정 및 원칙

농업법인은 출자자인 주주(대표 개인)와 별도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 엄연히 독립적인 법인격입니다. 따라서 개인과 법인은 법률상 엄연히 타인으로 간주됩니다.

③ 실무 가이드

정부의 자금 지원은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자의 '직접 경영'을 전제로 하므로, 이를 별도 법인격인 농업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행위는 사업 지침상 관리 요건에 위배될 소지가 큽니다.

보조금 지원 조건 위반으로 회수 조치 등 행정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 운영 주체는 관련 서류(사업계획서, 운영계획서 등)를 근거로 개인과 법인의 회계 및 운영 관리 체계를 철저히 분리하여 운영할 것을 권장하며, 위탁 가능 여부는 반드시 사전에 해당 사업 지침 및 관리 기관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사례 2] 농업인과의 거래 시 법인세법상 적격증빙 수취 의무 예외

① 쟁점 사례

영농조합법인이 일반 농업인들과 거래할 때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갖추지 못하면 법인세법상 비용(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가산세를 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② 관련 규정 및 원칙

법인세법상 사업자 간 거래 시 3만 원 초과 금액에 대해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으면 2%의 가산세가 부과되나, 사업자가 아닌 '농업인'과의 거래는 이 규정의 예외가 적용됩니다.

③ 실무 가이드

일반 사업자가 아닌 순수 농업인과의 거래 시에는 적격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세무상 정당한 비용으로 온전히 인정받기 위해서는 거래 상대방이 농업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와 실제 거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거래명세서', '무통장입금증'을 반드시 구비하도록 회계 담당자에게 지도해야 합니다.

[사례 3] 조합원 탈퇴 및 비농업인 전환 시 법인세 감면 인원 산정

① 쟁점 사례

영농조합법인의 일부 조합원이 사업연도 중 농업을 그만두어 비농업인이 된 경우, 법인세 감면 혜택을 등록된 전체 조합원 기준으로 계속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② 관련 규정 및 원칙

영농조합법인의 법인세 면제 및 감면은 원칙적으로 농업인인 조합원을 대상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농업인 자격을 상실한 인원은 세제 혜택 산출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③ 실무 가이드

조합원이 농지 매각 등으로 농업인 자격을 상실하게 되면 사실상 의결권 없는 '준조합원'의 지위가 되며, 이들에 대해서는 조합원 대상 법인세 감면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제 혜택 신청 시,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으로 실제 농업인 요건을 유지하고 있는 조합원 수에 대해서만 법인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사례 4] 현물출자 시 양도소득세 감면(이월과세) 요건 및 한계

① 쟁점 사례

농업인이 본인 소유의 농지를 농업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의 감면 한도와 이를 초과하는 세액에 대해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② 관련 규정 및 원칙

2026년 1월 1일부터 농지·초지 현물출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종전 「감면(연1억원, 5년 합산 2억원 한도)」에서 「한도 없는 이월과세」로 일원화되었습니다(2025년 세법 개정). 따라서 농지와 초지의 현물출자시 양도소득세 감면은 받을 수 없습니다.

③ 실무 가이드

현물 출자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 또는 이월과세되는 농지는 지적공부상 지목과 무관하게 실제 경작에 사용되는 전·답 및 그 부속시설(농막, 수로 등) 부지로 엄격히 한정됩니다.

[사례 5] 정부 지원사업 신청을 위한 “운영실적 1년 이상”의 기준

① 쟁점 사례

농식품부 보조금 등 각종 재정사업 지원을 받기 위한 자격 요건인 ‘법인 설립 후 운영실적 1년 이상’의 기산점을 등기일로 보아야 하는지 첫 거래일로 보아야 하는지 혼선

② 관련 규정 및 원칙

실질적인 법인 명의의 사업 수행 기간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보조금 자격 요건은 개별 보조사업의 지침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③ 실무 가이드

운영실적 1년이란 법인 등기일 이후부터 실질적인 사업 준비, 생산, 유통 등 실제 영업 활동을 영위해 온 전체 과정을 의미합니다.

법인 설립 이전 작목반이나 개인사업자 시절의 실적은 법인의 실적으로 합산되지 않으므로 이를 배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태조사

[사례 1] 실태조사 주기 강화 및 조사 불응 시 과태료 부과

① 쟁점 사례

지자체의 농업법인 실태조사가 얼마나 자주 실시되는지, 그리고 법인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현장 조사를 방해할 경우 어떤 제재가 따르는지에 대한 질의

② 관련 규정 및 원칙

농업법인의 적법한 운영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주된 사무소 관할 지자체장은 정기 및 수시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법인은 이에 협조할 의무가 있습니다.

③ 실무 가이드

과거 3년 주기로 실시되던 실태조사는 법령 개정에 따라 2022년부터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으로 관리 감독이 강화되었습니다.

지자체는 실태조사를 위해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무소에 출입하여 조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제출이나 현장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할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례 2] 법인 운영 실적(사업 영위) 판단을 위한 객관적 증빙 기준

① 쟁점 사례

법인이 실제 사업을 운영 중인지(1년 이상 미운영 여부)를 판단할 때, 개인 명의의 영수증 등으로 운영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② 관련 규정 및 원칙

모든 내국법인은 「법인세법」에 따라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을 신고할 의무가 있으므로, 농업법인의 운영 현황은 ‘법인 명의’로 발급된 공적 서류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법 제399조(회사에 대한 책임) ①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전항의 행위가 이사회 결의에 의한 것인 때에는 그 결의에 찬성한 이사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③ 전항의 결의에 참가한 이사로서 이익을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자는 그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한다.
동법 제401조(제3자에 대한 책임) ①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그 이사는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제399조제2항, 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③ 실무 가이드

ㄱ) 표준재무제표증명원 필수

실질적인 사업 운영 여부 및 목적 외 사업(임대료 수익 등) 확인은 국세청에 신고된 ‘표준재무제표증명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과 같은 공적 서류를 통해 검증할 수 있습니다.

ㄴ) 개인 증빙 불인정

조합원 개인 명의의 농산물 출하 내역, 농자재 구매 영수증, 또는 대표자 개인 통장 내역 등은 법인의 운영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ㄷ) 신규 법인 등에 대한 예외적 검토

설립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아 아직 법인세 신고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신규 법인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법인 명의의 매출전표 등 기타 객관적인 법인 명의 증빙자료를 토대로 운영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사례 3] 타 지자체 관할 구역에서 위반행위 발생 시 후속 조치 주체

① 쟁점 사례

농업법인이 본점 주소지가 아닌 타 지역(관외)이나 지점 등에서 부동산 임대업 등 목적 외 사업을 영위한 경우, 어느 지자체에서 단속 및 해산명령 청구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② 관련 규정 및 원칙

농업법인 실태조사 및 그에 따른 각종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해산명령 청구 등의 행정 권한은 ‘주된 사무소(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있습니다.

농어업경영체법 제20조의2(실태조사) ① 주된 사무소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의 적법한 운영과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조사주기·방법 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의 운영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조합원(준조합원을 포함한다) 또는 사원이나 주주의 인적 사항, 주소 및 출자 현황
2. 사업범위와 관련된 사항
3. 소유한 농지의 규모 및 경작유무 등 현황

③ 실무 가이드

법인이 위법 행위를 한 장소가 타 지자체라 하더라도, 해당 법인에 대한 실태조사 및 후속 행정조치(해산명령 청구 등)는 일반적으로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본점 소재지 관할 지자체가 추진해야 할 사항입니다.

후속조치

[사례 1] 부동산업 영위 등 중대 위반에 따른 복합 제재 (해산명령, 과징금, 벌칙)

① 쟁점 사례

농업법인이 소유한 농지를 전용하여 단독주택을 분양하거나 주차장, 상가 등으로 임대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경우의 행정 제재 수위에 대한 질의

② 관련 규정 및 원칙

농어업경영체법 제19조의5를 위반하여 부동산업(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한 농업법인은 시정명령 없이 즉시 강력한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농어업경영체법 제19조의5(부동산업의 금지) 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은 농지를 활용 또는 전용하여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부동산업(단, 이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영위할 수 없다.

동법 제20조의2(실태조사) ⑧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1. 조합원 5명 미만인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
2. 비농업인 또는 비어업인이 보유한 출자지분이 제19조제2항 또는 제4항에서 정한 출자한도를 초과한 농업회사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

⑨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농지법」 제2조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농업회사법인인 과 제19조의5를 위반하여 부동산업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한 농업법인에 대하여 「농지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농지의 처분통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실무 가이드

ㄱ) 해산명령 청구 및 농지처분

부동산업 영위가 적발되면 지자체는 관계 법령에 따라 법원에 해산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해당 농지에 대한 처분통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ㄴ) 과징금 부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한 경우 ‘해당 농지의 양도차액 상당액’, 임대업을 영위한 경우 ‘임대료 상당액’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여 부당이득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ㄷ) 형사 처벌 (양벌규정)

해당 위반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또는 종업원이 법인 업무에 관해 위반 행위를 한 경우,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게도 벌금형을 과하는 양벌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농어업경영체법 제20조의3(해산명령) ①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의 해산명령에 관하여는 「상법」 제176조에 따른 회사의 해산명령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회사”는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으로 본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에 대하여 법원에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

1. 조합원이 5명 미만이 된 후 1년 이내에 5명 이상이 되지 아니한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
2. 총 출자액 중 비농업인 또는 비어업인이 보유한 출자지분이 제19조제2항 또는 제4항에서 정한 출자한도를 초과한 후 1년 이상 경과한 농업회사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
3.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사업범위에서 벗어난 사업을 하는 농업법인
4. 제19조의4제2항에 따른 사업범위에서 벗어난 사업을 하는 어업법인
5.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상법」 제17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
6. 제20조의2제8항에 따른 시장·군수·구청장의 지정명령에 3회 이상 불응한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

동법 제20조의4(과징금) ① 제19조의5를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영위한 농업법인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한다.

1. 농지를 활용 또는 전용하여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한 경우
2. 농지를 활용 또는 전용하여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 해당 농지의 양도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내
2. 제1항제2호의 경우: 임대료에 상당하는 금액 이내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해당 법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동법 제31조(벌칙) 제19조의5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동법 제3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례 2] 설립요건 미충족에 따른 시정명령 및 불응 시 조치

① 쟁점 사례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이 5명 미만이 되거나, 농업회사법인의 비농업인 출자지분이 한도(90%)를 초과한 경우 즉시 해산 대상이 되는지 아니면 보완할 기회가 주어지는지에 대한 질의

② 관련 규정 및 원칙

지자체는 실태조사 결과 설립 요건에 미달한 법인을 발견할 경우 법령에 정해진 기간 내에 요건을 보완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농어업경영체법 제20조의2(실태조사) ⑧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1. 조합원 5명 미만인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
2. 비농업인 또는 비어업인이 보유한 출자지분이 제19조제2항 또는 제4항에서 정한 출자한도를 초과한 농업회사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

③ 실무 가이드

ㄱ) 시정명령 발동

요건 미충족 사유가 발생한 지 1년 미만의 법인에 대해 지자체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내립니다. 만약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 시정이 어렵다고 소명할 경우 1회에 한하여 3개월 범위 내에서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농어업경영체법 시행령 제20조의7(시정기간)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0조의2제8항 각 호에 대하여 6개월 이내에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ㄴ) 불응 시 단계별 제재

1차 시정명령에 불응하면 2차 시정명령이 내려지며, 2회 이상 불응 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농어업경영체법 제33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0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에 불응하거나 조사를 방해한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
2. 제20조의2제8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2회 이상 불응한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

ㄷ) 해산명령 청구

시정명령에 3회 이상 불응하거나, 설립요건 미달 상태가 이미 1년을 경과한 경우에는 추가 시정 기회 없이 해산명령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농어업경영체법 제20조의3(해산명령) ①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의 해산명령에 관하여는 「상법」 제176조에 따른 회사의 해산명령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회사”는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으로 본다.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에 대하여 법원에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
 1. 조합원이 5명 미만이 된 후 1년 이내에 5명 이상이 되지 아니한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
 2. 총 출자액 중 비농업인 또는 비어업인이 보유한 출자자분이 제19조제2항 또는 제4항에서 정한 출자한도를 초과한 후 1년 이상 경과한 농업회사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
 3.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사업범위에서 벗어난 사업을 하는 농업법인
 4. 제19조의4제2항에 따른 사업범위에서 벗어난 사업을 하는 어업법인
 5.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상법」 제17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
 6. 제20조의2제8항에 따른 시장·군수·구청장의 시정명령에 3회 이상 불응한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

[사례 3] 장기 미운영(휴면) 법인 해산명령 및 해산간주제도 도입

① 쟁점 사례

수년간 사업 실적이 없는 장기 미운영 법인을 지자체가 직권으로 등기 말소할 수 있는지, 향후 휴면 법인 정리 절차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질의

② 관련 규정 및 원칙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미운영(휴업)한 농업법인은 지자체의 해산명령 청구 대상이 됩니다.

농어업경영체법 제20조의3(해산명령) ①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의 해산명령에 관하여는 「상법」 제176조에 따른 회사의 해산명령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회사”는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으로 본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에 대하여 법원에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

1. 조합원이 5명 미만이 된 후 1년 이내에 5명 이상이 되지 아니한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
2. 총 출자액 중 비농업인 또는 비어업인이 보유한 출자지분이 제19조제2항 또는 제4항에서 정한 출자한도를 초과한 후 1년 이상 경과한 농업회사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
3. 제19조제4제1항에 따른 사업범위에서 벗어난 사업을 하는 농업법인
4. 제19조제4제2항에 따른 사업범위에서 벗어난 사업을 하는 어업법인
5.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상법」 제17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
6. 제20조의2제8항에 따른 시장·군수·구청장의 시정명령에 3회 이상 불응한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

상법 제176조(회사의 해산명령) ①법원은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이나 감사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회사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1. 회사의 설립목적이 불법한 것인 때
2. 회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설립후 1년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영업을 휴지하는 때
3. 이사 또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여 회사의 존속을 허용할 수 없는 행위를 한 때

③ 실무 가이드

ㄱ) 행정청의 직접 등기 말소 불가

지자체는 실태조사를 통해 위반 법인을 적발하고 해산을 청구할 권한을 가지나, 행정청이 임의로 법인 등기를 직접 말소하거나 폐쇄하기는 어렵습니다. 법인격의 소멸은 법원의 해산재판 확정 후 등기소에 대한 촉탁 과정을 거쳐야 완료됩니다. 또한, 운영 재개 기간 연장에 대한 명시적 근거가 부족하므로 지자체가 임의로 해산 청구를 유예하는 것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ㄴ) 해산간주제의 적용 및 확대 예정

현재 주식회사 형태의 농업회사법인에 적용 중인 ‘해산간주’ 제도가 영농조합법인 등에도 확대 적용될 예정입니다. 2027년 1월 24일부터는 영농조합법인이 마지막 등기 후 5년이 경과하고 영업 지속 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원이 일괄적으로 해산간주 처리합니다.

[사례 4] 실태조사 거부 및 유사명칭 사용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① 쟁점 사례

지자체의 정기/수시 실태조사를 회피하거나, 일반법인이 농업회사법인이라는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할 시 부과되는 과태료 기준에 대한 질의

② 관련 규정 및 원칙

농업법인이 아닌 자의 유사명칭 사용은 금지되며, 실태조사에 불응하거나 방해할 경우 또는 유사명칭을 사용한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농어업경영체법 제30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이 아니면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영어조합법인 또는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과 어업회사법인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동법 제3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조제2항의 현지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제3항에 따른 자료의 확인 또는 증명을 한 자
3. 제30조를 위반하여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이 아니면서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의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4. 삭제

③ 실무 가이드

ㄱ) 실태조사 방해 및 불응시 조치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현장 조사를 기피·방해하는 경우, 법령에서 정한 100만 원 범위 내에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농지 소유 현황 등에 대해 고의로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도 조사 방해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ㄴ) 유사명칭 무단 사용에 대한 판단

농업법인이 아님에도 ‘농업회사법인’ 등 유사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적법하게 운영되다가 해산명령 등을 받아 청산 절차를 밟고 있는 법인의 경우 기존 명칭 사용을 즉각적인 유사명칭 위반으로 간주하여 제재하기에는 법리적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업범위

[사례 1] 농업법인 소유 자산의 임대 및 태양광 발전사업 영위

① 쟁점 사례

농업법인 소유 건축물(창고, 버섯재배사 등) 지붕이나 유희 부지를 제3자에게 임대하여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하게 하거나, 법인이 직접 전력 판매용 태양광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② 관련 규정 및 원칙

농업법인은 농지 등을 활용한 부동산업(임대업, 개발 및 공급업) 영위가 엄격히 제한됩니다. 또한, 태양광 및 전력 판매업은 현행 법령상 농업법인 사업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농어업경영체법 제19조의5(부동산업의 금지) 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은 농지를 활용 또는 전용하여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부동산업(단, 이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영위할 수 없다.

③ 실무 가이드

ㄱ) 자산의 임대 및 토지사용승낙 제한

태양광 발전업자 등 제3자에게 법인 소유의 지붕, 창고, 부지 등을 유·무상으로 빌려주거나 토지사용승낙서를 발급해 주는 행위는 금지된 ‘부동산업(임대업)’으로 간주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무상 제공이라 하더라도, 법인의 목적 외 자산을 타인의 영리 활동에 제공하는 행위는 제도 취지상 부적절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유의가 필요합니다.

ㄴ) 자가 소비용 설비 운영

농업법인이 직접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여 생산된 전력을 외부에 판매(수익 창출)하지 않고, 해당 법인의 영농 활동(농산물 보관, 가공시설 운영 등)을 위한 자가 소비용으로만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ㄷ) [제도 개선] 잉여전력 판매 허용 추진

현재 농업법인이 자가생산한 태양광 전력 중 잉여전력에 한해 거래를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 및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만, 이는 관련 법령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실제 시행 여부 및 구체적인 허용 기준 등은 향후 확정되는 법령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제도 개선 전까지는 현행법에 따른 사업 범위 내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유의가 필요합니다.

제1부
농업법인이란 무엇인가제2부
농업법인의 업무인내제3부
농업법인의 사업범위
호별 예시제4부
농업법인의
투자별 만원 사례제5부
중대재해처벌법
바로 알기별첨
기타 주요 정보

[사례 2] 수입 농산물 취급 및 타사 가공품 단순 유통(OEM 포함)

① 쟁점 사례

농업법인이 수입 농산물(생두, 수입 레몬 등)을 수입하여 유통·가공하거나, 타 업체가 생산한 공산품·가공식품을 매입하여 단순 유통하는 행위가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

② 관련 규정 및 원칙

농업법인은 원칙적으로 ‘직접 생산’하거나 ‘계약재배’를 통해 확보한 농산물을 가공·유통해야 하며, 제3자가 생산한 물품을 단순 매입하여 판매하는 것은 사업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③ 실무 가이드

ㄱ) 수입 농산물 취급 금지

수입 농산물만을 주원료로 하여 가공·판매하거나, 수입 농산물을 단순히 수입해 유통하는 행위는 농업법인 제도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아 원칙적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이 직접 생산한 국내산 농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면서, 수입 원물을 일부(부재료 또는 첨가물 등) 활용하는 것은 제재하기 어렵습니다.

ㄴ) 타사 제품 단순 유통 금지

농업법인이 생산 과정에 참여하지 않고 타사 가공품이나 공산품을 단순 매입하여 판매하는 행위는 목적외 사업 영위로 간주됩니다.

ㄷ) 적법한 OEM 위탁 가공

농업법인이 적절한 가공시설을 갖추지 못한 경우 직접 생산하거나 계약재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타 가공시설을 통해 식품 가공을 거친 후 판매하는 것은 농업법인의 사업범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례 3] 식당, 카페, 숙박업, 야영장 운영과 관광농원의 구분

① 쟁점 사례

농업법인이 일반 식당(고기집 등), 카페, 숙박업, 야영장(캠핑장)을 단독으로 목적사업에 추가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② 관련 규정 및 원칙

농업법인은 숙박업, 음식점업, 일반 야영장업을 독자적인 사업으로 영위할 수 없습니다. 단,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사업(관광농원 등)'의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③ 실무 가이드

지자체로부터 관광농원 사업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축산물을 구워 먹는 식당을 내거나, 임야에 야영장을 차리는 것은 사업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적법하게 관광농원이나 농어촌 관광휴양단지로 지정승인을 받은 경우, 그 사업의 일환으로 내부에서 식당, 카페, 숙박시설, 야영장 등을 운영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단, 이 경우에도 관광농원 사업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며 정관에 '일반음식점업' 등을 개별 목적사업으로 등재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제1부
농업법인이란 무엇인가제2부
농업법인의 업무인내제3부
농업법인의 사업범위
호텔 예시제4부
농업법인의 분야별
만원 사례제5부
중대제해처벌법
바로 알기별첨
기타 주요 정보

[사례 4] 벌목업 및 동물(곤충) 전시관 운영의 한계

① 쟁점 사례

영농조합법인이 타인 소유의 산에서 나무를 베어주는 벌목업을 하거나, 사육하는 곤충을 활용해 전시 생태관, 펫(애완) 곤충 판매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

② 관련 규정 및 원칙

농업의 범위 중 임업은 영림업과 임산물 채취업에 한정되며, 벌목업은 제외됩니다. 곤충 사육은 축산업에 해당하나, 전시 및 관람업은 별개의 서비스업입니다.

③ 실무 가이드

ㄱ) 벌목업(용역) 불가

법인이 자기 소유 산림을 가꾸는 영림업은 가능하나, 타인 소유의 토지에서 대가를 받고 나무를 베어 파는 벌목업이나 발전소에 납품하는 행위는 농작업 대행이나 농업 경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ㄴ) 곤충 산업의 구분

농식품부 고시에 지정된 곤충을 사육·가공·판매하는 것은 축산업으로서 적법합니다. 그러나 입장료를 받는 곤충 전시관·생태관을 운영하거나 일반 애완용 곤충을 판매하는 행위, 동물장묘업 등은 농업법인의 사업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례 5] 치유농업, R&D(연구개발), 교육·컨설팅 분야

① 쟁점 사례

신성장 분야인 치유농업, 농업 관련 연구개발(R&D), 스마트팜 컨설팅, 귀농귀촌 교육 사업 등을 농업법인 정관에 목적사업으로 명시하고 영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② 관련 규정 및 원칙

농업법인 사업범위에는 치유농업, 컨설팅, 교육, 독립적인 연구개발업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③ 실무 가이드

ㄱ) 현재 영위 불가

현재 법령상 농업법인이 타인을 위한 학술연구 용역, 스마트팜 컨설팅, 치유농업 서비스, 귀농귀촌 교육 등을 독자적인 목적사업(수익사업)으로 명시하여 영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단, 법인 자체의 농산물 생산·가공을 위한 내부적인 연구개발 활동 자체는 무방합니다.)

ㄴ) 사업범위 확대

정부는 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여 농업법인이 스마트농업 컨설팅·기자재 공급, 농업 관련 연구개발(R&D) 및 교육 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 및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만, 이는 관련 법령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실제 시행 여부 및 구체적인 허용 기준 등은 향후 확정되는 법령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제도 개선 전까지는 현행법에 따른 사업 범위 내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유의가 필요합니다.

제5부

중대재해처벌법 바로 알기

1. 법의 목적
2. 중대산업재해의 정의
3. 적용범위 및 적용시기
4. 벌칙규정(제재규정)
5.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6. 고용노동부 등 안전보건 관련 자료 QR 코드
7. 중대재해처벌법 Q&A(50인 미만 기업)

1. 법의 목적

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이용시설 및 대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이행하도록 의무를 부과한 법률로써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조치가 철저히 이루어져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경영책임자가 법에서 정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 중대산업재해의 정의

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 **(개념)** 중대재해처벌법에서의 “중대산업재해”란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합니다.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②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③ 동일한 유해요인의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

※ 급성중독, 독성간염, 혈액전파성질병, 산소결핍증, 열사병 등 24개 질병

3. 적용범위 및 적용시기

법 제3조(적용범위)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개인사업주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 부칙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가. 적용범위(법 제3조)

○ 법 적용 대상은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입니다.

※ 다만, 50명(50억 원) 이상은 '22.1.27.부터, 5~49명(50억 원 미만)은 '24.1.27.부터 적용

- 여기서 '사업 또는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장과 달리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조직 단위로서 법인, 기관, 기업 그 자체를 말하며
- 장소적 개념에 따라서 판단할 것이 아니므로 본사와 생산을 담당하는 공장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봐야 합니다.

○ 의무 주체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을 말하며 구체적인 적용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적용대상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 대표이사 등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 대표이사 등에 준하는 책임자로서 사업 또는 사업장 전반의 안전·보건 관련 조직, 인력, 예산을 결정하고 총괄 관리하는 사람 * 안전·보건에 관한 최종결정권을 가진 정도의 책임이 있는 사람이어야 함 •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지방공기업·공공기관의 장
개인사업주	•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

○ 보호 대상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종사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종사자의 구체적인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 ▲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 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해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 ▲ 사업을 여러 차례 도급한 경우 각 단계의 수급인과 수급인의 근로자·노무 제공자

나. 적용시기(법 부칙 제1조)

-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인 '22.1.27.부터 시행됩니다.
-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아래 ①~③의 경우에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24.1.27.부터 시행됩니다.
 - ① 개인사업주
 - ② 상시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
 - ③ 건설업의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의 공사

4. 벌칙규정(제재규정)

법 제6조(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①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가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②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나목 또는 다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저지른 자는 각 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가. 처벌규정의 의미

- 중대재해처벌법은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법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의무(다음 내용)를 위반한 경우에 바로 처벌하는 것은 아닙니다.
 -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제4조 또는 제5조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처벌합니다.

〈법 제4조〉

1.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법 제5조〉

-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에 필요한 의무들을 이행했다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처벌되지 않습니다.

나. 처벌의 내용

- 처벌 대상은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며
 - 처벌의 내용은 사망, 부상 등 재해 정도에 따라 구분되며 가중처벌 규정도 함께 두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내 용
① 종사자의 사망 시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음)
② 종사자의 부상 또는 직업성 질병 재해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③ 가중처벌	중대산업재해로 신고받은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위 죄를 저지른 경우 각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

다. 양벌규정

법 제7조(중대산업재해의 양벌규정)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등이 그 법인 또는 기관의 업무에 관하여 제6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기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6조제1항의 경우: 50억 원 이하의 벌금
2. 제6조제2항의 경우: 10억 원 이하의 벌금

- 양벌규정의 적용대상은 법인 또는 기관이며
 -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등이 그 법인 또는 기관의 업무에 있어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경우
 - 해당 경영책임자 등을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기관 그 자체를 벌금형의 형사벌로 처벌합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구 분	내 용
① 종사자의 사망 시	50억 원 이하의 벌금 (행위자 처벌 외)
② 종사자의 부상 또는 직업성 질병 재해 시	10억 원 이하의 벌금 (행위자 처벌 외)

-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라. 손해배상(법 제15조)

-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 개인사업주나 법인, 기관은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손해액의 5배 내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 안전보건교육의 수강

법 제8조(안전보건교육의 수강) ①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안전보건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시행령 제6조(안전보건교육의 실시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이하 “안전보건교육”이라 한다)은 총 20시간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수해야 한다.
② 안전보건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등 안전·보건에 관한 경영 방안
2. 중대산업재해의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 방안

○ 교육대상

-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등은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개인사업주는 교육 이수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유의〉

- 안전보건교육 수강은 ‘중대산업재해의 발생’만을 요건으로 규정하며 경영책임자 등이 법 제4조 및 법 제5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는지 여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실만으로도 해당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등은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교육시간 및 내용

- 총 20시간의 범위에서 이수해야 하며 안전보건교육에는 다음 각 사항이 포함됩니다.
 - ①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등 안전·보건에 관한 경영 방안
 - ② 중대산업재해의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 방안

5.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 각호에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로 아래와 같은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1. 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
 -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 이중, 제1호와 제4호의 조치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으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 2.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 설치
- 3.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 반기 1회 이상 점검 및 필요한 조치
- 4. 재해 예방에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용도에 맞게 집행
- 5.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충실한 업무수행 지원
- 6.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업보건의 배치
- 7.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 청취 절차 마련, 개선방안 마련·이행 여부 반기 1회 이상 점검
- 8. 중대산업재해, 급박한 위험을 대비하여 조치 매뉴얼 마련, 조치 여부 반기 1회 이상 점검
- 9. 도급, 용역, 위탁 시 산업재해 예방 조치 능력 및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 관리비용, 공사기간 또는 건조기간에 관한 기준 마련, 이행여부 점검

시행령 제5조(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① 법 제4조제1항제4호에서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는 데 관련되는 법령을 말한다.

- ② 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여부 반기 1회 이상 점검
 - 2. 인력 배치, 예산 추가 편성·집행 등 의무 이행에 필요한 조치
 - 3. 유해·위험한 작업에 관한 안전·보건 교육의 실시 여부 반기 1회 이상 점검
 - 4. 미 실시 교육에 대한 이행의 지시, 예산의 확보 등 교육 실시에 필요한 조치

6. 고용노동부 등 안전보건 관련 자료 QR 코드

자료명	QR	자료명	QR
중대재해처벌법 홍보영상 (내 사업장(농장)이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인지 확인해보세요!)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5인 이상 농사업장 안전보건가이드	
농작업환경 위험성평가 안내서		농작업 안전 자가점검 체크리스트	
농촌 체험농장 안전보건 관리 지침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가이드북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안내		추락사고방지 교육영상	
질식사고 예방교육영상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	
위험성평가 컨설팅 신청 (상시근로자수 50명 미만 대상)		위험성평가 안내서	

7. 중대재해처벌법 Q&A(50인 미만 기업)



(중대재해처벌법 Q&A QR 코드)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의무

안전보건관리체계란?

안전하기 위한 조직의 활동

- 기업 스스로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들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마련·이행하고 이를 지속 개선하는 체계를 뜻합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 회사에 맞게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 우리 사업장 여건에 맞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 사업장에 따라 보유한 기계·기구, 공정과 작업방법 등이 다르므로 사업장 여건에 맞게 구축하고 주기적인 점검·조치를 통해 성과를 높여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핵심요소 및 실행방안

경영자 리더십

- 명확하고 구체적인 안전보건 경영방침·목표 설정
- 모든 종사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도록 공표·게시

안전보건 인력·예산 배정

- 안전·보건 조직·담당자를 지정하고, 권한과 책임을 부여
- 안전·보건 예산 편성, 용도에 맞게 집행

유해·위험 요인 파악·개선

- 유해·위험요인을 파악 개선하는 위험성평가 실시
-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및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등을 통해 유해·위험요인 파악·개선에 대한 근로자 참여·공유
- 근로자 참여 및 의견 청취 절차 마련(안전보건, 제안제도, 아차사고 신고, 안전 소통채널 운영 등)
- 도급·용역·위탁 시 산재예방 역량을 갖춘 수습인 선정

안전보건 관리체계 점검·평가

- 사고 등 비상상황 대비 매뉴얼 마련 및 훈련·점검
- 산재사고, 아차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평무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등 반기 1회 이상 정기적 점검·평가

중대재해 처벌법 확대 적용 관련 Q&A

01 중대재해처벌법이 '24.1.27.부터 왜 갑자기 확대 적용 되었나요?

중대재해처벌법은 '21.1.26.에 제정되어 '22.1.27.에 50인(억)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고, 20인(억) 미만기업에 대해서는 부칙 규정을 통해 2년간 유예기간을 두었습니다.

- 정부에서는 50인 미만 기업의 확대 적용에 대비하여 50인 미만 기업 83.7만개소중 절반 수준인 45만개소에 안전보건관리체계 컨설팅·교육 기술지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다만, 지난 해('23.9.7.)50인(억)미만 기업에 대한 2년 추가 적용 유예를 내용으로 하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발의·논의 되었으나,

-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함에 따라, 당초 법안대로 '24.1.27.부터 50인(억)미만 기업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02 중대재해처벌법이 무엇이고, 어떤 사고 발생 시 적용 받나요?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은 기업이 스스로 경영책임자를 중심으로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 하는 것이며,

-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이행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그 책임을 묻습니다.

이때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중

- 1 사망자가 1명이상 발생
- 2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 3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량병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03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무조건 사업주가 처벌받게 되나요?

무조건 사업주가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등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제반 의무를 이행 하였다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또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위반과 종사자의 사망사이에 고의 및 예견 가능성, 인과관계 여부 등을 수사를 통해 확인하고, 고의 및 예견 가능성, 인과관계 등이 명확한 경우에 한해 처벌받게 됩니다.

[예] 고의·예견 가능성 및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

- 지하주차장 바닥 물청소 작업 중 고정된 시설물에 걸려 넘어져 사업주가 재해자 사망의 결과를 예견할 수 없었던 사망사고
- 숙취 상태로 개인 용무를 위해 지정하지 않은 장소에 들어가 익사

중대재해 처벌법 확대 적용 관련 Q&A

04 중대재해처벌법은 건설현장이나 대기업만 대상으로 알았는데 식당·카페·미용실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주도 해당 되는 건가요?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수가 5명이 넘는 경우라면, 개인 사업주도 적용이 됩니다.

이는 업종과 무관하므로, 음식점업, 숙박업 등을 하는 개인 사업주도 모두 포함됩니다.

05 음식점·제과점 등은 중대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데,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닌가요?

제조·건설업 등에 비하여 숙박 및 음식점업 등의 중대재해 발생 빈도가 적은 것은 사실이나, 실제 50명 미만 소규모 음식점, 주유소 등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례가 있습니다.

[예] 다짐육 배합기 또는 자동양념 혼합기에 팔이 끼이거나, 식품운반용 승상기와 안전난간 사이에 끼이는 등의 사고 발생

따라서, 음식점·제과점 등 개인사업주도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고, 일부조항을 제외하고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의무가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06 우리 회사의 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에는 법이 적용되지 않는 건가요?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단위는 개별 사업장 단위가 아니라 하나의 기업 전체입니다.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여부는 사업장별 인원이 아니라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하나의 기업에 속한 모든 사업장과 본사의 상시 근로자를 모두 합한 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 때 장소적으로 인접해 있을 것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예] 하나의 회사에 본사 포함 4개의 직영매장이 있고, 각 직영매장에 상시 근로자를 4명씩 배치한 경우

상시 근로자 수=4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의 합(16명)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므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 규정 적용(법 제3조)

중대재해 처벌법 확대 적용 관련 Q&A

07 상시 근로자 수는 어떻게 산정하는 것인가요? 아르바이트생이나 배달라이더도 포함되나요?

중대재해처벌법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식을 준용해서 판단하면 됩니다.

이때, 근로자는 기간제, 단시간 등 고용 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 합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생도 포함되며, 배달라이더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하는 경우에만 포함됩니다. 사업주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같이 근로 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사람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동거 친족이 근로하는 경우, 친족의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 친족 근로자도 포함해 계산

참고 소상공인법상 소상공인 여부 또는 중업 수 산정기준과는 별개임

08 2천만원짜리 건설공사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인가요?

'24.1.27 이전에는 부칙 규정에 따라 50억 이하의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유예되었습니다.

그러나, '24.1.27.부터는 건설공사 금액 제한이 없어져 건설업의 경우에도 제조업 등 다른 업종과 동일하게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이던 법 적용 대상이 됩니다.

- 이 경우 본사와 시공 중인 모든 현장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 법 적용사유 발생일전 ▲ 1개월간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기간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근로기준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2)

상시 근로자 수 = $\frac{\text{산정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text{산정기간 중 가동일수}}$

[예] 근로자 연인원 산정 시 업무가 바쁠 때 가끔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이나, 1주일에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도 해당 근로를 제공한 날에는 1명으로 포함



중대재해 처벌법 확대 적용 관련 Q&A

09 우리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지금 처음 알았는데 당장 무엇을 해야 하는가요?

- 1 명확하고 구체적인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목표를 수립하여 회사 내의 모든 종사자들이 알 수 있도록 공표·게시하십시오
- 2 우리 사업장에 법에 따라 필요한 안전보건 전문인력의 수를 확인해서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관리감독자 등을 지정하고, 재해 예방에 필요한 적정 예산을 편성하십시오
*관리감독자(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안전보건관리담당자(제19조) 등 확인
- 3 사업장 순회점검, 안전보건 제언제도, 아차사고 신고 등 근로자의 의견 청취 절차를 마련하십시오
- 4 비상대응체계 수립 훈련,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십시오

- 5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유해·위험요인을 확인·개선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이에 따라 확인·개선이 이루어졌는지 정기적으로 점검·조치하는 체계를 잘 갖추십시오
- 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기 위해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가장 중요하게 할 일은 안전보건 경영에 관심을 갖고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현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개선하는 것입니다.

 중소 영세기업을 위한 다양한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자료를 통해 기업의 상황에 따라 벤치마킹할 수 있는 예시·사례·절차 등을 활용하여 실행해 볼 수 있습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바로알기 (www.koshasafety.co.kr) → '중대재해처벌법 자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따라하기 매뉴얼」,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 등 활용

10 제조업, 건설업 이외에 식당, 호텔 등 다른 업종에서 참고 할만한 자료가 있나요?

- 1 영세 중소기업 사업주들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이 낯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 2 소규모 사업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이행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활용할 수 있도록,
- 음식점·제과점 등과 같은 음식점업, 호텔 등 숙박업 등을 포함하여 주요 20개의 업종에 대한 '업종별 중소기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자율점검표'를 마련·배포하였습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바로알기」(www.koshasafety.co.kr) → '중대재해처벌법 자료'에서 확인

- 3 가이드북과 자율점검표를 활용하여 동종업종의 재해 발생 유형, 안전조치 등을 확인하고 우리 사업장에 맞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 4 또한, 관련 협·단체와 함께 영세 중소기업, 개인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대폭 강화할 계획입니다.

중대재해 처벌법 확대 적용 관련 Q&A

11 영업과 생산, 안전관리까지 도맡아야 하는 영세업체는 법 적용 준비 여력이 턱없이 부족한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나 정부 지원이 있나요?

- 1 50명 미만 기업은 '산업안전 대진단'에 참여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진단·개선하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 안전보건공단 누리집 → '산업안전 대진단' 팝업창(1.29부터 참여가능)

- 2 누구나 쉽게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하여 총 10개의 안전보건관리체계 핵심항목에 대한 우리 사업장의 상황을 진단하고,
- 진단결과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계 컨설팅·교육·기술지도 및 시설개선을 포함한 재정지원 등 정부 지원을 적극 신청하거나,
- 가이드 안내서 등 정보를 활용하여 개선해 나갈 수 있습니다.

- 3 아울러, 전국 30개 권역의 '산업안전 대진단 상담지원센터'를 통해 산업안전 대진단 및 정부 지원을 상담·신청하거나(대표번호 1544-1133),
- 기업에서 요청하는 경우 현장 출동팀에서 직접 기업에 방문하여 상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소규모 영세 업체나 동네 음식점·제과점과 같은 자영업자(개인사업자)도 전담 조직을 두어야 하나요?

- 1 중대재해처벌법상 전담 조직은 안전관리자 등을 3명 이상 선임한 500명 이상 사업장, 시공순위 상위 200위 이내 건설사업자 등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 상시 근로자 수가 5~50명 미만 기업이라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전담 조직 설치 의무는 없습니다.

13 소규모 영세 업체나 동네 음식점·제과점과 같은 자영업자(개인사업자)도 안전 전문인력을 별도로 두어야 하나요?

- 1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등 안전전문인력을 정해진 수 이상 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안전관리자), 제18조(보건관리자), 제19조(안전보건관리담당자), 제22조(산업보건)

- 2 따라서, 5~50명 미만 중 일부 규모·업종에 대해서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 전문인력을 두면 됩니다.

(안전보건관리담당자) 20~50명 미만 중 제조업, 임업, 하수·환경·폐기물 등 5개 업종에 한해 1명 선임

- ① (자격) 안전보건관리담당자는 안전·보건관리자 자격을 갖추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 이수자 선임 가능

- ② (역할) 안전보건교육 실시, 위험성평가, 작업환경 측정·개선,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 등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 3 다만, 법적으로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의무가 없더라도, 안전을 관리·담당하는 인력을 자체적으로 지정하고 역할을 부여하여 안전보건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중대재해 처벌법 확대 적용 관련 Q&A

14 소규모 영세 업체나 동네 음식점·제과점과 같은 자영업자도 위험 요인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개선해야 하나요?

- ▲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사업주와 근로자가 함께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찾고 개선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사업주가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개선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반기 1회 이상 점검후 필요한 조치를 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의 위험성평가를 실시(절차마련, 절차에 따른 실시 및 실시결과 보고한 경우에는 유해·위험요인 파악 개선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5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안내 전화가 계속 오는데,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이수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이 있는 건가요?

- ▲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교육 의무를 부과하고 있을 뿐
- 그 외 별도의 교육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 따라서, 사업주는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근로자 교육을 실시하면 되며,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해서 추가되는 안전보건교육은 없습니다.
- ▲ 안전보건관리체계와 관련된 교육·컨설팅 등이 필요한 기업은 안전보건공단,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우선적으로 지원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업종별 중소기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20개 업종)

▲금속주조업, 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 ▲육상 화물 취급업,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자동차 신품 부품 제조업, ▲식료품 제조업, ▲펄프, 종이 및 판지 제조업, ▲인쇄업,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 ▲강선 건조업, ▲섬유제품 제조업, ▲벌목업,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목재 가구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도금업, ▲숙박 및 음식점업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www.moel.go.kr

50인 미만 기업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Q&A



 고용노동부

별첨

기타 주요 정보

1.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정관(예)
2. 농업법인 설립등기 신청(예)
3. 영농조합법인 설립·변경·해산신고 서식안내
4. 농업회사법인 설립·변경·해산신고 서식안내
5. 농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신청서 서식 안내
6. 농업인 확인서 발급 규정
7.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3단 비교표
8.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중 작물재배업 및 서비스업 기준

2. 농업법인 설립등기 신청(예)

가. 영농조합법인 설립등기 신청서

영농조합법인 설립등기신청				
접 수	년 월 일	처 리 인	등기관 확인	각종 통지
	제 호			
등 기 의 목 적	영농조합법인 설립			
등 기 의 사 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규정(제16조)에 따라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20 . . . 정관을 작성하고 20 . . .에 창립총회결의를 거쳐 영농조합법인의 설립절차를 종료하였으므로 다음 사항의 등기를 구합니다.			
주사무소/분사무소 신청구분	1.주사무소 ☐ 2.분사무소 ☐ 3.주·분사무소 일괄신청 ☐			
등 기 할 사 항				
명 칭	○○ 영농조합법인			
주 사 무 소	○○시(도) ○○구(군) ○○읍(면) ○○로 ○○			
이사와 감사의 성명·주민 등록번호	이사 000 (0000000 - 000000000) 이사 000 () 이사 000 () 감사 000 ()			
이사장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대표이사 ○ ○ ○(-) 주소 : ○○시(도) ○○구(군) ○○읍(면) ○○로 ○○			

등 기 할 사 항	
목 적	본 조합법인은 협업적 농축산업 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축산물의 출하, 가공, 수출 등을 통하여 조합원의 소득증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농축산업의 집단경영 및 공동작업에 관한 사업 2. 농축산업의 대행 3. 농축산물의 구매 및 판매, 수출에 관한 사업 4. 농축산 자재 및 부자재의 공동 구매사업 5. 농축산 관광농원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업 6. 농축산물의 공동생산, 유통, 저장, 포장, 운송에 관한 사업 7. 위 사업에 관련 부대사업 등.
분 사 무 소	
출자 총좌수	11,000좌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	110,000,000원
설립신고 또는 설립인가 연월일	
출자액의 납입방법, 산정방법과 조합원 1명이 출자할 수 있는 최고한도에 관한 사항	출자액의 납입방법: 현금(또는 농지, 농기계 등 현물)으로 이사회에서 정하는 납입일자에 일시 납입한다. 출자액의 산정방법: 농지, 농기계 등 현물의 출자액 산출은 이사회(설립시는 창립총회)에서 정하는 평가율에 의하여 환가한다. 조합원 1명이 출자할 수 있는 출자액의 최고한도: 총 출자자수의 100분의 50.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	본 조합법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산된다. 1. 총회에서 해산 및 합병을 결의한 경우. 1. 파산한 경우 및 법원의 해산명령을 받은 경우. 1. 조합원이 5인 미만인 후 1년내에 5인 이상이 되지 않은 경우. 1. 기타 정관에서 정하는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기타	

신청등기소 및 등록면허세/수수료							
순번	신청등기소	구분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세액합계	등기신청수수료	
	○○등기소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합		계					
등기신청수수료 납부번호							
과 세 표 준 액		금110,000,000원					
첨 부 서 면							
1. 정 관			통	1. 법인인감신고서			통
1. 창립총회의사록			통	1.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통
1. 출자자산의 명세서 및 그 소명자료			통	1. 등기신청수수료영수필확인서			통
1. 임원취임승낙서(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 포함)			통	1. 사전신고에 따른 설립신고확인증			통
1.임원의 취임승낙서(인감 날인)			통	1.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통
1.임원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등)본			통	1. 법인 인감카드발급신고서			통
1.대표조합원 취임승낙서(인감 날인)			통	<기 타>			
년 월 일							
신청인	명 칭						
	주사무소						
대표자	성 명	(인)	(전화 :	)			
	주 소						
대리인	성 명	(인)	(전화 :	)			
	주 소						
		지방법원	등기소	귀중			

영농조합법인 설립등기신청 안내

(1) 관할등기소

영농조합법인의 설립등기는 조합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등기과), 그 지원(등기과) 또는 등기소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2) 설립등기신청

설립등기신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창립총회의 종료 후 2주 내에 대표이사가 신청해야 하고, 법무사 또는 변호사 아닌 자는 등기신청서의 작성이나 그 서류의 제출 대행을 업(業)으로 할 수 없습니다.

(3) 등기신청서 기재 요령

가. 신청서는 원칙적으로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합니다. 다만 상호와 외국인의 성명은 먼저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로 기재한 후, 로마자·한자·아라비아숫자 및 일정한 부호를 사용하여 영문 표기나 한자 표기를 병기할 수 있습니다.

나. 신청서의 기재사항 난이 부족할 경우 별지를 사용하고 신청서와 별지 각 장 사이에 간인을 하여야 합니다.

다. 구체적 기재방법

① 등기의 목적

“영농조합법인 설립”으로 기재합니다.

② 등기의 사유

일반적으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20〇〇년 〇월 〇일에 정관을 작성하고 20〇〇년 〇월 〇일에 창립총회결의를 거쳐 영농조합법인의 설립절차를 종료하였으므로 다음 사항의 등기를 구합니다.”라고 기재합니다.

③ 본/지점 신청 구분

주사무소(본점)에서의 등기신청인지,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에서의 일괄신청인지, 분사무소에서의 등기신청인지를 기재하는데, 보통 설립시에는 주사무소만을 두고 있으므로 주사무소(본점)에 표시합니다.

④ 상호

정관에 기재된 상호를 기재하며, 상호 중에는 “영농조합법인”을 반드시 사용하여야 합니다. (예: “○○○○ 영농조합법인”)

⑤ 주사무소

정관에 기재 및 창립총회에서 결의한 주사무소 소재지를 기재합니다.

⑥ 이사, 감사의 성명 및 주민등록 번호

창립총회에서 선출된 이사, 감사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⑦ 대표자 성명 및, 주민등록 번호

조합법인을 대표할 조합원(대표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⑧ 목적

정관에 규정된 목적을 그대로 기재합니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 및 그 부대사업을 목적으로 하여야 하며, 농업 외의 목적사업을 영위할 수 없습니다.

⑨ 분사무소

분사무소가 있을 경우, 분사무소의 주소를 기재합니다.

⑩ 출자 총좌수와 납입할 총출자액

출자 총좌수(가령 11,000좌), 납입할 총출자액(가령 110,000,000원)을 기재합니다.

⑪ 출자액 납입, 출자액 규정 등

출자액의 납입방법, 산정방법과 조합원 1명이 출자할 수 있는 최고한도에 관한 사항. 현금의 납입방법(은행), 현물의 산정방법, 조합원 1인당 최고한도의 출자액 규정을 기재합니다.

⑫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

정관으로 회사의 존립기간이나 해산사유를 정하였을 때 기재하는 사항이며 정관의 상대적인 기재사항입니다.

⑬ 신청등기소 및 등록면허세 수수료

신청등기소는 (1)관할등기소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등록면허세 등과 관련해서는 영농조합법인은,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농어촌특별세가 전액 면제됩니다. 따라서, 본점 소재지 시군구청의 세무과에서 감면 또는 면제 확인서를 발급받아 첨부하면 됩니다.

⑭ 첨부서면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서류를 기재합니다.

(4) 등기신청서 편철순서

신청서,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정관, 주식발행사항동의서, 주식인수증, 주금납입 보관증명서, 발기인회의사록, 조사보고서, 감사인의 조사보고서, 이사회 의사록, 취임 승낙서,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 주민등록표등(초)본, (취임승낙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은 임원별로 편철), 인감 신고서, 위임장 등의 순서로 편철하시면 업무처리에 편리합니다.

(5) 기타

이상은 영농조합법인 설립등기 신청시 작성·제출하여야 하는 일반적인 서식과 그 내용에 대한 안내입니다. 만일, 정관에 다른 사항을 규정할 경우 등기사항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변호사, 법무사)의 사전 상담을 받아 등기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나.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설립등기신청서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설립 등기신청				
접 수	년 월 일	처 리 인	등기관 확인	각종 통지
	제 호			

등 기 의 목 적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설립		
등 기 의 사 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규정(제19조)에 따라 정관을 작성하고 발기인이 회사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인수한 후 20 . . .에 발기인 총회를 종결하였으므로 다음 사항의 등기를 구합니다.		
등 기 할 사 항			
상 호	농업회사법인 ○○○○ 주식회사		
본 점	○○시(도) ○○구(군) ○○읍(면) ○○로 ○○		
공 고 방 법	○○(시도) 발행하는 일간 ○○일보에 게재한다		
1 주 의 금 액	5,000원		
발 행 할 주식의 총수	50,000주		
발행주식의 총수와 그 종류 및 각각의 수	발행주식의 총수 5,000주 보통주식 5,000주 제1종 우선주식 0주		
자본금총액	50,000,000원		
목 적	본 회사는 기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거나 생산된 농산물을 가공, 유통, 판매함으로써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노동력 부족 등으로 농업경영이 곤란한 농업인의 농작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행하여 영농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농산물의 유통, 가공, 판매. 2.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대행. 3.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공급. 4. 영농에 필요한 종묘생산 및 종균배양사업 5. 농산물의 매취, 비축에 관한 사업. 6. 위 각호에 부대하는 사업일체.		

등 기 할 사 항	
이사·감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사내이사 ○ ○ ○ (-) 사내이사 ○ ○ ○ (-) 사외이사 ○ ○ ○ (-) 기타비상무이사 ○ ○ ○ (-) 감사 ○ ○ ○ (-)
대표이사의 성명과주소	대표이사 ○ ○ ○ (-) 주소 : ○○시(도) ○○구(군) ○○읍(면) ○○로 ○○
종류주식의 내용	제1종 우선주식 1. 발행할 주식의 총수 : 0주 2. 발행하는 주식의 내용 1) 이익배당 등에 관한 사항 : 생략 2) 의결권에 관한 사항 : 생략 3) 상환권 또는 전환권에 관한 사항 : 생략 4) 기타
지 점	없음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	없음(정관에 규정이 되어있으면 기재)
기 타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 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명의개서 대리인을 둔 때에는 그 상호 와 본점소재지 등)	없음(정관에 규정이 되어있으면 기재)

등록면허세	금	원	지방교육세	금	원	농어촌특별세	금	원
세 액 합 계	금		원	등기신청수수료	금		원	
등기신청수수료 납부번호								
과 세 표 준 액		금50,000,000원						
첨 부 서 면								
1. 정관(자본금 금 10억 이상일 경우 공증받은 것)				1. 대표자 취임승낙서 통				
1. 주식의 인수를 증명하는 서면 통				1. 대표자 주민등록초(등)본 통				
1. 주식발행사항동의서 통				1. 법인인감신고서 통				
1. 발기인회의사록(자본금 금 10억 이상일 경우 공증받은 것) 통				1. 주금납입보관증명서 또는 잔고증명서 통				
1. 임원취임승낙서(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 포함) 통				1.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통				
1. 이사회의사록(자본금 금 10억 이상일 경우 공증받은 것) 통				1. 등기신청수수료영수필확인서 통				
				1. 사전신고에 따른 설립신고확인증 통				
				1. 법인인감카드발급신청서 통				
				1.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통				
				<기 타>				
년 월 일 신청인 상 호 본 점 대표이사 성 명 주 소 대리인 성 명 주 소 (인) (전화 :) (인) (전화 :) 지방법원 등기소 귀중								

알림서비스 (선택)	등기접수 및 처리결과에 대한 문자 수신에 동의합니다. (□동의 □미동의) (성명: _____ 휴대전화번호: _____)
---------------	---

- 신청서 작성요령 -

- 해당 등기신청과 관계없는 사항은 “해당없음”으로 기재하거나 삭제하고, 필요한 사항은 추가 기재하며, 해당란이 부족할 때에는 별지를 이용합니다.
-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증명서 제출과 함께 관련 서면에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는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관련 서면에 서명을 하거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제출하고 관련 서면에 서명을 하면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고 관련 서면에 인감을 날인한 것으로 봅니다.
- 알림서비스에 동의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및 제17조에 근거하여 성명과 휴대전화번호가 통신사에 제공되고, 동의에 따라 수집된 정보는 등기사무의 접수 및 처리 시까지 그 결과의 알림의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알림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설립등기신청 안내

(1)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설립 등기(발기설립)

농업회사법인의 등기에 관하여는 상업등기법을 적용합니다. 농업회사법인을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할 경우의 안내사항을 기재해 드립니다.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의 형태로 설립할 경우, 필히 관련 규정을 검토해야 합니다)

(2) 관할등기소 및 등기의 신청

설립등기는 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보통, 발기설립의 경우, 발기인 총회 후 2주내에 신청하면 될 것입니다.

(3) 등기신청서 기재 요령

신청서는 원칙적으로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합니다. 다만 상호와 외국인의 성명은 먼저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로 기재한 후, 로마자·한자·아라비아숫자 및 일정한 부호를 사용하여 영문 표기나 한자 표기를 병기할 수 있습니다.

① 등기의 목적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설립(발기설립)”으로 기재합니다.

② 등기의 사유

보통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규정(제19조)에 따라 정관을 작성하고 발기인이 회사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인수한 후 2000년 0월 0일에 발기인 총회를 종결하였으므로 다음 사항의 등기를 구합니다”이라고 기재합니다.

③ 상호

정관에 기재된 상호를 기재합니다. 상호 중에는 “농업회사법인”이라는 명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예: “농업회사법인 0000 주식회사”)

④ 본점

정관에는 본점소재지를 최소행정구역(서울특별시, 경기도 안성시, 경상북도 청도군)을 표시함으로써 족하지만 등기신청서에는 그 소재 지번까지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이사회 결의를 통해 본점 소재지를 확정할 수 있습니다)

⑤ 공고방법

정관에 기재된 공고방법을 기재하며, 관보나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일간신문이어야 합니다.

⑥ 1주의 금액

정관에 기재된 1주의 금액을 기재합니다. 1주의 금액은 100원 이상이어야 하며, 또한 균일하여야 합니다.

⑦ 발행할 주식의 총수

회사가 발행할 수 있는 주식 수의 한도로서 정관에 기재된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기재합니다.

⑧ 발행주식의 총수와 그 종류 및 각각의 수

정관에 규정된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와 그 종류 및 각각의 수를 기재합니다. 종류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회사가 정관에 정한 종류주식의 명칭(예 : 제1종 종류주식, 제2종종류주식 등)을 기재하고, 그 내용은 종류주식의 내용란에 기재합니다.

⑨ 자본금총액

회사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액면총액이 자본금총액입니다. 무액면 주식으로 발행한 경우에는 주식의 발행가액총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는 금액의 총액이 자본금총액입니다.

⑩ 목적

정관에 규정된 목적을 기재하며,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 등 농업과 관련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⑪ 이사감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사내이사·사외이사·감사의 성명·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외국인의 성명은 국적과 원지음을 한글 등으로 기재한 후, 괄호를 사용하여 로마자 등의 표기를 병기할 수 있습니다(예 : 사내이사 미합중국인 존에프케네디 (John. F. Kennedy)).

⑫ 대표이사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회사를 대표할 이사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기재합니다.

⑬ 종류주식의내용

정관의 규정에 따라 이익의 배당, 잔여재산의 분배,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의 행사, 상환 및 전환 등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주식을 발행한 경우 그 내용을 기재합니다.

⑭ 지점

이사회에서 지점 설치를 결의하였을 때 기재하며, 본점과 동일하게 소재 지번까지 기재하여야 합니다.

⑮ 존립기간 또는 해산 사유

정관으로 회사의 존립기간이나 해산사유를 정하였을 때 기재하는 사항이며 정관의 상대적인 기재사항입니다.

⑯ 기타

정관에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그 상호와 본점소재지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⑰ 등록면허세수수료

등록면허세는 과세표준액의 4/1000,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20/100이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 내에서 설립하는 경우에는 당해 세율의 3배의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농업회사법인의 경우(주식회사),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농어촌특별세가 전액 면제됩니다. 따라서 본점 소재지 시군구청의 세무과에서 감면 또는 면제 확인서를 발급받아 첨부하면 됩니다.

⑮ 과세표준액

과세표준은 자본의 총액, 즉 회사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액입니다.

⑯ 첨부서면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서면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⑰ 신청인 등

설립등기를 신청하는 법인의 상호와 본점, 대표이사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며, 위임받은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합니다. 대표이사는 등기신청과 동시에 제출하는 법인 인감도장을 날인하여야 하며 대리인의 경우는 날인할 도장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4) 등기신청서 편철순서

신청서,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정관, 주식발행사항동의서, 주식인수증, 주금납입 보관증명서, 발기인회의사록, 조사보고서, 감사인의 조사보고서, 이사회 의사록, 취임 승낙서,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 주민 등록표등(초)본, (취임승낙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은 임원별로 편철), 인감 신고서, 위임장 등의 순서로 편철하시면 업무처리에 편리합니다.

(5) 기타

1. 등기신청과 관련된 정관, 의사록 등 각종 서식에 관하여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자료센터), 농식품부 홈페이지, 법무부 홈페이지(법무지식), 중소기업부 홈페이지 (자료마당), 사단법인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홈페이지(법률정보)를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2. 이사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의 법인설립등기(발기설립) 신청시 작성·제출하여야 하는 일반적인 서식과 그 내용에 대한 안내인바, 정관에 상대적 기재사항인 변태설립 사항을 둔 경우, 감사위원회를 둔 경우 등 회사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면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개별·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등기와 소의 민원담당자 또는 변호사, 법무사 등 등기와 관련된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업법인 설립·변경등기 시 신청 첨부서류 안내

(1) 영농조합법인 설립등기신청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

- ① 정관
- ② 창립총회의사록(공증인의 인증 요함)
※ 조합원이 농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농업인 확인서, 농업경영체등록증명서 또는 확인서)
- ③ 출자자산의 명세서(대표조합원이 작성함) 및 그 소명자료.
- ④ 임원(이사, 감사)의 취임승낙서(인감 날인),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등)본
- ⑤ 대표조합원의 취임승낙서(인감 날인), 법인인감 신고서
- ⑥ 등기신청수수료 납부확인서,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
- ⑦ 사전신고에 따른 설립신고확인증
- ⑧ 법인인감카드발급신청서(등기완료 후, 등기소에 발급 신청함)
※ 위 서류 중 ① 내지 ⑦의 서류를 설립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 관할 등기소에 제출

(2)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설립등기신청(발기설립)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

- ① 정관(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공증인의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 ② 발기인의 주식 인수증
- ③ 발기인의 주식발행사항 동의서
- ④ 설립경과에 관한 이사 또는 감사의 조사보고서
- ⑤ 발기인총회의사록(자본금 10억원 미만일 경우 공증인의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 단, 모집설립의 경우, 정관 및 창립총회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함
※ 발기인이 농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농업인 확인서, 농업경영체등록증명서 또는 확인서)

- ⑥ 임원(이사, 감사)의 취임승낙서(인감 날인), 인감증명서
- ⑦ 대표자의 취임승낙서(인감 날인) 및 주민등록초(등)본, 법인인감 신고서
 - ※ 이사회 의사록(설립시 이사가 3인 미만일 경우, 첨부 생략)
 - ※ 자본금 10억 미만일 경우 이사회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 불요
- ⑧ 자본금(주금)의 납입증명서(자본금 10억원 이상일 경우 금융기관의 주금납입증명서, 10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잔고증명서 가능합니다)
- ⑨ 등기신청수수료 납부확인서,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
- ⑩ 사전신고에 따른 설립신고확인증
- ⑪ 법인인감카드발급신청서(법인설립등기 후, 등기소에 발급 신청합니다.)
 - ※ 위 서류 중 ① 내지 ⑩의 서류를 설립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 관할 등기소에 제출
 - ※ (참고)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을 “모집설립”할 경우 정관과 창립총회의사록을 공증받아야 하며, 주식청약서와 창립총회기간 단축동의서 (기간단축서) 등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3) 영농조합법인 변경등기신청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

- ① 정관사본(원본대조필 직인 및 법인인감 간인, 날인) * 필요한 경우 제출
- ② 총회 또는 이사회 의사록(변경사항에 대한 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 각각 공증인의 인증을 요함)
 - ※ 예 : 주사무소 이전, 임원 변경, 출자금액 증액, 지점 설치 및 이전 등
- ③ 등기신청수수료 납부확인서
- ④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
- ⑤ 변경신고확인증
 - ※ 등기목적(변경)에 따라 위 ① 내지 ④의 서류와 그 밖의 필요서류를 변경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 관할 등기소에 제출합니다.(예 : 임원 변경의 경우, 총회의사록과 신규 임원의 취임승낙서, 인감증명서, 주민초본 등이 필요할 수 있으며, 출자금액의 변경이라면 대표조합원이 작성한 출자자잔의 명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4) 농업회사법인 변경등기신청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

① 정관사본(원본대조필 직인 및 법인인감 간인, 날인)* 필요한 경우 제출

② 총회의사록 또는 이사회이사록

※ 위 의사록은 변경사유에 따라 공증인의 인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주주 전원의 서면결의가 있을 경우, 공증인의 인증 불요

③ 등기신청수수료 납부확인서

④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

⑤ 변경신고확인증

※ 등기목적(변경)에 따라 위 ① 내지 ④의 서류와 그 밖의 필요서류를 변경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 관할 등기소에 제출합니다.(예 : 임원 변경의 경우,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의사록과 신규 임원의 취임승낙서, 인감증명서, 초본 등이 필요할 수 있으며, 자본금 또는 출자금 증자의 경우 잔고증명서 또는 주금납입증명서, 주식인수증, 청약증명서면, 출자이행서면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 등기소마다 행정처리에 있어 관련서류 추가 요구 등 상이할 수 있으니 농업법인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방문 전에 추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해산등기신청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

① 정관사본(원본대조필 직인 및 법인인감 간인, 날인)* 필요한 경우 제출

② 해산결의 총회의사록, 기타 해산을 증명할 서류(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판결, 존속 기간 만료, 조직변경, 합병, 분할, 파산 등)

③ 등기신청수수료 납부확인서

④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

⑤ 해산신고확인증

농업법인의 정관 및 의사록에 대한 공증인의 인증 관련 안내

(1) 개설

농업법인에 대한 각종 등기시 첨부되는 정관과 의사록(총회, 이사회)은 결의절차와 내용의 진실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공증인의 인증을 요합니다. 그러나 공증인법 규정(제66조의 2의 제1항)에 따라 일부 공증의무가 면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증인법 제66조의 2(법인의사록 인증)

① 법인 등기를 할 때 그 신청서류에 첨부되는 법인 총회 등의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상법」 제295조제1항에 따라 발기설립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인 경우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의결한 경우

(2)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설립등기 시

상법 제292조는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의 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 정관의 인증(공증) 의무를 면제하고 있으며, 발기인총회의사록과 이사회 의사록에 대하여도 공증의무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집설립”의 경우, 자본금 규모와 상관없이 정관 및 각종 의사록은 반드시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3)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변경등기 시

설립시와 달리, 변경등기에 따른 총회의사록 및 이사회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공증인법 제66조의2 제1항 단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단, 주주 전원의 서면결의가 있을 경우, 공증인의 인증을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4) 영농조합법인 설립등기 시

정관에 대하여는 공증의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창립총회의사록의 경우 위 공증인법 제66조의2 제1항 단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5) 영농조합법인 변경등기 시

공증인법 제66조의2 제1항 단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조합원총회의사록 또는 이사회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요합니다.

주요 서식 및 작성 Tip

서식목록

구분	서식목록	참고 페이지
1	주식발행사항동의서	291p.
2	발기인 주식인수증	292p.
3	주주명부	293p.
4	주금납입 보관증명 발급의뢰서	294p.
5	발기인총회의사록	295p.
6	검사인조사보고서(현물출자 등 변태설립의 경우)	296p.
7	발기인의 창립보고서(주주 모집설립의 경우)	298p.
8	취임승낙서	300p.
9	이사·감사의 조사보고서	301p.
10	공증인의 조사보고서	303p.
11	창립총회 의사록	305p.
12	이사회 의사록	308p.

1) 주식발행사항 동의서

주식발행사항 동의서

발행인 전원의 동의로서 회사 설립시 발행할 주식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결정함.

다 음

1. 주식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5,000주
 2. 주식의 발행가액 : 1주의 금액 10,000원
 3. 주식의 총수와 주식금액 : 보통주식 5,000주, 금 50,000,000원
- 위 동의사항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발행인 전원이 다음에 기명날인하다.

2000년 0월 00일

농업회사법인 00주식회사
발기인 0 0 0 (-)
00군 00면 00리 00번지
발기인 0 0 0 (-)
00군 00면 00리 00번지
발기인 0 0 0 (-)
00군 00면 00리 00번지
발기인 0 0 0 (-)
00군 00면 00리 00번지

2) 발기인 주식인수증

주식인수증

1. 상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2. 인수할 주식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3. 위 총액 금 ○○○원
4. 1주의 금액 : 금 5,000원
5. 납입은행 및 장소: ○○은행, ○○지점

위의 주식을 발기인으로서 인수합니다.

20○○.○○.○○.
발기인 ○○○(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발기인 대표 귀하

3) 주주명부

주 주 명 부				
주주명	주 소	인수주식수	1주의 금액	납입금액
○○○	○○ ○○구 ○○동 ○○	1000	10000	10000000
○○○	이하생략	1000	이하생략	이하생략
○○○		1000		
○○○		100		
○○○		이하생략		
	합 계	10000	100000000	

위는 당 회사의 주주명부임이 틀림없음

20○○년 ○월 ○○일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대표이사 ○ ○ ○ (날인)

[주] 이 주주명부는 법정 첨부서류는 아님.

4) 주금납입 보관증명 발급의뢰서

주금납입 보관증명 발급의뢰서

금번 다음과 같이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창립총회에서 주금납입기한을 200○년 ○월 ○일까지로 하여 그 납입금을 맡을 은행으로 귀 은행을 지정하였사오니 이를 취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 ○○.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대표이사 ○ ○ ○

1. 상 호

1. 본 점

1.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주

1. 1주의 금액 원

1. 자본의 총액 금 원

은행 지점 귀중

5) 발기인총회의사록

발기인 총회 의사록

20 ○○군(시) ○○읍(동) ○○로 ○○에서 농업회사법인 _____ 주식회사의 발기인
총회를 개최하다.(오전 10시)

주주총수 ○명, 주식 총수 ○○○○○주

출석주주 ○명, 인수주식수 ○○○○○주

발기인 대표 ○○○이 총회 성립을 알리고 다음의 의안을 심의하다.

1. 제1호 안건 : 정관승인의 건

발기인대표 ○○○은 본 회의의 의장으로써 정관을 낭독하고 축조설명을 한 후 승인가부를 물은
바, 주주 전원일치로 이를 승인하다.

2. 제2호 안건 : 이사 및 감사 선임의 건

의장은 이사 및 감사의 선임방법을 물은바, 주주 전원일치로 무기명비밀투표로 선출하기로 하고,
즉석에서 투표를 실시, 다음과 같이 이사 및 감사가 선출되다.

사내이사: ○○○ / 사내이사: ○○○ / 사내이사: ○○○ / 감사: ○○○

위 피선거자들은 즉석에서 승낙하다.

3. 제3호 안건 : 상법 제298조 소정사항 조사보고의 건

의장은 발기인 전원이 이사이므로 감사로 하여금 조사, 보고를 하게 하여야 한다고 하자,
전원 이의없이 감사를 감사인으로 선임할 것을 결의하다. 감사 ○○○은 이를 승낙하고
조사에 착수하다. (조사보고를 위해 잠시 휴회한 후 속회하다)

감사 ○○○은 별첨 보고서와 같이 상법 제298조 소정사항의 조사결과를 보고하였고

발기인 전원은 이를 승인하였다.

이상으로 금일 총회 안건을 모두 결의하였으므로 폐회하다. 위 결의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의사
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발기인이 다음과 같이 기명(서명)날인하다.

20

농업회사법인 ○○○ 주식회사

발기인 대표(의장, 사내이사) ○○○

발기인 (사내이사) ○○○

발기인 (사내이사) ○○○

6) 감사인조사보고서(현물출자 등 변태설립의 경우)

감사인조사보고서

본인은 ○○지방법원 20○○파○○호 감사인선임신청사건에 있어서 ○○주식회사의 감사인으로 선임되어 상법 제290조 소정사항을 조사하였므로 다음과 같이 보고함.

1. 조사방법과 그 경과

감사인인은 이 사건 조사할 사항의 구체적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우선 이 사건 감사인 선임신청서와 그 부속서류의 내용을 검토한 후, 20○○년 ○월 ○○일 이 사건 회사의 설립사무소에 임하여 발기인 대표 ○○○로부터 회사설립의 경과를 청취하고 회사설립에 관계되는 각종 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면밀히 검토한 다음, 회사설립과정에서 이 사건 목적재산의 가액을 평가한 바 있는 감정평가사 ○○○의 감정평가의 경위를 청취하였음.

2. 조사사항 및 조사결과

(1) 발기인이 받을 특별이익에 관한 사항

정관 제○조에 의하면 발기인이 받을 특별이익으로서 각 발기인은 그가 가지는 주식 1주에 대하여 연 ○○원에 달할 때까지 다른 주식에 우선하여 배당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으나, 이는 발기인의 발기행위에 대한 특별공로를 이유로 한 것으로서 동인 등이 공로 및 대외적 신용 등을 고려한다면 당해 정관의 규정은 정당하다고 사료됨.

(2) 현물출자에 관한 사항

현물출자를 한 자는 발기인 ○○○이고 그 출자재산은 어떠한 재산으로서 감정평가사 ○○○가 평가한 그 가격은 정관에 기재된 평가액보다 훨씬 높은 시가 금○○○원 이상이므로 정관에 기재된 그 평가액 및 그에 부여하는 주식수는 정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현물출자재산은 이미 회사에 확실히 인도되었음이 출자자 작성의 재산인도증에 의해 명확히 인정됨.

(3) 회사성립후 양수재산에 관한 사항

회사성립후 양수기로 약정한 재산은 발기인 ○○○소유의 어떠한 재산으로서 이는 회사의 영업상 필요할 뿐만 아니라 그 가격도 적정하여 그에 관한 정관의 규정은 타당하다고 인정됨.

(4)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 및 발기인의 보수에 관한 사항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과 발기인의 보수내역은 별첨계산서와 같은 바, 그 부담 및 지출은 필요 적정하다고 사료됨.

3. 부속서류

- | | |
|------------------|----|
| (1) 정관사본 | 1통 |
| (2) 현물출자재산인도증서본 | 1통 |
| (3) 설립비용 등 계산서사본 | 1통 |
| (4) 현물출자재산평가서사본 | 1통 |

위와 같이 보고함

20〇〇년 〇월 〇〇일

농업회사법인 〇〇주식회사

검사인 ○ ○ ○ (인)

7) 발기인의 창립보고서(주주 모집설립의 경우)

출처: 법무부 제공 표준서식

창립사항보고서

본인 등은 본 회사의 발기인인 바 창립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1. 본인 등은 사업목적을
 - 1)
 - 2)
 - 3)
 - 4) 위 각 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로 정하고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주, 설립시 에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주, 1주 금액은 금 원정, 자본금 원으로 하는 주식회사를 설립하고자 기획하였음
2. 본인 등은...(성명)을 발기인 대표로 선임하고 회사 성립까지의 필요사항에 있어서 발기인을 대표하기로 하였음
3. 발기인 전원이 모여 년 월 일 정관을 작성하고, 공증인가...(공증사무소명)에서 동년 월 일 인증을 받았음
4. 본인 등은 년 월 일 전원일치로 1주의 발행가액을 원으로 정하여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주 중 주만을 본인 등이 인수하고, 잔여주식 주에 대하여는 주식청약서를 마련하고 주주모집에 착수하였던 바, 년 월 일까지 잔여주식 전부에 대한 소정의 주식인수청약이 있어 주에 달하였음
5. 위 주식인수인에 대하여 년 월 일 납입받을 은행인 은행 지점에 동년 월 일까지 주금을 납입할 것을 통지하였던 바, 동년 월 일 그 납입이 완료되어 그 납입금이 발기인 대표 명의로 별단예금으로 보관되어 있음이 위 은행에서 발행한 주금납입금 보관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됨
6. 본 회사에 현물출자를 한 사람은 1명도 없고 기타 법원에 감사인의 선임을 신청할 사유를 정관에 정한 바 없으므로 그에 관한 조사를 할 필요가 없었음
7. 이상과 같이 인수와 납입 등을 완료하였으므로 본인 등은 바로 회사를 설립하고자 주식인수인 전원의 동의를 얻어 법정기간을 단축하여 금일 창립총회를 개최함

위 사항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주소)

발 기 인 : 성명(주민등록번호)
(주소)

발 기 인 : 성명(주민등록번호)
(주소)

[유례] 상법 제290조 소정사항의 정함이 있는 경우

5. 정관 제○조에 의하면 발기인이 받을 특별이익으로서 각 발기인은 그가 가지는 주식 1주에 대하여 연 ○○원에 달할 때까지 다른 주식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으나 이는 발기인의 발기행위에 대한 특별공로를 이유로 한 것으로서 동인 등의 공로 및 대외적 신용 등을 고려한다면 당해 정관의 규정은 적정하다고 사료됨.
6. 현물출자를 한 자는 발기인 ○○○이고, 출자목적재산은 ○○시 ○○구 ○○동 ○○번지 대지 ○○평방미터, 동 지상 ○○건평 ○○평방미터로서 그 가격은 시가 금○○○원 이상으로 보여 정관에 기재된 그 평가액 및 그에 부여하는 주식인수는 적정한 것으로 사료되며, 위 현물출자재산은 이미 회사에 확실히 인수되었음을 출자자 작성의 재산인도증에 의해 확인할 수 있었음.
7. 회사성립후에 양수할 것을 약정한 재산은 발기인 ○○○소유의 어떠한 물건으로서 이는 회사의 일상 영업상 필요할 뿐만 아니라 그 가격도 적정하여 그에 관한 정관의 규정은 타당하다 인정됨.
8.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과 발기인이 받을 보수내역은 별첨 계산서와 같은 바, 그 부담 및 지출은 모두 상당하다 인정됨.

* 상법 제290조 소정의 변태설립사항을 정한 경우에도 법원선임 감사인의 조사보고에 갈음하여 공증인의 조사보고 또는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갈음할 수 있다(상법 299의2)

[유례] 5. 정관에서 정한 변태설립사항은 상법 제299조의2에 해당하여 공증인의 조사·보고 및 감정인의 감정으로 법원선임 감사인의 조사·보고에 갈음할 수 있어 별첨 공증인의 조사보고서와 감정인의 감정서로서 갈음하였는바, 그 사항은 타당함.

6.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은 별첨계산서와 같은 바, 그 부담 및 지출은 모두 상당하다 인정됨.

8) 취임승낙서

출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첨부서면 예시

취 임 승 낙 서	
본인은 20○○년 ○○월 ○○일 주주총회(또는 창립총회, 이사회)에서 귀 회사의 사내이사(또는 사외이사, 기타비상무이사, 감사, 감사위원회 위원, 대표이사 등)로 선임되었는바, 그 취임을 승낙합니다. 20○○년 ○○월 ○○일	
사내이사(또는 사외이사, 기타비상무이사, 감사, 감사위원회 위원, 대표이사 등) 홍길동	인감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 귀중	

- ※ 날인된 인감은 인영대조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등기관이 조사를 합니다. 따라서 인감을 날인할 때에는 **인영이 인감날인란의 선내를 벗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양식은 주식회사뿐 아니라 모든 종류의 법인에 관하여 적용됩니다. 주식회사 이외의 다른 법인은 양식의 해당 문구를 적절히 수정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9) 이사·감사의 조사보고서

출처: 법무부 제공 표준서식

조사보고서

년 월 일 창립총회에서 본인을 이사 및 감사로 선임하였으므로 상법 제313조 규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조사 보고합니다.

1. 설립시에 발행한 주식 총수에 대한 인수의 정확 여부

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주이며, 설립 시에 발행한 주식의 총수는 주(1주의 금액 금 원)인데 그 인수 내역은 다음과 같음.

발기인이 인수한 주식 수

주식 주

년 월 일 인수 완료

주식청약인이 인수한 주식 수

주식 주

년 월 일 인수 완료

2. 인수주식에 대한 납입의 정확 여부

설립시에 발행한 주식 총수 중 주식청약인이 인수한 주식 주에 대한 주금 원의 납입이 년 월 일 완료되었는 바, 이를 그 납입을 맡은 00은행 00지점이 발행한 납입금보관증명서로 명확히 확인함.

3. 현물출자의 이행의 정확여부나 감사인 보고서의 정확여부 등은 현물출자를 한 자가 없고 정관에 상법 제290조 소정사항을 정하지 아니하여 감사인을 선임할 필요가 없었음. 그러므로 이에 대한 정확 여부를 조사할 여지가 없었음.

위와 같이 조사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주소)

이사 : (성명)
이사 : (성명)
감사 : (성명)

[유례] 정관에 변태설립사항(상법 290)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현물출자이행의 정확여부와 감사인보고서의 정확여부

이에 관한 사항은 감사인 ○○○작성의 조사보고서와 그 부속서류의 기재내용을 검토한 바, 그의 정확함을 인정할 수 있었음(법원 선임 감사인 있는 경우).

4. 현물출자 이행의 정확여부와 공증인과 감정인의 감정의 정확여부

변태설립사항이 상법 제299조의2에 해당되어 공증인 ○○○작성의 조사보고서과 감정인 ○○○작성의 감정서과 그 부속서류의 기재내용을 검토한 바, 그의 정확함을 인정할 수 있었음(공증인이 감사인의 조사보고에 갈음하는 경우).

10) 공증인의 조사보고서

출처: 법무부 제공 표준서식

공증인의 조사보고서

사 건 명 20○○파 호 모집설립조사

발 기 인 ○○○와 7

사건본인(설립중인회사)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시 ○○○구 ○○○동 ○○○번지

신 청 인 조사한 공증인 공증인가 법무법인 ○○

변호사 ○○○ ○○○시 ○○○구 ○○○동 ○○○번지

본 공증인은 설립중인 회사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의 발기인들에 의하여,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을 정관에 기재함에 따라 모집변태설립을 하게 되어, 상법 제310조 및 동법 제29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에 대한 설립비용에 대하여 20○○년 ○월 ○○일자로 위 설립중인 회사에 대한 설립비용의 타당성 여부의 조사를 완료하였으므로, 상법 제310조 및 동법 제299조의 2의 규정과 검사인의 조사보고서 등 처리요령(대법원 송무예규 제719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그 조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다 음

1. 조사를 위임한 발기인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시 ○○○구 ○○○동 ○○○번지

대표이사 ○ ○ ○

전화(-)

2. 조사의 목적

변태설립사항, 즉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을 정관에 규정함에 따라 상법 제310조 및 동법 제29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공증인으로 하여금 그 타당성을 조사하게 하기 위함.

3. 조사사항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

4. 조사결과

가. 사건본인(설립중인 회사)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는 정관 제○조에서 이 회사의 목적사업인 ○○○사업자로 지정받기 위하여 컨소시엄 구성, 각종광고, 사업계획서 작성, 각종 등록 및 인허가 등 회사설립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총액○○○원 한도내에서 회사가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증인의 조사일인20○○년 ○월○○일 현재까지 발생한 비용이 ○○○원이며, 앞으로 지출예정인 비용이 금○○○원으로써 그 합계액이 ○○원 의 범위내인 ○○○원인바,

나. 첨부된 영수증 등에 의하여 그 지출근거를 확인하였으며, 컨소시엄을 구성할 회사가 발기인 ○개 회사를 포함하여 약 ○회사에 달하고, ○○○사업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는 ○○○부장관 등의 사전인가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하며 설립시 납입자본금이 ○○○원에 달하여, 설립준비기간이 많이 소요되고 준비작업도 방대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약 ○○○원(세금, 주택채권구입비를 제외한 금액)의 설립비용은 적당한 수준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설립비용 대부분을 차지하는 금○○○원은 설립등기시에 납부할 등록세, 지방교육세, 주택채권구입비인 바, 이와 같은 세금 등은 그 산정에 객관성이 있고 납용의 위험이 없으므로 굳이 정관에 기재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회사가 부담해야할 비용임으로 별 문제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5. 공증인의 주소 및 전화번호

공증인의 명칭 : 공증인가 법무법인 ○○

공증인의 주사무소 소재지 : ○○시 ○○구 ○○동 ○○번지

대표변호사 ○○○, ○○○

담당변호사 ○○○

전화번호(-)

첨부서류

- | | |
|---------------------------|------|
| 1) 주식회사 설립에 관한 공증인의 조사보고서 | |
| 2) 공증된 정관사본 | 1부 |
| 3) 발기인들의 인감증명서사본 | 1부 |
| 4) 창립총회의사록 초안 | 각 1부 |
| 5) 설립일정 | 1부 |
| 6) 위임장 | 1부 |
| | 1부 |

20○○년 ○월 ○○일

위 신청인 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인)

서울지방법원 귀중

[주] 이 조사보고는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합의부의 관할로서 인지 1,000원을 첨부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1) 창립총회 의사록

출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첨부서면 예시

창립총회 의사록

년 월 일 시(주소)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하다.

주주총수	명, 이들의 인수주식총수	주
출석주주수	명, 이들의 인수주식수	주

발기인 대표 ...(성명)은 위와 같이 상법 제309조에 따른 소정 수의 주주가 출석하였으므로 본 총회는 유효하게 성립됨을 고하고, 의사를 진행하기 전에 의장을 선임할 것을 구한 바 만장 일치로 발기인 대표를 의장으로 선임, 동인은 그 취임을 승낙하고 의장석에 등단하여 개회를 선언한 후 다음 의안의 심의를 구하다.

제1호 의안 : 창립사항의 보고의 건

의장은 발기인을 대표하여 별지 창립총회보고서와 같이 본 창립총회까지의 경과를 소상히 설명하여 보고한 바 전원일치로 이를 승인하다.

제2호 의안 : 정관 승인의 건

의장은 정관을 낭독하고 축조설명을 한 후 그 승인 여부를 물은 바 전원일치로 원안대로 승인하다.

제3호 의안 : 이사 및 감사 선임의 건

의장은 이사 및 감사의 선임 방법을 주주일동에게 물은 바, 무기명비밀투표로 선출하기로 전원 일치되어 즉시 투표를 한즉 다음과 같이 선출되다. 단, 감사의 선임은 상법 제409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발행 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다.

사내이사 :	성명...(주민등록번호)
사내이사 :	성명...(주민등록번호)
감 사 :	성명...(주민등록번호)

위 피선거자들은 즉석에서 그 취임을 승낙하다.

제4호 의안 : 본점 설치장소 결정의 건

의장은 본 회사의 본점을 다음 장소에 설치함이 적당하다는 뜻을 설명하고 그 가부를 묻은 즉 만장일치로 승인하다.

본 점 : (주소)

제5호 의안 : 상법 제313조 소정사항 조사보고의 건

의장은 이사 및 감사로 하여금 상법 제313조 소정사항을 조사보고하게 하기 위하여 휴회한다고 선언한 다음 잠시 후 속회를 선언하다.

의장은 감사 ... (성명)으로 하여금 별첨 조사보고서와 같이 상법 제 313조 소정사항의 결과를 상세히 보고하게 한 즉, 전원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그를 승인 가결하다.

이상으로서 금일의 의안 전부를 종료하였으므로 의장은 폐회를 선언하다. (시간은 시) 위 의사의 경과요령과 결과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다음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다.

년 월 일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주소)

의장 대표이사 ○ ○ ○ (인)

사 내 이 사 ○ ○ ○ (인)

사 외 이 사 ○ ○ ○ (인)

기타비상무이사 ○ ○ ○ (인)

[유례] 창립 총회에서 정관 규정을 일부 변경하는 경우

의장은 별지 정관안을 낭독하고 축조설명을 가한 후 승인 여부를 묻은 바, 주주 ○○○로부터 정관 제○조(상호)를 당회사는 주식회사 ○○해운이라 부른다고 변경하기로 하고, 제○조 다음에 제○조로서 어떠한 내용의 규정을 삽입한후 제○조 이하의 조문 표시를 1조씩 다음 조문으로 바꾸어 표시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자는 취지의 발언이 있으므로 그의 찬부를 묻은 바, 다른 주주 전원이 그에 찬성하므로 그를 가결 확정하다.

[유례] 이사, 감사 전원이 발기인인 경우 등

의장은 상법 제313조 소정사항을 이사와 감사가 보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사, 감사가 모두 발기인이었던 관계로 그들이 상법 제313조 및 제298조에 해당하여 보고할 수 없으므로, 공증인으로 하여금 위 보고를 받기로 발기인 총회에서 결의하였으므로 선임된 공증인 ○○○으로 하여금 회사설립사항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조사보고케 하니, 공증인은 별첨 조사보고서와 같이 보고한 즉 ...중략 ... 그를 승인하다.

[유례] 이사 및 감사의 보수한도를 결정하는 경우

20○○년도 임원보수지급한도액을 ○억원으로 할 것을 만장일치로 승인하고 집행은 이사회에 위임하다.

[주] 의장은 이사로 선출되지 아니한 때에도 기명날인한다.

회사등기시 유사상호가 있어서 설립등기를 못하는 경우에는 창립총회의사록의 정관승인의 건에서 정관을 일부변경하여 결의하면 되고, 이 때 의사록의 인증문을 변경하여야 한다.

12) 이사회 의사록

출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첨부서면 예시

이사회 의사록

년 월 일 오전 시 본 회사 본점 사무실에서 이사, 감사 전원 동의로 상법 제390조 제3항 소정의 소집절차를 생략하고 다음 의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개최하다.

이사 총수 명, 출석 이사 수 명

이사들의 호선에 의하여 이사 ...(성명)이 의장으로 선출되다.

제1호 의안 : 대표이사 선임의 건

의장은 본 회사의 대표이사를 선임할 뜻을 전하고, 신중하게 협의한 결과 전원이 일치하여 다음 사람을 선임한다.

대표이사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위 선출된 대표이사는 즉석에서 취임을 승낙하다.

제2호 의안 : 본점설치장소 결정의 건

의장은 정관에 본점을 ...(특별시, 광역시, 시, 군)에 둔다고만 정해져 있으므로 그 설치장소를 정해야 한다는 뜻을 전하고, 신중하게 협의한 결과 전원이 일치하여 다음 장소에 본점을 두기로 한다.

본점 :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1번지

의장은 이상으로서 의안 전부의 심의를 종료하였으므로 폐회한다고 선언하다
(회의 종료시각 ○○시 ○○분).

위 의사의 안전,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이 의사록을 작성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다.

○○○○년 ○월 ○○일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시 ○○구 ○○동 ○○번지

의장 대표이사 ○ ○ ○ (인)

사 내 이 사 ○ ○ ○ (인)

사 외 이 사 ○ ○ ○ (인)

기타비상무이사 ○ ○ ○ (인)

3. 영농조합법인 설립·변경·해산신고 서식안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5. 19.>

영농조합법인 설립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0일	
신고인	성명(농업생산자단체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고 내용	법인명		전화번호	
	소재지			
	사업 내용	목적 및 사업		
		주사업	농업의 경영[] 농산물의 출하·유통·가공·판매 및 수출[] 농작업의 대행[] 농어촌관광휴양사업[] 농촌융복합사업[]	
		부대사업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 및 공급사업[] 영농에 필요한 종자생산 및 종균배양사업[] 농산물의 구매 및 비축사업[] 농업기계나 그 밖의 장비의 임대·수리 및 보관사업[] 소규모 관개시설의 수탁 및 관리사업[] 농업과 관련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운영[]	
		생산분야	식량[] 채소[] 과수[] 특용작물[] 축산[] 임업[] 그 밖의 분야[]	
		재배품목 및 축종		
	임원	구분	성명	
출자 규모	구분	출자자수(명)	출자액(원)	
	조합원 (농업인, 농업생산자단체)			
	준조합원 (비농업인)			
	계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출자 관련 사항	총 출자자수 및 출자 1자의 금액	
	납입방법	
	산정방법	
	조합원 1인당 출자한도	
해산 사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 전단에 따라 위와 같이 영농조합법인의 설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정관 1부 2. 조합원·준조합원 및 임원의 명부 1부 3. 창립총회의사록 1부 4. 각 조합원이 농업인이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생산자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5. 출자 1차당 금액과 조합원·준조합원별 보유 중인 출자자수를 적은 서류 1부 6. 출자자자산의 명세를 적은 서류 1부 7.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의사록(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경우만 해당하며,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영농조합법인이 승계해야 할 권리·의무의 범위가 의결 사항으로 적혀 있어야 합니다) 1부	수수료 없음
------	--	-----------

작성 방법

1. 목적 및 사업란은 설립등기신청서에 기재할 예정인 목적 및 사업의 내용을 그대로 작성합니다.
2. 생산분야와 재배품목 및 축종란은 사업유형에 농업의 경영이 포함되는 경우만 작성합니다.
3. 해산 사유란은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만 작성합니다.
4. 해당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를 이용합니다.

처리 절차

설립신고서 작성	→	접 수	→	서류 확인 및 검 토	→	결 재	→	설립신고확인증 발급
신고인		처리기관 (시장·군수·구청장)		처리기관 (시장·군수·구청장)		처리기관 (시장·군수·구청장)		처리기관 (시장·군수·구청장)

210mm×297mm[백상지 80g/㎡]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2. 5. 19.>

영농조합법인 변경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0일
신고인	성명(농업생산자단체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법 인	법인명	전화번호	
	소재지		
	변경사항	명칭[] 목적[] 사업[]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조합원 및 임원(이사와 감사를 두는 영농조합법인만 해당합니다)의 성명[]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총출자액[] 출자액의 납입방법·산정방법과 조합원 1명이 출자할 수 있는 출자액의 최고한도에 관한 사항[] 해산 사유(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신고 내용	첨부서류 참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 후단에 따라 위와 같이 영농조합법인의 설립신고사항 중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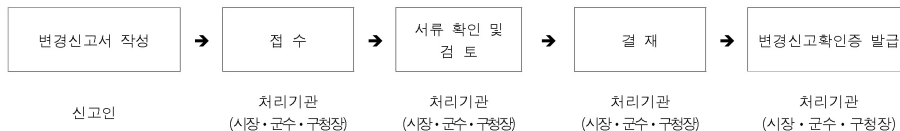
신고인
귀하

첨부서류	1. 설립신고한 사항 중 변경되는 사항을 적은 서류 1부 2. 제1호에 따른 사항을 의결한 총회의사록 등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법인 인감증명서 1부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작성 방법

해당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를 이용합니다.

처리 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22. 5. 19.>

영농조합법인 해산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0일
신고인	성명(농업생산자단체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법 인	법인명	전화번호	
	소재지		
해산 사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 후단에 따라 위와 같이 영농조합법인의 해산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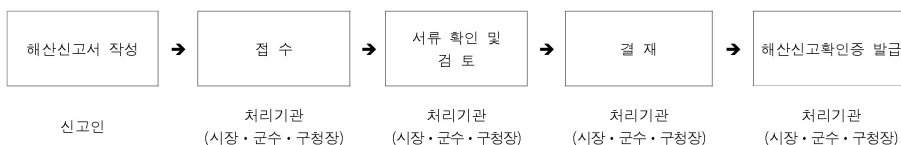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해산을 의결한 총회의사록 사본 1부 2. 해산 사유의 발생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법인 인감증명서 1부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처 리 절 차



210mm×297mm[백상지 80g/㎡]

4. 농업회사법인 설립·변경·해산신고 서식안내

■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2서식] <신설 2022. 5. 19.>

농업회사법인

합명[] 합자[] 유한책임[] 유한[] 주식[] 회사 설립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0일
------	-----	------	-----

신고인	성명(농업생산자단체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고 내용	법인명		전화번호
	소재지		
	사업 내용	목적 및 사업	
		주사업	농업의 경영[] 농산물의 출하·유통·가공·판매 및 수출[] 농작업의 대행[]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농촌융복합산업[]
		부대사업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 및 공급사업[] 영농에 필요한 종자생산 및 종균배양사업[] 농산물의 구매 및 비축사업[] 농업기계나 그 밖의 장비의 임대·수리 및 보관사업[] 소규모 관개시설의 수탁 및 관리사업[] 농업과 관련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운영[]
		생산분야	식량[] 채소[] 과수[] 특용작물[] 축산[] 임업[] 그 밖의 분야[]
		재배품목 및 축종	
	임원	직위	성명
출자 규모	구분	사원·주주의 수(명)	출자액(원)
	농업인, 농업생산자단체		
	비농업인		
	계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출자 관련 사항	총 출자좌수・출자주 식수 및 출자 1좌・1주의 금액	
	납입방법	
	산정방법	
	사원・주주 1인당 출자한도	
해산 사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 전단에 따라 위와 같이 농업회사법인의 설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정관 1부 2. 사원・주주 및 임원의 명부 1부 3. 창립총회의사록 또는 발기인총회의사록 1부 4. 각 사원・주주가 농업인이나 농업생산자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5. 출자 1좌・1주당 금액과 사원・주주별 보유 중인 출자좌수・출자주식수를 적은 서류 1부 6. 출자자신의 명세를 적은 서류 1부 7.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의사록(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경우만 해당하며,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농업회사법인이 승계해야 할 권리・의무의 범위가 의결사항으로 적혀 있어야 합니다) 1부 8. 조직변경을 의결한 총회의사록(「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라 영농조합법인이 농업회사법인으로 조직을 변경하여 설립되는 경우만 해당하며,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농업회사법인이 승계해야 할 권리・의무의 범위가 의결사항으로 적혀 있어야 합니다) 1부	수수료 없음
------	---	-----------

작 성 방 법

1. 목적 및 사업란은 설립등기신청서에 기재할 예정인 목적 및 사업의 내용을 그대로 작성합니다.
2. 생산분야와 재배품목 및 축종란은 사업 내용에 농업의 경영이 포함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3. 해산 사유란은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만 작성합니다.
4. 해당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를 이용합니다.

처 리 절 차

설립신고서 작성	→	접 수	→	서류 확인 및 검 토	→	결 제	→	설립신고확인증 발급
신고인		처리기관 (시장・군수・구청장)		처리기관 (시장・군수・구청장)		처리기관 (시장・군수・구청장)		처리기관 (시장・군수・구청장)

210mm×297mm〔백상지 80g/㎡〕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4서식] <신설 2022. 5. 19.>

농업회사법인 합명[] 합자[] 유한책임[] 유한[] 주식[] 회사 변경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0일
신고인	성명(농업생산자단체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법 인	법인명	전화번호
	소재지	
	변경사항	명칭[] 목적[] 사업[] 사무소의 소재지[] 임원의 성명[] 출자 총좌수·총주식수, 납입한 총 출자액[] 출자액의 납입방법·산정방법과 사원·주주 1명이 출자할 수 있는 출자액의 최고한도에 관한 사항[] 해산 사유(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신고내용	첨부서류 참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 후단에 따라 위와 같이 농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사항 중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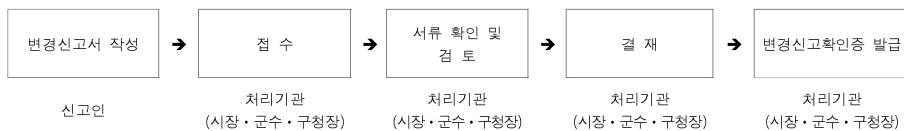
귀하

첨부서류	1. 설립신고한 사항 중 변경되는 사항을 적은 서류 1부 2. 제1호에 따른 사항을 의결한 총회의사록 등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법인 인감증명서 1부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작 성 방 법

해당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를 이용합니다.

처 리 절 차



210mm×297mm[백상지 80g/㎡]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6서식] <신설 2022. 5. 19.>

농업회사법인
합명[] 합자[] 유한책임[] 유한[] 주식[] 회사 **해산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0일
신고인	성명(농업생산자단체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법인	법인명	전화번호	
	소재지		
해산사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 후단에 따라 위와 같이 농업회사법인의 해산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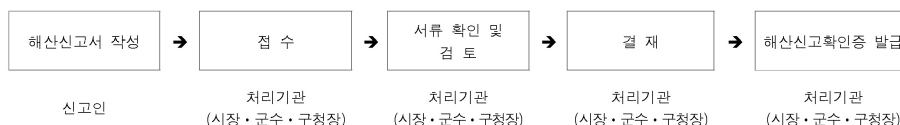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해산을 의결한 총회의사록 사본 1부 2. 해산 사유의 발생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법인 인감증명서 1부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처 리 절 차



210mm×297mm[백상지 80g/㎡]

5. 농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신청서 서식 안내

■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 3. 18.>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조해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점수번호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6쪽 중 제1쪽)

점수일

직불금 신청을 수반하지 않는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

30일

처리기간

직불금 신청을 수반하는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

90일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농업인용)

1. 일반현황

성명

국적

주민등록번호

농업인 등록번호

국내

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①

주수

주민등록주소지

우편번호

농업인

마을명

영농 이력

농업시작형태

농업종사형태

농업종사기간

영농 시작 연도 : 년

농업종사 연도 : 년

농업종사 사유

신규등록사유

②

상명

농업인 등록번호

경영주(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

경영주(외국인등록번호)

관계

농업종사 형태

농업시작형태

농업종사 기간

농업종사 연도 : 년

농업종사 사유

신규등록사유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6쪽 중 제3쪽)

3. 가족·곤충 사육시설 및 사육규모

⑤ 사육시설 현황						⑤-3 사육정보		
⑤-1 번호	사육시설 소재지	소재지 공부 면적(㎡)	시설면적(㎡)		경영 형태		사육품목(종)	사육규모(미릿수/군/㎡)
			공부	⑤-2 실제	지영	임차 기간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신청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귀하

유의사항

※ 등록한 농업경영정보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농업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에 변경등록 신청을 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농업·농촌에 관련된 용자·보조금 등의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는 등록·변경등록일부터 3년간 유효하며,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등록정보를 말소될 수 있습니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거나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등록이 말소되거나 등록정보가 정정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31조의2제2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종절지(80g/㎡)]

(6쪽 중 제5쪽)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 동의

1.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산림청과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합니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중앙회 및 그 지회사·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지회사(이하 "농업협동조합"이라 합니다)의 맞춤형 농정지원, 농정안내 서비스, 지방 농정 지원, 농업·농촌 사회 안전망 지원, 농산물의 안전생산 및 유통관리, 용자·보조금 등의 관리 등 농업경제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거부

2.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산림청과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농업경영 정보의 등록·변경 등록, 농업·농촌에 관련된 용자·보조금 등의 정보, 그 밖에 농정안내 정보를 문자메시지 또는 우편으로 받아보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거부

3.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농업·농촌에 관련된 용자·보조금 등의 지급대상자 등록 심사, 보조금 등의 부정·중복 지원 방지 등을 위한 확인 자료로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거부

4.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등록정보의 확인을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할 세무서, 공공기관, 농업협동조합에 제공하고, 종합소득, 복지급여액, 면세유류 배정정보, 농기계·농자재 거래내역 등 등록정보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거부

* 위 개인정보 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 동의는 농업경영체 등록이 만수되는 날까지 유효하며(등록정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등록발소 후에도 보조금 등 수혜 정보 관리 등을 위해 위 개인정보를 보유·이용할 수 있습니다.

* 위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급 등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용자·보조금의 지원이나 맞춤형 농정지원, 농정안내 서비스 제공, 다른 법률에 따른 농업인에 대한 지원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인 (개인정보 이용·제공·활용 동의자)	(경영주)	년 월 일
	(경영주 외 농업인)	(서명 또는 인)
	(경영주 외 농업인)	(서명 또는 인)
	(경영주 외 농업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신청인	→	접수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검토 및 확인	→
			등록부 작성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297mm×210mm[백지(80g/㎡) 또는 종지(80g/㎡)]

작성방법

1. 일반사항: 용역인과 관련한 사항을 작성합니다.
 - ①란의 경영주인 동업인은 동업경영체 내에서 공직물의 경작, 기축의 시육, 임업 등 동업경영의 의사결정 및 동업소득의 귀속 주체가 되는 동업인을 말합니다.
 - * 신규등록 사유란에는 신규등록 사유(분리, 귀농, 상속 및 기타)를 작성합니다.
 - ②란의 경영주 외의 동업인은 경영주를 제외한 동업인을 말합니다.
 - * 경영주의 기축으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 주민등록표에 등재(변경등록)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연속적으로 경영주의 가족으로 함께 등록된 사람(부득이한 사유로 세대를 달리하는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배우자 또는 경영주와 혼인한 - 경영주의 주소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항의 농촌이나 같은 법 제61조의 준농촌에 위치한 경우로서 경영주의 가족원인 농업종사자(경영주의 주소가 농촌·준농촌이 아닌 지역에 위치한 경우에는 가족원인 농업종사자의 영농시설이 확인된 경우로 한정함)
 - 「국민연금법」 제8조의 사업장가입자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의 직장가입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단, 18세 미만 제외)
 - * 경영주의 가족원이 아닌 농업종사자인 경우 경영주와 1년 중 90일 이상 농업경영이나 농지경작활동의 고용인으로 종사한다는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서면 계약서를 제출한 사람
 - * 경영주와의 관계: 가족원인 경우 주민등록표상 관계를 자동으로 반영하며, 고용인의 경우 직접 작성합니다.
 - ③란의 공동경영주 여부란은 ② 경영주 외의 동업인인 중 경영주와의 관계란에 '배우자'로 기입한 경영주 외의 동업인에 한해 공동경영주 등록 희망 여부에 따라 0 또는 X로 표시합니다.
2. 농지 등 및 농작물 지배 : 해당 농업경영체가 경작하고 있는 모든 농지 등의 정보를 작성합니다.
 - ④란은 필지별로 나누어 농지정보 순서대로 작성합니다.
 - ④-1란은 해당 지번의 실제 이용형태에 따라 논, 밭, 과수원, 초지 및 기타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 *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 중 다년생개량목초(多年生改良牧草)의 지배에 이용되거나 시료작물을 지배에 이용되는 초지는 ④-1의 실제 지목을 '초지'로 등록합니다.
 - ④-2란은 해당 지번의 면적을 아래와 같이 작성합니다.
 - 자경·임차: 공부상 면적 기준, 자경 및 임차에 해당되는 각각의 면적
 - 임대면적 및 임차기간은 농지대장 상의 임대현황, 임대차계약서(농지 외) 상의 내용을 작성합니다.
 - 실제경작면적: 공부상 면적 중 실제 경작(농작물 식재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면적(공부상면적 $\geq$ 실제경작면적+휴경면적+배경면적)
 - 휴경면적: 농작물 지배가 가능한 토지이지만, 일시적으로 작물을 재배하고 있지 않은 토지 면적(다만, 다음 작물의 재배를 위해 일시적으로 작물을 재배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
 - 배경면적: 점목 등의 점유, 시설물 및 모지 등의 시설이 설치되어 상당한 인력과 시간을 투입하지 않으면 불가능하게 농지형상이 변경된 토지 면적
 - ④-3란은 해당 지번의 시설종류와 시설면적을 작성합니다(반포기림).
 - 시설종류: ① 온실(유리), ② 온실(경질판), ③ 온실(비닐), ④ 옥묘장(유리), ⑤ 옥묘장(경질판), ⑥ 옥묘장(비닐), ⑦ 제배사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시설면적(m): 해당 시설의 면적을 작성합니다.
 - ④-4란은 해당 지번의 품목별 재배면적을 작성합니다.
 - 제배품목: 해당 지번의 농지에 연간 재배하는 모든 제배품목을 적습니다.
 - 제배면적: 노지인 경우 노지란, 시설인 경우 시설란에 적습니다.
3. 기축·군축 시육시설 및 사용규모
 - ⑤란은 기축·군축 등 시육시설의 소재지, 시설면적, 경영 형태 및 용도(축사 또는 부대시설)를 적습니다.
 - ⑤-1란은 필지별로 나누어 시설정보 순서대로 작성합니다. 1개의 시설이 여러 필지에 걸쳐 위치한 경우 동일한 시설번호를 적습니다.
 - ⑤-2란은 실제 시육시설의 총 면적을 적습니다. 다만, 축산업허가증 또는 기축사육업등록증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증명서에 기재된 사육시설 면적 또는 부화용 알 생산시설 면적을 적습니다.
 - ⑤-3란은 사육하고 있는 기축 또는 군축의 품목(종) 및 신청일 현재의 사육규모(마릿수/군/m²)를 적습니다(다만, 부화업인 경우는 1회 평균 일란 개수를 적습니다).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4. 3. 18.>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농업법인용)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조해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8쪽 중 제1쪽)	
접수일	처리기간	직불금 신청을 수반하지 않는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	직불금 신청을 수반하는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	30일
				90일

1. 일반현황

형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합명 []합자 []유한책임 []유한 []주식)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설립연도	전화번호	팩스	전자우편	
① 법인현황	본점	(마을명:)		
	법인 소재지	본점	(마을명:)	
		본점	(마을명:)	
주요사업	[]생산 []가공 []유통 []수출 []농업서비스 []관광·휴양 []그 밖의 사업 []미출범인			

② 대표자	성명	국내	주인등록번호	
	전화번호	국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③ 구성원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직책	농업인 여부	증빙서류	④ 출자규모	구 분	출자자 수(명)	출자액(만원)
							농업인		
							비농업인		
							계		

⑤ 상용근로자 수	[]근로자 없음	내 국인	명	외 국인	명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2. 2014년 12월 25일 제정

(8쪽 중 제2쪽)

[illegible]

297mm×210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8쪽 중 제3쪽)

3. 기축·곤충 사육시설 및 사육규모

⑦ 사육시설 현황					⑦-3 사육정보	
⑦-1 번호	사육시설 소재지	소재지 공부 면적(㎡)	시설면적(㎡)		경영 형태	사육규모 (미릿수/군/㎡)
			공부	⑦-2 실제	임차 기간 (...~...)	

4. 농산물의 생산·유통 및 가공(작성기준: 전년도 연간)

⑧-1 주요 품목		⑧-2 재배면적 (사육규모)	⑧-3 생산량	⑧-4 판매량	⑧-5 판매금액	⑧-6 판매처별 점유비율						⑨ 가공	품목	판매금액
수량	채소	과수	농림 축산	기타	정부공공비축	농협	민간도정 가공업체	직거래	기타					
⑧ 생산물 · 유통	식량					정부공공비축	농협계통출하	수집상	직거래	기타				
	채소					도매시장	농협계통출하	수집상	직거래	기타				
	과수					도매시장	농협계통출하	수집상	직거래	기타				
	농림 축산					도매시장	농협계통출하	수집상	직거래					
	기타					도매시장	농협계통출하	민간계통출하	유통업체	기타				

207mm×210mm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8쪽 중 제5쪽)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전산시스템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신청인의 봉지 소재지 및 가족 사유시설 소재지의 토지임야·임야대장, 건축물대장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공통주택가격 등 고정자산 정보 소득금액증명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등 복지 급여 수급정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농업경영 및 보조금 관련 교육 이수 정보 추계농업경영인 선정 정보 농업에 관련된 용자·보조금 등의 수량정보 축산업 등록제·허가제 및 가축 및 축산물 이력제에 관한 정보 농업용 면세유류의 유통배 배정에 관한 정보 친환경농산물 인증 정보 농산물 안전성 조사 정보 토양 환경조사 정보 농약 판매 이력 관리에 관한 정보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농업안전정보시스템	
	농업안전정보시스템	
	농업안전정보시스템	
	농업안전정보시스템	
	농업안전정보시스템	
	농업안전정보시스템	
	농업안전정보시스템	
	농업안전정보시스템	
	농업안전정보시스템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에 대한 동의

신청인이 신청서에 기재된 경영주인 농업인, 경영주 외 농업인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농업인은 농업경영체 등록담당 공무원이 농업경영체 등록업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위의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데 동의하며, 담당 공무원이 해당 보조금 등의 지급대상 자격 및 신청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위의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데 동의합니다.

※ 위 확인사항 중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공통주택가격 확인서 및 보조금 수량정보는 신청인의 동의 없이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을 알려드립니다.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또는 농림축산식품부가 관리하는 각종 전산시스템을 통해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관련 법에 따른 용자·보조금의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자)	(대표자)	(대표자 외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	(대표자 외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	(대표자 외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	(대표자 외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	년 월 일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종질지(80g/㎡)]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

1.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신림청과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중앙회 및 그 자회사·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이하 "농업협동조합"이라 한다)의 담당직원, 담당지원, 농정안내 서비스, 지방 농정 지원, 농업·농촌 사회 안전망 지원, 농산물의 안전생산 및 유통관리, 용자·보조금 등의 관리 등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거부
2.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신림청과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농업경영정보의 등록·변경등록, 농업·농촌에 관련된 용자·보조금 등의 정보, 그 밖에 농정안내 정보를 문자메시지 또는 우편으로 받아보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거부
3.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농업·농촌에 관련된 용자·보조금 등의 지급대상자 등록 심사, 보조금 등의 부정·중복 지원 방지 등을 위한 확인 자료로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거부
4.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농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등록정보의 확인을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할 세무서, 공공기관, 농업협동조합에 제공하고, 종합소득, 복지급여액, 종합소득, 복지급여액, 면세유류 배정정보, 농기계·농자재 거래내역 등 등록정보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거부

* 개입정도의 차이로 인해 제3자(가족·친구 등)의 개입 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444 445 446 447 448 449 450 451 452 453 454 455 456 457 458 459 460 461 462 463 464 465 466 467 468 469 470 471 472 473 474 475 476 477 478 479 480 481 482 483 484 485 486 487 488 489 490 491 492 493 494 495 496 497 498 499 500 501 502 503 504 505 506 507 508 509 510 511 512 513 514 515 516 517 518 519 520 521 522 523 524 525 526 527 528 529 530 531 532 533 534 535 536 537 538 539 540 541 542 543 544 545 546 547 548 549 550 551 552 553 554 555 556 557 558 559 560 561 562 563 564 565 566 567 568 569 570 571 572 573 574 575 576 577 578 579 580 581 582 583 584 585 586 587 588 589 590 591 592 593 594 595 596 597 598 599 600 601 602 603 604 605 606 607 608 609 610 611 612 613 614 615 616 617 618 619 620 621 622 623 624 625 626 627 628 629 630 631 632 633 634 635 636 637 638 639 640 641 642 643 644 645 646 647 648 649 650 651 652 653 654 655 656 657 658 659 660 661 662 663 664 665 666 667 668 669 670 671 672 673 674 675 676 677 678 679 680 681 682 683 684 685 686 687 688 689 690 691 692 693 694 695 696 697 698 699 700 701 702 703 704 705 706 707 708 709 710 711 712 713 714 715 716 717 718 719 720 721 722 723 724 725 726 727 728 729 730 731 732 733 734 735 736 737 738 739 740 741 742 743 744 745 746 747 748 749 750 751 752 753 754 755 756 757 758 759 760 761 762 763 764 765 766 767 768 769 770 771 772 773 774 775 776 777 778 779 780 781 782 783 784 785 786 787 788 789 790 791 792 793 794 795 796 797 798 799 800 801 802 803 804 805 806 807 808 809 810 811 812 813 814 815 816 817 818 819 820 821 822 823 824 825 826 827 828 829 830 831 832 833 834 835 836 837 838 839 840 841 842 843 844 845 846 847 848 849 850 851 852 853 854 855 856 857 858 859 860 861 862 863 864 865 866 867 868 869 870 871 872 873 874 875 876 877 878 879 880 881 882 883 884 885 886 887 888 889 890 891 892 893 894 895 896 897 898 899 900 901 902 903 904 905 906 907 908 909 910 911 912 913 914 915 916 917 918 919 920 921 922 923 924 925 926 927 928 929 930 931 932 933 934 935 936 937 938 939 940 941 942 943 944 945 946 947 948 949 950 951 952 953 954 955 956 957 958 959 960 961 962 963 964 965 966 967 968 969 970 971 972 973 974 975 976 977 978 979 980 981 982 983 984 985 986 987 988 989 990 991 992 993 994 995 996 997 998 999 1000

신 청 인		영 령	
신청인 (개인정보 이음·제공·활용 동의자)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대표자 외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대표자 외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대표자 외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대표자 외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접수	검토 및 확인	등록부 작성
신청인	(농·수·축·림업 등·면·연·농·목·수산·임업경영인) 또는 (농·수·축·림업 등·면·연·농·목·수산·임업경영인)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종지지(80g/㎡)]

(8쪽 중 제7쪽)

작성방법

1. 일반현황: 농업법인과 관련한 사항을 작성합니다.

- ①란은 법인등기부상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 설립년도, 연락처 및 법인 소재지를 적습니다.
- * 전화번호: 팩스 및 전자우편은 법인사무소에서 이용하는 것을 적되, 법인이 소유·이용하는 것이 없는 경우에는 법인대표가 사용하는 것을 적습니다.
- * 주요사업은 장관으로 정한 법인의 주요사업에 해당하는 []란에 √ 표시를 하되, 중복선택이 가능합니다.
- * 제철마을 등 마을단위로 농업법인을 만든 경우에는 마을법인에 √ 표시를 합니다.
- ②란은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및 주민등록지 주소를 적습니다.
- ③란은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구분하여 작성하되, 영농조합법인은 대표자 포함 농업인 5인 이상, 농업회사법인은 등기이사(또는 임무집행자)와 농업인 출자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직책, 농업인 여부 및 중빙 서류(농업경영체 증명서·농업인 확인서)를 적습니다.
- ④란의 출자구조는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조합원(농업인)과 준조합원(비농업인),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농업인과 비농업인을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 ⑤란은 출자자가 아닌 일반인으로 고용계약기간 1년 이상인 임금근로자의 수를 적습니다.

2. 농지 등 및 농작물 재배: 해당 농업경영체가 경작하고 있는 모든 농지 등의 정보를 작성합니다.

- ⑥란은 필지별로 나누어 농지정보 순서대로 작성합니다.
- * ⑥-1란은 해당 지반의 실제 이용형태에 따라 논, 밭, 과수원, 초지 및 기타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 *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 중 다년생개량목초(多年生改良牧草)의 재배에 이용되거나 사료작물을 재배에 이용되는 초지는 ⑥-1의 실제 지목을 '초지'로 등록합니다.
- ⑥-2란은 해당 지반의 면적을 아래와 같이 작성합니다.
- 지경·임차: 공부상 면적 기준, 지경 및 임차에 해당되는 각각의 면적
- * 임차면적 및 임차기간은 농지대장 상의 임차현황, 임대차계약서(농지 외) 상의 내용을 적습니다.
- 실제경작면적: 공부상 면적 중 실제 경작(농작물 식재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면적(공부상면적 $\geq$ 실제경작면적+휴경면적+배경면적)
- 휴경면적: 농작물 재배가 가능한 토이지만, 일시적으로 작물을 재배하고 있지 않은 토지 면적(다만, 다음 작물의 재배를 위해 일시적으로 작물을 재배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
- 배경면적: 담목 등의 점유, 시설물 및 모지 등의 시설이 설치되어 상당한 인력과 시간을 투입하지 않으면 불가능하게 농지형상이 변경된 토지 면적
- ⑥-3란은 해당 지반의 시설종류와 시설면적을 작성합니다(빈호기입).
- 시설종류: ① 온실(유리), ② 온실(경질판), ③ 온실(비닐), ④ 육묘장(유리), ⑤ 육묘장(경질판), ⑥ 육묘장(비닐), ⑦ 재배사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시설면적(m^2): 해당 시설의 면적을 적습니다.
- ⑥-4란은 해당 지반의 품목별 재배면적을 작성합니다.
- 재배품목: 해당 지반의 농지에 연간 재배하는 모든 품목을 적습니다.
- 재배면적: 노지인 경우 노지란, 시설인 경우 시설란에 적습니다.

3. 가축·곤충 사육시설 및 사육규모

- ⑦란은 가축·곤충 사육시설의 소재지, 소재지 공부면적, 경영형태 및 용도(축사 또는 부대시설)를 적습니다.
- ⑦-1란은 필지별로 나누어 시설정보 순서대로 작성합니다. 1개의 시설이 여러 필지에 걸쳐 위치한 경우 동일한 시설번호를 적습니다.
- ⑦-2란은 실제 사육시설의 총면적을 적습니다. 다만, 축산허가증 또는 가축사육면허증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증명서에 기재된 사육시설 면적을 적습니다.
- ⑦-3란은 사육하고 있는 가축 또는 곤충의 품목(종) 및 등록신청일 현재의 사육규모(마릿수/군/㎡)를 적습니다(다만, 부화업인 경우는 1회 평균 입란 개수를 적습니다).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작성방법

4. 농산물의 생산·유통 및 가공(작성기준: 전년도 연간)

- ①란은 전년도에 생산·유통한 농산물의 연간 실적을 적습니다.
- ①-1란은 전년도 생산품목, 유통·판매 등 최근 농산물의 품목, 주요 서비스 종류를 적습니다.
- ①-2란은 ①-1란에 기재한 주요 품목의 전년도 총 재배면적(사육규모)을 적습니다. 재배면적이 없는 법인의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 ①-3란은 ①-1란에 기재한 주요 품목의 전년도 총 생산량을 적습니다. 생산 실적이 없는 법인의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 ①-4란은 ①-1란에 기재한 주요 품목의 전년도 총 판매량을 적습니다.
- ①-5란은 ①-1란에 기재한 주요 품목의 총 판매금액을 만원 단위로 적습니다.
- ①-6란은 ①-5란에 기재한 주요 품목의 총 판매금액 중 판매처별 점유비율을 백분율(%)로 적습니다.
- ②란은 전년도에 농산물을 주원료로 가공하여 판매한 품목의 명칭과 연간 판매금액을 만원 단위로 적습니다.

5. 소득·자산·부채(작성기준일: 전년도 12월 31일)

- ③란은 전년도의 농업소득 총액을 적습니다.
- ④란은 아래의 전년도 농업 외 소득 금액의 연간 총액을 적습니다.
- 어업, 농산물 가공업, 농업서비스, 제조업 등 기타 산업 종사를 통해 얻은 소득 금액
 - 농업 외 산업의 종사로 지급받은 임금 및 다른 농가에 고용되어 지급받은 소득 금액
 - 임대수입(농지, 대지, 시설물, 대농구 등), 이자·배당수입, 유가증권 매매차익 등의 금액
 - 농업보조금, 실업수당, 산업재해보험금, 기초연금, 같이 실시 않는 가족 또는 친인척 등 다른 가구로부터 정기적으로 받은 용돈·생활비 등
 - 겸직으로 인한 수입(축의금, 조의금 등), 퇴직일시금, 사근보상금, 이주인 주거대책비 일시금, 세금 환급금, 사례금 등 비정기적으로 정부, 공공기관, 다른 가구 등으로부터 얻은 소득금액
- ⑤란은 아래의 자산 총액을 적습니다.
- 토지, 건물, 기계·기구 및 비품 등 고정자산의 금액
 - 현금, 예금, 저축성 보험금 등 금융자산의 금액
 - 미채분 농협신물, 미사용 구입자재 등 재고자산의 금액
- ⑥란은 아래의 부채 총액을 적습니다.
- 생산상 자금 중 영농투자 확대(경작지, 건물, 기계, 비료, 농약, 동식물, 사료 구입 등)를 위해 차입한 부채의 금액
 - 가계운영을 위한 생산상 자금(주거용 건물), 문화융합비, 관상제비, 의료비, 교육비, 기타 생활비 등 가계운영을 위해 차입한 부채의 금액
 - 생산상 자금 중 겸업활동(토지·건물·기계 구입, 그 밖의 겸업활동을 위한 지출)을 위해 차입한 부채의 금액
 - 토지, 건물 등을 빌려주고 받은 임대차보증금(전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 재산증식을 위한 생산성 자금(겸업 및 영농활동과 관계없이 재산증식을 위한 토지, 임야 등의 부동산 구입)을 위한 부채, 채무 보증으로 대신 상환하는 부채 등의 금액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절지(80g/㎡)]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4. 3. 18.>

농업경영체 변경등록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신청	30일
			※ 다만, 보조금 신청을 수반하는 경우	90일

대상 농업경영체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성명(법인명·대표자명)
	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

제출 증명 자료	
-------------	--

변경신청 내용

기존 등록 내용	변경신청 내용

※ 기존에 등록한 사항(왼쪽란)에 대해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을 변경신청 내용(오른쪽란)에 기입합니다.

신 청 인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휴대전화번호)	경영주 또는 법인과 관계
	주소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의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귀하

유의사항

- 신청인은 변경신청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뒤쪽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데에 동의한 경우에는 해당 증명 자료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변경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인은 경영주 또는 법인과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주민등록등본 등)와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다만, 뒤쪽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데에 동의한 경우에는 신분증명서의 제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등록된 농업경영정보를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등록한 농업경영정보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에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농업·농촌에 관련된 용자·보조금 등의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는 등록·변경등록일부터 3년간 유효하며,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등록정보가 말소될 수 있습니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거나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등록이 말소되거나 등록정보가 정정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31조의2제2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전산시스템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신청인의 농지 소재지 및 가족 사육시설 소재지의 토지대장·임야대장, 건축물대장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자동차등록원부 등 고정자산 정보	
소득금액증명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등 복지 급여 수급정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농업경영 및 보조금 관련 교육 이수 정보	교육인력포털시스템(agriedu), 해당 개별 교육관리시스템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정보	후계농/우수후계농업경영인시스템
농업에 관련된 용자·보조금 등의 수령정보	농림사업정보시스템, 해당 개별 사업관리시스템
축산업 등록제·허가제 및 가축 및 축산물 이력제에 관한 정보	
농업용 면세유류의 유종별 배정에 관한 정보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
친환경농산물 인증 정보	세이프큐(SAFE Q) 정보시스템, 식품형성종합시스템
농산물 안전성 조사 정보	토양환경정보시스템(흙토람)
토양 환경조사 정보	농약안전정보시스템
농약 판매 이력 관리에 관한 정보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에 대한 동의

신청인(이 신청서에 기재된 경영주인 농업인, 경영주 외 농업인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은 농업경영체 등록담당 공무원이 농업경영체 등록업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위의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데 동의하며, 담당 공무원이 해당 보조금 등의 지급대상 자격 및 신청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위의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 하는 데 동의합니다.

※ 위 확인사항 중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및 보조금 수령정보는 신청인의 동의 없이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을 알려드립니다.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또는 농림축산식품부가 관리하는 각종 전산시스템을 통해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관련 법에 따라 용자·보조금의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자)	(경영주 또는 법인 대표자)	년 월 일
	(경영주 외 농업인 또는 법인 조합원·등기이사) (경영주 외 농업인 또는 법인 조합원·등기이사)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 동의

1.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산림청과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합니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중앙회 및 그 자회사·농협경제지회회사 및 그 자회사(이하 "농업협동조합"이라 합니다)의 맞춤형 농정지원, 농정안내 서비스, 지방 농정 지원, 농업·농촌 사회 안전망 지원, 농산물의 안전생산 및 유통관리, 용자·보조금 등의 관리 등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거부

2.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산림청과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농업경영정보의 등록·변경등록, 농업·농촌에 관련된 용자·보조금 등의 정보, 그 밖에 농정안내 정보를 문자메시지 또는 우편으로 받아보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거부

3.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농업·농촌에 관련된 용자·보조금 등의 지급대상자 등록 심사, 보조금 등의 부정·중복 지원 방지 등을 위한 확인 자료로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거부

4.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등록정보의 확인을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할 세무서, 공공기관, 농업협동조합에 제공하고, 종합소득, 복지급여액, 면세유류 배정정보, 농기계·농자재 거래내역 등 등록정보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거부

※ 위 개인정보 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 동의는 농업경영체 등록이 말소되는 날까지 유효하며(등록정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등록말소 후에도 보조금 등 수혜 정보 관리 등을 위해 위 개인정보를 보유·이용할 수 있습니다.

※ 위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급 등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용자·보조금의 지원이나 맞춤형 농정지원, 농정안내 서비스 제공, 다른 법률에 따른 농업인에 대한 지원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인 (개인정보 이용·제공·활용 동의자)	(경영주 또는 법인 대표자)	년 월 일
	(경영주 외 농업인 또는 법인 조합원·등기이사) (경영주 외 농업인 또는 법인 조합원·등기이사)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접수	→	검토 및 확인	→	등록부 작성
-------------	---	----	---	---------	---	--------

신청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호의4서식] <개정 2020. 8. 25.>

(앞쪽)

농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확인서					
1.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최초등록일자		최종변경일자		
2. 경영주 (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경영주(법인 및 대표자) 변경이력 포함 []경영주(법인 및 대표자) 변경이력 미포함				
3. 경영주 외 농업인 (법인의 경우 법인 구성원)	성명	생년월일	공동경영주 여부[]		
	경영주 외 농업인 변경이력 포함 [], 미포함 []				
4. 주소 (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					
5. 농지 등 및 농작물 재배	필지수	농지 등 면적(㎡)			등록정보 없음
		공부	실제경작	휴경	
6. 임야 및 임업경영	필지수	임야면적(㎡)			등록정보 없음
		공부	실제경작	휴경	
7. 가축·곤충 사육시설 및 사육규모	사육시설 소재지수	소재지 공부면적	사육시설 면적(㎡)		등록정보 없음
			공부	실제	
8. 정부보조·융자금 등 농업 관련 정보 현황	직불금 정보 있음[], 없음 []		정부보조·융자금 정보 있음[], 없음 []		친환경 등 인증정보 있음[], 없음 []
	교육이수 정보 있음[], 없음 []		후계농업경영인 선정정보 있음[], 없음 []		농업(임업)용 면세유류 배정량 있음[], 없음 []
위 농업경영체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가 등록(변경등록)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산림청장					
직인					
※ 농어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일부터 14일 이내에 등록 관할기관에 변경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된 정보는 등록 관할기관을 방문하거나 전화(0000-0000)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000.00.00)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 본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는 농업인(농업법인)이 자율적으로 제출한 자료에 근거하여 등록된 정보로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 공동경영주 여부는 '경영주 외 농업인'인 경영주의 배우자가 공동경영주로 등록한 경우에만 표시됩니다.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중 '농지 등 및 농작물 재배 정보'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임야 및 임업경영 정보'는 산림청 담당으로 등록 정보에 관한 문의는 경영주 농업인 주소지(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담당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5~8 항목은 등록정보가 있을 경우 표시되며, 상세정보는 뒤쪽의 항목별 상세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등록·변경등록된 농업경영정보는 등록·변경등록일부터 3년간 유효하며,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등록정보가 말소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호의4서식]

(뒤쪽)

「항목별 상세현황」

※ 등록정보가 있음에도 신청인이 미표시에 √ 표시를 하는 경우 표시되지 않습니다.

5. 농지 등 및 농작물 재배 (삭제 필지 []표시, []미표시), [] 전체 미표시

번호 (등록/삭제)	농지 등 소재지	지목		경영 형태	농지 등 면적(㎡)			품목별 재배면적(㎡)				등록 일자	삭제 일자	
		공부	실제		공부	실제 경작	미이용 휴경	배경	재배 품목	노지 면적	시설 종류			면적

6. 임야 및 임업경영 (삭제 필지 []표시, []미표시), [] 전체 미표시

번호 (등록/ 삭제)	소재지	경영방식		경영형태	임야면적(㎡)			
		임목생산	임산물 재배		공부	실제 경영	미이용	
							휴경	폐경
재배면적(㎡)		산림경영계획			등록일자			
품목	면적		인가번호	경영계획구 명칭	계획기간	경영계획구 면적	삭제일자	
	노지	시설						

7. 가축·곤충 사육시설 및 사육규모 (삭제 시설 []표시, []미표시), [] 전체 미표시

사육 시설						사육 정보		등록 일자	삭제 일자	
번호 (등록/ 삭제)	사육시설 소재지	소재지 공부면적 (㎡)	시설 면적(㎡)		경영 형태	용도	사육품목 (종)			사육 규모 (마릿수/군/㎡)
			공부	실제						

8. 정부보조·융자금 등 농업관련 정보 현황

정부보조·융자금 및 인증 현황([]표시, []미표시)

연도	농지 번호	정부보조·융자금(천원)						친환경 등 인증 정보						
		직불금				정책 사업명	면적 (㎡)	지원 비율	지원금		인증 종류	인증 품목	인증 면적 (㎡)	
		기본	경관 보전	친환 경	경영 이양				보조 금	융자 금				
농업(임업)경영 관련 교육 이수 및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현황([]표시, []미표시)														
성명	교육 이수 정보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정보								
	교육기관		교육과정명		교육기간	종류			품목			선정 연도		
농업(임업)용 면세유류 배정량([]표시, []미표시)														
성명	유종별 배정량(ℓ)													
	합계	휘발유	경유	등유	윤활유	중유	가스	부생연료유1호						

210mm×297mm[백상지 80g/㎡]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호의5서식] <개정 2020. 8. 25.>

농업경영체 증명서																		
1.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30%; padding: 2px;">최초등록일자</td> <td style="width: 30%;"></td> <td style="width: 30%; padding: 2px;">최종변경일자</td> <td style="width: 10%;"></td> </tr> </table>			최초등록일자		최종변경일자												
최초등록일자		최종변경일자																
2. 경영주 (법인의 경우 대표자)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30%; padding: 2px;">성명</td> <td style="width: 30%;"></td> <td style="width: 30%; padding: 2px;">생년월일 (법인의 경우 미표시)</td> <td style="width: 10%;"></td> </tr> <tr> <td style="padding: 2px;">법인명</td> <td></td> <td style="padding: 2px;">법인등록번호</td> <td></td> </tr> </table>			성명		생년월일 (법인의 경우 미표시)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성명		생년월일 (법인의 경우 미표시)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3. 경영주 외 농업인 (법인의 경우 구성원)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30%; padding: 2px;">성명</td> <td style="width: 30%; padding: 2px;">생년월일</td> <td style="width: 40%; padding: 2px;">공동경영주 여부[]</td> </tr> <tr> <td style="padding: 2px;">성명</td> <td style="padding: 2px;">생년월일</td> <td style="padding: 2px;">공동경영주 여부[]</td> </tr> <tr> <td style="padding: 2px;">성명</td> <td style="padding: 2px;">생년월일</td> <td style="padding: 2px;">공동경영주 여부[]</td> </tr> <tr> <td style="padding: 2px;">성명</td> <td style="padding: 2px;">생년월일</td> <td style="padding: 2px;">공동경영주 여부[]</td> </tr> <tr> <td style="padding: 2px;">성명</td> <td style="padding: 2px;">생년월일</td> <td style="padding: 2px;">공동경영주 여부[]</td> </tr> </table>			성명	생년월일	공동경영주 여부[]	성명	생년월일	공동경영주 여부[]	성명	생년월일	공동경영주 여부[]	성명	생년월일	공동경영주 여부[]	성명	생년월일	공동경영주 여부[]
성명	생년월일	공동경영주 여부[]																
성명	생년월일	공동경영주 여부[]																
성명	생년월일	공동경영주 여부[]																
성명	생년월일	공동경영주 여부[]																
성명	생년월일	공동경영주 여부[]																
4. 주소 (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산림청장 직인 ※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등록 관할기관에 변경등록 신청을 해야 하며, 등록된 정보는 관할 담당기관을 방문하거나 전화(0000-0000)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000.00.00)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 본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는 농업인(농업법인)이 자율적으로 제출한 자료에 근거하여 등록된 정보로서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 공동경영주 여부는 '경영주 외 농업인'인 경영주의 배우자가 공동경영주로 등록한 경우에만 표시됩니다. ※ 등록·변경등록된 농업경영정보는 등록·변경등록일로부터 3년간 유효하며,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등록정보가 말소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m²]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4서식] <개정 2024. 3. 18.>

제 호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정정, 말소) 통지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2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3제2항에 따라 년 월 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정정, 말소)했음을 통지합니다.

당사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처분결과 및 사유				

※ 위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제1항에 따라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문의전화:)

년 월 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산림청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종질지(80g/㎡)]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5서식] <개정 2024. 3. 18.>

공고 제 호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정정, 말소) 공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3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정정, 말소)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성명 (법인명)	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	처분결과 및 사유

위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제1항에 따라 등록정보 (정정, 말소) 공고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산림청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6호의6서식] <신설 2020. 8. 25.>

(앞쪽)

농업경영체 등록말소확인서			
1.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최초등록일자		말소일자
2. 경영주 (농업인·농업법인)	성명 (법인명 및 대표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경영주(법인 및 대표자) 변경이력 표시		
	주소(농업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		
3. 경영주 외 농업인 (농업법인의 경우 고용 농업인)	성명		생년월일
	[] 경영주 외 농업인 변경이력 표시		공동경영주 여부[]
4. 농지 및 농작물 재배	말소정보 있음		말소정보 없음
5. 임야 및 임업경영	말소정보 있음		말소정보 없음
6. 가축·곤충 사육시설 및 규모	말소정보 있음		말소정보 없음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3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말소를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산림청장 직인 ※ 본 말소정보는 농업인(농업법인)이 자율적으로 제출한 자료에 근거하여 등록된 정보로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중 '농지 및 농작물 정보'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임야 및 임업경영 정보'는 산림청 담당으로 등록정보에 관한 문의는 경영주 농업인 주소지(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담당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4-6 항목의 상세정보는 뒤쪽의 항목별 상세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6호의6서식]

(뒤쪽)

「항목별 상세현황」

4. 농지 및 농작물 재배 ([] 전체 미표시)

번호	농지 소재지	지목		경영 형태	농지면적(㎡)				품목별 재배면적(㎡)				등록 일자	삭제 일자
		공부	실제		공부	실제 경작	미이용		재배 품목	노지 면적	시설			
							휴경	폐경			종류	면적		

5. 임야 및 임업경영 ([] 전체 미표시)

번호	소재지		경영방식		경영형태	임야면적(㎡)			
			임목생산	임산물 재배		공부	실제 경영		미이용
	휴경	폐경							
	재배면적(㎡)			산림경영계획					등록일자
	품목	면적		인가번호	경영계획구 명칭	계획기간	경영계획구 면적	삭제일자	
		노지	시설						

6. 가축·곤충 사육시설 및 규모 ([] 전체 미표시)

사육시설							사육 정보		등록 일자	삭제 일자
번호	사육시설 소재지	소재지 공부면적 (㎡)	시설 면적(㎡)		경영 형태	용도	사육품목 (종)	사육 규모 (마릿수/군/ ㎡)		
			공부	실제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7서식] <개정 2020. 8. 25.>

이 의 신 청 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10일
이의신청 농업경영체	성 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휴대폰번호)	
처분내용	통지서 (공고문) 번호	통지(공고) 일자	
	처분결과 및 사유		
이의신청 내용	의 건		
	증빙서류 목록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4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법인의 대표)

(서명 또는 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산림청장

귀하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산림청장 심사·결정	→	결 재	→	결과 통보
신청인				처 리 기 관 : 주소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과 사무소 또는 산림청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8서식] <개정 2025. 9. 19.>

이 의 신 청 심 사 결 정 서

이의신청 농업경영체	성 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이의신청 내용	통지서 (공고문) 번호	통지(공고) 일자		
	처분내용	처분결과 및 사유		
	이의신청 의견			
심사결정	결 정	(수용, 기각)		
	사 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4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 이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은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는 원처분(原處分: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당초의 처분을 말합니다)을 대상으로 하고, 이의신청 결과 처분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처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2.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은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통지기간 내에 결과를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행정심판을 제기하려는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임야 관련 등록정보에 관한 사항은 산림청장)이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행정심판법」 제23조제1항).
 4.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 「행정소송법」 제9조에 따른 행정법원에 제기하시면 됩니다(「행정소송법」 제9조).

년 월 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산림청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6. 농업인 확인서 발급 규정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시행 2026. 3. 30.]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6-40호, 2026. 3. 30.,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농산업전략기획단), 044-201-1562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의 농업인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농업인의 확인 신청, 확인 기준, 확인 절차 및 확인서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규정된 사람을 말한다.
2. "농업인 확인"이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의 농업인임을 이 고시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지원장 및 사무소장(이하 "농관원의 지원(사무소)장"이라 한다)이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3. "농지"란 「농지법」 제2조제1호의 농지를 말한다.

제3조(농업인 확인 신청)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농업인 확인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표 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표에 등록된 신청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농관원의 지원(사무소)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방문·우편·팩스 등의 방법으로 농업인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거주지와 농지 소재지의 관할이 다를 경우 농지 소재지 농관원의 지원(사무소)장을 경유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제4조(농업인 확인 기준) 이 고시에 따라 농업인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농업인 확인을 신청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의 농업인 기준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충족한 경우
 - 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사람
 - 나. 「농지법」 제50조에 따라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별표 1을 충족하여야 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농지대장 등본을 교부받아 제출한 사람
 - 다. 「농지법」 제20조에 따라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 대한 대리경작자지정 통지서를 제출한 사람
 - 라. 「농지법」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라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 대한 임대차계약 또는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서면 계약서를 제출한 사람
 - 마. 나목과 다목, 나목과 라목, 나목·다목·라목 및 다목과 라목에 따른 각 농지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이면서 관련 서류를 제출한 사람
 - 바. (삭제)
2.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의 농업인 기준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충족한 경우
 - 가. 다음의 자와 연간 120만원 이상의 농산물(법 시행령 제5조의 농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서면 계약서를 제출하거나 농산물 출하·판매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영수증 등)를 제출한 사람

- 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규정된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중도매인·매매참가인·산지유통인 및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 2)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제24조 및 제26조에 따라 영업을 허가받거나 신고·승계한 자
- 3) 「축산법」 제34조에 따라 개설된 가축시장을 통하여 가축을 구매하는 자
- 4)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4호의 생산자단체(이 고시에서 생산자단체는 이를 말한다)
- 5)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등록하여 영업을 개시한 대규모점포등의 개설자
- 6)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 나. 「산지관리법」 제4조에 따른 보전산지 및 준보전산지에서 육림업(자연휴양림·자연수목원의 조성·관리·운영업을 포함한다), 임산물 생산·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을 다음의 기준 중 어느 하나에 따라 경영하는 사람
 - 1)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의 수실류·약초류·약용류·수목부산물류·관상산림식물류(분재 제외)·그 밖의 임산물: 1천제곱미터 이상
 - 2)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의 버섯류·산나물류·분재: 300제곱미터 이상
 - 3) 삭제
 - 4) 삭제
 - 5) 표고자목: 20세제곱미터 이상
 - 6) 산림용 종자·묘목생산업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된 자
 - 7) 1)에서 6)까지 이외 목본 및 초본식물: 3만제곱미터 이상
 - 다. 기타 다음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한 사람
 - 1)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의 시설을 설치하여 식량·채소·과실·화훼·특용·약용작물, 버섯, 양잠 및 종자·묘목(임업용은 제외한다)을 재배하는 사람
 - 2) 농지에 660제곱미터 면적 이상의 채소·과실·화훼작물(임업용은 제외한다)을 재배하는 사람
 - 3) 33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에 규정된 축사 관련 부속시설을 설치하여 별표 2 기준 이상의 가축규모나 별표 3 기준 이상의 가축사육시설면적에 별표 2 기준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사람
 - 4)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종축업, 부화업이나 가축사육업의 허가받은 사람 또는 등록된 사람
 - 5) 농지에 1천제곱미터 이상의 조경수를 식재(조경목적 제외) 생산하는 사람
 - 6)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곤충의 사육 또는 생산에 대해 신고확인증을 받은 자로서 별표 4의 사육규모 이상으로 대상곤충을 사육하는 사람
- 7) (삭제)
 3.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의 농업인 기준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충족한 경우
 - 가. 제1호에서 제2호까지의 농업인 충족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인(이하 "농업경영주"라 한다)의 가족관계증명서상의 배우자(이하 "배우자"라 한다)인 농업종사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

1) 농업경영주의 주민등록표에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함께 등록된 사람(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세대를 달리하는 가족관계증명서상의 배우자는 예외로 하고, 농업인과 혼인한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가 농업인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와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동일한 사람)

2) 주소가 법 제3조제5호의 농촌이나 법 제61조의 준농촌에 위치하는 사람 또는 농촌(준농촌)이 아닌 지역에 위치하고 별지 제7호서식으로 영농사실을 확인받은 사람

3) 「국민연금법」 제8조의 사업장가입자(이하 "사업장가입자"라 한다)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의 직장가입자(이하 "직장가입자"라 한다)가 아닌 사람(다만, 신청일 직전 달 포함 과거 1년간의 근로소득이 2,000만원 미만인 사람이 별지 제7호서식으로 영농사실을 확인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나. 농업경영주의 배우자 외 가족원인 농업종사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

1) 농업경영주의 주민등록표에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함께 등록된 사람

2) 주소가 법 제3조제5호의 농촌이나 법 제61조의 준농촌에 위치하는 사람 또는 농촌(준농촌)이 아닌 지역에 위치하고 별지 제7호서식으로 영농사실을 확인받은 사람

3) 18세 이상이며 사업장가입자 또는 직장가입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

다. 가족원이 아닌 농업종사자의 경우에는 농업경영주와 1년 중 90일 이상 농업경영이나 농지경작활동의 고용인으로 종사한다는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서면 계약서를 제출한 사람

4.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농업인 기준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충족한 경우

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업 생산 및 농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고용된 사람이 1년 이상(계속 종사를 말한다)의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서면 계약서를 제출한 사람

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업 생산 및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활동에 고용된 사람이 1년 이상(계속 종사를 말한다)의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서면 계약서를 제출한 사람. 다만, 법인의 대표와 등기이사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제5조(농업인 확인 절차 등) ① 농관원의 지원(사무소)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해서는 제3조의 농업인 확인 신청서 및 제4조·제11조의 관련 첨부 증빙자료를 검토(檢討)하여 농업인 확인서의 발급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1. 제4조제1호

2. 제4조제2호가목

3. 제4조제3호가목 및 나목

4. 제4조제4호

② 농관원의 지원(사무소)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해서는 관계 공무원에게 현지조사를 하게 하여 그 결과에 따라 농업인 확인서의 발급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제4항에 따라 농업인 사실여부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제4조제2호나목 및 다목

2. 제4조제3호다목

③ 농관원의 지원(사무소)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농업인 확인서의 발급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를 확인한다.

1. 법 제40조에 따라 등록된 신청자의 농업경영정보 일치여부

2. 농업경영주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생산요소 등의 선택·사용권 또는 생산 농산물의 판매·처분권 등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으로 농작물재배업·축산업·임업을 영위하고 있는지 여부

3.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은 농업경영주의 농작물재배, 가축사육, 조림·육림, 임업용 유실수재배 및 산림부산물 채취 등의 활동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제 고용되거나, 가족노동을 계속하여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

가. 고용노동: 최소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노동력 제공여부(여러 명의 농업경영주에게 수일간이나 하루 중 4시간 이상 연속적으로 번갈아가며 노동력을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가족노동: 최소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주민등록표에 농업경영주와 함께 가족원으로 등록된 상태에서 노동력 제공여부(다만 경영주의 배우자로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영농사실을 확인받은 가족원)

4. 신청자의 주소지(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말한다) 또는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이장·통장이나 이웃주민의 의견(이웃주민은 2명 이상이어야 한다)

④ 농관원의 지원(사무소)장은 농업인 확인 등과 관련하여 제출된 문서(관련 증빙자료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및 생산자단체 등에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사실여부의 확인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및 생산자단체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속하고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농업인 확인서 발급) ① 농관원의 지원(사무소)장은 제3조에 따라 농업인 확인 신청서가 접수되면 제4조의 농업인 확인 방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농업인 확인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농업인 확인서를 발급한다.

② 농관원의 지원(사무소)장은 제3조에 따른 농업인 확인 신청서가 제4조의 농업인 확인 방법 중 어느 하나에도 맞지 않은 때에는 농업인 확인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내에 이 고시에 따른 농업인 확인서를 발급할 수 없다는 통지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농업인 확인서는 발급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유효하며, 이 기한이 지나면 다시 신청하여 발급받아야 한다.

④ 농관원의 지원(사무소)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기한까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이유와 연장 기한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가능한 한 빨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지도·감독 및 사후관리 등) 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3조에서 제6조까지에 따른 농업인의 확인 신청, 확인 기준, 확인 절차 및 확인서 발급 등에 관한 농관원의 지원(사무소)장의 사무를 지도하고 감독할 수 있다.

② 농관원의 지원(사무소)장은 농업인의 확인 등과 관련된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을 접수, 발송 및 등재한 날부터 5년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효율적인 자료관리 등을 위해 필요할 경우 전단의 서식을 전자적 시스템으로 작성·관리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관련 문서 및 등록대장 등의 보관·관리기간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 별도 지침으로 보관·관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이 고시에 따라 농업인 확인 등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거나 관련이 있는 사람이 업무처리과정에서 알게 되거나 얻게 된 신청인에 관한 정보 및 관련증빙자료 등은 이 고시에 따른 업무처리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신청인의 허위증빙 자료 등) 신청인이 농업인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작성한 기술내용 또는 해당기관에 제출하거나 첨부한 관련증빙자료 등이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따른 것으로 판명되는 때에는 이 고시에 따른 농업인 확인은 유효하지 않다.

제9조(개인정보조치회 양식) 이 고시에 따라 농관원의 지원(사무소)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및 생산자단체 등에 대하여 농업인 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농업인 사실 확인 등과 관련하여 행하는 신청자에 관한 개인정보조치동의는 별지 제5호서식을 사용한다.

제10조(농업인 확인서를 요구하는 자 등의 준수사항) 법령이나 훈령·예규·고시·공고 등으로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의 농업인 기준을 적용하거나 확인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등(소속·관할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방식 또는 다음 각 호의 공적 확인방법으로 농업인 기준의 충족에 대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민원인에게 이 고시에 따른 농업인 확인서 및 관련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농지대장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3. 토지등기부
4. 토지대장
5. 임야대장
6. 건물등기부
7. 건축물대장
8.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와 관련한 농업경영정보 등록부

제11조(농업인 확인 신청서의 첨부서류 등)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농업인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4조제1호라목: 해당농지의 농지대장등본·토지등기부등본·토지대장등본 중 어느 하나를 첨부
2. 제4조제1호마목: 각 목의 농지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
3. 제4조제2호가목: 해당토지의 농지대장등본·토지등기부등본·토지대장등본·임야대장등본 중 어느 하나를 첨부

4. 제4조제2호가목3): 가축시장의 개설·관리자인 축산업협동조합장의 확인서를 첨부(다만, 가축시장을 관할하는 축산업협동조합장이 직인으로 매매사실을 확인한 매매계약서를 첨부할 수 있다)
5. 제4조제2호나목: 해당산지의 임야대장등본과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10조제1항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첨부(다만, 임차의 경우에는 서면 계약서를 첨부한다)
6. 제4조제2호나목5): 주민등록표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산림조합장의 확인서를 첨부
7. 제4조제2호다목: 해당토지의 농지대장등본·토지등기부등본·토지대장등본·임야대장등본 중 어느 하나 및 해당건축물의 건물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등본 중 어느 하나를 첨부
8. 제4조제3호가목1) 및 나목1): 가축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외국인등록표
9. 제4조제3호가목2) 및 나목2):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해당지역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첨부
10. 제4조제3호가목3): 사업장가입자 또는 직장가입자가 아닌 경우 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행한 연금보험료·건강보험료의 가장 최근 납입고지서 또는 납입영수증·납입사실통보서 등 사업장가입자 또는 직장가입자가 아니라는 확인서를 첨부하고, 사업장가입자 또는 직장가입자인 경우 건강보험 납부확인서와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를 첨부(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방법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 사업장가입자 또는 직장가입자에 대한 확인서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 10의2. 제4조제3호나목3): 사업장가입자 또는 직장가입자가 아니라는 확인서를 첨부(다만, 신청자가 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행한 연금보험료·건강보험료의 가장 최근 납입고지서 또는 납입영수증·납입사실통보서 등을 제출하고 이를 통해 해당기관에서 국민연금의 사업장가입자 또는 국민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방법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 사업장가입자 또는 직장가입자에 대한 확인서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11. 제4조제3호다목: 고용계약서
12. 제4조제4호: 고용계약서

부칙 <제2026-40호, 2026.3.30.>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7.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3단 비교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4186호, 2024. 2. 6., 일부개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26호, 2025. 7. 17.,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쟁력 있는 농어업경영체를 육성하고 농어업의 공동경영을 활성화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농수산물과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나아가 농어촌사회의 안정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 3. 9., 2017. 3. 2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9. 5. 27., 2015. 1. 6., 2015. 6. 22., 2021. 8. 17.) 1.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2. “농업법인”이란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3. “농어업경영체”란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4. “어업인”이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5. “어업법인”이란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과 제19조에 따른 어업회사법인을 말한다. 6. “어업경영체”란 어업인과 어업법인을 말한다. 7. “농어업경영체”란 농업경영체와 어업경영체를 말한다. 8.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이란 「농어촌 정비법」 제2조제16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업을 말한다(다만, 같은 법 제84조에 따른 토지와 시설의 분양은 제외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쟁력 있는 농어업경영체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장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제4조(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① 농어업·농어촌에 관련된 용자·보조금 등을 지	제2조(등록대상 농업경영정보 및 어업경영정보)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제3조(농업경영정보의 등록) ① 농업경영체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4186호, 2024. 2. 6., 일부개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26호, 2025. 7. 17., 일부개정]
원반으려는 농어업경영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농어업경영정보”라 한다)을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9. 5. 27., 2011. 3. 9., 2015. 6. 22., 2017. 3. 21., 2018. 2. 21.) 1. 농업경영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0조에 따른 농지·축사·임야·원예시설 등 생산수단, 생산농산물, 생산방법 및 가축사육 마릿수 등 농업경영 관련 정보 및 용자·보조금 등의 수령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농업경영정보”라 한다) 2. 어업경영체: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27조에 따른 어선·양식시설 등 생산수단, 생산수산물, 생산방법 및 어업생산규모 등 어업경영 관련 정보 및 용자·보조금 등의 수령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 또는 변경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신설 2020. 2. 11.) ③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23. 8. 16.)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및 변경 절차와 농어업경영정보 등록부의 작성·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2020. 2. 11., 2023. 8. 16.)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개정 2011. 9. 9., 2013. 3. 23., 2014. 4. 30., 2017. 9. 19., 2020. 8. 26.) 1. 농업경영 관련 정보: 별표 1에 따른 정보 2. 어업경영 관련 정보: 어업인의 성명·주소, 어업법인의 법인명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 어업·양식업 면허·허가·신고 현황, 어업시설 및 양식시설의 면적, 어선규모, 경영형태, 어종별·품목별 생산량 및 그 밖에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② 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개정 2011. 9. 9., 2013. 3. 23., 2014. 4. 30., 2018. 12. 24., 2020. 8. 26.) 1. 별표 1 제1호가목, 같은 표 제3호가목, 같은 표 제4호가목, 같은 표 제6호가목 또는 같은 표 제7호가목의 정보나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보가 변경된 경우 2. 별표 1 제4호나목, 같은 표 제6호다목 또는 같은 표 제7호나목의 정보나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보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변경된 경우 3. 제1항제2호 중 어업인의 성명·주소, 어업법인의 법인명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 어업·양식업 면허·허가·신고 현황 또는 어선규모가 변경된 경우 4. 제1항제2호 중 어업시설 및 양식시설의 면적 또는 어종별·품목별 생산량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변경된 경우 [제목개정 2017. 9. 19.] 제2조의2(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기준) ①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업경영정보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농업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농업경영 관련 정보(이하 “농업경영정보”라 한다)를 등록하려면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경영정보 중 임야와 관련된 정보를 등록하려면 별지 제1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등록신청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3. 24., 2018. 12. 27., 2021. 9. 30., 2024. 3. 18., 2025. 7. 17.) 1.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 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 또는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선택형공익직접지불금(이하 “직불금”이라 한다)의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장 2. 직불금의 신청을 하는 경우: 농지 소재지 관할 읍장·면장 또는 동장(이하 이 조 및 제4조에서 “읍장·면장·동장”이라 한다)이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② 읍장·면장·동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으면 그 제출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등록신청서를 제5조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시스템 등을 통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개정 2024. 3. 18.) ③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등록신청서의 내용 중 직불금의 신청에 관한 사항을 그 제출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5조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시스템 등을 통하여 읍장·면장·동장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24. 3. 18.) ④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산림청장(농업경영정보 중 임야와 관련된 정보의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받으면 등록신청 정보의 사실 여부 및 영 제2조의2에 따른 등록기준에의 적합 여부를 확인한 후 농업경영정보 등록부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4186호, 2024. 2. 6., 일부개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26호, 2025. 7. 17., 일부개정]
	모두 충족할 것 가. 농지·축사·임야·원예시설 등 생산 수단에 대한 정당한 권원(權原)이 있을 것 나. 직접 생산한 농산물에 대한 판매 실적이 있거나 농자재 사용 등 농업경영에 관한 운영 실적이 있을 것 2. 농업법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가. 농지·축사·임야·원예시설 등 생산 수단에 대한 정당한 권원이 있을 것 (생산수단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농업경영에 관한 사업 및 활동 실적이 있을 것 ②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어업경영정보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어업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가. 관계 법령에 따라 어업 또는 양식업을 할 수 있는 정당한 자격이 있을 것 나. 직접 생산한 수산물에 대한 판매 실적이 있거나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기간 이상 어업 또는 양식업에 종사한 실적이 있을 것 2. 어업법인의 경우: 어업 또는 양식업 경영에 관한 사업 및 활동 실적이 있을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의 세부 내용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4. 2. 6.] 제20조의9(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법 제20조의5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로 등록된 정보 중 보조금 수령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 2. 6.>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2. 5. 9.]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18. 12. 27., 2020. 8. 25., 2024. 3. 18.> 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산림청장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가 별지 제2호의3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별지 제2호의4서식의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또는 별지 제2호의5서식의 농업경영체 증명서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12. 27., 2020. 8. 25.> 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산림청장은 농업경영체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등록된 농업경영정보를 분석·가공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7.> [전문개정 2014. 8. 7.] 제3조의2(어업경영정보의 등록) ① 어업경영체는 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어업경영 관련 정보(이하 “어업경영정보”라 한다)를 등록하려면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등록신청서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업인의 주소지 또는 어업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장·면장·동장(이하 이 조 및 제4조의2에서 “읍장·면장·동장”이라 한다)을 거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5. 7. 7., 2025. 7. 17.> ② 읍장·면장·동장은 제1항 후단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받으면 자체 없이 해당 등록신청서를 제5조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이송해야 한다. <신설 2025. 7. 17.>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 전단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받으면 등록신청 정보의 사실 여부 및 영 제2조의2에 따른 등록기준에의 적합 여부를 확인한 후 어업경영정보 등록부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15. 7. 7., 2020. 8. 25., 2024. 3. 18., 2025. 7. 17.> ④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가 별지 제2호의3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별지 제5호서식의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어업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4186호, 2024. 2. 6., 일부개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26호, 2025. 7. 17., 일부개정]
		경영체는 신청서를 읍장·면장·동장을 거쳐 제출할 수 있으며,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읍장·면장·동장을 거쳐 발급할 수 있다.〈신설 2020. 8. 25., 2025. 7. 17.〉 ⑤ 읍장·면장·동장은 제4항 후단에 따라 신청서를 받으면 자체 없이 해당 신청서를 제5조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이송해야 한다.〈신설 2025. 7. 17.〉 ⑥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어업경영체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등록된 어업경영정보를 분석·가공할 수 있다.〈신설 2020. 8. 25., 2025. 7. 17.〉 [본조신설 2014. 8. 7.] 제4조(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 ① 농업경영체는 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전화로 변경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경영정보 중 임야와 관련된 정보를 변경등록하려면 별지 제6호의2서식에 따른 변경등록신청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변경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27., 2024. 3. 1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불금의 신청을 하면서 농업경영정보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변경등록신청서를 읍장·면장·동장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등록 신청을 받은 읍장·면장·동장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의 변경등록신청서 처리업무에 관하여는 제3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개정 2016. 3. 24., 2024. 3. 18.〉 1. 삭제〈2024. 3. 18.〉 2. 삭제〈2024. 3. 18.〉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 신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④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정보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받은 농업경영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4186호, 2024. 2. 6., 일부개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26호, 2025. 7. 17., 일부개정]
		는 요청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의 농업경영체 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전화로 변경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27.〉 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산림청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변경등록신청서를 받거나 전화로 변경등록을 요청받으면 농업경영정보 등록부를 변경하고, 해당 농업경영체에 별지 제2호의3서식의 변경등록 확인서를 발급해주거나 전화 또는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변경등록된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한다.〈개정 2018. 12. 27., 2024. 3. 18.〉 [전문개정 2014. 8. 7.] 제4조의2(어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 ① 어업경영체는 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면 어업경영정보가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별지 제6호의3서식의 어업경영체 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전화로 변경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업경영체 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읍장·면장·동장을 거쳐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8. 12. 27., 2025. 7. 17.〉 ②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정보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받은 어업경영체는 요청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별지 제6호의3서식의 어업경영체 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전화로 변경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업경영체 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읍장·면장·동장을 거쳐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8. 12. 27., 2025. 7. 17.〉 ③ 읍장·면장·동장은 제1항 후단 또는 제2항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신청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해당 변경등록신청서를 제5조에 따른 농업경영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이송해야 한다.〈신설 2025. 7. 17.〉 ④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변경등록신청서를 받거나 전화로 변경등록을 요청받으면 어업경영정보 등록부를 변경하고, 해

제1부
농업법인이란 무엇인가제2부
농업법인의 업무인내제3부
농업법인의 사업범위 호별 예시제4부
농업법인의 분야별 민원 사례제5부
중대제재처벌법 바로 알기별첨
기타 주요 정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4186호, 2024. 2. 6., 일부개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26호, 2025. 7. 17., 일부개정]
		당 어업경영체에 별지 제5호서식의 변경등록 확인서를 발급해주거나 전화 또는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변경등록된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변경등록 확인서를 발급해 주는 경우에는 음장·면장·동장을 거쳐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5. 7. 7., 2024. 3. 18., 2025. 7. 17.> [본조신설 2014. 8. 7.] 제4조의3(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정 또는 말소 통지·공고 등) 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산림청장은 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경과하기 60일 전까지 법 제6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면 등록정보가 말소된다는 사실을 미리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에 서면, 전화 또는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신설 2020. 8. 25.> ② 법 제6조의2제2항 본문에 따른 농업경영체에 대한 등록정보 정정 또는 말소 사실 통지는 별지 제6호의4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 12. 27., 2020. 8. 25.> ③ 법 제6조의2제2항 단서에 따른 농업경영체에 대한 등록정보 정정 또는 말소 사실 공고는 별지 제6호의5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 12. 27., 2020. 8. 25.> ④ 제3항에 따른 공고는 해당 농업경영체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지원·사무소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산림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8. 12. 27., 2020. 8. 25.> 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산림청장은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정보가 말소된 농업경영체가 별지 제2호의3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별지 제6호의6서식의 농업경영체 등록말소 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 <신설 2020. 8. 25.> [본조신설 2017. 9. 20.] [제목개정 2020. 8. 25.] 제4조의5(어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정 또는 말소 통지·공고 등) ①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4186호, 2024. 2. 6., 일부개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26호, 2025. 7. 17., 일부개정]
		이 경과하기 60일 전까지 법 제6조의2 제1항제3호에 해당하면 등록정보가 말소된다는 사실을 미리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어업경영체에 서면, 전화 또는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신설 2020. 8. 25.> ② 법 제6조의2제2항 본문에 따른 어업경영체에 대한 등록정보 정정 또는 말소 사실의 통지는 별지 제6호의9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 12. 27., 2020. 8. 25.> ③ 법 제6조의2제2항 단서에 따른 어업경영체에 대한 등록정보 정정 또는 말소 사실의 공고는 별지 제6호의10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 12. 27., 2020. 8. 25.> ④ 제3항에 따른 공고는 해당 어업경영체의 주소를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의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0. 8. 25.> ⑤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정보가 말소된 어업경영체가 별지 제2호의3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별지 제6호의11서식의 어업경영체 등록말소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 <신설 2020. 8. 25.> [본조신설 2017. 12. 18.] [제목개정 2020. 8. 25.] 제6조(조사원의 활용)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산림청장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4조제4항 및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등록부의 작성·관리 및 현지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을 보조하는 조사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1. 9. 9., 2013. 3. 24., 2014. 8. 7., 2018. 12. 27., 2020. 8. 25., 2024. 3. 18.>
제5조(등록정보의 확인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조의 등록을 원활히 하고, 같은 조에 따라 등록된 농어업경영정보(변경등록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등록정보”라 한다)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3조(자료의 제공방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자료를 기관 간 정보시스템의 연계 등을 통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제6조(조사원의 활용)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산림청장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4조제4항 및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등록부의 작성·관리 및 현지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을 보조하는 조사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1. 9. 9., 2013. 3. 24., 201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4186호, 2024. 2. 6., 일부개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26호, 2025. 7. 17., 일부개정]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7. 3. 21.〉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등록정보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현지조사를 하게 하거나 해당 농어업경영체에 관련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농어업경영체는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23. 8. 16.〉 ③ 농어업경영체는 제2항에 따른 증빙자료의 제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지·임야·축사 및 어장·양식시설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이장·통장 등에게 자료의 확인 또는 증명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해당 자료가 사실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 또는 증명하여야 한다.〈신설 2023. 8. 16.〉 ④ 제2항에 따른 현지조사를 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토지·농장·양식장 등을 출입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개정 2023. 8. 16.〉	제4조(등록정보의 조사·확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조의2제1항제6호에 따른 조사·확인을 하려는 때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현지조사를 하게 해야 한다. 1. 법 제16조제3항 및 제19조제5항에 따른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의 설립 신고·변경신고·해산신고에 관한 정보 2.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에 따른 이력관리시스템으로 관리되는 가축의 이력에 관한 정보 3.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곤충생산업의 신고에 관한 정보 4.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관상어양식업의 신고에 관한 정보 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른 토지대장·임야대장의 등록정보 6. 「내수면어업법」 제6조, 제9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어업의 면허, 허가 또는 신고에 관한 정보 7. 「농지법」 제49조에 따른 농지대장에 작성된 정보 8. 「소금산업 진흥법」 제23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소금제조업의 허가(허가받은 염전에 대한 임대차계약 또는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소금제조업을 경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관한 정보 9. 「수산업법」 제7조, 제40조 또는 제48조에 따른 어업의 면허, 허가 또는 신고에 관한 정보 10.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에 관한 정보 11.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양봉농가의 등록에 관한 정보 12.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양식업의 면허 또는 허가에 관한 정보	8. 7., 2018. 12. 27., 2020. 8. 25., 2024. 3. 18.〉 제7조(증표) ①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개정 2024. 3. 18.〉 ② 제6조에 따른 조사원의 증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개정 2011. 9. 9.〉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4186호, 2024. 2. 6., 일부개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26호, 2025. 7. 17., 일부개정]
	13.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에 따른 원양어업의 허가·신고에 관한 정보 14. 「주민등록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15. 「초지법」 제24조에 따른 초지관리 실태조사에 관한 정보 16. 「축산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종축업·부화업·가축사육업의 허가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가축사육업의 등록에 관한 정보 17.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9조, 제22조 또는 제24조의4에 따른 농지에 관한 정보 [전문개정 2024. 2. 6.]	
제5조의2(등록정보의 실태조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등록정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농어업경영정보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등록정보의 수정등 요청)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조에 따라 등록정보를 확인한 결과, 등록정보의 수정 또는 보완(이하 이 조에서 "수정등"이라 한다)이 필요하면 농어업경영체에 등록정보의 수정등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3. 21.> ② 제1항에 따른 수정등의 요청을 받은 농어업경영체는 요청 내용을 반영하여 농어업경영정보를 변경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정보가 사실과 같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 ① 농업경영체는 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전화로 변경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경영정보 중 입야와 관련된 정보를 변경등록하려면 별지 제6호의2서식에 따른 변경등록신청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변경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7., 2024. 3. 1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불금의 신청을 하면서 농업경영정보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변경등록신청서를 읍장·면장·동장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등록 신청을 받은 읍장·면장·동장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의 변경등록신청서 처리업무에 관하여는 제3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6. 3. 24., 2024. 3. 18.> 1. 삭제 <2024. 3. 18.> 2. 삭제 <2024. 3. 18.>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 신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4186호, 2024. 2. 6., 일부개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26호, 2025. 7. 17., 일부개정]
		④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정보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받은 농업경영체는 요청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의 농업경영체 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전화로 변경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27.〉 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산림청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변경등록신청서를 받거나 전화로 변경등록을 요청받으면 농업경영정보등록부를 변경하고, 해당 농업경영체에 별지 제2호의3서식의 변경등록 확인서를 발급해주거나 전화 또는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변경등록된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개정 2018. 12. 27., 2024. 3. 18.〉 [전문개정 2014. 8. 7.] 제4조의2(어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 ① 어업경영체는 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면 어업경영정보가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별지 제6호의3서식의 어업경영체 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전화로 변경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업경영체 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읍장·면장·동장을 거쳐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8. 12. 27., 2025. 7. 17.〉 ②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정보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받은 어업경영체는 요청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별지 제6호의3서식의 어업경영체 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전화로 변경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업경영체 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읍장·면장·동장을 거쳐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8. 12. 27., 2025. 7. 17.〉 ③ 읍장·면장·동장은 제1항 후단 또는 제2항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신청서를 받으면 자체 없이 해당 변경등록신청서를 제5조에 따른 농업경영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이송해야 한다.〈신설 2025. 7. 17.〉 ④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변경등록신청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4186호, 2024. 2. 6., 일부개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26호, 2025. 7. 17., 일부개정]
제6조의2(등록정보의 정정 또는 말소)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정보를 정정 또는 말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개정 2020. 2. 11., 2023. 8. 1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거나 변경 등록을 한 경우 2. 농어업경영체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가. 제4조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농어업경영정보에 등록된 경영주인 농업인 또는 어업인이 사망하거나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거주불명인 경우 다. 제20조의3에 따라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이 해산명령을 받은 경우 라. 「농지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농지 처분명령(같은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처분명령을 유예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을 받은 경우 마. 「농지법」 제61조제2호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의 해당 농지 관련 정보를 농어업경영정보로 등록한 경우 3. 제4조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5조제2항 후단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 5. 제6조제2항 본문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6.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확인	제4조(등록정보의 조사·확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조의2제1항제6호에 따른 조사·확인을 하려는 때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현지조사를 하게 해야 한다. 1. 법 제16조제3항 및 제19조제5항에 따른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의 설립 신고·변경신고·해산신고에 관한 정보 2.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에 따른 이력관리시스템으로 관리되는 가축의 이력에 관한 정보 3.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곤충생산업의 신고에 관한 정보 4.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관상어양식업의 신고에 관한 정보 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른 토지대장·임야대장의 등록정보 6. 「내수면어업법」 제6조, 제9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어업의 면허, 허가 또는 신고에 관한 정보 7. 「농지법」 제49조에 따른 농지대장에 작성된 정보 8. 「소금산업 진흥법」 제23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소금제조업의 허가(허가받은 영업에 대한 임대차계약 또는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소금제조업을 경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관한 정보 9. 「수산업법」 제7조, 제40조 또는 제	를 받거나 전화로 변경등록을 요청받으면 어업경영정보 등록부를 변경하고, 해당 어업경영체에 별지 제5호서식의 변경등록 확인서를 발급해주거나 전화 또는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변경등록된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변경등록 확인서를 발급해 주는 경우에는 읍·장·면장·동장을 거쳐 발급할 수 있다.〈개정 2015. 7. 7., 2024. 3. 18., 2025. 7. 17.〉 [본조신설 2014. 8. 7.] 제4조의3(농어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정 또는 말소 통지·공고 등) 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산림청장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경과하기 60일 전까지 법 제6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면 등록정보가 말소된다는 사실을 미리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에 서면, 전화 또는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신설 2020. 8. 25.〉 ② 법 제6조의2제2항 본문에 따른 농어업경영체에 대한 등록정보 정정 또는 말소 사실 통지는 별지 제6호의4서식에 따른다.〈개정 2018. 12. 27., 2020. 8. 25.〉 ③ 법 제6조의2제2항 단서에 따른 농어업경영체에 대한 등록정보 정정 또는 말소 사실 공고는 별지 제6호의5서식에 따른다.〈개정 2018. 12. 27., 2020. 8. 25.〉 ④ 제3항에 따른 공고는 해당 농어업경영체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지원·사무소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산림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개정 2018. 12. 27., 2020. 8. 25.〉 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산림청장은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정보가 말소된 농어업경영체가 별지 제2호의3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별지 제6호의6서식의 농어업경영체 등록말소 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신설 2020. 8. 25.〉 [본조신설 2017. 9. 20.] [제목개정 2020. 8. 25.] 제4조의5(어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정 또는 말소 통지·공고 등) 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경과하기 60일 전까지 법 제6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면 등록정보가 말소된다는 사실을 미리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어업경영체에 서면, 전화 또는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신설 2020. 8. 25.〉 ② 법 제6조의2제2항 본문에 따른 어업경영체에 대한 등록정보 정정 또는 말소 사실 통지는 별지 제6호의4서식에 따른다.〈개정 2018. 12. 27., 2020. 8. 25.〉 ③ 법 제6조의2제2항 단서에 따른 어업경영체에 대한 등록정보 정정 또는 말소 사실 공고는 별지 제6호의5서식에 따른다.〈개정 2018. 12. 27., 2020. 8. 25.〉 ④ 제3항에 따른 공고는 해당 어업경영체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지원·사무소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개정 2018. 12. 27., 2020. 8. 25.〉 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정보가 말소된 어업경영체가 별지 제2호의3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별지 제6호의6서식의 어업경영체 등록말소 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신설 2020. 8. 25.〉 [본조신설 2017. 9. 20.] [제목개정 2020. 8. 2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4186호, 2024. 2. 6., 일부개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26호, 2025. 7. 17., 일부개정]
한 결과 등록정보와 불일치하는 경우가. 농어업인의 주소 및 연락처, 법인의 소재지 및 연락처 나. 농지·임야·축사 및 어장·양식시설의 소재지 다. 재배 품목 및 품목별 재배 면적라. 사육축종 및 축종별 사육 규모 마. 어업면허, 어업허가 및 어업신고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정보를 정정 또는 말소하는 경우에는 정정 또는 말소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해당 농어업경영체에 알려야 한다. 다만, 주소나 거소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정보의 정정 또는 말소에 관한 통지 및 공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제1호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가 말소된 자는 말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농어업경영정보를 신규로 등록할 수 없다.<신설 2023. 8. 16.> [본조신설 2017. 3. 21.]	48조에 따른 어업의 면허, 허가 또는 신고에 관한 정보 10.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에 관한 정보 11.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양봉농가의 등록에 관한 정보 12.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양식업의 면허 또는 허가에 관한 정보 13.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에 따른 원양어업의 허가·신고에 관한 정보 14. 「주민등록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15. 「초지법」 제24조에 따른 초지관리 실태조사에 관한 정보 16. 「축산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종축업·부화업·가축사육업의 허가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가축사육업의 등록에 관한 정보 17.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9조, 제22조 또는 제24조의4에 따른 농지에 관한 정보 [전문개정 2024. 2. 6.]	는 말소 통지·공고 등 ①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경과하기 60일 전까지 법 제6조의2 제1항제3호에 해당하면 등록정보가 말소된다는 사실을 미리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어업경영체에 서면, 전화 또는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신설 2020. 8. 25.> ② 법 제6조의2제2항 본문에 따른 어업경영체에 대한 등록정보 정정 또는 말소 사실의 통지는 별지 제6호의9서식에 따른다.<개정 2018. 12. 27., 2020. 8. 25.> ③ 법 제6조의2제2항 단서에 따른 어업경영체에 대한 등록정보 정정 또는 말소 사실의 공고는 별지 제6호의10서식에 따른다.<개정 2018. 12. 27., 2020. 8. 25.> ④ 제3항에 따른 공고는 해당 어업경영체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의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개정 2020. 8. 25.> ⑤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정보가 말소된 어업경영체가 별지 제2호의3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별지 제6호의11서식의 어업경영체 등록말소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신설 2020. 8. 25.> [본조신설 2017. 12. 18.] [제목개정 2020. 8. 25.]
제6조의3(등록정보 정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①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정보가 정정 또는 말소된 농어업경영체는 그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거나 공고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심사·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심사절차 등 이의신청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		제4조의4(농업경영체의 등록정보 정정 또는 말소에 대한 이의신청) ① 농업경영체는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하 이 조에서 “이의신청”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의7서식의 이의신청서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8. 12. 27., 2020. 8. 25.>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산림청장은 이의신청의 심사·결정에 필요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심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8. 12. 27.> ③ 이의신청을 한 농업경영체는 심의회에 출석하여 이의신청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4186호, 2024. 2. 6., 일부개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26호, 2025. 7. 17., 일부개정]
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같은 조 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에 따른다.〈산설 2023. 7. 25.〉 [본조신설 2017. 3. 21.] [제목개정 2023. 7. 25.]		④ 제2항에 따른 심의회 구성 및 운영의 세부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산림청장이 정한다.〈개정 2018. 12. 27.〉 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산림청장은 이의신청의 심사·결정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의8서식의 이의신청 심사결정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개정 2018. 12. 27., 2020. 8. 25.〉 [본조신설 2017. 9. 20.] 제4조의6(어업경영체의 등록정보 정정 또는 말소에 대한 이의신청) ① 어업경영체는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하 이 조에서 “이의신청”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의12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8. 12. 27., 2020. 8. 25.〉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이의신청의 심사·결정에 필요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심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이의신청을 한 어업경영체는 심의회에 출석하여 이의신청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심의회 구성 및 운영의 세부사항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정한다. ⑤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이의신청의 심사·결정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의13서식의 이의신청 심사결정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개정 2018. 12. 27., 2020. 8. 25.〉 [본조신설 2017. 12. 18.]
제7조(농어업경영정보의 보호)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및 관리 등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0. 2. 11.〉		
제7조의2(부기등기 등) ① 농어업경영체가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하였거나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토지 등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기내용으로 하는 부기등기(附記登		제7조의2(부기등기 관련 제출 서식) ①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부기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 12. 27.〉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4186호, 2024. 2. 6., 일부개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26호, 2025. 7. 17., 일부개정]
記)를 하여야 한다. - 해당 부동산은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한 재산이라는 사항 - 보조금 교부 목적과 부동산의 내용연수(耐用年數)를 고려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였음에도 그 부동산을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부기등기는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건물표시변경등기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21.> ③ 농어업경영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설정한 부기등기 사항을 말소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8.> -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 제33조 및 제33조의3에 따라 보조금 전부를 국가에 반환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이러한 사실을 확인 받은 경우 - 보조금 교부 목적과 부동산의 내용연수를 고려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이 지난 경우 [본조신설 2015. 1. 6.]		- 별지 제2호의3서식에 따른 농어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확인서 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어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확인서 -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 ② 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라 부기등기를 말소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부기등기 말소 대상 부동산 증명서를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 7. 7.]
제8조(자금 지원 등의 제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농업·농어촌에 관련된 융자·보조금 등을 지원하는 경우 등록정보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20. 2. 11.>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정보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농어업경영체에 대하여는 농어업경영체의 육성 및 소득 안정 등을 위한 각종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5. 1. 6., 2020. 2. 11.> -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등록정보를 수정하지 아니한 농어업경영체 -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부기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한 농어업경영체 -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한 재산을 제7조의2제3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4186호, 2024. 2. 6., 일부개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26호, 2025. 7. 17., 일부개정]
지 아니하였음에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의 제공을 한 농어 업경영체		
제3장 후계농어업인력의 양성과 경영 규모화		
제9조 삭제<2020. 5. 19.>		
제10조 삭제<2020. 5. 19.>		
제11조(농어업경영의 규모화)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경영체의 생산 성 향상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경영규모 확대 및 농어업의 공동경영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21.>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 부장관은 농어업경영체의 경영규모 확 대 촉진을 위하여 농지, 양식장, 어선 또는 농어업용 시설의 매매 등을 우선 지원하거나 알선·중개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제11조의2(농어업경영체에 대한 지원) 국 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요 원자재의 공 급망 위험, 국제 에너지 가격의 급격한 상승 등에 따라 경영상 부담이 급증한 농어업경영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장 삭제 <2017.3.21>		
제12조 삭제<2017. 3. 21.>		
제13조 삭제<2017. 3. 21.>		
제14조 삭제<2017. 3. 21.>		
제15조 삭제<2017. 3. 21.>		
제5장 농어업법인의 설립 및 지원 등		
제16조(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신고 등) ①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 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 유통·가공·수출 및 농어촌 관광휴양사 업을 공동으로 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4호에 따른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이 하 “농업생산자단체”라 한다)는 5인 이 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영농조합법인(營 農組合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개정 2009. 5. 27., 2015. 1. 6., 2015.	제5조(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 립신고 등) ①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이 하 “영농조합법인”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영어조합법인(이하 “영 어조합법인”이라 한다)의 설립신고, 변 경신고 또는 해산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고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 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4186호, 2024. 2. 6., 일부개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26호, 2025. 7. 17., 일부개정]
6. 22.) ② 협업적 수산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수산물의 출하·유통·가공·수출 및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어업인 또는 「수산업·어촌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어업 관련 생산자단체(이하 “어업생산자단체”라 한다)는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영어조합법인(營漁組合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개정 2009. 5. 27., 2015. 1. 6., 2015. 6. 22.〉 ③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의 경우 특별자치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또는 해산하는 경우에도 같은 방법으로 변경신고 또는 해산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1. 8. 17.〉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설립신고, 변경신고 또는 해산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설립신고수리, 변경신고수리 또는 해산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1. 8. 17.〉 ⑤ 시장·군수·구청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설립신고수리, 변경신고수리 또는 해산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설립신고수리, 변경신고수리 또는 해산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본다.〈개정 2021. 8. 17.〉 ⑥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신고를 받은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1. 8. 17.〉 ⑦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출자, 정관 기재사항 및 해산 등에 필요한	사를, 특별자치시의 경우 특별자치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16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명칭 2. 목적 3. 사업 4. 사무소의 소재지 5.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이하 “조합법인”이라 한다)을 대표할 조합원 및 임원(이사와 감사)을 두는 조합법인만 해당한다)의 성명 6.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총출자액 7. 출자액의 납입방법·산정방법과 조합원 1명이 출자할 수 있는 출자액의 최고한도에 관한 사항 8. 해산 사유(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만 해당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고서를 반려할 수 있다. 1. 조합법인의 설립·변경 또는 해산 절차가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2. 정관 또는 신고서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3. 제4항에 따른 보완 요구를 받고 정해진 기간에 신고서를 보완하지 않은 경우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고서의 내용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신고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5. 9.]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4186호, 2024. 2. 6., 일부개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26호, 2025. 7. 17., 일부개정]
사항과 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 한 사항 외에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 법인의 설립신고, 변경신고, 해산신고, 신고의 반려 또는 보완 등에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1. 8. 17.> ⑧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에 관 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 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개 정 2015. 1. 6.> [제목개정 2021. 8. 17.]		
제16조의2(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 인에 대한 신고확인증의 발급 및 관리)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6조에 따른 설립신고, 변경신고 또는 해산신고를 수 리한 경우(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설립신 고, 변경신고 또는 해산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신고 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 장·군수·구청장은 신고확인증의 발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확인증의 발급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8. 17.]		제9조(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에 대 한 신고확인증 등) ① 법 제16조의2제1 항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설립신 고확인증·변경신고확인증·해산신고 확인증은 각각 별지 제17호서식부터 별 지 제19호서식까지와 같다. ②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영어조합 법인에 대한 설립신고확인증·변경신고 확인증·해산신고확인증은 각각 별지 제 20호서식부터 별지 제22호서식까지와 같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6조의2 제1항에 따라 신고확인증이 발급된 영 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등 기여부를 확인·점검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 5. 19.]
제16조의3(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 인의 설립등기 등) ①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은 법인으로 하며, 제16조 의2제1항에 따른 신고확인증의 발급일 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 한다. ②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은 제1 항에 따른 설립등기의 사항 중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거나 해산한 경우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확인증의 발급일로부터 14일 이내 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변경등기 또는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제2항에 따 른 변경등기 또는 해산등기를 할 때에는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확인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 립등기, 변경등기, 해산등기 등에 필요	제13조의2(조합법인의 설립등기) ① 법 제 16조의3제1항에 따른 조합법인의 설립 등기는 조합법인을 대표할 조합원이 신 청해야 한다.<개정 2022. 5. 9.> ② 제1항에 따른 조합법인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 8. 6.> 1.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8호 및 제13호의 사항 2. 조합법인을 대표할 조합원 및 임원(이 사와 감사를 두는 조합법인만 해당한 다)의 주소와 성명 3. 2명 이상의 조합원이 공동으로 조합 법인을 대표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 4.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총출자액 ③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개 정 2014. 8. 6., 2015. 12. 22., 2022. 5. 9.>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4186호, 2024. 2. 6., 일부개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26호, 2025. 7. 17., 일부개정]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상업등기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1. 8. 17.]	- 창립총회 의사록 - 정관 - 출자자산의 명세를 적은 서류 - 조합법인을 대표할 조합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영농조합법인의 경우에는 5인 이상의 조합원이 농업인 또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이하 “농업생산자단체”라 한다)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영어조합법인의 경우에는 5인 이상의 조합원이 어업인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이하 “어업생산자단체”라 한다)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설립신고확인증 [제9조에서 이동 <2022. 5. 9.>] 제13조의3(조합법인의 변경등기) ① 법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변경등기는 조합법인을 대표하는 조합원이 신청해야 한다.<개정 2022. 5. 9.> ② 법 제16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신설 2022. 5. 9.> ③ 법 제16조의3제2항에 따라 변경등기를 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등기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서류는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한 변경등기를 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개정 2022. 5. 9.> - 등기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 법 제18조의2제5항에 따라 공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법 제18조의2제6항에 따라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확인증 [본조신설 2015. 7. 6.] [제9조의2에서 이동 <2022. 5. 9.>] 제13조의4(조합법인의 해산등기) ① 법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해산등기는 청산인이 신청해야 한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4186호, 2024. 2. 6., 일부개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26호, 2025. 7. 17., 일부개정]
	② 제1항에 따른 해산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해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2.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해산신고 확인증 [본조신설 2022. 5. 9.]	
제17조(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 등) ① 영농조합법인은 농업인과 농업생산자단체 중 정관으로 정하는 자를 조합원으로 한다. ② 농업인이 아닌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농조합법에 출자하고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총회에서 의결권은 행사하지 못한다.〈개정 2024. 1. 23.〉 ③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 및 준조합원의 책임은 납입한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신설 2015. 1. 6.〉 ④ 영농조합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생산자단체의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개정 2015. 1. 6.〉 ⑤ 영어조합법인은 어업인과 어업생산자단체 중 정관으로 정하는 자를 조합원으로 한다. 다만,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라 협동양식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의 자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5. 1. 6., 2019. 8. 27.〉 ⑥ 어업인이 아닌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영어조합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어조합법에 출자하고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총회에서 의결권은 행사하지 못한다.〈개정 2015. 1. 6., 2024. 1. 23.〉 ⑦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 및 준조합원의 책임은 납입한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신설 2015. 1. 6.〉	제14조(준조합원의 자격)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영농조합법인에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 12. 9.〉 1. 영농조합법인에 생산자재를 공급하거나 생산기술을 제공하는 자 2. 영농조합법인에 농지를 임대하거나 농지의 경영을 위탁하는 자 3. 영농조합법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구입·유통·가공 또는 수출하는 자 4. 그 밖에 농업인이 아닌 자로서 영농조합법인의 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영농조합법인에 출자를 하는 자 ② 법 제17조제6항에 따라 영어조합법인에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 7. 6.〉 1. 영어조합법인에 생산자재를 공급하거나 생산기술 및 자본을 제공하는 자 2. 영어조합법인이 생산한 수산물의 대량 실수요자·유통업자 및 가공업자 제15조(영농조합법인의 생산자단체 가입)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영농조합법인이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농업생산자단체는 농업협동조합·산림조합 및 연연초생산협동조합으로 한다.〈개정 2015. 7. 6.〉	
제17조의2(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임원 등) ①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의 임원은 총회의 의결로 조합원과 준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되, 대표조합원 및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의		

제1부
농업법인이란 무엇인가제2부
농업법인의 업무인내제3부
농업법인의 사업범위 호별 예시제4부
농업법인의 분야별 민원 사례제5부
중대제재처벌법 바로 알기별첨
기타 주요 정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4186호, 2024. 2. 6., 일부개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26호, 2025. 7. 17., 일부개정]
임원 임기는 3년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 1. 23.]		
제18조(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조직변경) ①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은 총조합원의 일치로 총회의 결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형태인 농업회사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으로 조직을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5. 1. 6., 2018. 12. 24.> 1. 합명회사 2. 합자회사 2의2. 유한책임회사 3. 유한회사 4. 주식회사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조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일부를 유한책임사원으로 하거나 유한책임사원을 새로 가입시켜야 한다.<개정 2015. 1. 6.> ③ 제1항제2호의2 또는 제3호에 따라 조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전원을 유한책임사원으로 하여야 한다.<신설 2015. 1. 6., 2018. 12. 24.> ④ 제1항제4호에 따라 조직을 변경할 때 발행하는 주식의 발행가액의 총액은 조합법인에 현존하는 순재산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순재산액이 자본총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결의 당시의 조합원이 연대하여 그 부족액을 지급하여야 한다.<신설 2015. 1. 6.> ⑤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이 제1항에 따라 조직변경의 결의를 한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날부터 2주 내에, 조합 채권자에 대하여 조직변경에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개월 이상 공고하고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 따로 공고 내용을 알려야 한다.<개정 2015. 1. 6.> ⑥ 채권자가 제5항에 따른 일정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이 채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조직변경의 결의는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 1. 6.> ⑦ 채권자가 제5항의 기간 내에 조직변경의 결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4186호, 2024. 2. 6., 일부개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26호, 2025. 7. 17., 일부개정]
아니한 경우에는 조직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5. 1. 6.> ⑧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이 제1항의 조직변경을 한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은 해산등기를, 농업회사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은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5. 1. 6., 2024. 9. 20.> ⑨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으로서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유한책임사원 또는 주주가 된 자는 제8항에 따른 본점 등기를 하기 전에 생긴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의 채무에 대하여 등기 후 2년이 될 때까지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으로서 책임을 진다.<개정 2015. 1. 6.>		
제18조의2(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합병·분할) ①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은 합병계약서 또는 분할계획서를 작성한 후 총조합원의 일치로 총회의 결의를 거쳐 합병 또는 분할할 수 있다. ②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은 합병 또는 분할할 경우 그에 따른 변경신고, 설립신고 또는 해산신고를 각각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하여야 한다.<개정 2021. 8. 17.> ③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은 합병 또는 분할로 소멸되는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에 대하여는 제16조, 제16조의2, 제16조의3, 제17조,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1. 8. 17.> ⑤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이 제1항에 따라 합병·분할의 결의를 한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날부터 2주 내에, 조합 채권자에 대하여 조직변경에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개월 이상 공고하고 이미 알고 있는		

제1부
농업법인이란 무엇인가제2부
농업법인의 업무인내제3부
농업법인의 사업범위
호별 예시제4부
농업법인의 분야별
민원 사례제5부
중대제해처벌법
바로 알기별첨
기타 주요 정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4186호, 2024. 2. 6., 일부개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26호, 2025. 7. 17., 일부개정]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 따로 공고 내용을 알려야 한다. ⑥ 채권자가 제5항에 따른 일정 기간 내에 이익을 제기한 경우에는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이 채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합병·분할의 결의는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⑦ 채권자가 제5항의 기간 내에 합병·분할의 결의에 대하여 이익을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합병·분할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⑧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이 합병을 한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그에 따른 변경등기, 해산등기 또는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20.> [본조신설 2015. 1. 6.]		
제19조(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 등) ①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거나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회사법인(農業會社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5. 1. 6.> ②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자는 농업인과 농업생산자단체로 하되, 농업인이나 농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의 범위에서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11. 11. 22.> ③ 수산업의 경영이나 수산물의 유통·가공·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업회사법인(漁業會社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5. 1. 6.> ④ 어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자는 어업인과 어업생산자단체로 하되, 어업인이나 어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의 범위에서 어업회사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11. 11. 22.> ⑤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	제17조(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 유형) ① 농업인 및 농업생산자단체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회사법인(이하 “농업회사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9. 6. 4., 2022. 5. 9.> 1. 합명회사 2. 합자회사 2의2. 유한책임회사 3. 주식회사 4. 유한회사 ② 어업인 및 어업생산자단체는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업회사법인(이하 “어업회사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9. 6. 4., 2022. 5. 9.> 1. 합명회사 2. 합자회사 2의2. 유한책임회사 3. 주식회사 4. 유한회사 ③ 삭제 <2022. 5. 9.> ④ 삭제 <2022. 5. 9.> [제목개정 2022. 5. 9.] 제18조(농어업인 등이 아닌 자의 출자한도)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가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한도는 다음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4186호, 2024. 2. 6., 일부개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26호, 2025. 7. 17., 일부개정]
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또는 해산하는 경우에도 같은 방법으로 변경 신고 또는 해산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1. 8. 17.〉 ⑥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항에 따른 설립신고, 변경신고 또는 해산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설립신고수리, 변경신고수리, 해산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1. 8. 17.〉 ⑦ 시장·군수·구청장이 제6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설립신고수리, 변경신고수리 또는 해산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설립신고수리, 변경신고수리 또는 해산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본다.〈신설 2021. 8. 17.〉 ⑧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 신고를 받은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21. 8. 17.〉 ⑨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출자, 정관 기재사항 및 해산 등에 필요한 사항과 제5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 변경신고, 해산신고, 신고의 반려 또는 보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21. 8. 17.〉 ⑩ 농업회사법인의 농업생산자단체 조합원이나 준조합원 가입에 관하여는 제17조제4항을 준용하고 어업회사법인의 어업생산자단체 조합원이나 준조합원 가입에 관하여는 제17조제5항과 제6항을 준용한다.〈개정 2015. 1. 6., 2021. 8. 17.〉 ⑪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상법」 중 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1. 8. 17.〉	각 호와 같다. 1. 농업회사법인의 총출자액이 80억원 이하인 경우: 총출자액의 100분의 90 2. 농업회사법인의 총출자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총출자액에서 8억원을 제외한 금액 ②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어업인 또는 어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가 어업회사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업회사법인의 총출자액이 80억원 이하인 경우: 총출자액의 100분의 90 2. 어업회사법인의 총출자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총출자액에서 8억원을 제외한 금액 [전문개정 2012. 5. 22.] 제19조(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 등) ①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 신고, 변경신고 또는 해산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고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19조제5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명칭 2. 목적 3. 사업 4. 사무소의 소재지 5. 임원의 성명 6. 출자 총좌수·총주식수, 납입한 총출자액 7. 출자액의 납입방법·산정방법과 사원·주주 1명이 출자할 수 있는 출자액의 최고한도에 관한 사항 8. 해산 사유(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만 해당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고서를 반려할 수 있다. 1.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이하 “회사법인”이라 한다)의 설립·변경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4186호, 2024. 2. 6., 일부개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26호, 2025. 7. 17., 일부개정]
[제목개정 2021. 8. 17.]	또는 해산 절차가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2. 정관 또는 신고서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3. 제4항에 따른 보완 요구를 받고 정해진 기간에 신고서를 보완하지 않은 경우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고서의 내용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신고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 5. 9.]	
제19조의2(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에 대한 신고확인증의 발급 및 관리)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9조에 따른 설립신고, 변경신고 또는 해산신고를 수리한 경우(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설립신고, 변경신고 또는 해산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확인증의 발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확인증의 발급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8. 17.]		제11조(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에 대한 신고확인증 등)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설립신고확인증·변경신고확인증·해산신고확인증은 각각 별지 제22호의8서식부터 별지 제22호의10서식까지와 같다. ②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어업회사법인에 대한 설립신고확인증·변경신고확인증·해산신고확인증은 각각 별지 제22호의11서식부터 별지 제22호의13서식까지와 같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확인증이 발급된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에 대한 등기여부를 확인·점검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2. 5. 19.]
제19조의3(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등기 등) ①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은 법인으로 하며,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확인증의 발급일부터 14일 이내에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은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의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거나 해산한 경우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확인증의 발급일부터 14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변경등기 또는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제2항에 따른 변경등기 또는 해산등기를 할 때에는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확인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0조의2(회사법인의 설립등기) 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라 회사법인의 설립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설립등기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회사법인을 설립하려는 자가 농업인·농업생산자단체 또는 어업인·어업생산자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출자한도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주식회사의 형태로 설립하는 경우: 각 주식인수인의 성명, 주소, 인수한 주식의 수 및 농업인·농업생산자단체 또는 어업인·어업생산자단체 해당 여부를 표시한 서류와 해당 주식인수인이 농업인·농업생산자단체 또는 어업인·어업생산자단체임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4186호, 2024. 2. 6., 일부개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26호, 2025. 7. 17., 일부개정]
④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등기, 변경등기, 해산등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상업등기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1. 8. 17.]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주식회사 외의 형태로 설립하는 경우: 농업인·농업생산자단체 또는 어업인·어업생산자단체인 사원의 명단 및 해당 사원이 농업인·농업생산자단체 또는 어업인·어업생산자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설립신고확인증 [본조신설 2022. 5. 9.] [종전 제20조의2는 제20조의7로 이동 <2022. 5. 9.>] 제20조의3(회사법인의 변경등기) ① 법 제19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제19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법 제19조의3제2항에 따라 회사법인의 변경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변경등기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등기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2.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확인증 [본조신설 2022. 5. 9.] [종전 제20조의3은 제20조의10으로 이동 <2022. 5. 9.>] 제20조의4(회사법인의 해산등기) 법 제19조의3제2항에 따라 회사법인의 해산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해산등기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해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2.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해산신고확인증 [본조신설 2022. 5. 9.]	
제19조의4(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의 사업 범위) ① 농업법인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농업의 경영, 농산물의 공동 출하·유통·가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② 어업법인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산업의 경영, 수산물의 공동 출하·유통·가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8. 17.]	제20조의5(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의 사업 범위) ① 법 제19조의4제1항에서 “농업의 경영, 농산물의 공동 출하·유통·가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농업의 경영 2. 농산물의 출하·유통·가공·판매 및 수출 3. 농작업의 대행 4. 농어촌관광휴양사업 5.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로서 수행하는 경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4186호, 2024. 2. 6., 일부개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26호, 2025. 7. 17., 일부개정]
	우만 해당한다) 6. 다음 각 목의 부대 사업 가.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 및 공급 사업 나. 영농에 필요한 종자생산 및 종균배양 사업 다. 농산물의 구매 및 비축사업 라. 농업기계나 그 밖의 장비의 임대·수리 및 보관사업 마. 소규모 관개시설(灌溉施設)의 수탁 및 관리사업 바. 농업과 관련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운영 ② 법 제19조의4제2항에서 “수산업의 경영, 수산물의 공동 출하·유통·가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개정 2023. 1. 10.) 1. 어업·양식업의 경영 2. 수산물의 출하·유통·가공·판매 및 수출 3. 어작업의 대행 4. 농어촌관광휴양사업 5. 「뉴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른 뉴시사업 6. 「수산업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유어장의 운영(영여조합법인만 해당한다) 7. 「어촌·어항법」에 따른 어촌어항재생사업(영여조합법인만 해당한다) 8. 다음 각 목의 부대 사업 가. 영어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 및 공급사업 나. 영어에 필요한 수산종자 생산업 다. 수산물의 구매 및 비축사업 라. 수산장비 등의 임대·수리 및 보관사업 마. 수산업과 관련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운영 [본조신설 2022. 5. 9.]	
제19조의5(부동산업의 금지) 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은 농지를 활용 또는 전용하여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부동산업(단, 이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영위할 수 없다.(개정 2025. 10. 1.)		
제19조의6(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4186호, 2024. 2. 6., 일부개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26호, 2025. 7. 17., 일부개정]
1. 미성년자 2. 파성년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제19조의5 또는 「농지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제19조의5 또는 「농지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제19조의5 또는 「농지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제19조의5 또는 「농지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제20조의3제2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여 해산명령 처분을 받아 해산된 법인의 임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해당 법인에 대한 해산명령이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본조신설 2023. 8. 16.]		
제20조(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의 기술개발, 경영규모의 확대 또는 농어업기계화 및 시설장비 현대화, 경영정보화, 전문인력의 확보 및 인수합병 등을 위하여 자금 및 컨설팅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0조의2(실태조사) ① 주된 사무소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의 적법한 운영과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조사주기·방법 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의 운영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1. 8. 17.〉 1. 조합원(준조합원을 포함한다) 또는 사원이나 주주의 인적 사항, 주소 및 출자 현황 2. 사업범위와 관련된 사항 3. 소유한 농지의 규모 및 경작유무 등 현황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의 운영실태 등	제20조의6(실태조사 관련 정보) 법 제20조의2제6항에서 “법인등기전산정보, 과세정보, 부동산거래신고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상업등기법」에 따른 등기전산정보 2.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 정보 중 사업자등록번호 및 사업의 종류 3. 「법인세법」에 따른 매출액 및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상 주주현황 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 거래의 신고 정보 [본조신설 2022. 5. 9.] 제20조의7(시정기간)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0조의2제8항 각 호에 대하여	제12조(실태조사의 주기 및 방법 등) ①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의 운영실태 등에 대한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정기조사: 매년 실시 2. 수시조사: 시장·군수·구청장이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의 적법한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실태조사를 하려면 실태조사의 목적, 기간, 및 대상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작성하여 조사 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③ 실태조사는 현장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자료제출 요청 등을 통한 서면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4186호, 2024. 2. 6., 일부개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26호, 2025. 7. 17., 일부개정]
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영상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에게 필요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행위 2. 등기소와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서류의 열람·복사 또는 그 등본·초본의 발급을 요청하는 행위. 이 경우 열람·복사 또는 그 등본·초본의 발급은 무료로 한다. 3.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하는 행위 ③ 제2항에 따라 출입·조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원활한 실태조사를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의 사업범위와 운영실태의 확인을 위한 자료와 실태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1. 8. 17.〉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자료 제공을 위하여 법인등기전산정보, 과세정보, 부동산거래신고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에 대해 해당 정보를 관리하는 기관에 그 정보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에 따라야 한다.〈신설 2021. 8. 17.〉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제6항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과세정보의 제출을 요청할 경우 문서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과세정보 제출을 요청하여야 한다.〈신설 2021. 8. 17.〉 1. 사업자등록정보(사업자등록번호, 사업의 종류) 2. 매출액 3.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주주현황 ⑧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6개월 이내에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7. 9. 19., 2022. 5. 9.〉	[전문개정 2022. 5. 19.]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4186호, 2024. 2. 6., 일부개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26호, 2025. 7. 17., 일부개정]
내에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개정 2021. 8. 17.> 1. 조합원 5명 미만인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 2. 비농업인 또는 비어업인이 보유한 출자지분이 제19조제2항 또는 제4항에서 정한 출자한도를 초과한 농업회사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 ⑨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농지법」 제2조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농업회사법인과 제19조의5를 위반하여 부동산업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한 농업법인에 대하여 「농지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농지의 처분통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산설 2021. 8. 17.> ⑩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1항에 따른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의 실태조사 결과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1. 8. 17.> [본조산설 2015. 1. 6.]		
제20조의3(해산명령) ①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의 해산명령에 관하여는 「상법」 제176조에 따른 회사의 해산명령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회사”는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으로 본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에 대하여 법원에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21. 8. 17.> 1. 조합원이 5명 미만인 된 후 1년 이내에 5명 이상이 되지 아니한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 2. 총 출자액 중 비농업인 또는 비어업인이 보유한 출자지분이 제19조제2항 또는 제4항에서 정한 출자한도를 초과한 후 1년 이상 경과한 농업회사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 3.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사업범위에서 벗어난 사업을 하는 농업법인 4. 제19조의4제2항에 따른 사업범위에서 벗어난 사업을 하는 어업법인 5.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상법」 제17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 6. 제20조의2제8항에 따른 시장·군수·		

제1부
농업법인이란 무엇인가제2부
농업법인의 업무인내제3부
농업법인의 사업범위
호별 예시제4부
농업법인의 분야별
민원 사례제5부
중대제재처벌법
바로 알기별첨
기타 주요 정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4186호, 2024. 2. 6., 일부개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26호, 2025. 7. 17., 일부개정]
구청장의 시정명령에 3회 이상 불응한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 [본조신설 2015. 1. 6.]		
제20조의4(과징금) ① 제19조의5를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영위한 농업법인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한다.〈개정 2025. 10. 1.〉 1. 농지를 활용 또는 전용하여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한 경우 2. 농지를 활용 또는 전용하여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 해당 농지의 양도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내 2. 제1항제2호의 경우: 임대료에 상당하는 금액 이내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해당 법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8. 17.]	제20조의8(과징금의 세부 부과기준 등) ① 법 제20조의4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20조의4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과징금을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한다.〈개정 2023. 12. 12.〉 ④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⑤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 5. 9.]	
제20조의5(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의 설립, 운영, 농지 소유 현황 등을 관리하기 위한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정보시스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신설 2023. 8. 16.〉 1. 제16조제3항 및 제19조제5항에 따른 설립신고·변경신고·해산신고에 관한 사항 2. 제16조의2 및 제19조의2에 따른 신고확인증의 발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20조의9(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법 제20조의5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로 등록된 정보 중 보조금 수령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개정 2024. 2. 6.〉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2. 5. 9.]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4186호, 2024. 2. 6., 일부개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26호, 2025. 7. 17., 일부개정]
3. 제20조의2제1항 및 제8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시정명령에 관한 사항 4. 제20조의3제2항에 따른 해산 청구에 관한 사항 5. 제20조의4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6. 농업법인의 농지 소유 현황에 관한 사항 7.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이 정부나 지 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보조금으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8. 그 밖에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의 설립·운영 현황 등을 관리하기 위하 여 필요한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 관은 제1항에 따른 종합정보시스템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에 필요한 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 야 한다.<개정 2023. 8. 16.> ④ 그 밖에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운 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개정 2023. 8. 16.> [본조신설 2021. 8. 17.]		
제6장 농어업경영혁신 기반 구축		
제21조(농어업경영체의 회계) ① 농어업 경영체는 농어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 기 위하여 회계를 투명하게 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 부장관은 농어업경영의 성과와 재무상 태를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는 농업회 계기준을 정하여 이를 활용하도록 농어 업경영체에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 부장관은 농어업경영 효율화를 위한 지 원을 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농업회 계기준을 활용하는 농어업경영체를 우 대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제22조(농어업교육 계획의 수립 등) ① 국 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경영체의 경영능력 및 기술수준에 맞는 경영·기 술 교육 또는 전문컨설팅 등의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5조(전문농어업경영인의 지정) ① 농 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 관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전문농어 업경영인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15년 이 상 농어업에 종사한 경력이 있거나 이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4186호, 2024. 2. 6., 일부개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26호, 2025. 7. 17., 일부개정]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경영체에 대하여 전문적인 농어업경영·기술 교육 또는 컨설팅 등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어업인 중에서 전문농어업경영인을 지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5. 1. 6., 2021. 8. 17.〉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문농어업경영인의 효율적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5. 1. 6., 2021. 8. 17.〉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전문농어업경영인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5. 1. 6., 2021. 8. 17.〉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농어업경영인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전문농어업경영인의 지정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전문 농어업경영·기술 교육, 컨설팅 등 활동실적 등을 고려하여 더 이상 전문농어업경영인으로 활동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합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⑤ 제2항에 따른 전문농어업경영인 지정 대상, 지정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2015. 1. 6., 2021. 8. 17.〉		같은 기술수준이 있다고 인정되는 농어업인 중에서 신청을 받아 지정한다.〈개정 2013. 3. 24.〉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농어업경영인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3. 3. 24.〉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제19조로 이동 〈2015. 7. 7.〉]
제23조(농어업인단체 등의 교육운영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경영체에 대한 교육을 하는 농어업인단체 등에 대하여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경영체에 대한 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농어업교육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경영		제16조(지역농어업교육계획 수립·시행의 지원) ①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지역농어업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려는 해당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으면 교육의 내용, 기간, 대상 등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 및 지원 규모를 결정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15. 7. 7.〉]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4186호, 2024. 2. 6., 일부개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26호, 2025. 7. 17., 일부개정]
체에 대한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농어업교육전문가의 양성, 교육과정의 개발, 교육장소의 제공 또는 농어업교육전문가에 대한 정보 제공 등을 할 수 있다.		
제24조(교육기관 평가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2조제2항에 따른 전문농어업경영인 및 제23조에 따른 지원을 받는 농어업인단체 등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고, 전문농어업경영인 또는 농어업인단체 등을 지원할 때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5. 1. 6., 2021. 8. 17.〉		제17조(전문농어업교육인 등의 평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4조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평가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4.〉 1. 평가의 기본방향 2. 평가의 대상 및 방법 3. 평가결과의 공개 및 활용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의 전문성·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3. 3. 24.〉 ③ 제1항에 따른 평가의 세부적인 기준, 항목, 및 절차 등과 제2항에 따른 관련 전문기관의 선정기준 및 선정방법 등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3. 3. 24.〉 [제13조에서 이동 〈2015. 7. 7.〉]
제25조(통합농어업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 교육기관 또는 단체의 교육정보를 농어업경영체에 제공하고 농어업경영체의 교육 이수 실적정보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통합농어업교육정보시스템 또는 통합농어업교육정보시스템을 각각 구축하여 활용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5. 1. 6.〉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합농어업교육정보시스템 또는 통합농어업교육정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농어업경영체를 교육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 교육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교육정보와 농어업경영체의 교육이수 실적정보 등 필요한 자료의 입력 또는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5. 1. 6.〉 ③ 제2항의 요청을 받은 국가와 지방자	제20조의10(대상 정보의 범위)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통합농어업교육정보시스템 또는 통합농어업교육정보시스템의 입력 또는 제출 대상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2. 5. 9.〉 1. 교육과정명, 교육대상, 교육목적 및 필요성, 교육내용, 교육장소, 교육시기 2. 교육에 참여한 강사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연락처, 강의분야 3. 교육에 참여한 자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연락처, 재배품목 4.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농어업경영정보 5.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경영·기술 교육 또는 전문컨설팅 등의 지원에 관한 정보 6.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전문농어업경영인 관련 정보 7. 그 밖에 농어업경영체의 교육에 필요한 관련 정보	제18조(통합농어업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통합농어업교육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영 제20조의10 각 호의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해야 한다.〈개정 2015. 7. 7., 2022. 5. 19.〉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농어업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개정 2013. 3. 24.〉 [제14조에서 이동 〈2015. 7. 7.〉]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4186호, 2024. 2. 6., 일부개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26호, 2025. 7. 17., 일부개정]
치단체, 공공기관, 민간 교육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5. 1. 6.〉 ④ 제2항에 따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 교육기관 또는 단체별 입력 또는 제출 대상 정보의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15. 1. 6.〉 ⑤ 제1항에 따른 통합농업교육정보시스템 또는 통합어업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신설 2015. 1. 6.〉	[본조신설 2015. 7. 6.] [제20조의3에서 이동 〈2022. 5. 9.〉]	
제26조(선도적 농어업경영모델의 확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우수한 농어업기술과 지식, 경영 역량을 갖춘 농어업경영체를 선도적 농어업경영모델로 선정하고, 이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농어업경영체 간 상호교류활동 및 농어업인 교육활동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27조(농어업인재개발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 관련 인적자원의 개발을 위하여 농어업경영체에 대한 교육 및 전문컨설팅 등의 수행·연구·평가·사업관리 등을 담당할 전문기관(이하 “농어업인재개발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인재개발전문기관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인재개발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농어업인재개발전문기관의 지정요건	제21조(농어업인재개발전문기관의 지정 요건 등)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인재개발전문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여야 한다.〈개정 2021. 1. 5.〉 1. 법 제27조제1항의 역할을 담당할 조직 및 인력 등의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 2. 농어업인 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을 것 ②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인재개발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추고 농어업경영체에 대한 교육 및 전문컨설팅 등의 수행·연구·평가·사업관리 등에 관한 운영계획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4186호, 2024. 2. 6., 일부개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26호, 2025. 7. 17., 일부개정]
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업무실적이 없는 경우 ④ 농어업인재개발전문기관의 지정 요건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의2(농어업경영체 지원사업 평가 및 성과관리 전담기관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경영체 지원사업의 기획, 관리, 평가 및 규제개선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 및 조사·연구능력 등을 갖춘 연구기관 또는 단체를 농어업경영체 지원사업 평가 및 성과관리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담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전담기관의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1항에 따라 지정 받은 전담기관의 업무실적 등이 현저히 부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전담기관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전담기관의 업무, 지정요건 및 절차와 전담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1. 6.]	제21조의2(농어업경영체 지원사업 평가 및 성과관리 전담기관의 업무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농어업경영체 지원사업 평가 및 성과관리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농어업경영체 지원사업의 기획, 관리 및 평가 등에 필요한 자료의 축적·분석 2. 농어업경영체 지원사업 추진실태의 점검 3. 농어업경영체 지원사업 추진성과의 평가 4. 농어업경영체 지원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사업추진체계 개편, 제도개선 및 규제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전담기관의 지정요건은 별표 2와 같다. ③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전담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에 관한 규정 2. 제1항 각 호의 업무에 대한 업무수행 계획서 3. 전문인력 및 시설의 보유 현황 4. 관련 업무 수행실적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담기관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 7. 6.]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4186호, 2024. 2. 6., 일부개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26호, 2025. 7. 17., 일부개정]
제6장의2 공동농업경영 활성화 <신설 2017.3.21>		
제27조의3(공동농업경영체의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조직화·규모화를 통하여 농업 생산비용 절감과 품질 제고 및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공동농업경영체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동농업경영체로 지정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공동농업경영체 운영계획(농지의 공동 이용계획을 포함한다)이 있을 것 2. 공동경영 내부규약(공동경영에 따른 비용 및 이익금의 정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이 있을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경영 면적 및 참여 농업경영체 수를 갖춘 것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농업경영체 운영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할 것 ③ 제1항에 따라 공동농업경영체로 지정 받으려는 법인 또는 단체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추천을 받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공동농업경영체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공동농업경영체의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공동농업경영체로 지정할 수 있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동농업경영체에 대하여 공동경영에 필요한 시설·장비 및 컨설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 3. 21.]	제21조의3(공동농업경영체의 지정요건) ① 법 제27조의3제2항제3호에 따라 공동농업경영체로 지정받으려는 법인 또는 단체가 갖추어야 하는 공동경영 면적 및 참여 농업경영체 수는 각각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경영 면적: 50헥타르 이상 2. 참여 농업경영체 수: 농업인 25명 이상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동농업경영체가 경영하려는 농산물 품목의 특성과 공동농업경영체의 지리적 여건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달리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 9. 19.] 제21조의4(공동농업경영체 지정을 위한 교육) ① 법 제27조의3제2항제4호에 따른 공동농업경영체 운영에 필요한 교육(이하 이 조에서 “공동농업경영체 교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을 말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공동농업경영체의 경영·기술 교육 또는 공동농업경영체의 조직화·규모화에 대한 교육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교육 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른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이 실시하는 공동농업경영체의 조직화·규모화와 관련된 교육 ② 공동농업경영체 교육은 공동농업경영체로 지정받으려는 법인의 대표 또는 단체의 장이 받아야 한다. 다만, 공동농업경영체 교육을 받아야 하는 법인의 대표 또는 단체의 장이 농업인이 아닌 경우에는 공동농업경영체를 관리하는 다른 농업인이 대신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③ 공동농업경영체 교육은 8시간 이상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7. 9. 19.]	제22조(공동농업경영체의 농업경영정보 등록) ① 법 제27조의3제4항에 따라 지정된 공동농업경영체(이하 “공동농업경영체”라 한다)는 법 제27조의4제1항 전단에 따라 공동농업경영체의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공동농업경영체로 지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별지 제26호서식의 공동농업경영체 농업경영정보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으면 농업경영정보 등록부를 작성하고, 별지 제27호서식의 공동농업경영체 농업경영정보 등록 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주어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동농업경영체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등록된 농업경영정보를 분석·가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 9. 20.]
	제21조의5(공동농업경영체의 지정절차) ① 법 제27조의3제1항에 따라 공동농업경영체로 지정받으려는 법인 또는 단체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4186호, 2024. 2. 6., 일부개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26호, 2025. 7. 17., 일부개정]
	품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27조의3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2. 법 제27조의3제3항에 따른 시장·군수·구청장의 추천서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7조의3제4항에 따라 공동농업경영체를 지정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9. 19.] 제22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권한 중 별표 1의 임야 관련 등록대상 정보에 관한 권한은 산림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7. 9. 19., 2018. 12. 24., 2024. 2. 6.> 1.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농업경영정보의 등록 및 변경등록 1의2. 제2조의2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의 세부 내용 및 운용에 관한 고시(농림축산식품부장관만 해당한다) 2.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청 및 현지조사 2의2. 법 제5조의2에 따른 등록정보의 실태조사 3.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정보의 수정·보완 요청 3의2. 법 제6조의2에 따른 등록정보의 정정 또는 말소 3의3. 법 제6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심사·결정 및 결과의 통보 4. 법 제3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징수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법 제27조의3제3항에 따른 공동농업경영체 지정 신청의 접수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7. 9. 19.> ③ 산림청장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	

제1부
농업법인이란 무엇인가제2부
농업법인의 업무인내제3부
농업법인의 사업범위 호별 예시제4부
농업법인의 분야별 민원 사례제5부
중대제해처벌법 바로 알기별첨
기타 주요 정보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4186호, 2024. 2. 6., 일부개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26호, 2025. 7. 17., 일부개정]
	은 권한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하는 경우에는 그 재위임된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산설 2020. 8. 11.>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은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통합 농업교육정보시스템 또는 통합어업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개정 2015. 12. 22., 2017. 9. 19., 2020. 8. 11.>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전문개정 2015. 7. 6.]	
제27조의4(공동농업경영체의 정보등록 등) ① 제27조의3에 따라 공동농업경영체로 지정받은 법인 또는 단체는 그 공동농업경영체에 참여하는 구성원의 명칭과 공동농업경영체의 농업경영정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정보의 수정 또는 보완(이하 이 조에서 “수정등”이라 한다)이 필요하면 공동농업경영체에 등록정보의 수정등을 요청할 수 있고, 수정등의 요청을 받은 공동농업경영체는 요청 내용을 반영하여 농업경영정보를 변경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등록정보를 정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농업경영정보의 등록 및 변경 절차와 농업경영정보 등록부의 작성·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고, 제2항 단서에 따른 등록정보의 정정 및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제6조의2제2항·제3항 및 제6조의3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7. 3. 21.]	제21조의6(공동농업경영체의 농업경영정보 및 변경등록 대상 농업경영정보) ① 법 제27조의4제1항 전단에 따른 공동농업경영체의 농업경영정보는 별표 2의 2와 같다. ② 법 제27조의4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동농업경영체의 명칭 2. 공동농업경영체의 대표자 3. 공동농업경영체의 참여 농업인 4. 공동농업경영체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 5. 공동농업경영체의 연락처 6. 법 제27조의3제2항제1호에 따른 공동농업경영체 운영계획 7. 법 제27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경영 내부규약 8. 공동농업경영체의 공동경영 농지 면적 [본조신설 2017. 9. 19.]	제22조(공동농업경영체의 농업경영정보 등록) ① 법 제27조의3제4항에 따라 지정된 공동농업경영체(이하 “공동농업경영체”라 한다)는 법 제27조의4제1항 전단에 따라 공동농업경영체의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공동농업경영체로 지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별지 제26호서식의 공동농업경영체 농업경영정보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으면 농업경영정보 등록부를 작성하고, 별지 제27호서식의 공동농업경영체 농업경영정보 등록 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주어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동농업경영체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등록된 농업경영정보를 분석·가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 9. 20.] 제23조(공동농업경영체 농업경영정보의 변경 등) ① 공동농업경영체는 법 제27조의4제1항 후단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변경등록하려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별지 제26호서식의 공동농업경영체 농업경영정보 변경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27조의4제2항 본문에 따라 등록정보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받은 공동농업경영체는 요청받은 날부터 1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4186호, 2024. 2. 6., 일부개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26호, 2025. 7. 17., 일부개정]
		일 이내에 별지 제26호서식의 공동농업경영체 농업경영정보 변경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 농업경영정보 등록부를 변경하고, 별지 제27호서식의 공동농업경영체 농업경영정보 변경등록 확인서를 발급해주거나 변경등록된 사실을 통지해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7. 9. 20.] 제24조(공동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정 또는 말소 통지·공고) ① 법 제27조의4 제3항에 따른 공동농업경영체에 대한 등록정보 정정 또는 말소 사실 통지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27조의4제3항에 따른 공동농업경영체에 대한 등록정보 정정 또는 말소 사실 공고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른 공고는 농림축산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7. 9. 20.] 제25조(공동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정 또는 말소에 대한 이의신청) ① 공동농업경영체는 법 제27조의4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이하 이 조에서 “이의신청”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의신청의 심사·결정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이의신청 심사결정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9. 20.]
제27조의5(공동농업경영체의 지정취소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7조의3에 따라 지정된 공동농업경영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27조의3제2항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4186호, 2024. 2. 6., 일부개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26호, 2025. 7. 17., 일부개정]
1호에 따른 공동농업경영체 운영계획을 1년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동농업경영체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제27조의4제1항에 따라 등록한 농업경영정보를 말소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3. 21.]		
제27조의6(공동농업경영체의 사후관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7조의3에 따라 지정된 공동농업경영체의 사업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의 횟수, 방법 및 점검사항 등 세부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 3. 21.]		제26조(사후관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7조의6 제1항에 따라 공동농업경영체에 대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1. 법 제27조의3제2항에 따른 요건 충족 여부 2. 법 제27조의3제2항제1호에 따른 공동농업경영체 운영계획의 이행 여부 3. 법 제27조의4에 따른 공동농업경영체 농업경영정보의 정확성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매년 10월 3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9. 20.]
제7장 보칙		
제28조(청문)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5. 1. 6., 2017. 3. 21., 2021. 8. 17., 2023. 8. 16.> 1. 제22조제4항에 따른 전문농어업경영인의 지정 취소 2. 제27조제3항에 따른 농어업인재개발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3. 제27조의2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취소 4. 제27조의5제1 항에 따른 공동농업경영체의 지정취소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0조의3에 따라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에 대하여 법원에 해산을 청구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신설 2023. 8. 16.>		
제29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산림청장,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22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4186호, 2024. 2. 6., 일부개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26호, 2025. 7. 17., 일부개정]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5. 1. 6., 2018. 2. 21.>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신설 2020. 2. 11.> ③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 중 제25조에 따른 통합농업교육정보시스템 또는 통합어업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각각 위탁할 수 있다.<신설 2015. 1. 6., 2020. 2. 11.> [제목개정 2015. 1. 6.]	음 각 호의 권한 중 별표 1의 임야 관련 등록대상 정보에 관한 권한은 산림청장에게 위임한다.<개정 2017. 9. 19., 2018. 12. 24., 2024. 2. 6.> 1.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농어업경영체의 등록 및 변경등록 1의2. 제2조의2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의 세부 내용 및 운용에 관한 고시<농림축산식품부장관만 해당한다> 2.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청 및 현지조사 2의2. 법 제5조의2에 따른 등록정보의 실태조사 3.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정보의 수정·보완 요청 3의2. 법 제6조의2에 따른 등록정보의 정정 또는 말소 3의3. 법 제6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심사·결정 및 결과의 통보 4. 법 제3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징수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법 제27조의3제3항에 따른 공동농어업경영체 지정 신청의 접수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신설 2017. 9. 19.> ③ 산림청장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하는 경우에는 그 재위임된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신설 2020. 8. 11.>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통합농업교육정보시스템 또는 통합어업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개정 2015. 12. 22., 2017. 9. 19., 2020. 8. 11.>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전문개정 2015. 7. 6.]	
제30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이 아니면		

제1부
농업법인이란 무엇인가제2부
농업법인의 업무인내제3부
농업법인의 사업범위 호별 예시제4부
농업법인의 분야별 민원 사례제5부
중대제재처벌법 바로 알기별첨
기타 주요 정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4186호, 2024. 2. 6., 일부개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26호, 2025. 7. 17., 일부개정]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영아조합법인 또는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과 어업회사법인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제8장 벌칙		
제31조(벌칙) 제19조의5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조의2(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23. 8. 16.〉 1. 제7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2. 제16조, 제16조의3, 제19조 및 제19조의3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등기를 한 자 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산설 2023. 8. 16.〉 [본조신설 2021. 8. 17.]		
제3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15. 1. 6., 2023. 8. 16.〉 1. 제5조제2항의 현지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제3항에 따른 자료의 확인 또는 증명을 한 자 3. 제30조를 위반하여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이 아니면서 영농조합법인,	제2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개정 2014. 4. 30., 2015. 7. 6.〉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4186호, 2024. 2. 6., 일부개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26호, 2025. 7. 17., 일부개정]
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의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4. 삭제<2021. 8. 17.>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산설 2015. 1. 6., 2021. 8. 17.> 1. 제20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에 불응하거나 조사를 방해한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 2. 제20조의2제8항에 따른 시장명령에 2회 이상 불응한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가 각각 부과·징수한다.<개정 2011. 11. 22., 2013. 3. 23., 2015. 1. 6., 2021. 8. 17.>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2. 제1항제3호 및 제2항제1호·제2호의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제1부
농업법인이란 무엇인가제2부
농업법의 업무인내제3부
농업법의 사업범위 호별 예시제4부
농업법인 분야별 민원 사례제5부
중대제해처벌법 바로 알기별첨
기타 주요 정보

8.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중 작물재배업 및 서비스업 기준

개정 분류체계(제11차 기준)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A	농업, 임업 및 어업(01~03)	01	농업	011	작물 재배업	0111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	01110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
						0112	채소, 화훼작물 및 종묘 재배업	01121	채소작물 재배업
								01122	화훼작물 재배업
								01123	종자 및 묘목 생산업
						0113	과실, 음료용 및 향신용 작물 재배업	01131	과실작물 재배업
								01132	음료용 및 향신용 작물 재배업
						0114	기타 작물 재배업	01140	기타 작물 재배업
						0115	시설작물 재배업	01151	콩나물 재배업
								01152	채소, 화훼 및 과실작물 시설 재배업
								01159	기타 시설작물 재배업
				012	축산업	0121	소 사육업	01211	젖소 사육업
								01212	육우 사육업
						0122	양돈업	01220	양돈업
						0123	가금류 및 조류 사육업	01231	양계업
								01239	기타 가금류 및 조류 사육업
						0129	기타 축산업	01291	말 및 양 사육업
								01299	그 외 기타 축산업
				013	작물재배 및 축산 복합농업	0130	작물재배 및 축산 복합농업	01300	작물재배 및 축산 복합농업
				014	작물재배 및 축산관련 서비스업	0141	작물재배 관련 서비스업	01411	작물재배 지원 서비스업
								01412	농산물 건조, 선별 및 기타 수확 후 서비스
						0142	축산 관련 서비스업	01420	축산 관련 서비스업
				015	수렵 및 관련 서비스업	0150	수렵 및 관련 서비스업		

농업법인 업무안내서

발 행 일 | 2026년 6월

발 행 처 | 농림축산식품부

관 련 문 의 | 농림축산식품부 청년농육성정책팀 농업법인 담당(044-201-1534, 044-201-1537)

기 획·편 집 |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5로 19)